



2025

학교체육 업무매뉴얼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

www.goe.go.kr

2025

학교체육 업무매뉴얼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자율 **균형** 미래 경기도교육청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지역교육국 체육건강교육과

CONTENTS

I. 체육교육과정 내실화

1	성장단계별 체육교육과정 내실화	2
1-1)	2025년 학생생존수영교육 추진 기본계획	2
1-2)	2025 초등스포츠강사 지원계획	18
1-3)	2025년 지역연계 초등스포츠클럽 지원 계획	38
1-4)	2025년 초등스포츠전문가 연계 프로그램 운영 계획	52
1-5)	중학교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62
1-6)	중학교 학생선택중심 체육교육과정 운영	63
1-7)	체육교육과정 특성화학교 운영 지원	67
2	학생주도적 건강관리 역량 강화	69
2-1)	단위학교 학생건강체력증진 내실화	69
2-2)	여학생 체육 활성화	86
①	여학생 체육활성화 방향	86
②	여학생 체육활성화 추진과제	88
③	여학생 체육 활성화 모듬편성 방법	89
3	경기학생스포츠센터 운영 및 중·고등학교 IT활용 체육교실 지원	91
3-1)	경기학생스포츠센터 운영 강화	91
3-2)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 지원	98
4	경기체육교육 현장 지원 및 점검 등	100
4-1)	학교체육진흥에 관한 조치 점검	100
4-2)	학교체육소위원회	108

II. 학교스포츠클럽

1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업무흐름도	110
2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111
2-1)	교육과정 외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111
2-2)	지역, 경기학교스포츠클럽축제,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축전 운영	114
2-3)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진로 및 진학지도 연계	119

Ⅲ. 체육 인재 육성 [학교운동부 운영]

1	학교운동부 업무흐름도	122
2	학교운동부 운영	125
3	학교운동부 창단·운영·해단	128
4	체육특기자 관리	130
5	체육특기자 전출·입	133
6	학교운동부 위원회 구성 및 운영(학교체육소위원회 겸임)	136
7	학사관리	138
	7-1)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운영	138
	7-2) 정규수업 이수 의무화 및 학력증진 방안	142
	7-3) 학습지원(e-school) 운영 및 기초학력보장(Run-up) 프로그램	143
	7-4) 나이스 활용한 (개인)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 관리 의무화(신규)	145
8	학생선수 인권보호 및 진로역량 강화	146
	8-1)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	146
	8-2) 학생선수 상담 및 고충 해결 지원	150
	8-3) 학생선수 성장 지원을 위한 진로·진학교육	151
9	훈련 및 대회참가	153
	9-1) 대회(훈련) 참가 나이스 처리 방법 안내	153
	9-2) 혹서(한)기 훈련 안전대책 수립 및 훈련시간 최소화	155
	9-3) 방학 중 훈련 및 전지훈련	155
	9-4) 해외 전지훈련	156
	9-5) 학교운동부 훈련 및 대회출전 시 학생선수 관리 방안	158
	9-6)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 지도자 휴식권 보장	160
10	학생선수 기숙사 설치 및 운영	161
	10-1) 학생선수 기숙사 설치·운영	161
	10-2) 상시 합숙훈련 근절	163
11	학교운동부 차량 안전 운행	163
12	학교운동부 지도자(코치) 관리	167
	12-1) 학교운동부 지도자(코치) 채용 절차	167
	12-2) 학교운동부 지도자 직무교육 의무화	170
	12-3) 학교운동부 지도자(전임, 일반코치) 인건비 관련	172
	12-4) 학교운동부 지도자 비위행위 처리	173
13	학교운동부 운영경비 투명성 확보	176
14	선진형 학교운동부 체제 구축	177
15	건강하고 청렴한 학교운동부 실현	179

CONTENTS

IV. 체육 인재 육성 [개인학생선수 운영]

1	개인학생선수 업무흐름도	186
2	학기 초 업무	187
	2-1) 개인학생선수 현황 파악	187
	2-2) 연간활동계획서 수합 및 학교장 허가 내부결재	187
	2-3)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188
3	학사관리	189
	3-1) 개인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운영	189
	3-2) 학습지원(e-school) 운영 및 기초학력보장(run-up) 프로그램	193
	3-3) 정규수업 이수 의무화 및 학력증진 방안	194
	3-4) 나이스 활용한 (개인)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 관리 의무화(신규)	195
	3-5) 대회(훈련) 참가 나이스 처리 방법 안내	196
4	개인학생선수 인권 및 학교 폭력 예방교육	198
	4-1) 개인학생선수 인권교육	198
	4-2) 개인학생선수 인권보호 활동 강화	202
	4-3) 개인학생선수 성장 지원을 위한 진로·진학교육	202

V. 부록

[서식 1]	학교장 확인서(경기대회 참가 신청용)	206
[서식 2]	개인별 최저학력 확인서(경기대회 참가 신청용)	207
[서식 3]	개인(클럽) 학생선수 연간활동계획서	208
[서식 4]	체육특기자(학생선수) 누가 관리	209
[서식 5]	학교운동부 지도자 비위행위 사안 보고서	210
[서식 6]	학교장 청렴 서한문(예시)	211
[서식 7]	학교운동부 선수 상담일지	212
[서식 8]	학교운동부 지도자 근로계약서 (예시)	213
[서식 9]	학교운동부 지도자 서약서	216
[서식 10]	학교운동부 지도자 관리카드	217
[서식 11]	학교운동부 지도자 근무성적 평정표	218
[서식 12]	학교운동부 지도교사 확인대장	219

VI. 참고자료

[참고 1] 학생스포츠허 활동 안전관리 대책(학교운동부, 학생스포츠허 포함)	222
[참고 2] 학생스포츠허 활동 안전교육 자료	225
[참고 3] 「스마트 체육수업 실천을 위한」 자료 안내 사이트	234
[참고 4] 학교운동부 인권교육 활용자료	235
[참고 5] 관련 법규	236
▶ 학교체육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236
▶ 학교체육 관련 법률 및 조례, 지침 등	236
▶ 학교체육 진흥법	237
▶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242
▶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246
▶ 경기도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48
▶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포상에 관한 조례	250
▶ 경기도교육청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53
▶ 경기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255
▶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257
▶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	259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 관리 규칙	261
▶ 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67
▶ 경기도교육청 학생스포츠허활동 지원 조례	269
▶ 경기도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지원 조례	272
▶ 경기도교육청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274
▶ 경기도교육청 고등학교이하 체육교구·설비 기준	276

2025

학교체육 업무매뉴얼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I | 체육교육과정 내실화

1 성장단계별 체육교육과정 내실화

1-1 2025년 학생생존수영교육 추진 기본계획

「수영은 좋은 운동이자 취미인 동시에 생명을 구하는 기술이다」

- David Cameron -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중 위기 상황 시 자신의 생명 보호 조치 및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2019.4.29)

1 추진근거

- 교육기본법 제22조의 2(학교체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장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 교육기본법 제17조의 5(안전사고 예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교육부 고시 제2018-162 초등학교 교육과정
- 경기도교육청 학생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시행 제6166호, 2019.4.29.]
- 경기도교육청 학생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7843호, 2023.12.22.]

2 추진목적

- 자기 생명 보호 능력과 물에 대한 적응력 향상을 위한 생존수영교육
- 학생 건강 유지·증진 및 기초 체력 향상을 위한 건강수영교육
- 1학생 1스포츠 활동 실현을 위한 평생수영교육

3 추진경과

- 2014학년도 초등수영교육 시범 운영(4개 지역, 26교, 학생 3,750명 참가)
- 2015학년도 초등수영교육 운영(11개 지역, 360교, 학생 43,610명 참가)
- 2016학년도 초등수영교육 운영(21개 지역, 574교, 학생 72,225명 참가)
- 2017~2021학년도 초등수영교육 운영(31개 지역, 누적 897,809명 참가)
- 2022학년도 초등수영교육 운영(31개 지역, 1,338교, 학생 270,443명 참가)
- 2023학년도 학생수영교육 운영(31개 지역, 1,341교 학생 262,627명 참가)
- 2024학년도 학생수영교육 운영(31개 지역, 1,350교 학생 253,367명 참가)
- 2025학년도 학생수영교육 운영(31개 지역, 1,357교 학생 251,794명 참가 예정)

④ 국가별 생존수영교육 실시현황

나라별 수영교육		출처 : 교육부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 전 학년에서 필수 • 최소 25m 능숙하게 헤엄칠 수 있도록 교육 	
스웨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로 물에 빠졌을 때 헤엄쳐 탈출할 수 있는 수준을 목표로 교육 • 옷을 입은 채 일정한 거리를 수영하는 능력 테스트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학교에서 25m 자유형, 6분간 오래 수영하기 등 구체적 성취 기준 명시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5년 시운마루호 사고 이후 강조 • 2009년 <Can You Swim?> 프로젝트로 확대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9학년 때 '물에 빠진 사람 구출해 50m 헤엄쳐 나오기' 등 청소년 인명구조 자격 따기 권장 	
아이슬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수업의 1/3 이상이 수영 • 유년기부터 수영교육 강조, 매주 1시간 이상 필수 	

〈국가별 생존수영 교육내용(교육부, 2016)〉

- ▶ **(일본)** 초등학교만 봤을 때 수영장 설치율 90%이상(Matsui Goya, Sataka, 2012)이며, 1~6학년 학년에 따라 단계별 교육이 진행
- ▶ **(독일)** 기술이나 교육과정이 아닌 일상생활의 일부, 학교 수영교육의 목적은 자격증 획득을 위한 것이며, 자격증의 의미는 구조능력과 수영실기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조미혜 외, 2016)하고 각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수영교육이 이루어짐.
- ▶ **(프랑스)** 초중고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실시, 대학입학 시험에 수영이 선택과목으로 포함되어 있음. 초등수영목표는 '독립적으로 수영하기'이며, 이를 위해 우선 물에 대한 적응력 향상시키고, 졸업시까지 10초간 떠 있기, 2미터 잠수하여 물건 찾기, 15미터 이상 헤엄치기를 함.
- ▶ **(미국)** 1학년부터 10학년 까지 수영교육을 실시, 수준을 8단계로 구분하여 뺏지, 수료증을 수여 (안민석 2014, 조미혜 외 2016)
- ▶ **(영국)** 국가차원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는 'must'로 표현됨에서 알 수 있고, 수영교육을 통해 '25미터 이상 수영하기'와 '자력으로 스스로를 구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목표임. (안민석, 2014)

〈원동현(2019), 초등학교 수영실기 및 생존수영교육 효율화 방안, 국민대 일반대학원〉

- ▶ **시사점:** 선진국들은 이미 초등학교 뿐 아니라 유년기부터 학령기 전체기간 동안 수영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수영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여 성취기준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범사회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학생생존수영교육 물적, 인적 인프라 구축에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교육과정으로 반영되어 점진 확대 운영 될 수 있도록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함.

5 2024 생존수영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 (2024. 3.~12.)

〈학생 설문조사 결과〉 52,601명

설문내용	만족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이상	2023 그렇다 이상
1. 나는 수영수업이 재미있었다.		32,356(61.5%)	12,940(24.6%)	86.1%	85.8%
2. 나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헤엄을 쳐서 10m를 이동할 수 있다.		22,893(43.5%)	9,614(18.3%)	61.8%	56.4%
3. 나는 물건의 도움 없이 10초간 물에 떠 있을 수 있다.		32,702(62.2%)	3,382(6.4%)	68.6%	68.2%
4. 나는 잠수하여 수영장 바닥에 물건을 찾아올 수 있다.		30,266(57.5%)	7,870(15.0%)	72.5%	75.3%
5. 나는 수영 수업 이후에 수영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물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		31,061(59.1%)	9,863(18.7%)	77.8%	74.8%
6. 나는 이번 수영 실기수업이 생존수영을 배우는 시간으로 적당했다고 생각한다.		24,937(47.4%)	13,199(25.1%)	72.5%	63.1%
7. 생존수영을 가르쳐주신 선생님은 생존수영을 잘 가르쳐주셨다.		36,564(69.5%)	10,409(19.8%)	89.3%	87.1%
8. 나는 앞으로 생존수영을 더 배우고 싶다.		32,317(61.4%)	8,081(15.4%)	76.8%	73.9%

〈교사 설문조사 결과〉 3,501명

설문내용	만족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이상	2023 그렇다 이상
1. 생존수영 수업에 만족한다.		2,083(59.5%)	949(27.1%)	86.6%	87.6%
2. 생존수영 수업은 학생들이 수영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물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는데 효과가 있다.		2,017(57.6%)	1,029(29.4%)	87.0%	88.1%
3. 생존수영 표준교육과정을 준수하여 지도하였다.		2,650(75.7%)	693(19.8%)	95.5%	95.2%
4. 생존수영 강사는 수영교육 교수 능력이 뛰어났다.		2,430(69.4%)	844(24.1%)	93.5%	92.2%
5. 생존수영 강사는 1시간 수업 중 한 학생의 실제학습시간(ALT-PE)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2,395(68.4%)	826(23.6%)	92.0%	90.9%
6. 생존수영 강사는 수업 시 인솔교사와 충분한 협의 후 학생을 지도하였다.		2,328(66.5%)	875(25.0%)	91.5%	89.8%
7. 생존수영 수업은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		2,888(82.5%)	525(15.0%)	97.5%	97.3%
8. 실내수영장과 탈의실은 위생적이고 쾌적하였다.		2,388(68.2%)	837(23.9%)	92.1%	89.2%
9.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은 항상 실시되었다.		2,724(77.8%)	637(18.2%)	96.0%	95.8%
10. 생존수영 수업 시 수상안전요원(*수영장 직원)은 항상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2,920(83.4%)	483(13.8%)	97.2%	95.4%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 31,214명

설문내용	만족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이상	2023 그렇다 이상
1. 생존수영 수업에 만족한다.		14,216(45.5%)	11,504(36.9%)	82.4%	81.6%
2. 자녀가 생존수영 수업 이후에 수영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물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		11,324(36.3%)	12,149(38.9%)	75.2%	75.7%
3. 생존수영 수업이 위기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10,373(33.2%)	14,068(45.1%)	78.3%	77.3%
4. 생존수영 수업 시간은 실제 수영을 배우는데 충분하였다.		5,256(16.8%)	6,699(21.5%)	38.3%	38.1%
5. 수영장과 강사진은 교육 효과면에서 우수하였다.		10,395(33.3%)	13,296(42.6%)	75.9%	74.9%

● **결론 및 시사점:** 2024 학생생존수영교육 실시 결과, (학생) 흥미도는 0.3% 상승하였고, 전체적인 만족도는 3.9% 상승, 특히 학생들은 물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짐, 10m이동 성취도와 교육시간이 적당했다는 면에서 다른 항목에 비해 상승도가 높음, (교사) 전체 1.1% 상승, 수영장 전반적 위생에 대해 만족감을 보였고, 수상안전요원이 잘 갖춰져 있다고 응답함. (학부모) 만족도 0.5% 다소 상승. 강사진과 교육효과면에서 우수하였다고 응답함. <교사> <학생> <학부모> 순으로 생존수영교육 만족도가 높음.

⑥ 현장요구반영 적용사항

순	주요 개선 내용	2024	2025	비고
1	수영강습비 상한제	60,000원	60,000원	* 유지
2	실기교육 수업시수(의무)	3학년- 10차시 4학년- 6~10차시	3학년-10차시 이상 4학년-6차시 이상	* 4학년 교육과정의 자율성, 탄력성 반영 (유지)
2	1일 최대 수영교육운영 차시 유지	1일 최대 3차시까지	1일 최대 3차시까지	* 유지
3	생존수영교육 총 예산 현황	26,265,000천원	26,925,000천원	* 현장필요금액 증액
4	생존수영 교육과정	2017년 개발된 경기도표준교육과정	경기도생존수영 표준교육과정 및 교육부 생존기능중심 수영교육 매뉴얼 재구성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통합자료실 * 교육과정 재구성활용
5	수영장 확보를 위한 노력	이동식수영장 31동	이동식수영장 32동 예정	* 이전) 지자체에서 9동 지원
		경기해양안전체험관 74교 13,385명 참여	경기해양안전체험관 84교 14,888명 예정	* 추가 희망시 학교가 직접 체험관에 연락
6	강사수급 지원	수영장 자체 해결	경기도수영연맹, 체대 연계 등 지원 모색 교육지원청 공고 지원	* 지역 인력풀 확보
7	강사 1인당 강습인원	15명 기준, 학교장 자체 판단 가능	학생 15명 기준으로 초과시 분반 가능(권장)	* 예시) 3-1반 16명 강습 2개반 편성가능
8	통합학급 특수학생에 대한 현실적 반영	(통합학생) 특수교사 의견 반영 맞춤형 교육	* 필요시 통합학생 1명당 주강사, 보조강사 지원 가능 (구체화)	* 추가강사 필요의견 시 내부결재 후 추진 ※ 중증 장애학생은 교육지원청과 협의
9	생존수영 보조교사 수당	교육자원봉사비나 학부모자원봉사비 1일 20,000원 지급 가능	교육자원봉사비나 학부모자원봉사비 1일 25,000원까지 지급 가능	* 현실적 지원 모색 * 교부된 예산범위 내 * 필요시 학교자체예산
10	운영방식 공유 및 경감 노력	교육지원청 및 학교별 계약	지역우수사례 나눔 예정	* 시흥도시공사 사례 * 파주시 사례
			도시공사 위탁시범운영	* 남양주교육지원청 - 도시공사
11	학생 이동수단	수영장 셔틀버스 및 학교스쿨버스 가능	수영장 셔틀버스 및 학교스쿨버스 가능	* (조건) 구비서류 동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법령 충족
12	교원직무연수	초등교원 130명 생존역량강화연수	교육부 주관, 경기도 주관 연수 확대	* 생존수영교육 이해 * 학생 이해

순	주요 개선 내용	2024	2025	비고
13	생존수영교육 인식개선	현판 및 안내판 부착	지역별 홍보 및 인식개선 자료 배부	* 영상자료
14	기타확대방안 시범운영	중고 4개교 실시	예산확보 시 희망하는 중고등학교 확대 지원	* 학교 교육공동체의 협의 통해 결정 * 예산지원범위 내
15	계약서류 간소화 요구	교육지원청에서 일괄 처리 가능한 서류 처리	교육지원청에서 일괄 처리 가능한 서류 지속 확대	* 지역의 수영장 점검단과 협의
16	생존수영업무 지원	생존수영 행정지원단 구성 및 지원 Q&A 배부	지원단 홍보 및 확대 Q&A 보완	* 행정업무에 대한 어려움 해소
17	수의계약 범위	수영장 2,000만원 이상 단독수의계약 가능 (2023.11)	유지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4의 파항 (특수성, 학생안전우선)
18	경기도 학생수영장 우선 배정	권장	교육지원청 및 학교 수영장 우선 배정 (화성, 부천, 안양)	* 감사관 지적 개선요구 사항 * 수영장보유교-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수영수업 편성 권장 (강사비 지원함) ※ 교육지원청 계획에 반영
19	인근 수영장 도보 이용	권장	학교 인근 500m 내 수영장 도보로 이용 * 교육지원청과 협의	
20	학교 업무협의회비	생존수영관련 협의 2회까지 1인 8,000원	생존수영관련 협의 2회까지 1인 9,000원	* 학교회계지침 변경 (2024.11)
21	학교운영위원회심의 (자문)	단독 심의	주요학사일정에 포함하여 심의 가능	*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융통성

※ 현장요구반영 근거

- 2024 학생생존수영교육 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 결과보고서(2024.1.)
- 2024 학생생존수영교육 학생, 학부모, 교사 만족도 조사 결과(2024.3.~ 12.)
- 2024 도교육청 안전점검 및 현장 협의회(2024.5~11. 25회 이상)
- 2024 학생생존수영교육 지역별 담당자 협의회(2024.9.14.)
- 2024 학생생존수영교육 각 분야 전문가 협의회(2024.9.21.)
- 2024 생존수영교육 개선방안을 위한 토론회(경기도의회 공동 2024.11.29.)
- 2024 학생생존수영교육 교육지원청 담당자 최종 평가협의회(2024.12.19.)
- 2024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심의(자문) 결과(2024.12.14.)
- 2024 생존수영교육 운영실태 점검결과 협의회(감사관, 2025.1.3.)

7 추진방침

- 학교 및 교육지원청은 학생생존수영교육 기본 계획(안전 계획 포함) 수립 후 추진
- 초등 3, 4학년 의무 (※그 외 기타학년은 여건 확보 후 가능)
- 생존수영 이론교육 (2차시 이상 권장) + 실기교육 (3학년: 10차시 이상 의무, 4학년: 6차시 이상 의무로 학교교육과정 계획에 의거 자율적, 탄력적 운영)
- 이론수업은 담임(담당)교사가 할 것을 권장 (※외부업체 불가)
- 수영강습비 상한제(60,000원)를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 집행
- 학급당 참여 학생 15명 기준으로 1명 이상의 지도강사(교사) 배정 가능
 - 통합학급 학생은 특수교사의 의견반영하여 탄력적 운영 가능 (내부결재)
- 수영장평가제를 통해 선정된 수영장에서만 수영교육을 실시
- 수영교육 위탁운영시 수영강사 자격 기준 준수 [붙임8]
- 수업 시 [경기도교육청 생존수영표준교육과정] 및 [생존기능중심 수영교육 매뉴얼] 재구성하여 적용 (교육부, 2023.3.)
- 교육지원청, 학교 직기수영장은 교육지원청에서 인근학교 우선 배정
- 학교 인근 500m 내 인근 수영장은 도보로 이용(※사전 교육지원청과 협의)
- 수영교육 실시결과를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하지 않는 것을 권장함
- 예산 및 여건 확보 시 중·고 생존수영교육 확대 기회 마련
- 교육지원청 및 학교는 사업계획에 맞게 2025년도 내에 예산 집행(원단위 정산)
- 모든 계약 업무는 지방계약법 준수

8 세부추진내용

생존수영 실기교육 방법 (택1)

3학년 10차시 / 4학년 6차시 운영

01	02	03
경기해양안전체험관	이동식 수영장	지역 수영장
* 대부도에 위치한 생존수영 전용 체험관 * 3월~12월에 이용 지역별 배정일에 신청	* 학교로 찾아가는 형태 (거점형, 단독형) * 30일~40여일간 학교운동장에서 운영	* 수영장평가제를 통해 선별된 지역의 수영장을 활용함

□ 일반 운영사항

○ (운영기간) 2025년 3월 ~ 12월 중

○ (수업목표) 수중위기상황에서 생명보호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방법 익히기

- ◆ 하위목표 1. 다양한 방법으로 10m 이상 수영하기
- ◆ 하위목표 2. 10초간 '누워뜨기'로 물에 떠 있기
- ◆ 하위목표 3. 숨 참고 수영장 바닥 짚고 오기

○ (대상)

초등학교 3, 4학년 의무 실시

※ 기타학년- 학교구성원의 합의를 거쳐 예산범위 내 우선실시 후 그 외 학년 권장함

○ (교육시간)

이론교육 (2차시 이상 권장) + 실기교육 (3학년 10차시/ 4학년 6차시 이상 필수)

- 이론교육은 담임(담당)교사가 수업 권장
- 실기교육은 3학년 10차시, 4학년 6차시 이상 편성
 - ※ 예산 범위 내 실기교육 확대 가능, 1차시 40분 기준
- 교육과정 내 체육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으로 편성·운영
 - ※ **유의사항:** 이동시간, 환복, 샤워, 머리건조 시간 등을 생존수영강습시간에 포함시켜 강습비를 집행할 수 없음
- **수영강습시간은 1일 1개반 2~3차시까지 운영 가능**
 - ※ (3학년 예) 2,3,2,3/2,2,3,3/3,3,2,2/3,2,3,2/2,2,2,2 (4학년 예) 3,3/2,2,2
 - ※ 학생 개별의 체력 수준과 체력상태, 안전을 반드시 고려할 것

○ (교육내용)

경기도 생존수영교육 표준교육과정 I, II 또는 2023 생존기능중심 수영교육 매뉴얼(교육부) 활용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 통합자료실 → 체육건강과 → 찾기
- 생존수영 실기 및 이론 동영상 자료 활용
 - 에듀넷 : '생존수영 10단계', '생존수영', '응급처치법' 등
 - 학교체육진흥회 홈페이지(cspep.or.kr) → 학교체육소식 → 자료실 8번
 - EBS홈페이지(EBS 초등사이트) → 생존수영(총19강)

○ (수업운영)

- 1개 반 강습 시 15명을 기준으로 함. 15명 초과시 2개반 편성 가능
- ※ 단, 통합학급의 특수학생일 경우, 학생의 장애 정도에 따라 특수교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예외로 추가강습비 지원 가능 (예 3-1반 구성) 일반학생 26명 + 특수학생 1명- 강사 3명 지원 가능
- 수영강사와 담임(담당)교사의 팀티칭에 의한 지도
- 수영 숙달도에 따라 수준별 생존수영교육으로 진행
- 수업목표를 인지하게 하여 스스로 자신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수영교육 종료 후 만족도 조사(필수) **도교육청에서** 구글 설문 일괄 실시

○ (역할분담 예시)

구 분	역 할
담임(담당)교사	수영수업 책임, 사전 학생안전교육, 수영지도 또는 입장지도, 학생관리
수영강사	학생수영지도, 수업 중 안전관리, 탈의실 지도
보조교사 1	(남학생) 수영수업 전·후 안전지도, 남자 탈의실 및 샤워실 입장지도, 건강이상학생 돌봄
보조교사 2	(여학생) 수영수업 전·후 안전지도, 남자 탈의실 및 샤워실 입장지도, 건강이상학생 돌봄

○ (안전확보)

- **[붙임1]**「수영교육 체험학습 절차 및 안전 기본계획」준수하되 미기재된 사항은 [2025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지침] 준수 사항에 의거하여 운영
- 교육지원청 및 단위학교 수영교육 운영 계획 작성시, **[붙임1]**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하고, 안전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안전 계획 작성 가능함.
- **교육지원청은 [붙임4]‘수영교육 체험학습 자체점검표’활용하여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위탁수영장 지도·점검 실시** (지역의 수영장 평가단 운영)
- 학부모자원봉사 우선 권장, 교육자원봉사자 등 추가인솔자 적극 확보
- ※ 지역의 봉사자원을 적극 요청- 예시)지역별 의용소방대, 교육자원봉사자 등
- ※ **[2025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지침]에 의거, 이동시 학급단위로 이동할 때, 학급인원에 상관없이 인솔의 안전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담임교사 1명이 인솔 가능함.**
- 담임(담당)교사는 실기교육 당일, 1)수영장 수상안전요원 배치여부 확인(의무)
2) 실기수업시 반드시 입장지도가 원칙, **유리창이나 벽으로 학생들과 격리되어서는 안되며,**
3) 수영강사와 협력수업 권장
- ※ 단, 수영장 협소 등의 이유로 교사가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서 임장이 어려운 경우, 학생관찰이 용이한 곳 등 위급상황 시 바로 대처할 수 있는 인근에서 지도함.

※ 수상안전요원 배치 근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4조(안전·위생 기준 등) ①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 배치와** 임무, 수질 관리 및 보호 장구의 구비(具備)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23. 1. 18.>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안전·위생기준) 법 제24조에 따른 안전, 위생기준은 [별표6]과 같다. (2022.7.19.개정)

[별표6]의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하 이 목에서 "수상안전요원"이라 한다)을 감시탑에 2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다만, 모든 수영조가 교습행위만으로 이용되고 있고 교습자 중에 수상안전요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감시탑에 수상안전요원을 1명만 배치할 수 있다.

※ 수영장평가제에 수질검사 근거 『경기도교육청 학생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개정 제8조』

제8조(수영장평가제) ② 수영장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수질검사 횟수 및 결과
2. 수상안전요원의 배치 여부

○ (예산사용) ※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적정 집행

(강습비) 수영강습비 상한제 60,000원 적용(시설사용료, 강사료, 입장료 포함)

※ 통합학급 특수대상학생은 특수교사의 의견에 의해, 필요시 수영장과 협의하여 추가강사 확보 가능

(교통비) 전세버스 임차료, 지하철 요금, 수영장 버스대여료 등으로 사용

(보험료)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 여행자안심 공제사업 의무가입(교사+학생+인솔자)

(교재 및 장비) 목적에 맞는 공용교재나 자료구입 가능(단순 문구류, 간식구입 금지)

(기타운영비)

- 수상안전요원비는 1개교만 대상으로 수영장을 단독 사용 할 경우 확보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 저소득층: 개인용품(수영복 등) 1인 10만원 이내 지원
- 추가인솔자, 탈의실, 샤워실 안전지도 등 보조교사는 1일 25,000원 지급 가능
- 학교에서 생존수영 관련 협의회비 2회까지 지출 가능(1회 1인 9,000원 기준) 등.

(부족분) 학교자체 예산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운영 가능

(생존수영 교원연수비, 지원청 협의회비)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 지출

※ 지자체 대응투자 법적 근거 『경기도교육청 학생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제10조』 예산은 5:5 대응 비율 맞추어 수립 집행 및 정산함.

□ 생존수영교육 추진 주요 일정

시기 및 횟수	주요추진 내용	담당 기관
2024.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로 찾아가는 이동식수영장 계획수립 및 배정, 안내 • 경기해양안전체험관 운영계획수립 및 배정, 안내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2025. 1월~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 학생생존수영교육 추진 계획 수립 • 생존수영지원 협의 체계 구축(연구단) 위촉 • 교육지원청 수영 담당자 운영 협의 또는 연수 • 교육지원청에 수영교육 예산 재배정 	도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 교육지원청 학생생존수영교육 추진 계획 수립 • 수영장평가제 실시 후 평가결과 학교 안내 • 학교별 수영교육 예산 사용계획서 최종 검토 후 예산 교부 •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 협의체계 구축 • 학교 수영 담당자 운영 협의 또는 연수 • [붙임기] '수영교육현황' 보고 → 도교육청(자료집계, 2025. 4월까지) • 장학지도 및 안점점검 계획 작성 	교육지원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단위학교 생존수영교육 기본 계획 수립 (안전계획 포함) • 학교운영위원회 생존수영교육 심의 ※ 학교교육과정 주요학사일정 심의 시 포함하여 심의 가능 • [붙임기] '수영교육현황' → 교육지역청으로 보고(지역청 일정) • 교육과정 재구성 및 저소득층 지원 대상자 파악 등 	학교
2025. 4월~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연락망 체제 구축 수시 점검 • 이동식수영장 년 1회 이상, 지역수영장 안전 점검 • 예산집행 현황 모니터링, 중간 점검 • 초등학교원 생존수영교육 직무연수(2025.7월~8월 예정, 추후 공문) 	도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2회 [붙임4] '수영교육 체험학습 자체점검표' 활용하여 수영장 평가제 실시 (지역의 수영장 평가단을 운영) • 수영교육 관련 예산 집행 현황 중간 점검 • 이동식수영장 계약 및 안전점검 • 모니터링, 컨설팅을 위한 수영장 평가단 협의회 운영(협의회비 재배정) 	교육지원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붙임1] '수영교육 체험학습 절차 및 안전 기본계획'에 따른 사전점검 및 준비 - 사전답사(필수), 교사안전연수, 학생안전교육, 비상연락 체계구축 등 • [붙임5] '수영교육 체험학습 답사 안전점검 항목표' 활용 	학교
수영교육 종료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영교육 운영 결과 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 [붙임10] 수영교육 실시 후 평가 (설문조사-도교육청에서 일괄) • 학교회계전출금(학교교부금) 잔액 반납 (2025. 2월, 추후안내) 	학교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 지역 및 학교 상황에 맞게 일정 및 추진 내용 조정 가능

□ 위탁수영장 강습비 상한제 안내

구분	내 용	
수영강습비 상한제 (1차시 40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수에 상관없이 1개 강습반 기준 수영강습비 상한가 (60,000원) 적용 (질문) 강사 1명이 1차시(40분) 지도했을 때, 3학년 1반의 학생수 23명, 3학년 2반 학생수 25명일 경우 수영장에는 얼마의 수영강습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한 반에 강사 2명씩 배정해서 1차시에 24만원 (60,000원 * 4명)입니다. 	
	포함내역	강사료, 입장료, 시설사용료 등 수영장에 지불하는 모든 비용
	불포함내역	교통비, 보험료 등 수영장에 지불하지 않는 비용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 강습반 편성 기준은 15명임. • 잔여 예산 발생 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타학년 진행 ※ 한 학생 대상 수영교육 최소이수 시간 3학년 10차시, 4학년 6차시 이상 ※ 예산범위 내에서 10차시 이상 확대 편성도 가능.
용어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습반 : 수영강사 1명이 지도하는 반 (예1) 3학년 1반 전체 학생 대상 강사 1명 지도시 강습반과 3학년 1반은 동일한 집단임 (3학년 1반 = 1개 강습반) (예2) 3학년 1반을 2개 그룹으로 나누어 강사 2명 지도시 강습반은 2개가 됨 (3학년 1반 = 2개 강습반) 	
상한제 도입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습반 기준 수영강습비 지급을 통한 예산 편성 및 운용의 효율성 달성 ※ 학생수 기준으로 예산 편성시 학생수 변동이 잦아 학교별 예산 배정 결정에 어려움 있음 • 수영강습비 상한제 도입을 통한 수영교육비 적정성 유지 • 수영강습비 적정성 유지를 통한 수영교육 학년 확대 및 학년 내 수업시간 확대 	

□ 경기도 생존수영 교육과정 적용(재구성 활용)

○ (운영대상) 생존수영교육을 받는 경기도 내 모든 학생

○ (생존교육과정 안내)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 통합자료실 탑재

https://www.goe.go.kr/home/bbs/bbsList.do?menuId=1000000000000249&menuNit=13%2C1%2C2%2C0%2C0&searchTab=data&searchCategory=&reservYn=&bbsId=&bbsMasterId=BBSMSTR_000000000246&pageIndex=1&schKey=TITLE&schVal=%EC%83%9D%EC%A1%B4

○ (운영방향)

- 수영 영법 습득을 위한 기능 중심이 아닌 생존수영교육
- 물에 대한 두려움 극복과 적응력 향상을 위한 활동 강조
- 스스로 생명을 지키기 위한 물속에서의 호흡법 강조
- 물속 위기 상황에서 생존시간을 늘리기 위한 기능(맨몸 뜨기, 체온유지 등) 강조
- 안전한 곳을 향해 나아가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는 수업 활동의 강조
- ※ 생존수영교육은 반복학습이 중요하나, 교육과정을 수준별로 재구성하여 활용
- ※ 학생들의 학습목표 성취수준에 따라 학습주제에 대한 차시를 증감할 수 있음

생존수영 교육과정 1

경기도교육청 생존수영교육 표준교육과정 I, II

※ 생존수영교육 : 수중위기상황 시 자신의 생명 보호조치 및 타인구조 능력배양 교육

○ 표준교육과정 I (3학년) 활용 안내

- 학습 단계 준수 : 물에 적응 → 호흡하기 → 물에서 뜨기 → 체온 유지법 → 이동하기
※ 학생들의 학습목표 성취 수준에 따라 학습주제에 대한 차시를 증감할 수 있음
- 호흡법은 3차시 이후 매시간 마다 짧은 연습 기회를 학생들에게 주기를 권장함
- 수영장 여건 상 활동이 어려운 경우 활동 내용을 일부 수정할 수 있음
- 전차시에 걸쳐 헬퍼(등에 착용하여 물에 뜨는 것을 도와주는) 및 물안경 사용 최소화

○ 표준교육과정 I (3학년) 차시별 학습내용

차시	학습주제	주요활동
1차시	현장 안전교육 (수영장 안전)	① 화재대피 훈련 ② 지진대피 훈련 ③ 심폐소생술 교육 등 ※ 학교여건에 맞게 실시하되, 1차시는 반드시 현장 안전교육 실시
2차시	물에 적응하기	① 물 적시기: 발-다리-팔-얼굴-가슴 ② 입수하기: 사다리 입수, 풀사이드 앉아 입수, 물에서 걷기-뛰기 ③ 얼굴입수, 손으로 코 막고 입수하기 ④ 물속에서 호흡 오래참기
3차시	물속에서 호흡하기	① 물속에서 코로 공기 내뿜기 ② 벽 잡고 호흡하기
4차시	기구 생존뜨기	① 킥배우기 ② 페트병 뜨기 ③ 과자봉지 뜨기 ④ 돛자리 뜨기
5차시	맨몸 생존뜨기 1	① 스컬링 배우기 ② 킥보드를 이용하여 1인 배면뜨기 ③ 2인 1조 맨 몸으로 배면뜨기
6차시	맨몸 생존뜨기 2	① 킥과 스컬링으로 이동하기 ② 새우등 뜨기 ③ 다양한 뜨기 동작
7차시	잠수하기	① 킥과 스컬링으로 이동하기 ② 수영장 바닥 짚고 오기 ③ 물속에서 한 바퀴 돌기
8차시	체온 유지하기	① 구명조끼 착용하기 ② 개인 체온 유지하기 ③ 단체 체온 유지하기
9차시	이동하기	① 구명조끼 입고 배면뜨기로 이동하기 ② 구명조끼 입고 응용자세로 이동하기 ③ 물속에서 장애물 통과하기
10차시	복습 및 종합평가	① 10초간 가만히 물에 오래 떠 있기 ② 10m 이동하기(영법 상관 없음) ③ 수영장 바닥 짚고 오기

**생존수영
교육과정 2**

2023 생존기능중심 수영교육 매뉴얼(교육부)

※ 생존수영교육 : 수중위기상황 시 자신의 생명 보호조치 및 타인구조 능력배양 교육

○ 생존기능중심 수영교육 매뉴얼 구성

차시	학습주제	주요활동
1차시	현장안전교육	① 화재대피 훈련 ② 지진대피 훈련 ③ 심폐소생술 교육 ④ 수영장 안전수칙 및 기본예절 등 ※ 학교여건에 맞게 실시하되, 1차시는 반드시 현장안전교육 실시
2차시	준비운동 및 입수	① 물밖과 물속에서 스트레칭 ② 입수 후 수온에 적응
3차시	물 적응 활동(이동)	① 수중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동
4차시	물 적응 활동(호흡)	① 물속에서 다양한 호흡 연습 ② 물속에서 눈뜨기
5차시	물에서 뜨기 1	① 누워 뜨기(앞세 뜨기) ② 엎드려 뜨기(수평 뜨기)
6차시	물에서 뜨기 2	① 해파리 뜨기 ② 새우등 뜨기(쪼그려 뜨기)
7차시	물에서 체온 유지	① 혼자서 체온 유지 ② 여러명과 함께 체온 유지
8차시	영법을 활용한 이동 1	① 배영 발차기 ② 자유형 발차기 ③ 단체 체온 유지하기
9차시	영법을 활용한 이동 2	① 자유형과 배영을 번갈아 사용하여 이동 ② 잠영하기
10차시	복습 및 종합평가	① 다양한 방법으로 10m 이상 수영하기 ② 10초간 누워뜨기로 물에 떠 있기 ③ 잠수하여 바닥에 있는 물건 찾아오기

□ 2025 학교로 찾아가는 이동식수영교실 (※위탁운영 계획서 안내 예정)

- (목적) 수영장 부족 해소 및 안전하고, 밀도있는 교육으로 수영교육의 효율성 극대화
- (사업주관) 교육지원청이 위탁사업으로 23동 운영(이천: 지자체 9동 운영)
- (운영방법) 교육지원청에서 이동식수영장 위탁사업자를 계약하여 희망교에 배치
- (운영형태) 학교단독형, 지역거점형
- (사업비) 총 1,300,000천원 이동식 선정 갯수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차등 지급
예) 1동 5,000만원 내외로 계약하여 약 1개월 10차시 운영 시, 약 400명 기준 이용

○ (추진일정)

해당기관	추진내용	시기
도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로 찾아가는 이동식수영교실] 운영 계획 수립 안내 	2024.12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교는 신청서 작성 후 경기도교육청에 제출[자료집계시스템] 	2024.12.19
도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위원회 선정 후 최종선정교와 교육지원청에 공문 시행 ※ 해당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운영교 선정함. ■ 이동식 생존수영교실 운영교 알림 공문 시행 ■ 해당 교육지원청에 예산 재배정 	2025.1~2
교육지원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입찰에 의한 위탁사업자 선정 및 계약 ■ 학교, 교육지원청, 사업자 간 협의(일정, 설치장소, 운영방식 등) ■ 사전 현장 점검 	202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 수시 현장 점검, 모니터링 ■ 사업종료 후 재배정 반납(회계년도 내) 	2025.4~12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계획 수립 및 생존수영 교육과정운영 	2025.4~12
도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시 현장 점검, 컨설팅 ■ 정산 및 질 제고를 위한 정책협의회 및 만족도 수렴 	2025.4~12

〈위탁사업자 수행 범위〉

- 이동식수영장 설치(수영장, 탈의실, 샤워실, 펜스 포함) 및 철거 등
- 수질관리를 위한 정수 시설, 온도 유지를 위한 온도설비 관리
- 자격강사, 시설관리자, 안전대책 및 비상상황 응급대책 확보
- 2025 학생생존수영교육 기본 계획 준수 및 계획서 내 생존수영교육과정 운영

학교로 찾아가는 이동식 생존수영교실 예시



- 경기해양안전체험관 활용 수영교육 (※ 별도 계획서 기 안내)
 - (목적) 수영장 부족 해소 및 지역의 전문시설을 활용한 생존수영교육의 효율성 극대화
 - (사업주관)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 (운영형태) 실기교육 시간 인정(3학년 2일간, 4학년 1일간 운영)
 - (학교배정) 2024년 12월에 2025년 희망교 배정 완료, 추후에는 경기해양안전체험관에 직접 전화 연락하여 일정 문의 (032-890-5011~2)
- 2025 경기도 학생생존수영교육 연구단 및 행정지원단 운영
 - (기간) 2025년 3월 ~ 2026년 2월
 - (대상) 생존수영교육 전문가, 교원, 장학사, 주무관 등
 - (역할) 2025 생존수영교육과정 검토 및 재구조화
지역별 생존수영교육 현황 모니터링 및 컨설팅
기타 생존수영교육 홍보 및 저변확대를 위한 발전방안 연구

※ 별도 계획으로 추후 안내

9 예산현황

- 예산 편성 및 지원 예정액 (※ 5:5 대응협력사업)

○ (2025년 생존수영 교육비) 총 26,925,000천원

(단위: 천원)

기관	도교육청			지자체	2025년 총예산
	지역수영장 (학교 교부금)	이동식수영장	교원연수 및 지역 협의회비		
경기도교육청	12,850,000	1,300,000	45,000	12,730,000	26,925,000

10 행정사항

기관	기관별 역할
[학교]	1) 학교교육과정계획에 학생생존수영교육 시간 편성 및 실시 계획 수립 2) [붙임기] '수영교육현황' 제출 (교육지원청 제출일 안내)
[교육지원청]	1) [붙임기] 학교별 '수영교육현황' 취합 후, 예산 점검 및 컨설팅 • 기간: 교육지원청 자체 계획에 의거 2) 학교별 '수영교육현황' 취합 → 도교육청에 제출 (2025년 4.30일까지) • 제출방법: 엑셀파일 자료집계제출 3) 상·반기 하반기 각 1회 이상 장학지도 및 현장 안전 점검 실시 • 점검방법: 교육지원청 담당자 및 수영장평가단 적극 활용 ※ 학교별이 아니라 수영장별(이동식수영장) 장학지도 및 현장안전 점검 4) 생존수영교육 운영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5) 생존수영교육 잔액 도금고로 반납 • 대상: 생존수영교육 실시교 →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도금고)

□ 행정일정 안내

제출 공문	학교→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도교육청
[붙임기] 00초 수영교육현황	교육지원청 지정일	2025.4.30.(수)까지 자료집계제출
만족도 조사	생존수영교육 마친 후 실시 (구글 사이트 참고)	
[붙임12]외 1종 운영 결과보고서 ,정산서	교육지원청 지정일	2025.12.26.(금) 자료집계제출
학교회계전출금 잔액 반납	교육지원청 지정일	2026.2.13.(금) 이내(추후공문) 도금고로 반납

□ [도교육청] 2025 생존수영교육 만족도 조사 실시

- 주관: 도교육청
- 대상: 생존수영교육 실시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
- 2025 생존수영교육 만족도 설문조사 주소(경기도 전체)

대상	주소	QR
학생	https://forms.gle/JAhx8sua3QieYHaDA	
학부모	https://forms.gle/zQkuNeDiPEtFJnvJA	
교직원	https://forms.gle/QhEKDorpp8KtQxu79	

※ 생존수영교육 마친 후, 참가할 수 있도록 안내

⑪ 기대효과

- 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 및 적응력 향상
- 수영을 통한 학생 건강 유지·증진 및 기초 체력 향상
- 수영 기능 체득을 통한 자기 생명 보호 능력 및 타인 구조 능력 향상

1-2 2025 초등스포츠강사 지원계획

“경기교육은 기본인성과 기초역량을 겸비한 미래인재를 키우고자 한다. 기초역량에서 체육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체육을 통해 인내, 협동, 노력의 결과로 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느끼고 배우게 될 것이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학교체육활동을 장려하고 확대하겠다”

(2023.8.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피구대회 개최사 중)

“인성과 역량을 겸비한 인재가 경기교육의 목표다. 감성과 체육 역량이 겸비되지 않으면 균형 잡힌 교육이라고 볼 수 없기에 체육은 기초 역량과 기본 인성을 동시에 교육하는 핵심 교과이다”

(2024.10.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포럼 환영사 중)

I 사업 개요

① 목적

- 스포츠강사의 초등(특수)학교 체육수업 보조 및 학교스포츠클럽 지도를 통해 교사의 초등체육교육 활성화 및 일상화
- 학생들에게 즐겁고 다양한 체육활동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 및 평생체육 향유 능력 배양에 기여

② 개요

- (사업배경) 문체부의 문화예술·체육교육 활성화 사업추진계획 ('08.10.15)
- (근거) 「학교체육진흥법」 제13조 ‘스포츠강사의 배치’
- (역할)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에서 정규체육수업 보조 및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체육전문강사
- (자격)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의 체육지도자
- (채용규모) **127명** (초등학교 125명, 특수학교 2명)
- (계약) 2025.3.1 ~ 2026.2.28.(12개월), **초등학교장이 1년 단위 채용**

③ 초등(특수)스포츠강사 지원 법적 근거

□ '스포츠강사'의 정의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 2017.10.19.]

제2조(정의) 7. “스포츠강사”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에서 정규 체육수업 보조 및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체육전문강사를 말한다.

□ '스포츠강사'의 배치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 2017.10.19.]

제13조(스포츠강사의 배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육수업 흥미 제고 및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 등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7.10.19.]

제4조(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 등) ① 초등학교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에서 스포츠강사를 임용할 수 있다.

② 초등학교의 장은 스포츠강사를 1년 단위로 계약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③ 초등학교의 장은 스포츠강사를 재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강사로서의 자질 2. 복무 태도 3. 학생의 만족도

□ '체육지도자'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6호.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스포츠지도사

나. 건강운동관리사

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마. 노인스포츠지도사

④ 2023학년도 주요 변경 내용

연번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1	방학 중 연수 범위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와 관련하여 교육부, 교육청이 승인한 연수 중 학교장 승인하는 연수에 참여할 수 있음 - 연수의 범위는 교육부, 도교육청 및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한 특수분야 연수기관에 의한 연수에 한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학 중 근무 장소 이외에 서의 연수는 초등체육교육 과정에 적용가능한 직무관련 연수 중 학교장 승인하는 연수에 참여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질적으로 참여 가능한 교육부, 교육청 연수 부족 * 학교교육과정에 활용가능한 체육 수업관련 연수 기회 확대 * 수업전문성 함양 기회 제공 * 2021 교육부 초등(특수) 스포츠강사 지원 계획에 의거 * 타시도와의 형평성 고려
2	채용 계약 이후 중도 사직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장 채용 계약 이후, 스포츠강사의 중도 사직 등의 이유로 결원 발생 시 <u>사업이 종료된 것으로 보고 추가 선발하지 않음.</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장 채용 계약 이후 스포츠강사의 중도 사직 등의 이유로 결원 발생 시 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 지원을 위해 잔여 기간만 추가 선발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적인 학사일정, 학교 교육과정운영 지원 * 학생의 수업권 보장 * (영어회화강사) 동일교 4년 만기가 1년 미만 남은 경우 잔여기간만 재계약 * 타시도와의 형평성 고려

⑤ 2024학년도 주요 변경 내용

연번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1	방학 중 연수 범위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학 중 근무 장소 이외에 서의 연수는 초등체육교육 과정에 적용가능한 직무연수 중 학교장이 승인하는 연수에 참여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학 중 근무 장소 이외에 서의 연수는 초등체육교육 과정에 적용가능한 연수 중 학교장이 승인하는 연수에 참여할 수 있음 * 원격연수 가능 * 연수 시간, 기간 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교육과정에 적용가능한 범위에서 직무, 자율연수 허용 * 여름에는 도교육청 주관 연수 참가, 겨울에는 현장대면연수 개설 미비 * 초등스포츠강사의 자발적, 자율적 연찬 기회 마련
3	초등스포츠강사 인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7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7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현장의 수요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관계부서 협의를 통해 확대함
4	한 학교 근무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2년+1년 추가 가능 (지역별 상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3년+1년 추가 가능 (지역별 상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스포츠강사의 고용안정을 위함. * 학교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
5	방학 중 기타연수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름·겨울방학 동안 20일 사용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름·겨울방학 동안 22일 사용가능(2일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교육청 강사직종과의 형평성 고려
6	방학 중 기타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 시간 단위로 분절 사용 복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강사의 요청사항을 적극 반영

연번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7	근속수당	• 없음	• 경기도 내 초등(특수) 스포츠강사로 근무했던 경력 인정 → 수당 지급	* 2023 단체(임금) 협약 (1년 2만원, 22년까지)
8	가족수당	• 교육공무직에 준용함 (지급시기 불명확)	• 교육공무직에 준용 (※ 계약기간 내, 대상 가족이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시점부터 지급)	* 지급기준은 변동없으나, 지급 가능 시기 명확히 함

㉟ 2025학년도 주요 변경 내용

연번	구분	2024학년도	2025학년도	변경 사유
1	기본급	• 기타유형 임금체계	• 1유형의 임금체계	* 초등스포츠강사의 고용안정
2	근속수당	• 1년 20,000원 • 최대 22년	• 1년 40,000원 • 최대 23년	* 처우개선
3	자격확인	-	• 소지자격증 진위 검증 • 징계사실유무 확인서	* 교육부 감사 결과 반영
4	신체검사	• 잠복결핵감염검진 확인서	• 잠복결핵감염검진 확인서 • 마약중독여부검사결과 확인서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 * 초중등교육법 제22조

※ 주요 변경사항 반영 근거

- 2024 초등(특수)스포츠강사 교육지원청 담당자 협의회(2024. 3회.)
- 2024 초등(특수)스포츠강사 대표 연합회 및 노조 소통협의회(2024. 3회.)
- 2024 초등(특수)스포츠강사 도교육청 관계부서 협의회(2024. 4회.)
- 2024 초등(특수)스포츠강사 현장 모니터링 결과(2024.12.)
- 2024 전국 초등(특수)스포츠강사 근무환경 실태조사 결과(2024.10.)
- 교육부 및 전국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2024년 단체(임금) 협약서(2024.12.30.)
- 2025학년도 초등체육정책추진 공동 업무협의회(2025.1.6.)

II 세부 추진내용

1 학교 및 교육지원청의 역할

□ 초등(특수)학교 스포츠강사 선발

○ 스포츠강사 선발은 1년 단위로 계약하여 운영 (의무사항)

- 초등(특수)학교 스포츠강사 공개채용이 원칙, 인력풀에서 우선 채용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 모집 공고를 통한 공개 채용

○ 1차 서류심사표에 스포츠강사 기존경력 점수부여제 도입(필수사항)

평가 구분	평가항목	배점	
능력평가 영역 (근무 경력)	- 초등(특수)스포츠강사 실제근무 경력 (※ 15일 이상은 1월로 간주함) - 학교장 발급 근무확인서의 경력합산	15년 이상	※ 유의사항 근무 경력에 대한 점수 배점은 서류 전형 100점 만점 중 최소 25점 이 상 배점하며, 경력별 배점은 학교 자 율적으로 결정함
		12년 이상	
		9년 이상	
		8년 이상	
		3년 이상	
		경력 없음	

○ 1차 서류심사 중 스포츠강사 연수시간 가산점 부여제 도입(선택사항)

평가 구분	평가항목	배점	
도교육청 주관 하계방학 연수시간 영역 (연수 경력)	- 초등(특수)스포츠강사 실제 연수시간 경력을 가산점으로 합산 - 경기도교육청 주관 초등(특수)강사 하계연수 시간만 누계하여 인정 가 산점 부여 (2008년 ~ 누적) - (증빙)경기도교육청 주관 연수이수증 제출	100시간 이상	※ 유의사항 가산점은 연수시간에 대한 배점 100점 만점 중 6등급을 기준하여, 연수시간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 연수시간 배점은 학교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최대 50점을 기준으로 결정함
		85시간 이상	
		50시간 이상	
		25시간 이상	
		10시간 이상	
		이수시간 없음	

○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 채용공고문에 1·2차 시험 배점 기준안 공개

- 1차 서류심사시 심사위원은 최소 3명 이상(학교 내 교원으로 정함)

- 2차 면접심사시 심사위원은 최소 3명 이상(학교 내 교원, 외부위원 포함 가능)

○ 초등스포츠강사 기경력자의 경우 제출 서류 간소화

※ 이전년도 제출 서류로 대체 가능함 (이전 학교에 채용 서류 송부 요청 등)

단, 타시도 학교로 송부 요청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

○ 채용공고는 해당학교 및 해당지역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게재

□ 스포츠강사 퇴직금 운영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8조, 제11조 등을 적용하여 제도 설정
- 1년 단위 계약 종료와 함께 퇴직금 지급(2026.2월 지급)
※ 12개월 근무자에게 퇴직금 지급(2025.3.1.~2026.2.28)

□ 특수학교 스포츠강사 지원

- 학교에서 공고 시 특수학교의 근무 여건 안내
- 특수학교 스포츠강사는 초등과정 체육수업을 보조하되 학교의 여건에 따라 유치원, 중·고등과정 체육수업을 보조할 수 있음
※ 특수학교 스포츠강사는 기존 연수 외에 추가로 특수교육 관련 원격연수 과정(30시간) 또는 시·도교육청 자체 특수교육 연수시 참여하여 이수

□ 초등스포츠강사 인력풀 운영 (※ 2021년 단체교섭 사안)

- 초등(특수) 스포츠강사의 인력풀 강사 활용 계약을 통해 고용안정 지원
- 학교는 인력풀 강사에게 연락하여 자체적으로 채용절차를 진행함
※ 인력풀 명단은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운영교로 별도 제공

② 2024 교육지원청별 초등스포츠강사 배정 현황(127명)

지원청	학교 수	지원청	학교 수	지원청	학교 수
가평	1	성남	8	용인	11
고양	9	수원	13(특1포)	의정부	4
광명	3	시흥	6	이천	1
광주하남	6(특1포)	안산	8	파주	4
구리남양주	6	안성	2	평택	4
군포의왕	4	안양과천	7	포천	2
김포	4	양평	3	화성오산	7
동두천양주	4	여주	1	연천	1
부천	8	총 배정 학교수		127교(특수 2교 포함)	

③ 추진일정 (학사일정에 맞추어 학교별 채용 일정 변경가능)

일 정	업 무 내 용	주관
2024.11월	• 2025년 초등(특수)스포츠강사 배치교 선정	도교육청 → 교육지원청, 해당교
2025.1월	• 2025 초등(특수)스포츠강사 지원 계획 안내	
2025.1월~2월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공고 불필요) 인력풀 활용하여 채용절차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교육지원청은 학교에 인력풀 정보 제공 1) 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 추진 2) 근로계약 체결(학교장 ↔ 스포츠강사) 	학교장 ※ 학운위 심의 생략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공고) 인력풀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채용공고는 반드시 5일 이상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2곳 이상 공고(학교 및 교육지원청 탑재) 2) 초등(특수)스포츠강사 지원 원서 접수 3) 1차 서류 심사 및 합격자 안내 4) 2차 면접 심사 5) 최종합격자 명단 안내 6) 근로계약 체결(학교장 ↔ 스포츠강사) 	
	<합격 후, 근로계약 체결 전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 조회(학교) - 채용신체검사결과, 잠복결핵감염검진 및 마약검사 결과 - '체육지도자' 자격증 진위 확인, 징계사실 유무 확인 	
2025.2.21.(금)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초등(특수)학교 스포츠강사 채용 결과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25년 채용결과 보고양식 1부 2) 2024년 근무확인서(선발매뉴얼 양식6 참고) 1부 ※ 자료집계시스템으로 제출(첨부 파일로) ※ 기간내 미채용교는 도교육청(교육지원청)에 신속히 알림 	학교→ 도교육청
2025.3.1.(금)~ 2026.2.28.(금) (계약기간)	• 초등(특수)스포츠강사 근무	해당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특수)스포츠강사 운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임교사와 협력수업 진행 현황 모니터링 및 컨설팅(수시) - 여름·겨울방학 스포츠강사 연수 기획, 사업정산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여름·겨울방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름·겨울방학 캠프 각 1 ~ 2주 프로그램 운영 ※ 캠프는 학교 여건상 불가능한 상황시(석면공사, 신청 학생 없음 등) 학교장 재량하에 미운영 가능 	학교
2025.12월 중	• 차기년도 스포츠강사 배정교 선정 및 인력풀 구성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④ 초등(특수)스포츠강사 선발 시 유의사항

□ 스포츠강사 자격 기준

- **자격 기준** :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체육지도자’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 종전의 경기지도자 및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은 아래와 같이 변경됨

개정 전	개정 후
경기지도자 1급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경기지도자 2급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생활체육지도자 1급	건강운동관리사
생활체육지도자 2급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생활체육지도자 3급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 **응시 연령**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채용 제한(합격취소 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준용

-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등 확인 후 결격사유 발생 시

- **해당 종목단체로 통보된 비위 사실이 있는 체육지도자는 채용 제한**

※ 학교에서 발생한 체육지도자 관련 비위 사건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해당 종목단체로 비위사실 통보가 의무화 됨. (‘16.3월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 대책)

- 체육지도자 자격증 진위 검증: 매년 계약 시 검증서 발급 및 확인
- 징계사실유무 확인: 매년 계약 시 확인서 발급 및 확인

- **채용신체검사서(채용건강검진 대체 통보서)확인 후 결격사유 발생자**

- 잠복결핵감염검진 확인, 마약중독여부 결과 결격사유 발생자

- **각종 증빙서류를 위조 변조한 자**

- **(체육지도자 자격증진위 확인)** 체육지도자 연수원(홈페이지)→자격증발급/진위확인→제출
※ 자격취소 및 정지에 대한 검토 사항임.
※ 매년, 계약 시 확인서 발급 및 계약서류에 첨부
- **(징계 여부)** [붙임3]계약 전 준비서류-‘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확인서 발급 안내’참조

□ 선발 방법

- **[붙임]** ‘2025학년도 초등(특수) 스포츠강사 선발 매뉴얼’ 참고

5 초등(특수)스포츠강사 연수(예정)

- 연수주관 : 도교육청(협조: 교육지원청)
- 연수시기 : 2025년 7월~8월 중 ※여름방학 전 안내
- 연수내용 : 기본소양, 교직일반, 초등체육이론과 실기 등 **초등(특수)스포츠강사 역량 강화 및 초등체육교육 내실화 제고**를 위한 내용으로 구성
 - ※ 근태평가 90% 이상일 경우 수료
 - ※ 합당한 사유없이 연수 불참할 경우, 차기년도 채용심사에 반영 예정
- 연수계획: 초등스포츠강사의 수요조사 후 수립
 - ※ 특수스포츠강사는 국립특수교육원의 원격연수(30시간) 또는 특수교육 연수 참여 가능

6 초등(특수)스포츠강사 계약 및 운영

- 계약기관 : 해당 학교장
- 계약방법 : 스포츠강사와 해당 학교장이 직접 계약
- 계약기간 : 2025.3.1.(토) ~ 2026.2.28.(토) ※12개월
- 주요 계약내용
 - 계약금액 : 2024년 단체(임금)교섭 결과에 따름.
 - 스포츠강사와 학교장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
 - ※ 1년 단위로 종료되는 사업임
 - 수업시수
 - 기준 시수(주당 21시수) 준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준시수 변경 가능(주당 18~21시수) * 21시간을 넘을 수 없음.
 - ※ 학교에서 정한 기준시수에서, 정규체육시간으로 기준시수가 미확보될 경우, 학교스포츠클럽 지도 시간을 포함하여 기준시수를 채울 수 있음.
 - ※ 예시: A학교 주당기준시수 20시간으로 정함 (정규수업 18시간+학교스포츠클럽 2시간)
 - 주당 기준시수 이상 지도하는 경우, 학교스포츠클럽 지도시 강사료를 지급함
 - 수업 및 지도
 - 정규수업의 경우 체육수업 보조자로 담임교사 책임 하에 체육수업 협력 지도(초등스포츠강사 단독수업 불가)
 - ※ 학년 배정은 한, 두개 학년 배정을 준수, 3개 학년 이상 쪼개기 수업 배정 지양
 - ※ 정규 '체육' 과목이 없는 1, 2학년 배정 절대 금지(의무)
 - 방학 스포츠 캠프 운영
 - 여름·겨울 방학 기간을 고려하여 각 1~2주간 프로그램 운영하되, 1주 운영시 3차시 이내(1차시: 40분), 2주 운영 시 2차시 이내(1차시: 40분)로 편성하여 내실 있는 교육 추진
 - ※ 학교 여건상 운영이 어려운 상황시 (석면공사, 신청 학생 없음 등) 학교장 재량하에 미운영 가능
 - 스포츠강사의 학교 운동부 지도는 원칙적 금지
 - ※ 정규수업 및 방과후 체육활동 종료 후에는 별도의 수당지급을 전제로 예외 적용

□ 보수 지급

- 학교장이 월단위로 보수 지급
- '25년 1인당 인건비(세전) 구성 (예시: 근속수당 5년, 가족수당 배우자)

(단위: 원)

구분		금액	횟수	계	
1인 기준	기본급		2,266,000	12	27,192,000
	처우 개선비	정액급식비	150,000	12	1,800,000
		명절휴가비	925,000	2	1,850,000
		맞춤형복지비	1,000,000	1	1,000,000
		정기상여금	500,000	2	1,000,000
		가족수당(배우자)	40,000	12	개별상이
		근속수당(5년)	200,000		
	법정 부담금	국민연금	보수월액의 4.5%	12	3,703,440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3.545%		
		장기요양보 험	건강보험료의 12.81%		
		고용보험	보수월액의 0.9%		
		산재보험	보수월액의 1.00%		
합계		308,620			
퇴직금		3,276,746	1	3,276,746	
연차유급휴가수당		109,225	11	1,201,475	

※ 교육부 및 전국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2024년 단체(임금) 협약에 따른 최종 [2025학년도 경기도 교육청 초등스포츠강사 임금 지급 기준]에 따름

□ 신분 및 혜택

- 교육공무원이 아니며, 교원 신규임용을 위한 특별 우대 조치 없음
- 「초·중등학교 교원 등 임용 전 시간강사 경력」 인정 지침 등에 따라 교원으로 임용 시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
- 처우개선을 위한 정부부처 권고

❖ 교육부,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심의 결과('17.9.9.)

- 학교회계직에 준하는 처우개선과 계약기간 연장, 계약절차 간소화 등 고용안정 방안 및 초등 스포츠강사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함

❖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 라인('17.7.20.)

- 전환되지 못하는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통해 차별을 해소 필요
- 고령이나 업무 특성에 따른 제외자에 대해서도 전환자와의 불합리한 차별 해소 및 처우개선, 고용안정 방안 모색

□ 채용 계약 이후 중도 사직 관련

- 학교장 채용 계약 이후 스포츠강사의 중도 사직 등의 이유로 결원 발생 시 학교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지원을 위해 잔여 기간만 추가 선발 가능
- 학교장은 스포츠강사 중도 사직시 **사직원 및 서약서** (※ 교육공무원 인사 실무 편람 양식) 스캔본을 **교육지원청 담당 부서와 경기도교육청 체육건강과에 제출 후, 학교가 희망할 시 추가선발 가능**

⑦ 초등(특수)스포츠강사 배치학교에 대한 협조 안내

□ 초등(특수)스포츠강사 배치교 관계자 연수

- 연수시간: 2025.1.6.(월) 10:00 ~12:00 줌연수
- 연수대상 : 2025년 초등스포츠강사 배치교 교감 & 체육담당교사
- 주관 : 도교육청
- 연수내용
 - 배치학교 역할, 인건비 집행
 - 근로계약 체결 요령 및 유의사항
 - 스포츠강사 업무 범위(아래 '스포츠강사 근무 지침'참고)

□ 초등(특수)스포츠강사 배치교 협조 사항

- 수업연구 환경 마련: 체육전담실, 학년 연구실 등에 자리 배치 (책상, 컴퓨터 등 수업준비에 필요한 사무환경 마련, NEIS 업무 등)
 - ※ 교무실에 자리 배치 금지
- 초등스포츠강사는 체육수업 보조자로 체육수업을 혼자 지도하는 일이 없도록 상시 교내 장학 지도(※ 담임교사와 함께 체육수업 협력 지도)
 - ※ 특히, 스포츠강사의 근무사항 모니터링 결과 및 단독 수업이 확인되는 경우, 향후 스포츠강사 배치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방과후학교 강사 활동 관련 (※ 교육부 운영 계획에 의함)
 - 초등(특수)학교 스포츠강사는 방과후학교 활동 지도 가능
 - 방과후 강사활동시 <강사선발> 절차 외에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에 따름.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전체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도 초등스포츠강사를 포함하거나, 초등스포츠강사가 독립적인 방과후학교 강사로도 활동 가능함. (학운위 심의 필요)
- 경기도교육청 정책 중 지역연계 초등스포츠클럽, 오아시스, 365+ 체육 활동 등 체육정책 강사로 활용, 학교스포츠클럽 지원단 및 각종체육대회에 지도교사로 참가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 바람.

□ 기타 행정사항

○ 2025년 초등(특수)학교 스포츠강사 채용 결과 보고

- 1) [붙임4] 2025년 채용 결과 보고 양식 1부
- 2) [붙임5] 2024년 근무확인서 1부(근속수당 산정을 위함)

※ 자료집계시스템으로 제출(첨부 파일로) ※ 기간내 미채용교는 도교육청(교육지원청)에 신속히 알림

⑧ 기대효과

- 전문적 기능을 가진 스포츠강사의 초등(특수)학교 체육수업 보조 및 학교스포츠클럽 지도를 통해 초등체육 교육 활성화 기대
- 다양한 체육활동의 경험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기초체력 향상 및 인성체육으로 이어지는 미래인재 육성 기대

붙임1 | 2025년 초등(특수) 스포츠강사 근무 지침

□ 근무 시간

-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근로시간 준수하며, 구체적인 근로시간은 학교의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 기준 시수

- 기준 시수(주당 21시수) 준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준시수 변경 가능(주당 18~21시수)
 - ※ 정규 체육시간(3~6학년) 기준시수 미확보 시 학교스포츠클럽 지도시간을 포함하여 운영 가능
 - ※ 주당 기준시수 이상 지도하는 경우, 학교스포츠클럽 지도시 강사료를 지급함
 - ※ 천재지변 및 학교행사(참석 시) 등의 사유로 정규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당일 시수로 인정
- 수익자 부담 방과후교육 활동을 지도할 수 있음
 - ※ 방과후학교 활동 시 강사선발 절차 외에 단위학교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에 따름

□ 근무 활동 범위

- 체육수업 보조(담임교사 책임 하에 체육수업 협력 지도)
 - 우천 등 사유로 실기수업이 어려운 경우 교실수업 공동지도
 - ※ 학생의 성별, 능력별 조 편성 지도, 실시 시범 등 담임교사와 지도 방식 자율 협의
 - ※ '체육전담교사'의 수업 보조 불가
- 정규수업 외 학교스포츠클럽 지도 (기준 시수 미만 지도 시)
- 체육수업 관련 학생 안전관리, 체육교구 및 시설관리
-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업무 지원
- 체육대회 등 체육관련 행사지원
-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학교장의 복무 감독 받음
- 기타 학교체육 관련 업무지원
 - ※ 스포츠강사의 학교운동부 지도는 원칙적 금지(정규수업 및 방과후 체육활동 종료 후에는 별도의 수당 지급을 전제로 예외적으로 허용)
- 여름·겨울방학 프로그램 운영(각 1~2주)
 - ※ 학교 여건상 운영이 어려운 상황시 (석면공사, 신청 학생 없음 등) 학교장 재량하에 미운영 가능

□ 연수

- 스포츠강사는 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초등(특수) 스포츠강사 대상 연수에 필수 참여해야 함
- 2025초등(특수)스포츠강사 연수 이수자는 2026 채용가산점 부여
 - ※ 합당한 사유없이 연수 불참할 경우, 차기년도 채용심사표에 반영

□ 방학 중 근무

-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근로시간 준수가 기본원칙임(필요시 연차 사용)
- 방학 중 근무 장소 이외에서의 연수는 초등체육교육과정에 적용가능한 연수 중 학교장 승인하는 연수에 참여할 수 있음
- 방학 중 근무장소 이외의 연수를 실시할 경우, '기타 연수' 가능
 - ※ 휴일 제외하고 여름과 겨울방학 동안 총 22일 이내 '기타 연수' 가능
 - 연수시 나이스 상으로는 "기타"란에 체크하고 사유는 "방학 중 근무 장소 외에서의 연수"
 - 방학 중 근무장소 이외에서의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단위학교의 방학 중 프로그램을 한 후 사용해야 함.
 - ※ 연수 종료 후 이수증(수료증) 또는 확인서를 소속교에 제출

〈근무 장소 이외에서 연수를 허용할 경우의 기준〉

- 스포츠강사의 업무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
- 스포츠강사 활동과 관련한 실기연수, 자격증 취득 등 업무 연계성이 인정되는 경우
- 학기중에는 불가하고 방학 중에 한하여 가능
- 3개월 미만 기간으로 계약한 자에게는 허용하지 않음

※ 초등스포츠강사는 방학 중 '41조 근무지외 연수' 신청은 불가함.

□ 출장

- 초등(특수)스포츠강사 및 교육청(교육지원청) 체육교육 관련 업무 수행 또는 연수 참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출장 조치(체육지원단 활동 포함)
- ※ 출장 시 여비는 학교에서 지급

□ 연장 근로 등 수당 지급

- 근무시간 외에 스포츠강사 업무 관련 연장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지급
- ※ 아침 건강체력교실을 근무시간 외에 지도할 경우 누계 시간을 합산하여 연장근로 수당 지급

□ 휴가, 휴일

- 법정 휴가 및 휴일은 [근로기준법] 등에 따름
- 연차유급휴가 수당
 - ※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기간제 노동자가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후 계약기간 만료 시, 최대 11일분*의 미 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함(관련: 대법원판결(2021.10.14. 선고 2021다227100, 경기도교육청 노사협력과-9446(2021.12.17.)호)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개교기념일, 재량휴업일 및 단기방학을 포함한 연 4일 이내 유급휴일로 함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중 아래 사항을 준용한다.

- ① 근로시간(시작, 종료, 휴게)
- ② 휴일 및 휴가
- ③ 임금 관한 지급, 산정 및 지급 시기 관한 사항
- ④ 퇴직 관한 사항 및 퇴직급여에 따른 사항
- ⑤ 모성보호에 관련 사항
- ⑥ 보건 및 업무상 재해등 관련 사항
- ⑦ 직장내 괴롭힘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 ⑧ 표창과 징계 관한 사항
- ⑨ 기타 취업규칙에 필수적 기재사항은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을 준용하되, 교육공무직원에게만 적용되는 특이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함

붙임2 | 근로기준법(일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③ 삭제 〈2017.11.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때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2017.11.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2017.11.28., 2020.3.31.〉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2.1., 2014.1.21.>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2.1., 2014.1.21.>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2012.2.1., 2014.1.21.>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08.3., 2012.2.1.>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된다.

⑨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⑧⑨ <신설 2014.3.24.>

[시행일] 제74조제7항, 제74조제8항, 제74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신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08.3.21.]

제75조(육아 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참고 | 초등(특수)스포츠강사 운영 Q&A

초등(특수) 스포츠강사 운영 Q&A

※ 초등스포츠강사의 복무(근로시간)는 초등(특수)학교 스포츠강사 지원계획에 의거함
그 이외의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을 준용함

Q1 출산 휴가 허용 시 급여는 어떻게 지급하나요?

☞ 최초 60일은 동일하게 급여를 지급합니다.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Q2 스포츠강사 출산 휴가 시 대체 인력을 채용할 수 있나요?

☞ 네. 대체 인력을 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교교육과정의 정상운영을 우선으로 하며, 스포츠강사의 권리를 잘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입니다.

Q3 학교장재량휴업일 복무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 학교장재량휴업일은 4일에 한하여 유급 적용 가능합니다.
복무는 기타로 처리하고 사유는 '학교장재량휴업일 1일차'로 기재합니다.

Q4 스포츠강사는 겸업이 가능한가요?

☞ 초등스포츠강사의 경우 경기도교육청의 초등(특수)학교 스포츠강사 지원 계획에 근거하여 운영합니다. 그 이외 내용은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56조(겸업금지 및 허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교육공무직원의 경우 겸업을 하고자 할 때 운영부서의 장(학교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고, 겸하고자 하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간, 업무내용과 성질 등을 고려할 때 본래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교육기관 특성상 부적절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겸업을 허가하지 않거나 허가를 취소합니다.

Q5 연차유급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 초등스포츠강사의 복무는 초등(특수)학교 스포츠강사 지원계획 이외의 내용은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을 준용합니다.
- ☞ 부여된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결근으로 간주하여 해당일수(해당 주의 주휴일 포함)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공제합니다. 수당 항목 중 기본급과 정액급식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맞춤형복지비는 통상임금 항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주 40시간 근로가 기준으로 통상임금은 [기본급+정액급식비+정기상여금(월환산액)]으로 산정합니다.
연차수당=(통상임금)÷209시간×8시간×미사용연차일수(11일)

Q6 초등스포츠강사는 육아시간을 적용 가능한가요?

- ☞ 초등스포츠강사는 육아시간이 적용되지 않고,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학교는 단축 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해당 근로자가 별도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청구하여 지급 받습니다.
-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 근로자에 대해 적용 의무가 있는 사항으로 2023.3.1. 신규채용자의 경우에는 2023.9.1.이후 사용 가능합니다.

〈스포츠강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간과 관련하여 안내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안내하고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내용입니다.

정의, 지급대상, 지급액, 신청시기, 신청방법, 관련서식,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에 대한 내용이 잘 안내되어 있습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3Info.do>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사용 중 급여 지급(일시적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

1. 단축 후 근로시간에 따른 비례 지급
: 기본급, 직무관련 수당, 정액급식비, 근속수당
2. 단축 전 근로시간에 따른 전액 지급(지급요건 충족 시)
: 가족수당, 맞춤형복지비, 정기상여금, 명절휴가비
※ 2018.8.31.이전 채용자로 처우개선수당 전액을 받는 경우(정액급식비 예시)
6시간 → 5시간(1시간 단축) : 140,000 × 25/30

* 가족돌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 경우

1. 퇴직금 산정시
 - 평균임금: 단축기간 직전 3개월로 산정
 - 통상임금: 단축된 시간으로 산정
2. 연차수당 산정 시
 -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므로 단축된 시간으로 산정

Q7 강사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져 8주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병가는 어떻게 운영하는지요?

- 제66조(병가)** ① 운영부서의 장은 교육공무직원이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가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따라 교육공무직원은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연속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병가 누계가 10일을 초과할 경우에도 운영부서장에게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병가의 **연간 총일수는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병가기간 중 휴무일과 공휴일은 총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병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 산정한다.
- ④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연간 30일까지는 유급으로 한다.
- ⑤ 제1항에 의한 병가가 연간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의 주휴일은 무급으로 한다.
- ⑥ 1년 미만으로 계약한 근로자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5항을 적용할 때에는 1년을 기준으로 계약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한다(소수점 이하 절사). 단, 3개월 이하로 계약한 경우는 병가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Q8 배우자가 출산이 임박하여 당일에 학교에 출근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근무를 처리해야 하는가요?

- ☞ 당일 근무시간 내에 배우자가 출산을 할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쓰도록 안내를 합니다.

Q9 배우자 유급휴가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 ☞ 모성보호와 일가저어 양립 지원 업무 편람에 의하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을 부여하며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 소득 보장의 경우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되지 않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전액 사용자(학교)가 지급합니다. 따라서 임금공제 없이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Q10 (교육지원청 해당) 초등스포츠강사 재배정 예산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 ☞ 초등스포츠강사 인건비는 도교육청에서 국고와 자체 예산을 하나의 예산 카드에 넣어서 재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청에서 예산을 연결하실 때는 국고로 맵핑을 하셔서 학교로 교부하시면 됩니다. 12월 교육지원청에 재배정예산이 없도록 무조건 전액 학교에 교부합니다.

Q11

**초등스포츠강사 인건비 중 기관부담금이 인상되어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 ☞ 기관 부담금의 경우 교부해드린 예산에서 다른 항목의 예산이 남아있으면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후 부족하다면 교육지원청에 문의합니다. 이후엔 학교자체예산으로 부담합니다.

Q12

초등(특수) 스포츠강사 인건비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 ☞ (도교육청→교육지원청 재배정 금액) 교육지원청은 매년 12월에 교육지원청 잔여 인건비를 재배정 반납합니다. (* 반납 시기를 놓쳐서 차기년도로 넘어가면 불용 처리를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반납이 불가하게 됩니다.)
- ☞ (교육지원청→학교 교부 금액) 학교는 1월에 2월에 지출할 금액을 산정하여 1월 중으로 정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해연도 예산 최종 정산을 위한 운영위원회 추경 심의 이전에 스포츠강사의 인건비 또한 정산 작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세요.
- ☞ (학교교부금 잔액 반납) 학교회계전출금 잔액에 대해 도금고로 반납기한은 별도 공지합니다.
- ☞ (반납 절차) 학교 →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 학교에서 도금고로 직접 반납하지 않음)

Q13

3월 1일자로 계약을 하지 않은 강사도 퇴직금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 ☞ 퇴직금은 1년(365일) 계약자에 한하여 지급가능합니다.
- ☞ 3.1.자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강사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간혹 3월 2일로 계약 된 경우, 3월 1일이 공휴일임을 감안하여 1년 계약으로 간주합니다.

Q14

초등스포츠강사의 방학 중 복무는 어떻게 되나요?

- ☞ 초등스포츠강사의 경우 학교의 다른 계약직 근로자와는 달리 담당하는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휴일을 제외하고 **연간 22일 이내의 방학 중 근무장소 이외에서의 '기타 연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 사용시 나이스 상으로는 '기타' 란에 체크하고, 사유는 '방학 중 근무 장소 외에서의 연수'로 기재합니다.
- ☞ 직무와 연관된 연수는 자율연수든, 온라인 연수 등 허용되며, 연수 종료 후 이수증 또는 확인서를 소속교에 제출합니다.

Q15

초등스포츠강사의 중도 사직 시, 학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중도 사직시 학교장은 1) 사직원 및 서약서 (※ 교육공무원 인사 실무 편람 양식) 스캔본을 교육지원청 담당 부서(체육담당)와 경기도교육청 체육건강과에 제출합니다. 2) 이후, 학교가 희망할 시 학교교육과정의 정상운영을 위해 계약 잔여기간동안 추가선발 가능합니다.

1-3 2025년 지역연계 초등스포츠클럽 지원 계획

① 운영개요

- 비전 누구나 차별없이 스포츠를 즐기는 행복한 마을
- 목적 초등스포츠클럽의 활성화로 **평생운동 생활습관형성** 및 **건강체력 향상**
- 방침 **지역 연계 초등스포츠클럽 운영**
- 추진 경과
 - 경기도교육청-경기도청-경기도체육회 TF 운영, 12차 협의(2018.4.12.)
 - 경기도교육청-경기도청-경기도체육회 업무협약 체결(2018.12.26.)
 - 2020년(29시군), 2021(30시·군), **2022~2024(31시·군) 참여**
- 예산 편성
 - **지자체와 5:5 대응 총 28억**(도교육청 14억, 도청 7억, 31개 시·군 7억)
- 운영내용
 - (대상) **초등학교 4~6학년**
 - (기간) 2025. 3월~12월
 - (운영형태1) **학교중심형** <아침형(오아시스), 방과후형>
 - (운영형태2) **지역거점형** <시군체육회 주관 운영>
 - (운영횟수) 주당 1~2시간, 연간 30시간
 - (종목) **키즈런, 에어로빅, 배드민턴, 탁구, 농구, 축구 등 다양한 스포츠**
 - (장소) 학교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등), 인근 체육시설 활용
 - (역할) **경기도교육청/도청:** 사업정책기획 / 예산관련 업무 등
도체육회: 사업총괄운영 및 현장모니터링, 평가회 등
시·군 체육회: 강사계약, 강사건강검진 결과, 클럽개설 및 관리 등
학교: 장소 제공, 학생모집 및 홍보, 강사 성범죄 조회 등
 - (협조) 경기체육정책 추진 방향에 의거, 모든 클럽은 준비활동으로 키즈런 (스피드 리더) 실시, 기지개 체조 적극 활용→체육회 담당자에게 영상 제출
 - (보험) 학교시설 이용 학생: 학교안전공제회 확인
 지역시설 이용 학생: 스포츠안전보험 가입

② 2025 현장 요구 반영 사항

순	주요 개선 내용	2024	2025	비고
1	유형축소	학교중심형 3개 (아침형, 방과후형, 창체형)	학교중심형 2개 (아침형, 방과후형)	잘못된 운영사례 빈번 본질에 충실
2	기본운영비	20만원	50만원	현장의 필요성 반영
3	대회 참가시 수업시간 인정	미인정	2회 4시간까지 인정 (1회당 2시간)	교내 교사일 경우 학교의 초과근무수당과 본 사업의 강사비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음.
4	참여대상 조건부 확대	4~6학년	소규모학교&비경쟁형 종목에 한하여 1~3학년 신청 가능	* 소규모학교기준(60명 이하) 제시된 2가지 조건을 만족해야함.
5	1차시 인정 시간 통일	창체동아리형 40분 아침, 방과후형 50분 지역거점형 50분	아침, 방과후형 40분 지역거점형 40분	강사비 증액 불가에 따른 조정
6	예산변경승인	도청에 승인	100만원 이하는 시군 자체 내부결재로 승인	행정 간소화
7	홍보전략	활용도 낮은 홈페이지 문제점 대두	1) 홈페이지 정비 2) SNS나 쇼츠를 활용한 홍보전략 강화 모색 3) 학교별 배너제작 필수	1) 경기체육활성화 지원단 연계 운영 2) 클럽운영비 편성
8	클럽 개설 기준 학생수	10명 이상	10명 이상	<유지> * 소규모 학교는 10명 미만 일부 허용
9	1회 운영 가능 차수	2차시까지 블록수업 가능	2차시까지 블록수업 가능	<유지> * 아침형은 1차시만 운영 가능

※ 현장요구반영 근거

- 2024 초등스포츠클럽 유관기관 담당자 협의회(2024. 8회.)
- 2024 초등스포츠클럽 평가회 및 협의회(2024.12.13.)
- 2024 초등스포츠클럽 학생, 학부모, 교사 만족도 조사 결과(2024.8월.~9월.)
- 2024 초등스포츠클럽 중간 결과보고서(경기도체육회, 2024.8월.)

I 근거

- 「학교체육진흥법」 제3조(학교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제4조(기본 시책의 수립 등), 제5조(협조), 제10조(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제18조(지역사회와 협력)
- 도민의 건강한 삶과 경기체육발전을 위한 협약
 - ※ 경기도교육청-경기도청-도체육회 업무협약,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교육과-12267, 2018.11.9.

II 배경

-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에 있어 학생선택권 보장 요구 증대
- 초등학생 스포츠클럽 지원 확대로 스포츠 교육공동체 구축
- 스포츠를 통한 건강체력증진 및 바른 인성교육 실현에 대한 사회적 요구

III 목적

- 초등학생 대상 다양한 스포츠클럽 운영으로 평생 운동 습관 형성
- 지역의 우수한 인적자원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스포츠 교육공동체 구축
- 스포츠 가치로 인성함양을 통한 건강한 학생, 행복한 학교 실현

IV 방침

- (시스템)** 31개 시·군 상황 맞춤형 스포츠클럽 운영시스템 구축
시·군체육회에 초등스포츠클럽 운영위원회 조직
- (형태)** 운영 장소에 따라 1) 학교중심형과 2) 지역거점형으로 구분
- (안전)** 학교중심형은 학교안전공제회, 지역거점형은 스포츠안전보험
- (내실화)** 초등스포츠클럽 지원단 및 밴드를 통한 지원
- (학교)** 체육시설 무료개방(방과후클럽형), 학생 및 학부모 대상 홍보

V 세부 추진 계획

① 운영 개요

- 대상: 31개 시·군 초등학교 4~6학년
- 장소: 학교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등) 및 인근 체육시설 활용
- 기간: 2025년 3월 ~ 12월
- 운영방법: 학교중심형(학교시설 이용), 지역거점형(지역시설 이용)

□ 운영형태

구분	운영 형태	운영 방법	시간	강사	대상 학년
학교 중심형	아침형	- [교내] 아침 스포츠클럽(오아시스) ** 1회 1차시만(40분) 운영함.	30시간	교사, 외부 강사	4~6
	방과후형	- [교내] 방과후 스포츠클럽	30시간		4~6
지역 거점형	지역거점클럽	방과후 지역시설 이용 초등스포츠클럽 ※ 지역거점형은 시·군체육회와 협의후 안내	30시간	외부 강사	4~6

□ 클럽 개설 기준

- 참여 인원 10명 이상
- 소규모 학교의 경우 2~3개 학교를 연합하여 학교중심형 운영 가능
- 소규모 학교이면서, 비경쟁 종목에 한하여 저학년 포함하여 운영 가능

* 소규모학교: 전교생이 60명 이하인 학교

□ 운영가능 종목

- 지역에서 운영 가능한 생활스포츠와 연계될 수 있는 종목 권장
- 전국체육대회, 동계체육대회 관련 종목 및 그와 관련된 뉴스포츠

예시) 키즈런, 육상, 축구, 배구, 핸드볼 야구소프트볼, 농구, 하키, 체조, 정구, 배드민턴, 테니스, 탁구, 레슬링, 펜싱, 럭비, 양궁, 사격, 롤러, 씨름, 카누, 역도, 자전거, 볼링, 조정, 승마, 방송댄스 세팍타크로, 에어로빅 힙합, 궁도, 스쿼시, 빙상, 아이스하키, 컬링, 스키, 뉴스포츠 등

□ 비경쟁 종목

예시) 체조(리듬체조 등) 종목, 에어로빅힙합 종목(k-pop댄스 등), 요가, 필라테스, 줄넘기, 치어리딩, 국학기공 등

② 추진 절차

시기	세부 내용
2024.11월	- (도교육청, 도청, 도체육회) 2025 사업평가 및 차기년도 계획 협의
2024.12월	- (도교육청) 2025 지역 연계 초등스포츠클럽 운영 계획 안내 - (교육지원청) 지역별 운영계획 안내, 종목선정, 학교선정 ※ 지역별 종목선정과 학교선정과정에서 체육회와 반드시 협의 - (학교) 지역 연계 초등스포츠클럽 신청(아침형, 방과후형) ※ 체육관 등 장소 확보
2025.1월	- (시·군체육회) 클럽 운영 준비(강사계약, 시설 확보 등), 매니저 채용 - (시·군체육회) 지역별 초등스포츠클럽 세부 운영 계획 수립 및 예산 신청
2025.2월	- (도교육청/도청/도체육회) 예산 배부 - (시·군체육회) 학교중심형 클럽 확정, 강사 채용 및 계약 등 제반사항 준비, 지역거점형 보험 가입, 클럽 홍보
2025.3월	- (학교) 클럽 참여학생 모집, 참여학생에게 일정 안내 - (시·군체육회) 클럽 지도강사 매칭 및 학교와 일정 조율
2025.4월	- (도교육청, 도청, 도체육회) 2025 지역연계 초등스포츠클럽 설명회 및 회계 교육 - (도체육회, 시군체육회) 연중 클럽운영 전 사전 지도자 연수 실시
2025.3월~12월	- (시·군체육회) 사업 운영
2025.12월	- (시·군체육회) 정산 및 결과 보고

③ 기관별 역할

경기도 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추진 계획 수립 • 각종 협의회 시 학교 관리자 연수 및 홍보 • 클럽 운영 총괄 운영 관리
경기도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수립, 예산변경 승인, 예산사용 모니터링
경기도 체육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설명회 개최 • 홈페이지 운영(https://www.ggsportsclub.or.kr/user/main.do) • 강사 인력풀 지원, 운영 모니터링 • 예산 시군별 배분 및 정산, 클럽 운영 관리 지원 • 운영 성과 평가 및 보고
교육지원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와 시군체육회간 소통 및 협력 지원 • 학교대상 정책설명회 및 홍보(지구장학협의회 등 활용)
시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확보 및 시/군체육회와 협력 체제 구축 • 100만원 이하 시군청 자체 예산 변경 승인 • 시설관리공단 등 체육시설 활용에 대한 행정적 지원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스포츠클럽 참여 여부 결정(학교 구성원 협의) • 본교 학생들의 방과후 클럽형 운영 장소 확보 • 프로그램 참여 신청서 배부 및 취합(2025.3월) • 참가 학생 학교장 내부결재(학교안전공제회 보상 가능) • 배정된 강사에 대해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희
시·군 체육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스포츠클럽 세부 운영 계획 수립 • 학교에서 신청한 초등스포츠클럽 개설 • 강사 계약 (강사채용 신체검사 서류에 잠복 결핵 결과 반드시 포함) • 강사 관리, 홈페이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사 역할: 수업, 출석 체크, 학생 관리, 안전 지도 • 강사 인건비 지급 • 스포츠클럽 운영위원회 조직 및 운영 권장 (기존위원회에 통합 운영 가능)

▷ **시·군체육회 매니저 역할** : 클럽 강사 계약, 신청서 접수, 학교와 소통, 초등스포츠클럽 계획 수립, 지역거점형 학생 보험가입, 홈페이지 관리 등 초등스포츠클럽 관련 제반 업무

④ 세부운영 방법

가. 학교에서 클럽 운영신청서 제출 시 참고사항

- ① 1) 아침형 2) 방과후형 중 신청 여부 결정
 ※ 아침, 방과후 스포츠클럽형은 강사 단독수업 가능, 1회에 1~2시간 편성 가능
- ② 교내 교사가 방과후 클럽 수업시 강사 수당 지급
 (하나의 종목을 연 30시간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함)
- ③ 신청서 제출 시 시간, 장소, 담당자 등을 입력하여 제출 [붙임2]
- ④ 학교에서 희망종목을 신청했으나, 강사가 부족할 경우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⑤ 초등스포츠클럽 운영이 확정되면, 2025. 3월에 방과후 클럽 참가 학생 모집 예정
- ⑥ 아침, 방과후 스포츠클럽형 운영교로 확정 시 2025. 4월부터 운영장소 확보 필수
 - 방과후학교 수업 장소와 겹치지 않도록 유의, 실내 종목의 경우 실내 공간 확보 필요
- ⑦ 지역 연계 초등스포츠클럽은 학교스포츠클럽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등록 가능

나. 초등스포츠클럽 운영교 선정 방법

- ① 종목선정과 운영교 선정은 **교육지원청과 시·군체육회가 반드시 협의하여 결정**
- ② 지역별 배정된 클럽수보다 신청교가 많을 경우 “외부강사” 요청 학교로 우선 배정
- ③ 한 학교에 집중되어 운영되지 않도록 선정, 고른 배정 원칙
- ④ 전년도 지역 학교스포츠클럽대회에 출전한 지도강사의 클럽

다. 교육지원청 및 학교 협조 사항

- 교육지원청 학교스포츠클럽 대회(축제) 운영시 적극 참가 할 수 있도록 함.
- 학교 행사시 수업취소가 생길 경우 반드시 강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 초등스포츠클럽 수업 시 학교 체육물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바람
- 2025년 교육장(감)배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종목에 학급대항 ‘키즈런’ 추가 예정
- 경기체육정책 추진 방향에 의거, 교내강사가 운영하는 모든 클럽은 준비활동으로 키즈런(스피드 리더) 실시
- 준비운동 시 경기도교육청 ‘기지개 체조’ 적극 활용
 ※ 2025 체육관련 교육청 지원 예산 또는 학교 예산으로 키즈런 교구 1개 이상 구입 권장
 ※ 체육회 담당자와 협의하여 ‘초등스포츠클럽 운영비’도 지출 가능

라. 운영사례 (예시)

◆ **사례 1)** 행복초등학교는 매주 수요일 방과 후에 5~6학년을 대상으로 에어로빅, 농구 2개의 클럽을 개설하여 희망하는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함.

- 방법: 매주 수요일 14:50~16:20 시체육회에서 강사를 지원 받아 연 30시간 운영
- 운영 장소: 다목적실(에어로빅), 체육관(농구) 운영

◆ **사례 2)** 경기초등학교는 매주 화, 목요일 아침에 5~6학년 학교대표 축구 동아리를 개설하여 교육장배 학교스포츠클럽 축구대회를 준비함

- 방법: 매주 화, 목요일 8:10~8:50 교내 교사가 연 30시간 운영
- 운영 장소: 운동장

5 초등스포츠클럽 운영 내실화 지원

가. 역할: 초등스포츠클럽 홈페이지 sns 관리 및 유튜브 홍보

나. 지원단 구성: 추후 경기체육 활성화 지원단과 연계하여 구성 예정

다. 지역 연계 초등스포츠클럽 홈페이지 운영 <https://www.ggsportsclub.or.kr/>

6 클럽 운영을 위한 각종 물품 지원

가. 아침, 방과후형 운영 물품

- 소모품은 체육회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기본물품은 지도강사가 준비
- 개인운동의 경우 학생이 준비(배드민턴 라켓, 탁구 라켓 등)

나. 학교는 시군체육회에서 요청하는 경우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보유하고 있는 자료 지원 협조 (예) 축구공, 배구공)

7 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

가.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클럽: 학교안전공제회 확인(※ 내부 결재 필요)

나. 지역시설을 이용하는 클럽: 시·군체육회에서 선택하여 일괄보험 가입함

8 강사 계약

가. 교내교사가 강사로 참여하는 경우: 관련 종목을 30시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교사(해당 종목 동호회 활동, 연수 이수자 등)

- 체육회에서 강사비 지급(※ 시간당 4만원/1회 2시간까지 수업 가능)

나. 종목단체(뉴스포츠 협회 포함) 추천을 받은 강사의 경우 시·군체육회 상황에 따라 채용공고 절차 없이 계약 가능

다. 강사 자격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스포츠지도사), 제9조3(장애인스포츠지도사), 제9조4(유소년스포츠지도사)에 따른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다음 목에 해당하는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 초등학교 교사, 중등학교 체육 과목 정교사(2급 이상) 자격증 보유자
- 종목별 협회에서 운영하는 지도자 양성과정을 마치고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스포츠 관련 민간 자격증을 보유한 자로 해당 종목 지도자 가능한 사람(뉴스포츠 등)
- 종목별 협회 소속 클럽 코치 및 감독 경험이 3년 이상으로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해당 종목 선수 출신으로 실적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사람

VI 안전 대책

1 도교육청

가. 참가학교 교사에게 안전연수 자료 배포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연계 ‘아동의 권리를 지키는 스포츠원칙’ 자료 활용

나. 교육지원청, 도체육회, 지자체, 단위학교와 지속적인 연계로 안전망 구축

2 교육지원청: 초등스포츠클럽 참가 학생 안전 관련 협력 지원

3 단위 학교

가. 참가 학생 대상 안전 교육(도교육청에서 배포된 자료 활용)

나. 사안 발생 시 즉시 연락 및 조치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제 구축

다. 지역거점형클럽 참가 학생은 학부모 동행 등 안전대책 마련

4 지자체(시·군 체육회)

- 강사 대상 안전교육 실시(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강조)
- 사안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지원 체제 구축(병원, 119 등)
- 지역거점형 클럽 사안 발생 시 보고 절차
 (강사가 학부모 및 체육회로 보고) → (체육회에서 학교로 보고) →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보고)
 → (교육지원청에서 도교육청으로 보고)

Ⅶ 운영 평가

① 프로그램 운영 평가

대상	방법	평가 내용
학생	홈페이지 활용(설문), 설문	- 강사 만족도, 수업 내용, 지속가능한 연계
학부모	홈페이지 활용(설문), 설문	- 강사 만족도, 수업 내용
강사	설문, 면담	- 프로그램 운영 환경, 여건 등

② 학교 및 지역 공공시설 활용 평가

대상	방법	평가 내용
학교	면담	- 학교장 면담, 시설 개방 관련 평가
시체육회	면담	- 지역 시설 활용에 대한 담당자, 지도교사 면담

Ⅷ 기대 효과

- 학생운동 습관 형성 및 스포츠 참여 촉진으로 평생체육 기반 확대
- 스포츠클럽 참여로 학생의 협력적 역량, 자신감, 공동체 의식 함양
- 지역의 우수 자원을 활용한 스포츠 참여 확대로 학생 스포츠 복지 실현

Ⅸ 행정 사항

※ 교육지원청은 공문시행전 시군체육회와 외부강사 운영기능종목 선정협의를 반드시 진행

기관 항목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관내초등학교	학교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 시·군체육회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도교육청 체육회, 교육지원청, 학교
날짜/ 기한	'24.12.18 (수)	교육지원청 계획에 따름	교육지원청 계획에 따름	교육지원청 계획에 따름	'24.12.31 (화)까지	2025.1.6.(월)
역할	운영계획, 신청양식 안내	* 관내 초등학교에 공문 시행 (외부강사운영 가능종목 체육회와 협의)	* (학교)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취합 및 학교 선정 협의 진행	* 선정결과 보고	* 선정결과 알림
관련 서류	[붙임1] 계획서	[붙임1] 계획서	[붙임2] 신청서	-	[붙임2] 선정 결과	[붙임2] 최종선정 결과
제출 방법	공문시행	공문시행	교육지원청 계획에 따름	-	자료집계 시스템	공문시행
수신처	* 지원청 * 도체육회 * 도청	관내 초등학교	교육지원청 초등체육 담당부서	-	* 도교육청 체육건강과	* 경기도체육회 * 교육지원청 * 초등학교

〈양식 1〉 2025. 3월 학생모집 시 활용(학교보관)

2025 초등스포츠클럽 참가 학생서약서 및 보호자동의서

학교	OO초등학교	학년반	()학년 ()반	이름	
----	--------	-----	------------	----	--

〈학생 서약서〉

본인은,

1. 방과후 스포츠클럽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것이며, 이 과정이 본인의 건강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방과후 스포츠클럽 참여시 바른 태도와 마음으로 수업을 하고, 안전하게 행동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참여학생 이름 : (인)

〈보호자 동의서〉

본인은,

1. 자녀가 방과후 스포츠클럽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자녀가 방과후 스포츠클럽 참여 기간 중 가정에서도 학생안전을 가정에서 지도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보호자 이름: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위탁·제공 동의서

동의자	기관명	OO초등학교
	성명	학생 홍길동, 학부모 홍00
수집·이용 목적	지역 연계 초등스포츠클럽 운영 참가	
수집 항목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보유 및 이용기간	초등스포츠클럽 운영이 종료되는 당해년도까지 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수집·동의 거부권리	초등스포츠클럽의 운영의 각종 정보 안내를 위한 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정보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온라인 사이트 등록 및 각종 안내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취급 위탁	초등스포츠클럽 운영을 위하여 소속지역의 시군체육회에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상기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이므로 초등스포츠클럽에 참여하고자 이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2025년 월 일		
학생명:	(서명 또는 인),	학부모명: (서명 또는 인)

OO체육회장 귀하

☞ 개인정보동의서는 학교에서 취합하여 보관

〈양식 2〉 가정통신문 (예시) ☞ 2025.3월 학생 모집 시 활용(학교보관)

지역 연계 초등스포츠클럽 참가 신청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쌀쌀한 겨울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만드는 계절 12월입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지역 연계(마을과 함께하는) 초등스포츠클럽이란?

- 학생들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과 평생스포츠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임.
- 아침 일과전, 방과후에 (00시/)체육회에서 스포츠클럽을 개설하여 운영함.
- 초등학생의 다양한 수요에 부합되는 스포츠클럽 지원으로 평생 운동 습관 형성
- 지역과 함께하는 다양한 스포츠클럽 참가로 건강한 학교문화 조성

▷ 초등스포츠클럽 운영 안내

-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학교중심형 클럽과 지역시설을 이용하는 지역거점형 클럽이 있음
- 참가비는 모두 무료임
- 대상 : 4~6학년
- 운영 기간 및 운영 시간: 2025.4.1.~2025.11.30.(연 30시간)[프로그램 예시 참조]

▷ 신청서 제출

- 서약서 및 동의서, 개인정보 동의서, 초등스포츠클럽 참가 신청서
- 0월 00일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선착순)

▷ 00초 초등스포츠클럽(예시)

(학교별 해당학교에서 신청한 방과후 클럽형과 해당 지역거점형 클럽을 입력해서 안내 바람.)

순	시/군	구분	종목명	운영 요일	운영 시간	장소	모집인원
1	00시	지역거점형	배드민턴	수요일	14:30~15:30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15명
2	00시	지역거점형	볼링	목요일	15:00~16:00	공공체육시설	15명
3	00시	학교중심형	농구	수요일	08:00~08:50	학교체육관	15명
4	00시	학교중심형	탁구	금요일	14:30~16:30	학교 탁구장(5층)	15명

----- 자르는 선 -----

〈초등스포츠클럽 참가 신청서〉

학교명			학년 반	()학년 ()반	
학생	이름	(인)		이름	(인)
	휴대폰			휴대폰	
클럽 참가 희망 종목					

<양식3> 2025. 3월 학생모집 후 → (최종명단 체육회에 제출)

2025 초등스포츠클럽 참가 학생 명단

00초등학교

▶ 학교중심형(탁구, 매주 수요일 15:00~16:00, 00초등학교 탁구실)

순	구분	학교명	학생명	학년 반	신청 종목	전화번호(학부모)
1	학교중심형	00초	000	5학년 1반	탁구	010-0000-0000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지역거점형(볼링, 매주 목요일 15:00~16:00, 00시체육센터 볼링장)

순	구분	학교명	학생명	학년 반	신청 종목	전화번호(학부모)
1	지역거점형	00초	000	5학년 1반	볼링	010-0000-0000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2025 초등스포츠클럽 운영 현황

연번	시군	2025년 배정 클럽 수		
		학교중심형클럽수	거점클럽수	계
	계	1,306	34	1,340
1	수원시	90	-	90
2	용인시	99	1	100
3	고양시	85		85
5	화성시	80		80
4	성남시	33	-	33
6	부천시	80		80
7	남양주시	65		65
8	안산시	57	1	58
9	평택시	60	-	60
10	안양시	72	-	72
11	시흥시	50		50
13	파주시	72		72
12	김포시	39		39
14	의정부시	18	-	18
15	광주시	35	10	45
17	하남시	22	3	25
16	광명시	44	-	44
18	군포시	39	2	41
20	양주시	25		25
19	오산시	25		25
21	이천시	35		35
23	안성시	22	2	24
22	구리시	23	9	32
24	의왕시	15		15
25	포천시	23		23
26	양평군	23	2	25
27	여주시	19		19
28	동두천시	13	-	13
29	과천시	13	1	14
30	가평군	15	3	18
31	연천군	15		15

1-4 2025년 초등스포츠전문가 연계 프로그램 운영 계획

① 운영개요

구분	주요 내용
대상	• 초등학교 중 희망교 ※ 초등스포츠강사 배치교(127교) 제외
종목 (9종목)	• 육상(키즈런), 씨름, 농구, 뉴스포츠, 하키, 탈춤, 에어로빅힙합, 배구, 단체줄넘기 ※ 초등 체육교육과정과 연계
지원내용	• 1~6학년 체육수업 지원
교과	• 체육, 즐거운생활(교육과정편성 어려움 시 대체 시수 활용)
시수	• 학교별 총 60차시(농구, 씨름은 40차시) / 학급당 4~12차시 지원
운영기간	• 2025. 4월~12월 (※ 상세 운영시기는 종목 강사와 조정)
학교신청	• 교육지원청 계획에 의함(2025.2.28.(금)까지 지역선정결과 도교육청 보고) ※ 2025.3.7.(금)까지 학교에 결과 안내
규모	• 초등학교, 총 320교 지원 ※ 1교 1종목 지원이 원칙
운영방법	• 모든 종목은 1학급 단위로 수업(25명 내외) ※ 소규모 학교는 교육지원청, 종목단체와 협의 후 조절 운영 가능 • 담임교사(전담 교사)와 협력 수업으로 진행
기관별 역할	학교 희망종목 신청(붙임2)→운영→수업 확인서 교육지원청으로 제출(서식1)
	교육지원청 운영학교 선정, 강사비 지급
	도교육청 계획수립, 예산지원, 종목단체 강사 인증
지역별 우선 선정교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 육상(키즈런) 1순위 신청교 우선 선정 • [필수] 키즈런 외 타 종목선정시 반별 키즈런 1종목 이상 운영 가능교 우선 선정 • [선택] 이동식수영장 거점교, 전교생 스포츠클럽 운영교, 스포츠클럽 교내리그전 운영 및 지역대회 출전교, 학교자율과제 체육 운영교, 경기도교육청 정책사업 우수 참여교, 문화소외지역 등 • [필수] 항목을 포함하여 교육지원청에서 우선 선정 기준을 정함
* 운영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경기초등 함께런!(Run) 프로젝트와 연계 운영 [참고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종목은 준비활동으로 키즈런(스피드 래더), 기지개 체조 실시 ※ 2025 체육관련 교육청지원 예산 또는 학교예산으로 키즈런 교구 1개 이상 구입 ※ 지역별 초등교원 연수 운영 예정 • [키즈런] 세계육상연맹이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개발한 순환운동 중심의 육상 프로그램 (* https://m.site.naver.com/1dMRH) • [기지개 체조] 경기도교육청이 제작한 초등 맞춤형 몸튼튼 체조
* 후원	• 문체부 씨름 지원, WKBL(한국여자농구연맹) 강사 전체 지원, 하키연맹 지원



② 세부운영계획

1. 사업 기간: 2025. 4월~12월

2. 지원 대상: 초등학교 희망교 320교

※ 초등스포츠강사 배치교(127교)는 신청 불가

3. 관련 교과: 체육, 즐거운생활

4. 운영 방법: 체육교육과정 내 담임교사(전담 교사)와 협력 수업 운영

※ 본 사업예산으로 일과 전, 방과후학교 강사 지원 불가함

5. 지원 종목 및 수업 가능 학년 (※ 학년은 강사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연번	종목	해당학년	학급별 가능 차시	비고
1	육상(키즈런)	전학년	8 ~ 12차시	운동
2	뉴스포츠	전학년	6 ~ 12차시	스포츠
3	에어로빅힙합	전학년	6 ~ 12차시	표현
4	씨름	3~6학년	4 ~ 10차시	운동
5	농구	3~6학년	8 ~ 12차시	스포츠
6	탈춤	3~6학년	6 ~ 12차시	표현
7	하키	4~6학년	8 ~ 12차시	스포츠
8	배구	5~6학년	8 ~ 12차시	스포츠
9	단체줄넘기	전학년	6 ~ 12차시	운동

6. 주요 일정

내용	일정	비고
도교육청 공문 발송	2025.2.17(월) ~	도교육청→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공문 발송	교육지원청 계획에 의함	교육지원청→학교
학교에서 신청	교육지원청 계획에 의함	학교→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선정 후 보고	2025.2.28(금)까지	교육지원청→도교육청(자료집계)
종목별 학교 선정 결과 안내	2025.3.7.(금) 까지	도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
강사 배치 및 선정학교 대상 수업 일정 최종 조정	2025.3월	교육지원청, 종목 단체
		종목 단체(배정강사)↔학교
지역별 예산 재배정	2025.3월	도교육청→교육지원청
스포츠전문가 연계 수업 운영	2025.4월~12월	종목 단체↔학교
사업만족도 조사 참여	사업이 끝난 후 바로	학교→도교육청(구글 설문)
정산서 제출	2025.12.26.(금)까지	교육지원청→도교육청

③ 지역별 종목 배정 현황

순번	교육지원청	뉴스포츠	씨름	에어로빅 힙합	배구	단체 줄넘기	육상 (키즈런)	하키	탈춤(38교)			소계	농구	총계
									은율	봉산	양주 별산대			
1	가평											0	4	4
2	고양	2	2	1		1		3			1	10	4	14
3	광명		2			1		3	2			8	4	12
4	광주		2	2		1		3		1		9	2	11
5	하남	1				1		2				4	1	5
6	구리	2				1					2	5	5	10
7	남양주			2	2							4	2	6
8	군포	2	2		1	1				2		8	1	9
9	의왕	2			1	1						4	1	5
10	김포		2	2			4		2			10	3	13
11	동두천	1	2								2	5	1	6
12	양주					1						1	4	5
13	부천		2		1	1	4	3	2			13	2	15
14	성남	2	2	2	1	1		3		4		15	2	17
15	수원	3	3	4	2	1		4		4		21	3	24
16	시흥	2	2			1			2			7	3	10
17	안산	1	3	2	1		3	2				12	5	17
18	안성			2								2	5	7
19	안양	3	2	1	2				2			10	5	15
20	과천	1				1						2	1	3
21	양평						4					4	3	7
22	여주		2			1						3	5	8
23	연천										2	2	4	6
24	용인	1	2	2	1	1				5		12	3	15
25	의정부	3	2			1					2	8	4	12
26	이천	1	2		2							5	5	10
27	파주		2			1		1			1	5	5	10
28	평택			2	2	1		2				7	4	11
29	포천	1	2								2	5	5	10
30	화성		2	2	1	1		4				10	2	12
31	오산	2			1	1						4	2	6
	총 계	30	40	24	18	20	15	30	10	16	12	220	100	320

• 학교는 지역별로 표시된 종목만 신청 가능 - 표시된 숫자만큼 교육지원청에서 선정함

예) 광명 지역 학교는 씨름, 하키, 은율탈춤, 농구를 신청할 수 있음

고양 지역 학교는 뉴스포츠, 씨름, 에어로빅힙합, 하키, 탈춤, 농구를 신청할 수 있음

• 전 종목 강사비 도교육청 지원

※ '농구' WKBL(한국여자농구연맹)에서 전액 지원, 방학 중 수업도 가능

※ '씨름'은 문체부 스포츠유산팀에서 강사비 일부 및 씨름 청·홍 살바세트 지원

※ '하키' 경기도하키연맹 2교 지원

④ 지역별 종목 배정 현황

1. 프로그램 차시 편성·운영

분야	1교당 지원 차시	운영 방법(예시)
육상(키즈런), 뉴스포츠, 하키, 에어로빅힙합, 탈춤, 배구, 단체줄넘기	60차시 종목별 학급당 지원 차시 확인	- (5개 학급일 경우) 학급당 12차시씩 지원 - (6개 학급일 경우) 학급당 10차시씩 지원 ※ 60차시 이상 추가 수업이 필요한 경우 학교 자체 예산으로 강사비 마련하여 수업(1차시-4만원)
농구, 씨름	40차시 종목별 학급당 지원 차시 확인	- (5개 학급일 경우) 학급당 8차시씩 지원 - (4개 학급일 경우) 학급당 10차시씩 지원 ※ 40차시 이상 추가 수업이 필요한 경우 학교 자체 예산으로 강사비 마련하여 수업(1차시-4만원)

☞ 차시 편성 시 유의사항

- ① 학교별 총 60차시 지원(* 농구, 씨름은 40차시)
※ 소규모 학교는 차시 조정 가능(교육지원청, 종목단체와 선정된 후 협의)
- ② 상황에 따라 강사와 협의하여 일정 등 조정 가능
- ③ 소규모 학교만, 종목 특성 등에 따라 합반 수업 등 융통성 있게 운영
※ 소규모학교 합반일 경우, 30명을 넘을 수 없음
- ④ 혜택받는 학생 수를 늘리기 위해 종목별 학급당 기준차시를 줄이는 것 불가
※ 초등 체육교육과정을 분석하여 학급별 하나의 종목으로 최소한의 차시 이상 배정하였음.
- ⑤ 농구 지원교는 2학기에 개최하는 [가칭] “경기학생 농구 대잔치”에, 키즈런 지원교는 “키즈런 축제”, 씨름은 “교육감배 씨름대회” 참가를 적극 권장.

〈학교별 지원 시수 예시〉

- 6학년이 5학급인 경우 반별 12차시로 신청
- 6학년이 7학급인 경우 1반~6반은 10차시씩 신청하고, 7반은 학교자체예산으로 강사비 지급
- A학교: 에어로빅힙합, 2학년 1반~3반, 3학년 1반~3반까지 반별 10차시씩 지원(총 60차시)
- B학교: 씨름 5~6학년 5개 반 8차시씩 운영 (총 40차시)
- C학교: 하키 또는 뉴스포츠 4학년 1반 ~ 5반까지 반별 12차시씩 지원(총 60차시)
- (소규모 학교) D학교: (탈춤) (3학년 1반 25명) 12차시, 합반(4학년 1반+2반 28명) 12차시, (5학년 1반) 12차시, (6학년 1반) 12차시, (6학년 2반) 12차시
- E학교: 농구 4학년 1반~4반까지 학급별 10차시씩(총 40차시)

2. 프로그램 세부 내용 : [Ⅶ.분야별 지원 프로그램 참조]

- 수업 전 반드시 강사와 담임교사 사전 협의를 통한 수업지도안 재구성
※ 모든 종목은 준비활동으로 키즈런(스피드 래더) 실시함

3. 운영 시 유의사항

- 반드시 학교별 배정된 시수만큼 수업 진행해야 함.(소규모학교 협의가능)
 - 1차시(40분) 기준 40,000원 강사비가 지급되는 사업임
- 학교는 예산집행관련 업무 없음(학교와 강사 간 별도 계약하는 것 아님)
- 수업 일정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사전에 강사에게 연락 후 수업 변경
 - ※ 스포츠전문가는 수학여행, 캠프, 생존수영 보조교사 등 행사지원 불가함
- 종목당 기준차시 초과하여 수업 하였을 경우 강사료는 학교가 별도 부담
- 강사 단독 수업 불가, 담임교사(전담교사)와 협력 수업으로 진행해야 함.
 - ※ 수업 중 최종 책임자는 학교담임교사(전담교사)이므로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책임은 학교측에 있으며,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학교 담임교사(전담교사)의 협력수업이 필수임
- 스포츠전문가 강사 배려
 - 강사의 대기실, 책상 등 교육활동 편의 제공
 - 강사중식 희망 시, 학교기준에 따른 중식비 징수 후 학교 내 식당 이용 협조

4. 수업지원 협조 및 준비사항

- 수업 진행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 장소: 체육관 또는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장소 확보
- 종목별 학교준비 교재 교구 (※ 종목별 강사와 사전협의)

지원 분야	학교 준비물
전종목 공통구비	키즈런 교구 중 <스피드 래더> 구입
육상(키즈런)	학교에 있는 체육 수업용 교구 활용 또는 키즈런 세트 구입 권장 ※ 검색사이트에서 '키즈런' 동영상으로 내용 확인
씨름	구르기 매트 6~10장 구비 필요 ※ 문체부에서 공인 샅바 30세트(청, 홍) 무료 지원
뉴스포츠	학교에 있는 자료 활용 및 필요시 강사와 협의하여 구입
하키	※ 실내 다목적실 공간 확보 및 체육관 수업 가능한 학교만 신청 가능 - 수업장비(스틱) 구입 권장(필요시 강사와 협의)
농구	가능한 강당 및 체육관, 농구 골대가 있는 학교 지원 요망
탈춤	1학교 기준 한삼(양손에 한 개씩) 30세트, 장구 1개, 장구 받침대 1개 준비 유휴교실 및 다목적실 등 실내 공간 확보 가능 학교만 신청
에어로빅·힙합	음향 시설, 무선마이크 등 ※ 거울이 있으면 수업 운영에 수월함.
배구	배구공, 빅발리볼 등
단체줄넘기	4.2m 8개, 6m 4개, 8m 4개, 개인줄넘기

5 행정사항

1. 학교

- 운영 희망 신청서 제출 (학교→교육지원청)
 - 기한: 교육지원청 계획에 의함
 - 방법: **[붙임2]** 신청서 제출
 - 수신처: 소속교육지원청 체육담당부서
 - 신청 시 유의 사항

- 수업차시 편성 시 **하루 최소 4차시 이상** 수업이 가능하도록 일정 및 시간표 작성 권장
(※ 원거리 출강 강사의 학교 접근성을 고려한 조치 사항임)
- 최종 수업 일정은 주관단체(강사)와의 협의를 통하여 변경될 수 있음
- 한 학교 종목별 배정차시(40~60차시)과 학급별 배정차시(4차시~12차시)를 준수해서 신청
- 1학교 1종목 지원이 원칙

- 선정 결과는 교육지원청(체육담당부서)에서 학교에 별도 안내 예정
- 프로그램 운영교 시행할 사항
 - (수업전) 강사의 성범죄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 조회
 - (수업후) **강사수업 확인서 [서식1] 스캔 후 제출** (학교→교육지원청)
 - 수신처: 소속교육지원청 체육담당부서 K-에듀파인시스템
(☞ 강사비 지급을 위한 근거 자료이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 요망)
 - 제출 기한: 수업 종료 후 바로 제출 ※ 중간 정산 가능(권장)

만족도 조사 실시

구분	수업종료후 실시	QR
학생용	https://forms.gle/UxxYr5d2n33TWyXDA	
교사용	https://forms.gle/X7CwMkDsPbzeeYi3A	

2. 교육지원청

- 학교 선정 후 보고 (교육지원청→도교육청)
 - 기한: 2025.2.28.(금) 까지
 - 선정: 지원청별 기준에 의해 운영교 선정
 - 보고 방법: 자료집계시스템에 첨부파일로 보고

※ 지원학교 우선선정 기준

- [필수] 육상(키즈런) 1순위 신청교 우선 배정
- [필수] 키즈런 외 종목선정도 반별 키즈런 1종목 이상 운영 가능교 우선 선정
- [선택] 이동식수영장 거점교, 학교스포츠클럽 교내리그전 운영 및 지역대회 다수 출전교, 전교생 스포츠클럽 운영교, 경기도교육청 정책사업 우수 참여교, 학교자율과제 체육 운영교, 문화소외지역 등
- [필수] 항목을 포함하여 위 내용을 참고로 **교육지원청청에서 우선 선정 기준을 정함**

※ 학교별 60차시(씨름,농구는 40차시)가 기준이나, 소규모학교 등 기준차시 편성이 불가한 경우, 2개 학교 분리지원 가능(교육지원청과 협의) (예) 키즈런종목 배정 A학교 30차시 + B학교 30차시

※ 씨름은 신규학교 30개교 선정

- 2023~2024년 수업 운영교(기존 수강학년 외 학년 권장) 중 희망하는 학교 10개교 선정
- 신규학교의 경우, 살바 준비 지원으로 인해 5월 부터 수업 진행
- 살바가 구비된 2023~2024년 수업 진행교는 4월 부터 수업 진행 가능

□ 강사비 지급(교육지원청 → 강사)

- 가급적 분기별로 [수업 확인서]를 근거로 강사비 즉시 지급
(☞ 2025.11.30.까지 [수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교가 있을 경우, 현황을 파악하여 강사비 지급 완료, 배부된 예산 100% 집행)

□ 정산서 제출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 기한: 2025.12.26.(금) 까지 ※ 자료집계시스템 제출
- 제출공문: 정산서 양식

연번	지역	학교명	종목	예산지원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내역	비고
1	수원	OO초	키즈런	2,400,000	2,400,000	0	강사비 40,000원*60회 = 2,400,000원	

※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바람

3. 도교육청

- 스포츠전문가 연계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및 정산
- 종목단체 선정 및 종목단체 협의 후 강사 배정
- 종목단체에서 배정한 강사가 학교로 연락하도록 안내
- 스포츠전문가 연계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컨설팅 (경기초등체육 지원단)
- 종목단체 배정 강사에 대한 자격 인증
- 교육지원청으로 예산 재배정 (2025. 3월)
- 교육지원청의 선정결과 검토 후 최종 선정 공문 안내
 - 날짜: 2025.3.7.(금) 이내 (도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

〈종목단체별 대표 안내〉

연번	종목	직	성명	연락처
1	육상(키즈런)	사무국장	조현민	010-4811-5486
2	씨름	사무장	이경아	031-251-7337
3	배구	전무이사	심덕진	010-5358-2704
4	뉴스포츠	사무국장	양원호	010-8760-9082
5	하키	가림중 교사	오수진	010-7222-0801
6	농구	팀장	임태규	010-4807-5682
7	탈춤(은울)	사무국장	전경석	010-4108-0958
8	탈춤(용인)	대표	박창배	031-261-0510
9	탈춤(양주)	사무국장	박진현	010-6215-2384
10	에어로빅힙합	전무이사	이형미	010-3020-7990
11	단체줄넘기	경기도줄넘기협회 회장	이태현	010-5472-2116

※ 분야별 종목단체에서 지역별로 전문강사를 배치함(개인정보 공개 동의)

6 기대효과

- 스포츠전문가 협력 수업으로 초등 체육수업의 내실화 및 정상화
- 평생체육 기틀 마련 및 학생건강 체력증진 향상
- 초등학교 교원의 체육교과 지도 전문성 향상 기대

경기학교스포츠클럽 2025 초등 함께런(Run)! 프로젝트 추진 계획(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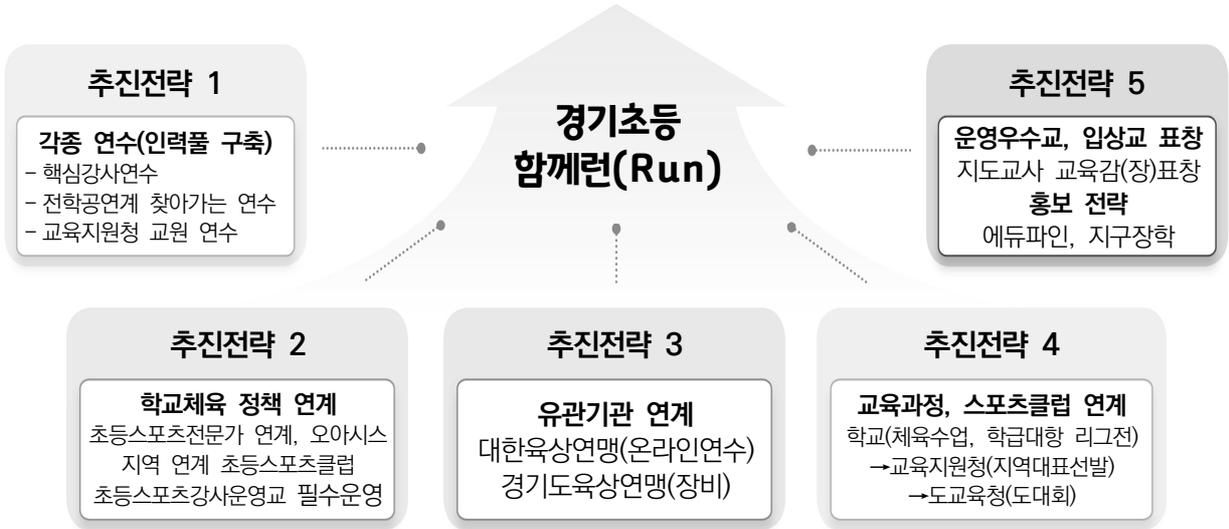
경기초등 함께런(Run)! = 1) 키즈런 + 2) 기지개 체조

목적 ▶ 초등맞춤형 신체활동 일상화로 몸과 마음이 건강한 경기초등 양성

대상·방법 ▶ 초등 3~6학년, 학급대항 키즈런 챌린지 운영, 틈새시간 기지개 체조 활용

기관별 역할

학급, 학년 연중 운영	학교 리그전(4월~11월)	교육지원청 교육장배(지역 계획)	도교육청 교육감배(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키즈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교육과정 연계 - 스포츠클럽 연계 ■ 기지개체조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틈새시간, 체육시간 - 영상공모전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그전 (연2회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스포츠클럽연계 학급대항 리그전 ■ 학년별 학교 대표 선발 ■ 지역 및 도교육청 챌린지 출전(영상심사 또는 대면) ■ 기기재 체조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자, 교원 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학공 찾아가는 연수 - 교육지원청 연수 ■ 교육장배 키즈런 챌린지 (영상심사 또는 대면) ■ 기지개 체조 영상공모전 또는 페스티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께런’ 기본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사 연수(인력풀) - 자료 배포 - 교육감배 키즈런 챌린지 (영상심사 또는 대면 운영) - 기지개 체조 페스티벌



운영 안내

- 키즈런, 기지개 체조(인터넷 검색하여 영상 참고)
 - 도대회 키즈런 종목(허들왕복릴레이, 스피드래더, 크로스흙, 함께 제자리멀리뛰기, 정확기던지기, 종합릴레이)
 - ※ 학교별, 교육지원청별 종목 선택, 종목 축소하여 운영 가능
 - 기지개 체조 1편~5편 (다시 한 번 대한민국, 연애인, 신호등, happy, 아리랑)



음원

1) 키즈런: 세계육상연맹이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개발한 순환운동 중심의 육상프로그램
2) 기지개 체조: 경기도교육청이 개발한 초등 맞춤형 몸튼튼 체조 (1편~5편)

[서식 1] [스포츠전문가 수업 확인서](수업종료후 교육지원청으로 제출, 강사비 지급 근거자료임)

초등 스포츠전문가 연계 수업 확인서

00초등학교 (종목: 에어로빅힙합), 총 60차시)

날짜	지도차시	지도차시	지도대상	학생수	스포츠전문가		담당교사 서명
					이름	서명	
4/1(화)	9:00~14:00	4차시	3학년1반(2차시) 3학년2반(2차시) 3학년3반(2차시) 3학년4반(2차시)	24명	김순희		
계			60차시				

1-5 중학교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① 중학교 스포츠강사 지원

- 스포츠강사: 중학교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지도

※ 채용시 유의사항

- 소속 학교 운동부지도자를 강사로 활동할 경우 학교장과 계약 수정 체결
- 학교운동부지도자 근로계약 체결 시간에 스포츠강사 채용 불가함
- 사용자가 동일하므로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주52시간 준수

-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 역할: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는 중학교 스포츠강사 관리 및 학교단위 (강사+일반교사) 연수 실시,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업무 담당과 관계 없이 원활한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을 위해 지원

- 학교스포츠클럽 담당 스포츠강사 및 일반교과교사 연수

○ 연수강사: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

연수대상	연수시기	연수과정	연수방법
스포츠강사 (10시간 이상)	'25년 3월~4월	〈학교체육 관련〉 원격직무연수(15시간 1학점 연수 8시간 인정)	원격연수 (경기도교육청교육연수원)
		스포츠강사 학교자체 연수 (성폭력, 안전 등) 2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	학교자체 연수
일반교과교사 (종목당 2시간 이상)	'25년 3월~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이해 •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지도의 실제 • 종목별 지도 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종목별 2~4시간) 	학교자체 연수

※ 일반교과 교사는 전담교사를 통한 자체 연수를 적극 권장하고, 당해연도 〈학교체육 관련 원격직무연수〉 이수한 경우 학교자체 연수를 추가로 받을 필요 없음

※ 하반기에 채용되는 강사(스포츠강사, 일반교과교사)는 2학기 초에 학교 일정을 고려하여 연수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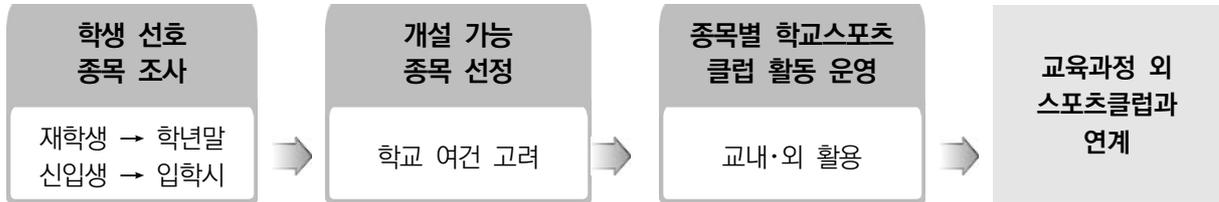
② 중학교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편성 방법

- 창의적 체험활동의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학생이 희망하는 종목을 조사하여, 학급수·시설 여건·강사 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설 종목 결정

※ 클럽편성 방법: $n(\text{학급수})+1$ 로 편성하여 학생들에게 종목 선택권 확장(학급단위 클럽 조직 지양)

-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운영 취지에 맞게 동일 시간에 다양한 종목의 클럽 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종목 개설

- e-스포츠 등 인터넷 중독을 부추길 우려가 있거나 신체활동이 거의 없는 종목 등을 특별한 사유* 없이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특별한 사유*) 신체활동을 할 수 없는 장애우 학생 또는 심리적 문제 등으로 신체활동을 기피하는 학생 등



③ 시설 이용

- 학교 유휴공간 활용 및 인근 체육시설 이용 확대
 - 학교의 유휴 교실 및 체육활동 이용 가능 공간 등을 활용하여 학교스포츠클럽 실시
 - 시설이용료 지원: 인근 지역시설 활용 시 예산 지원
 - 교재교구비 지원: 읍·면 지역 중학교만 예산 지원(시설이용료와 중복 신청 불가)

④ 활동 내용 입력

- 『2025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요령』 참고

1-6 중학교 학생선택중심 체육교육과정 운영

✓ 추진 배경

- 학생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 적용을 통한 학습 선택권 요구 증대
- 중학교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수업 운영에 대한 일반교과교사 부담 증가
- 체육수업과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수업 동시 운영에 따른 인적, 물적 자원 부족
- 제한된 기간 내에 여러 가지 종목의 수업 운영에 따른 배움의 질적 저하
- 매년 반복되는 단순 기초기능의 반복적 평가로 인한 수업 효율성에 대한 고민
- 교사 중심의 체육수업 내용 선택으로 인한 흥미 감소

✓ 추진 목적

-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학생들의 내재적 동기 부여
- 학생들과 함께 참여하고 구성하는 선택교육과정 운영
- 학생선택중심 체육교육과정의 다양한 모형 개발 및 일반화
- 남녀특성, 개인 특성, 능력, 흥미, 적성에 맞는 맞춤형 체육교육과정 개발
- 중학교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과 체육교육과정 운영 방법 혁신

✓ **추진방침**

- 구성원의 공동체 합의가 있는 희망교를 선도학교로 지정하여 운영
-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수업과 통합하여 체육교육과정 운영
- 체육교육과정과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수업 연계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행정지원
-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한 운영 지원
- 함께 움직이는 체육 정책실행연구회와의 연계 운영을 통한 일반화 방안 모색
- 선도학교 운영 후 차기 년도 운영 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수를 체육교사 소요 계산에 포함(권고)

✓ **추진계획**

- 학생선택중심 체육교육과정 운영 중장기 추진계획

1년차	2년차	3년차 이후
준비기	도입기	정착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교사+일반교과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 체육수업 통합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교사+체육강사 ▶ 체육교사 전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 체육수업 통합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교사+체육강사 ▶ 체육교사 전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운영 효율성 저하 ▶ 교사 전문성 결여로 학생 참여 동기 저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운영의 전문성 함양 ▶ 학생들의 참여 동기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성에 기초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평생건강관리 역량 함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 대한 일반교과 교사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운영에 필요한 체육 강사 지원 ▶ 선도학교 운영(20교 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운영에 필요한 체육교사 정원 충원 ▶ 선도학교 운영(30교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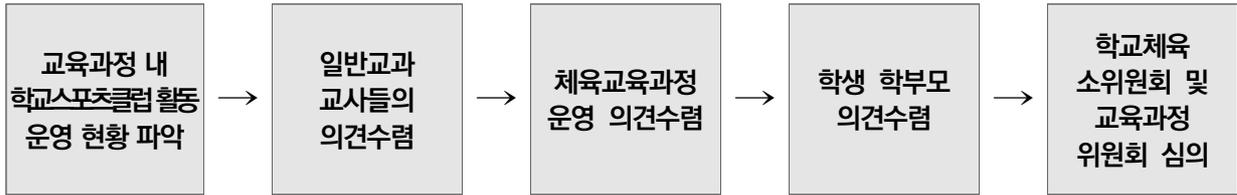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비고
2024년 10월 ~ 11월	선도학교 준비 컨설팅	희망교
2024년 11월	선도학교 신청	신청교
2024년 12월	선도학교 지정	
2025년 1월	선도학교 운영 워크숍	선정교
2025년 3월	예산지원	
2025년 3월 ~ 12월	선도학교 운영 및 운영컨설팅	운영교, 연구회
2025년 8월	운영사례 중간 보고회	운영교, 연구회
2025년 12월	선도학교 운영 보고회	운영교, 연구회
2025년 3월 ~ 2026년 2월	정책실행연구회 운영	

- 운영 계획: 기 알림 공문 참조(체육건강과-13826(2024. 10. 23.))

✓ 운영 방법

□ 실태분석 및 의견수렴



□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 강사운영

○ 운영지침 (붙임-공립 초, 중등학교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 참조)

- 운영근거: 2025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2025. 1.)
- 강사자격: 교원자격증 소지 (정규교육과정 운영지침)
- 임용요건: 통상적으로 교육과정 운영상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상의 근무 시간 동안 근무할 필요 없이 주어진 특정 시간 동안 교육(강의)만 하는 경우
- 임용형태: 교육과정 운영상 일시적 보충
- 임용기간: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기간
- 강사수당 단가 및 적용 기준(예체능 및 특성화 교과 담당 강사)
 - ※ 강사기준: 교육과정 20% 자율권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교과담당강사
 - ※ 강사수당 편성기준: 10,000원 ~ 100,000원 범위 내에서 학교 예산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단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운영

○ 인건비 지원

- 중학교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강사 인건비 1순위로 지원 예정
- 2025년 학생선택중심 체육교육과정 선도학교 강사비 지원 예정액
 - ※ 시간당 강사료: 35,000원 지원(*기타 기관부담 포함) *교육부 예시 준용
 - ※ 계약제 교원 4대보험 가입기준

□ 운영예시 (학교 제반 여건과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교육과정편성 예시

- 학교현황 : 학년별 8학급
- 체육수업과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간 통합(주당 4시간)
- 주당 4시간 = 체육2(2시간) + 체육2(2시간) 블록 타임 시간표 편성
- 학년별 8학급 중 4개 학급씩 통합하여 5개 종목 개설(농구, 배드민턴, 무용, 축구, 탁구)
- 학생은 5개 종목 중 체육1에서 1종목, 체육2에서 1종목 선택(주당 2개 종목 실시)
- 동일 종목 1년간 운영

○ 시간표 예시 (체육1-, 체육2-)

	월	화	수	목	금
1교시	2-1, 2-2	1-1, 1-2	1-5, 1-6	3-5, 3-6	2-5, 2-6
2교시	2-3, 2-4	1-3, 1-4	1-7, 1-8	3-7, 3-8	2-7, 2-8
3교시	2-5, 2-6	1-5, 1-6	2-1, 2-2	1-1, 1-2	3-1, 3-2
4교시	2-7, 2-8	1-7, 1-8	2-3, 2-4	1-3, 1-4	3-3, 3-4
5교시					
6교시		3-5, 3-6	3-1, 3-2		
7교시		3-7, 3-8	3-3, 3-4		

✓ 기대효과

- 효율적 체육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교과교육의 질적 향상 유도
- 남녀 학생들의 참여 동기 향상을 통한 학습자 만족도 증가
-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한 체육교사 역량 강화
- 일반 교과교사들의 학교스포츠클럽 수업 부담 감소 및 운영 내실화
- 학생들의 자기결정권 부여를 통한 자율성과 책임감 있는 행동양식 내면화
- 학생선택중심 체육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잠재력 개발
- 평등한 성취 기회 제공을 통한 배움의 즐거움 경험

1-7 체육교육과정 특성화학교 운영 지원

✓ 추진 배경

- 일반고에서 체육에 관심 있는 학생들의 진로진학을 위해 별도의 체육계열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 집중 지도 여건 조성
- 체육 분야 진로진학 지도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체육에 흥미와 재능을 가진 학생의 소질·적성 계발 기회 제공(*일반학생 및 운동부 소속 학생)
- 2015개정교육과정 적용 및 고교학점제 도입 등을 통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요구 대응 및 학생의 진로흥미에 맞는 다양한 교육 기회 보장

✓ 추진목적

- 체육에 흥미와 재능을 가진 학생들에게 체육계열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통하여 자신의 직업·진로 개척 기회 제공
-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 능력과 수준, 직업·진로와 연계된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학교생활 만족도 제고
- 학교마다 특색 있는 자율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학교 선도 모델 육성

✓ 추진 경과

- 2011년~2014년 체육교육혁신형 체육활성화, 체육중점학교 운영
-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13.1.27.)
-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계획 공청회('13.7.30.)

✓ 기본방향

- 일반고에서 체육에 관심 있는 학생들의 진로진학을 위해 별도의 체육계열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 집중지도 여건 조성
- 체육 분야 진로진학 지도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체육에 흥미와 재능을 가진 학생의 소질·적성 계발 기회 제공
- 2015개정교육과정 적용 및 고교학점제 도입 등을 통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요구 대응 및 학생의 진로흥미에 맞는 다양한 교육 기회 보장

✓ 운영형태

- (학급구성형) 특성화학교 내에 체육중점학급 구성·운영
 - 체육계열 진로 진학을 위해 별도의 학급을 구성하고 체육 계열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 해당 학생들에 대한 집중 지도
- (과목편성형) 별도의 학급 구성없이, 교과 교육과정 자율 편성 단위에 체육계열 교과(전문교과 등)를 추가 편성·운영
 - 자율편성 단위에 체육계열 교과를 편성하여 필수 이수 단위를 초과하여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체육교과

선택 기회 보장

- 체육 관련 진로 진학 특강, 스포츠 관련 캠프 및 체험활동 등 운영

✓ 운영 내용

- (교육과정 운영) 체육 계열의 교육과정을 별도 편성·운영, 또는 선택과목 내 체육계열 전문교과 등을 편성하여 과목 선택 기회 보장 및 프로그램 제공
- 체육중점학교 교육과정은 반드시 학교교육계획서에 반영하여 운영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나. 일반 고등학교(자율 고등학교 포함)

(가) 교과(군)의 총 이수 단위 180단위 중 필수 이수 단위는 94단위 이상으로 한다.

(나) 체육 교과를 중심으로 중점 학교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율 편성 단위(86단위)의 50% 이상을 해당 교과목으로 편성할 수 있다.

- (교육과정 편성)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 수정사항 중 “문·이과 구분 없이 동일과목을 동일이수단위로 편성”하도록 한 해설은 중점학교 중 예술, 체육 중점 고등학교는 미적용
 - ※ 교육부-교육과정책과-4042(‘18.7.11.)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고등학교) 수정 안내
 - ※ 별도 학급 구성 없이 자율 편성 단위에 편성한 경우 동일 과목 동일단위 편성
- 개인별 특기종목 지도, 우수 교원 확보, 체육수업시수 확충, 상급 학교 진로진학지도 강화 등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운영

- 체육 특성화학교의 학력향상(국, 영, 수)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수준별 수업 등) 운영
- 우수 교원, 강사 등 인적 자원 확보 및 전문성 신장
- 다양한 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체육교구·시설 확충 및 선진화
- 체육수업 시간, 방과후 등을 활용한 1인 1종목 이상 특기 종목 습득 기회 제공
- 고등학교의 경우 대학 진학을 대비한 실기지도와 활동지 작성 등 진로진학 지도 강화
- 체육 관련 대학학과, 체육단체, 스포츠센터 등 직업체험프로그램 운영

✓ 주요 내용

일정	내용	추진기관
'25 1월	■ '25년 체육교육과정 특성화학교 운영 계획 안내(예산: 총액교부)	교육청
3~4월	■ '25년 체육교육과정 특성화학교 워크숍(학교체육진흥회 지원)	도교육청, 지원기관
4~7월	■ '25년 체육교육과정 특성화학교 운영 지원 컨설팅 ■ '25년 체육교육과정 특성화학교 진로진학 페스티벌(모의실기) ■ '26년 체육교육과정 특성화학교 운영 희망교 사전 수요조사	운영교, 도교육청
12월	■ '25년 체육교육과정 특성화학교 운영 결과 보고	운영교→도교육청
'26 1월	■ '25년 체육교육과정 특성화학교 운영 정산 보고	운영교→도교육청

2 학생주도적 건강관리 역량 강화

2-1 단위학교 학생건강체력증진 내실화

✓ 추진 근거

근 거

- 학교체육진흥법 제8조(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계획의 수립 및 실시)
- 학교체육진흥법 제9조(건강체력교실 등 운영)
- 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건강체력교실의 설치 및 운영)
- 학교건강검사규칙 제7조(신체능력검사의대상 및 방법 등)
- 2025 체육건강과 정책추진 기본계획(경기도교육청, 2025.1.)

✓ 목적

- 개인별 건강관리능력 제고를 위한 학생 체력증진 프로그램을 제공
-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일반화를 위한 학교별 체육교육 내실화 운영 지원

✓ 현황 및 개선 방향

- 학생건강체력 향상을 위한 대책의 필요성 증가함
 - 코로나19 이후 학생 체력 회복의 어려움

연도	2021	2022	2023	2024
PAPS 4~5등급 학생 비율(%)	22.4	20.4	18.4	19.2

- 고등학생의 저체력(4~5등급 학생 비율) 문제 심각 : 15.9%(초) → 16.3%(중) → 24.8%(고)
※ 2024년 경기도교육청 전체 학교급 학생건강체력검사(PAPS) 현황

- 학교 체육시간 외 학생들의 운동 시간 확보 필요
 - WHO의 신체활동 수준 발표에 의하면 한국 청소년의 신체활동 시간이 최하위권임(2019.11월)
 -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하루 60분 주 5일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16.3%로 저조한 편임
(출처: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2022)

✓ 세부 추진 내용

1. 단위학교 학생 체력증진 기본계획 작성 및 운영

- 대상: 초·중·고등학교
- 시기: 매년 3월에 계획 수립 및 내부결재 득하고 연중 운영
- 기본 방향

- 학생 체력증진 활성화 지표³⁾ 활용
- 정규 체육수업으로 부족한 신체활동 시간 확보
- 학생 개인의 선택과 자발성에 기초하여 운영
- 신체활동을 통한 건강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향상 및 평생체육의 기틀 마련
- 운동 기능, 체력의 우수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참여의 기회 제공
- 등교시간, 중간놀이시간, 점심시간, 방과후 시간 등 여유 시간 효율적 이용
- 체육 시간에 익힌 내용을 시간의 제약·심리적 부담 없이 적용·활용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작성 및 운영 방법

○ 학교별 학생 체력 증진을 위한 통합 운영 계획 수립

- 기존의 다양한 형태의 체육 교육계획을 하나로 통합하여 작성함으로써 학생 체력 및 인성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으로 수립함
-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운영 계획
- 건강체력교실 운영 계획(담당자, 일시, 장소 명시_의무)
- 학생 체력 증진을 위한 각종 운영 계획
- 학교체육소위원회 심의 계획

2.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실시

□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운영 절차

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 계획 수립(3월 말까지) → 정시측정 및 측정 결과 학생, 학부모 제공 → 건강체력교실 운영 → 수시측정 실시 및 측정 결과 학생, 학부모 제공 → **통계자료 제출 1차 마감(2025.8.21.까지), 2차 마감(2025.11.20.까지)** → 통계결과 환류하여 차기년도 학생건강체력평가 및 건강체력교실 운영 등에 반영

□ 관련 법령 준수

학교체육 진흥법 제8조(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계획의 수립 및 실시)

- ① 국가는 학생의 건강체력 상태를 측정하기 위하여 매년 3월 말까지 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의 장은 실시계획에 따라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실시한 학교의 장은 평가결과를 교육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해당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나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학교보건법」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 중 신체능력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의 시기, 방법, 평가항목, 평가결과 등록 및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위탁받을 수 있는 대학이나 전문기관·단체 등의 자격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3) 학생 체력 증진 활성화 지표

- 비만비율=(당해 연도 PAPS 결과 경도비만과 고도비만 학생 수 ÷ 당해 연도 학생 수)×100
- 체력 4~5등급 비율=(당해 연도 PAPS 결과 4~5등급 학생 수 ÷ 당해 연도 학생 수)×100

□ 측정 대상 확대

- (대상) [시범] 초등학교 3학년, [필수] 초등학교 4~6학년, 중, 고등학교 학생
※ 단, 심장질환 등으로 인한 신체허약자와 지체부자유자는 대상에서 제외 가능
- (사전 예고) PAPS 적용 대상 확대

연도	2024	2025	2026	2027	2028
적용 대상	초등4학년 (시범 시행)	초등4학년 (의무 시행) 초등3학년 (시범 시행)	초등4학년(의무 시행) 초등3학년(시범 시행)		초등3학년 (의무 시행 예정)

※ 초등학교에서는 초등3학년 대상 측정 후 나이스에 결과 입력 또는 자체 점검 실시 선택 가능

□ 운영방침

- (정시측정) 정시측정 연 1회 실시(PAPS 정시측정 집중운영기간 운영: 3~5월)
※ 단위학교에서 학급별 정시측정 일자가 다를 경우 가장 먼저 측정한 일자를 나이스에 기록
- (수시측정) 수시측정은 최소 1회 이상 실시하여 저체력학생 비율 최소화(수시측정 시기는 7월, 9월, 11월 3회 실시를 권장함)

□ 측정 종목 및 시기

- (선택평가)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검사항목, 검사 주기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실시

구분	체력요소	방법	비고
선택평가	심폐지구력	심박수 측정기 세트 활용	
	비만평가	체지방 측정기 활용	
	자기신체평가	자기기입식 기록지 활용	
	학생자세평가	자세평가 보조도구 활용	

- (필수평가) 체력 요소별로 1개의 검사항목을 선택하여 매 학년 초에 실시

구분	체력요소	검사항목	적용 가능 학년
필수평가	심폐지구력	왕복오래달리기(초 15m, 중고 20m)	초4~고3
		오래달리기-걷기(남 1,600m, 여 1,200m, 초 1,000m)	
		스텝검사	
	유연성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종합유연성검사	
	근력·근지구력	팔굽혀펴기(남)	
		무릎대고팔굽혀펴기(여)	
		윗몸말아올리기	
		악력	
	순발력	50m 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비만	체질량지수(BMI)		

□ 측정 방법

○ 필수평가 측정 방법

심폐지구력	왕복오래달리기	오래달리기-걷기	스텝검사	
측정방법 영상				
유연성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종합유연성	
측정방법 영상				
근력·근지구력	팔굽혀펴기(남) (~51초)	무릎대고 팔굽혀 펴기(여)(52초~)	윗몸말아올리기	악력
측정방법 영상				
순발력	50m 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측정방법 영상				
비만	체질량지수(BMI)			
측정방법	측정자의 키와 체중을 측정하여 산출 산출식: 체중(kg) / 키(m) ²			

※ 영상출처: P.E. TIME! 체육시간, <https://www.youtube.com/watch?v=wPm-zaUI8G0>

○ 확인사항

- 정확한 측정을 통한 체력 수준 진단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평가에 임할 수 있도록 평가 실시 전 안내
- 예상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안전지도 실시
- 운동기구, 체육시설 및 교재·교구의 결함 여부 등 사전점검 실시
- 운동 기구 준비, 운반은 지도교사가 직접 입장 지도
- 평가 활동 공간 및 주변 위험 요소 제거
- 날씨(폭염, 자외선, 황사, 미세먼지 등)를 고려하여 활동 장소 및 시간 선정
- 요양호(보호) 학생 파악 및 보호 조치
- 건강 점검 실시 후 실시 가능한 학생만 평가 실시
- 충분한 준비운동 반드시 실시
- 평가 당일 미실시 학생은 추후 별도 계획에 의거 건강 상태 양호할 경우 실시

□ 평가 결과의 기록 및 제공

- (평가 결과의 기록) 학생신체능력검사 결과는 교육정보시스템(NEIS)에 입력하여 학생·학부모가 조회할 수 있도록 관리
- (평가 결과 제공) 교육정보시스템(NEIS)에 등록된 학생건강체력평가 결과(최종) 출력, 대상 학생 및 학부모에게 제공

□ 결과 보고

- (제출자료) PAPS 통계자료(수시측정 자료를 정시측정 자료에 반영한 최종 정시자료 제출)
- (제출기한) 1차 마감(2025.8.21.까지), 2차 마감(2025.11.20.까지) 기한 엄수
- (제출방법)

각 반 담임이나 또는 체육(전담)선생님의 PAPS 측정 후 측정결과 입력이 끝나면

- ① 나이스 → PAPS → 통계 및 현황 → 입력누락학생조회(누락 학생 입력)
- ② 나이스 → PAPS → 마감관리 → 입력마감 → 측정마감 → 기안문 상신
- ③ 나이스 → PAPS → 통계 및 현황 → PAPS통계/제출 → 2025학년도 설정 → 통계조회 → 통계생성
→ 승인요청: NEIS상으로 기안문작성 및 결재 → 결재가 완료되면 제출 버튼이 활성화됨 → 제출

□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내실 운영

- 필요성: 학생건강체력 증진 및 건강한 생활 영위 필요
- 환경 제공: 체력증진 관련 정보 게시, 체력 향상 구역 운영, 신체 활동 공간 재구성 등 건강체력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학생 스스로 자발적 참여 유도
- 측정 내실화: 교내대회 운영 및 표창, 수업 연계, 국민체력 100 사업 연계 등 건강체력평가에 대한 학생들의 동기를 높이고, 사후 기록 관리 및 처방 제공 등을 통해 건강체력검사에 대한 생의 인식 제고

□ 기타

- 일부 종목 미측정시 해당 학생 PAPS 통계 처리 방법
- 처리 방법: 전 종목 측정한 경우에만 PAPS에 평가 결과 입력 후 통계처리
※ 일부 종목만 측정하더라도 학부모가 평가결과를 PAPS에 입력하기를 희망하면 입력해 주어야 함
- 목적: PAPS 통계자료의 신뢰도 향상

○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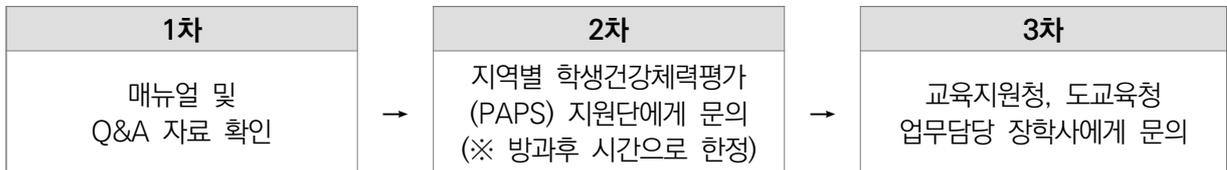
- ① PAPS 전 종목 또는 일부 종목 미입력 대상자 및 사유를 내부결재를 득함
- ② 측정할 수 있는 종목 측정 후 평가 결과를 PAPS에 미입력하여 PAPS 통계에 잡히지 않도록 함
(※ 전 종목 미입력 시 통계에 잡히지 않음)
- ③ 일부 종목 측정 결과는 해당 학생의 학생건강기록부에서 반드시 직접 입력

○ 유의사항

- 일시적으로 전 종목을 측정하지 못한 학생은 추후 수시측정 등을 통해 평가 결과를 PAPS에 입력하고 통계처리
- 부상자 및 장기결석생의 측정 결과는 치료 완료 또는 등교 후 측정하여 PAPS에 입력하고 통계처리해야 함
-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측정할 수 있는 종목은 측정해야 하며 위에서 제시하는 절차 적용 가능
- 전입생이 측정하지 않고 왔을 경우 전입교에서 측정 후 PAPS에 입력하고 통계 처리
- 일부 종목 측정 평가 결과도 해당 학생 및 학부모에게 제공해야 함

□ 지역별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지원단 운영

- 운영 내용: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NEIS 처리 방법 및 내실 운영 지원
- 운영 기간: 2025.3월 ~ 2026.2월
- 문의 절차



○ 역할

-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NEIS 처리 방법 상담 및 문의
-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NEIS 처리 매뉴얼 및 Q&A 자료 개발
-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체력증진 평가표 개발 등

3. 건강체력교실 운영 의무화

- 운영 개요
- 관련 법령 준수

학교체육 진흥법 제9조(건강체력교실 등 운영)

제9조(건강체력교실 등 운영) ① 학교의 장은 제8조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에서 저체력 또는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체력증진을 위하여 정규 또는 비정규 프로그램(이하 "건강체력교실"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건강체력교실 등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건강체력교실의 설치 및 운영)

제5조(건강체력교실의 설치 및 운영) 학교의 장은 법 제9조에 따라 건강체력교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강체력교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건강체력교실의 운영 시기 및 담당자
2. 건강체력교실에서 제공할 프로그램 내용
3. 건강체력교실에 참여하는 학생의 지도 및 관리 방안

- (주체) 각급 학교
- (참가 대상 확대) PAPS 측정 결과 저체력(4~5등급), 비만 판정 학생 및 참여 희망자 등
- (목적) 건강체력교실 운영을 통한 저체력, 비만학생의 건강체력 향상
- (방법) 매년 학교별 건강체력교실 운영 계획 수립 및 추진
- (예산) 건강체력교실 운영과 관련한 예산 확보

- 법률 [학교체육 진흥법 제9조(건강체력교실 등 운영)]에 의거한 의무사항이므로 건강체력교실 운영에 필요한 학교 자체 예산 책정 및 확보 필요
- 건강체력평가 4~5등급 학생 및 비만 판정 또는 희망학생 대상으로 1학급(예시: 주 2회, 7개월 이상) 운영이 가능하도록 예산편성(운영비, 강사비 등)

○ 강사 운영 참고 사항

- 4개 영역 강사(운동, 영양, 상담, 정서) 외 별도 학교담당자 지정 가능하며 근무시간 외 근무 시 초과근무 수당 지급 가능
 - 초과근무 수당과 지도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음
-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를 건강체력교실 담당자로 지정 후 학교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지도수당 지급 가능
 - 근거: 학교체육진흥법 제10조 ③제2항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에게는 학교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지도수당을 지급한다.
- 내부강사, 외부강사 공통사항
 - 학년초 건강체력교실 운영 계획 수립 시 담당교사 지정, 운영 프로그램, 지도수당 등 명시
 - 지도수당 지급 시 증빙서류 구비 철저(학생 출석부, 주별 월별 프로그램 운영 강사 근무상황부 등)
 - 「2025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 매뉴얼을 준수하여 추진
 -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제9조, 법32조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필요

□ 운영 방향

- 계획서 필수 포함 내용
 - 운영 시기, 담당자, 프로그램 내용, 지도 및 관리 방안
- 운동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
 - 교내 스포츠클럽 및 오아시스 아침운동 등과 연계 운영 가능
 - 체육 관련 동아리 참여, 무료 신체활동 프로그램, 지역 연계 초등 스포츠클럽, 체육단체, 보건소 등에서 운영하는 체력 증진 프로그램 등 참여 권장
 - 건강체력교실 운영시 학생의 참여 희망이 전제되어야 하나 저체력 학생, 비만 학생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체력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요망
 - 대상 학생의 주기적인 학생건강체력평가를 통한 관리 방안 마련
 - ※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 장비(체지방 분석기 등) 활용을 통한 피드백 제공
 - ※ 프로그램 운영 전·중·후 학생 건강 지표 분석(신체 계측, 체력, 비만, 주관적 행복지수, 영양평가 등)
 -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 건강 증진 및 관리 프로그램 지원
 - 단위학교별 지원팀 구성 및 협력 지원 방안 마련(체육, 상담, 보건, 영양, 담임교사 등)
 - ※ 운동프로그램은 36시간 이상 편성 권장(일일 최대 2시간 이내 운영 권장)
 - ※ 영양상담, 보건상담, 정서상담 각각의 운영 시간은 3시간 이상 권장

- 건강체력교실 1개 학급 기준 대상 학생 10명 이상 운영 권장
- 학부모와의 협조 방안 마련
 - ※ (예) 4~5등급 학생 대상 월 1회 비만도 변화 확인, 식습관 교육 및 식단 제공 및 개별상담
- 건강체력교실 연중 운영으로 **장기적·지속적인** 프로그램 마련 및 운영
- 외부 위탁프로그램 운영 가능
 - ※ 외부강사(상담교사, 운동프로그램 제공 강사 등) 활용 방안 마련
 - ※ 건강운동관리사(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발급) 자격증 소지자 권장
 - ※ 1·2급 생활스포츠 지도자(종전 2·3급 생활체육지도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발급) 자격증 소지자 등
- 운영 시 유의사항
 - 프로그램 운영 시 대상 학생들의 자존감을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
 - 프로그램 운영 시 대상 학생이 4~5등급 학생임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
 - PAPS 4~5등급 학생들이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 구성
- [예시] 운영 방법

구분	내 용	
공통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5등급 학생 대상 건강체력교실 참여 희망 여부를 개별 비밀면담으로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희망 여부(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친구와 함께 참여하는 방안 권장) - 희망 운동 종목 • 건강체력교실 운영 계획서 작성 및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PS 측정 결과 상담(2025년 상반기 측정 후 실시) - 기초조사 실시: 식사습관, 운동습관, 생활습관, 자아존중감, BMI검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붙임 [서식1] 참고 - 상담 계획(월1회), 운동 프로그램 진행, 비만도 변화 확인(월1회), 올바른 식습관 교육 및 식단 제공, 전교생 대상 자율체육활동 활용 방안, PAPS 주기적 측정 및 사후 관리 계획, 미참가자 대상 건강 관리 계획 포함 	
선 택 과 목	비만 집중 관리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비만 학생(참가 신청자에 한함) • 운영 형태: 보건수업(동아리 활동) • 참고사이트: http://www.schoolhealth.kr/index.do
	운동 집중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동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Type(유산소운동형): 건강달리기, 자전거, 줄넘기 등을 이용한 유산소운동 - B-Type(구기운동형): 농구, 축구 등 공을 이용한 구기운동 - C-Type(서킷 트레이닝형): 트레이닝 기구,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한 순환운동 • 운영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Type(동아리활동) 동아리활동으로 등록하여 운영 - 2-Type(방과후학교) 학교 방과후학교로 개설하여 운영 - 3-Type(스포츠클럽) 학교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여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예시) A-3 Type : 건강달리기를 활용한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 운영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동 프로그램 책임 지도교사제 운영(1교당 1명 임명) - 4월(사전), 7월(중간), 10월(사후) 3회 PAPS 측정 - 연간 실제 운동프로그램 운영 일수 최소 60일 이상 운영 - 운동 종목과 운영 형태를 정하여 학교별 특색있는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운영 - 학교스포츠클럽, 지역 연계 초등스포츠클럽 등과 연계 운영
	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 학생 대상 수요 조사

기관 위탁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 운영 기관 선정 • 학교 내·외부에서 운동 프로그램 운영: 주중형 / 주말형 /방학형 • 참여 학생 대상 참여 실태 수시 관리 및 지도 • 운영 프로그램 평가 및 개선
-------------------	---

컨설팅 및 모니터링 강화

- (대상) 초·중·고등학교
- (기간) 2025.3월~12월
- (주관) 교육지원청
- (방법) 상·하반기 담임장학, 각종 협의회, 지구장학협의회, PAPS 지원단 활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
- 내용
 - 단위학교 학생 체력 증진을 위한 (통합)운영계획 수립 여부 및 내용 점검, 지도
 - ※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건강체력교실 운영 계획 수립 의무
 - 각급 학교의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건강체력교실 운영 현황 점검
 - 점검 후 문제점 보완 등 개선 조치
 - 관내 학교 대상 단위학교 학생 체력증진 관련 협의회(3월, 9월) 운영, 우수 운영 사례 나눔 개최(11월)

행정 사항

건강체력평가제 정시측정 결과 NEIS 입력 및 PAPS 통계자료 도교육청 전송

- (대상) 초·중·고등학교
- (제출기한) 1차 마감(2025.8.21.까지), 2차 마감(2025.11.20.까지) 기한 엄수
- 제출방법
 - NEIS 상으로 통계생성 후 제출(※ 매뉴순서: PAPS → 통계및현황 → PAPS통계)
 -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NEIS 입력 운영 매뉴얼' 참고
 - 통계 제출 시 PAPS 운영 관련 Q&A 9번 참조하여 나이스 상 미입력 처리가 되지 않도록 주의

학생 체력증진 활동 점검, 모니터링 및 컨설팅 실시

- (주관) 교육지원청
- (대상) 초·중·고등학교
- (기간) 2025. 3월 ~ 11월
- 내용
 - 단위학교 학생 체력 증진을 위한 (통합)운영계획 수립 여부 및 내용 점검, 지도
 - ※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건강체력교실 운영 계획 수립 의무
 - 각급 학교의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건강체력교실 운영 현황 점검
 - 점검 후 문제점 보완 등 개선 조치

기대효과

- 학생 체력증진 프로그램을 제공을 통한 개인별 건강관리능력 향상
- 체육교육 내실화 운영 지원을 통한 학교별 우수 체육활동 프로그램 확산

○ 관련 법령

학교체육진흥법

제9조(건강체력교실 등 운영) ① 학교의 장은 제8조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에서 저체력 또는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체력증진을 위하여 정규 또는 비정규 프로그램(이하 "건강체력교실"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건강체력교실 등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건강체력교실의 설치 및 운영) 학교의 장은 법 제9조에 따라 건강체력교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강체력교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건강체력교실의 운영 시기 및 담당자
2. 건강체력교실에서 제공할 프로그램 내용
3. 건강체력교실에 참여하는 학생의 지도 및 관리 방안

학교건강검사규칙

제7조(신체능력검사의 대상 및 방법 등) ① 신체능력검사는 체력요소를 평가하여 제8조에 따른 신체의 능력등급을 판정하는 필수평가와 신체활동에 대한 인식정도 등 필수평가에 대한 심층평가를 하는 선택평가로 구분한다.

②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능력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심장질환 등으로 인한 신체하약자와 지체부자유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초등학교 **제4학년부터 제6학년 학생**〈개정 2025. 3월 예정〉
2.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

③ 필수평가는 체력요소별로 1개의 검사항목을 선택하여 매 학년 초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선택평가는 학교의 장이 해당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검사항목, 검사주기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3.3.〉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제3학년**에 대한 필수평가 또는 선택평가의 실시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25. 3월 예정〉

⑤ 제1항에 따른 필수평가와 선택평가의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⑥ 선택평가의 검사항목 중 자기신체평가 및 자세평가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는 별지 제1호의7 서식과 제1호의8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2.]

제8조(신체의 능력등급) ① 신체의 능력등급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체력요소별로 선택하여 검사한 검사항목의 항목별 점수를 종합하여 별표 6의 신체의 능력등급 판정표에 따라 판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항목의 항목별 점수는 별표 4의 신체능력검사(필수평가) 기준표와 별표 5의 신체능력검사(필수평가) 항목별 등급 및 점수 기준표에 따라 산정한다.

[전문개정 2009.5.22.]

PAPS 운영 관련 Q&A

1. 전입생에 대한 PAPS 입력 방법은?

- 전출교에서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 전입학교 규정에 따라 입력
- 전출교에서 필수 평가 일부만 측정한 경우 : 전입생자료 삭제(**PAPS > 측정결과입력 > 전입생자료삭제**) 후 전입학교의 필수평가 측정종목을 전체 재측정하여 입력(중복되는 평가 종목이 있다면 전출학교의 결과값을 개별적으로 작성하였다가 입력해도 무방) ※ 미측정 종목만 부분 수정 되지 않음
- 전출교 측정 기록이 있으나, 전입교 종목으로 재측정하고 싶은 경우 : 전입생 자료를 삭제 후 입력함. 만약 해당 학년이 측정마감 입력마감이 되어 있다면 모두 취소한 후에 개인별 평가 입력으로 전입생 자료를 입력

2.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처리 방법은?

- 일부 종목을 측정 가능한 경우: 학생의 상황에 따라 측정 가능한 종목은 측정
- 전체 종목을 측정 불가능한 경우: 대상자 및 사유를 기재하여 내부결재 받은 후 측정하지 않음

3. PAPS 전종목 및 일부 종목 미입력 대상자 및 사유를 내부결재를 득해야 하는 경우는?

- 부상자 및 장기결석생 : 치료 완료 또는 등교 후 측정이 원칙이나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 : 측정할 수 있는 종목은 측정하되 그 외 측정이 불가능한 종목의 경우(Q2. 참조)

4. 1학기 PAPS 측정이 모두 완료된 상태에서 측정이 안 된 학생이 전학을 온 경우 운영 방법은?

- 1학기 중에 수시 개설을 해서 측정하거나 학교 PAPS 계획에 따라 2학기 수시 측정 시 측정하여 기입
- 1학기 PAPS 측정이 완료되었더라도 통계 보고 전까지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으므로 정시측정에 기입

5. 1학기 PAPS 측정이 모두 완료된 상태에서 검사항목이 다른 PAPS 측정을 완료한 학생이 전학을 온 경우 운영 방법은?

- 다른 학교에서 측정한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여 나이스 상에 측정 결과 기입
- 다만 이런 경우 해당 검사항목 측정인원 수에 반영되지 않아 [나이스]-[PAPS]-[통계및현황]-[입력누락학생조회]에 반영되어 정시측정 누락자로 선별되
- 입력누락학생으로 적용되지 않으려면 2학기 수시측정 시 [나이스]-[PAPS]-[측정결과입력]-[전입생자료삭제]를 이용하여 전 학교 자료를 삭제하고 해당학교의 항목대로 입력하는 방법이 있음

6. 장기결석생 혹은 장기부상자일 경우 자료처리 방법은?

- 부상자 및 장기결석생의 측정결과를 입력하지 않는 경우 미이력학생으로 분리되어 통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후 측정결과 입력시 [나이스]-[PAPS]-[마감관리] 메뉴에서 측정마감취소→입력마감취소 실행 후 해당학생 결과 입력이 가능
- 해당학생에 대한 측정결과가 계속 미입력일 경우 장기결석자 및 부상자의 PAPS 기록 미입력 사유를 반드시 내부결재 받음

7. 특수학급 학생에 대한 자료처리 방법은?

- 특수학급 학생 중 체력 측정이 가능한 학생에 한해 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후속조치도 동일하게 적용
- 다만, 미측정 종목은 결과 입력하지 않고 입력누락학생으로 조회되기는 하나 마감처리는 가능
- 특수교육대상자는 학생의 상황에 따라 측정할 수 있는 종목은 측정해야 하며, 측정이 불가능한 종목은 대상자 및 사유를 내부결재를 득함.

8. 실제 학생 수와 통계의 수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처리방법은?

- 전입생에 대한 자료를 그대로 반영할 경우 전입생의 통계는 이전 학교에서 집계되어 해당학교의 통계에 나타나지 않음
- 전학생에 대한 부분도 확인하여 통계의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

9. 학기말 PAPS 결과처리와 교육청 보고 순서를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각 반 담임이나, 또는 체육전담선생님의 PAPS 측정 후 측정결과입력이 끝나면

- 1) 나이스 > PAPS > 통계 및 현황 > 입력누락학생조회 (누락학생 입력)
- 2) 나이스 > PAPS > 마감관리 > 입력마감 > 측정마감 > 기안문작성
- 3) 나이스 > PAPS > 통계 및 현황 > PAPS통계 > (상단) 통계생성,통계조회 > 기안문작성 > 교육청 전송(반드시 확인)

10. PAPS에 필수평가가 있고 선택평가가 있는데, 선택평가는 해야 하는지 안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필수평가는 꼭 해야 하지만, 선택평가는 안 해도 됨

11. 전학생이 왔는데 PAPS 일부 종목만 측정기록이 입력되어 있어서 입력 누락학생으로 남고, 기록할 수 있도록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학교와 측정종목이 다를 경우에 일부종목의 기록은 입력되지 않으므로,

- 1) PAPS > 측정결과입력 > 전입생자료삭제
- 2) PAPS > 측정결과입력 > 개인별평가에 다시 우리 학교 종목으로 측정 후 입력

12. 초등학교 PAPS 학교정보공시 자료검증에서 “3학년 ○개 반의 팝스 지수 측정이 미마감 상태입니다.”는 오류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는?

초등학교 3학년은 PAPS 선택 사항이므로, 4학년에 대해 PAPS 측정을 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두고 [자료취합] - [자료등록] 과정을 진행

13. PAPS 측정 시기와 교육청 전송 시기는 언제인가요?

- 정시측정은 학년 초 3~5월 중 연 1회 실시하고, 수시측정은 7월, 9월, 11월 3회 실시를 권장하나 학교별 변경 가능
- 학교별 측정 결과를 입력한 후 입력마감과 측정마감 후 1차 마감(2025.8.21.까지), 2차 마감(2025.11.20.까지) 나이스상에서 교육청으로 전송 처리

14. 우리 학교는 정시측정을 학기초 5월에 했는데, 그 이후에 측정기록이 없이 전학 온 학생은 측정날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정시측정일의 의미는 그 해를 통틀어 의미함
예) 2025년도 5월 15일이 정시 측정일이었다는 것은 2025학년도를 의미함 그렇기 때문에 측정일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됨
- 언제 전학을 왔는지 측정을 안 하고 왔다면 정시측정일은 신경 쓰지 말고 정시측정에 기록

15. PAPS 수시 측정 자료를 정시 측정 자료로 반영하는 방법은?

- 나이스 PAPS - 측정결과입력 - 일괄입력- 반영할 수시자료 선택- 왼쪽 상단 '수시자료 정시로 취합'
- 이 경우 수시입력자료가 모두 정시로 취합되기 때문에 기존 정시 입력자료가 삭제됨
- 기존 정시입력 자료가 삭제되면 안 되는 경우 미리 백업해야 함.

16. 전입 온 학생의 PAPS 필수평가 종목이 우리 학교의 평가 종목과 다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필수평가의 체력 요소 안의 들어가는 측정 종목이면 달라도 상관없음(예-심폐지구력 검사항목인 ① 왕복오래달리기 ② 오래달리기-걷기 ③ 스텝검사 중 1가지만 측정하면 됨)
- 필수평가(심폐지구력, 유연성, 근력 및 근지구력, 순발력, 비만)는 모두 측정되었는지 확인

17. PAPS 수시측정은 정시측정 학생들 중 4~5등급 아이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요? 4~5등급 혹은 5등급이 하나라도 있는 학생은 전부 시행해야 하는 것인가요?

- PAPS 수시측정은 학교별 필요에 따라 수시로 측정하는 것이며 따로 대상을 정해 두지는 않음
- 학생들의 지속적인 체력 관리와 그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자유롭게 활용 권장
- 하지만 최종적인 측정 결과는 정시측정에 입력

18. 교육청으로 통계 결과 제출 이후 수정 내용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제출기한 1차 마감(2025.8.21.까지), 2차 마감(2025.11.20.까지) 이전이라면 NEIS 상의 통계생성 승인요청 기결 취소한 후, 측정마감 기결 취소를 하면 수정 및 재입력 가능, 수정한 후 제출 절차대로 다시 통계자료 제출
- 제출기한 1차 마감(2025.8.21.까지), 2차 마감(2025.11.20.까지) 이후에는 위의 방법대로 학교 자체적으로 수정 가능하나 교육청으로 통계자료 제출 불가능하므로 이와 같은 사유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요망
- 제출기한 1차 마감 이후 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 전송을 위해 도교육청 1차 마감처리(2025.8.22.~9.10.)와 2차 도교육청 마감처리(2025.11.21.~2026.2.28.)를 할 예정이므로 일정에 유의할 것

[참고자료 1]

마감관리

1. 입력마감

- ▶경로: [학교별업무담당자] >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 [마감관리] > [입력마감]
- ▶기능: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측정결과를 모두 입력한 경우 입력마감 처리

입력마감
> >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 마감관리 > 입력마감
A A
🔍 🗨️ 📄 📞 📧 🌟
조회숨김

*학년도 2024
*학년 5
*측정회차 2024정시1차-정시-2024.05.15
🔍 조회

※ 측정 마감이 되어 있으면 입력 마감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측정 마감을 먼저 취소하고 입력 마감을 취소해야 합니다.

입력마감
입력마감취소

	학년	반	입력마감상태	측정현황(측정학생수/전체학생수)
<input type="checkbox"/>	5학년	3	마감	측정완료(19/19)
<input type="checkbox"/>	5학년	2	마감 전	측정미완료(6/20)
<input type="checkbox"/>	5학년	1	마감	측정완료(19/19)

- ①② [입력마감] 메뉴에서 '학년도, 학년, 측정회차'를 선택한 후 {조회}버튼을 클릭함.
- ③④ 입력마감이 필요한 해당 학급을 선택한 후 {입력마감}버튼을 눌러 마감 처리함. 자료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입력마감취소}버튼을 클릭한 후 수정이 가능함.

🔗 활용 가이드

■ '측정미완료'로 표시되는 경우 처리 방법

- ▶ '측정현황(측정학생수/전체학생수)'에 '측정미완료(측정학생수/전체학생수)'가 붉게 표시되면 해당 학급에 미측정 학생이 존재하는 것임.
- ▶ '측정미완료(측정학생수/전체학생수)'를 클릭하면 '입력누락학생상세보기' 팝업창이 나타나고 학급의 입력누락 학생 정보가 조회됨.
- ▶ 입력 누락 학생의 미측정 종목을 확인하고 학생의 측정 결과값을 입력한 후 {입력마감} 처리함.

■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입력마감 후 자료 수정 방법

- ▶ 자료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입력마감}과 {측정마감} 여부를 확인해야 함.
- ▶ {측정마감취소}와 {입력마감취소}를 진행한 후 대상 학생의 측정 결과를 수정함.

2. 측정마감

- ▶ 경로: [학교별업무담당자] >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 [마감관리] > [측정마감]
- ▶ 기능: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측정결과를 모두 입력마감한 경우 측정마감 처리

1 2 3 4 5

※ 입력마감이 되어야 측정마감이 가능합니다. 반별 입력마감은 마감관리/입력마감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입력	학년	반	입력마감상태	측정마감상태
<input type="checkbox"/>	5학년	3	마감	마감 전
<input type="checkbox"/>	5학년	2	마감	마감 전
<input type="checkbox"/>	5학년	1	마감	마감 전

- ① [측정마감] 메뉴에서 '학년도, 학년, 측정회차'를 선택한 후 {조회}버튼을 클릭함.
- ③④ '입력마감' 여부 확인 후 측정마감을 진행할 학급을 선택하여 {측정마감}버튼을 클릭하여 마감 처리함. 자료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측정마감취소}/{입력마감취소} 후 수정이 가능함.
- ⑤ {승인요청}버튼을 클릭하여 '학생건강체력평가' 기안문 상신을 진행함.

Q&A

[PAPS 통계/제출] 메뉴에서 기안문 상신을 한 후 교육청 전송을 진행했습니다.
자료 제출 후 수정 사항 발생 시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 측정 마감과 PAPS통계 마감을 상신한 담당자는 '나이스 상신함'에서 역순으로 기결취소를 한 후 측정마감과 입력마감을 취소하여 측정 결과의 수정을 진행함.
- ▶ 수정이 완료되면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 [마감관리] > [입력마감] 메뉴에서 입력마감을 진행함.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 [마감관리] > [측정마감] 메뉴에서 측정마감 후 승인요청을 통해 기안문을 상신함.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 [통계및현황] > [PAPS통계/제출] 메뉴에서 통계 생성 후 승인요청을 통해 기안문 결재를 득한 후 교육청 전송을 재진행함.
- ▶ 도교육청에서 PAPS통계 취합을 마감한 상태에서는 해당교의 수정 내용이 경기도 PAPS 통계에는 반영되지 않으므로 부득이한 경우에만 수정 처리 요망

[참고자료 2]

평가결과조회

- ▶경로: [학교별업무담당자] >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 [평가결과조회] > [학급별조회]
- ▶기능: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측정결과 세부 정보 확인

1. 학급별조회

가. 건강체력평가

1 학급별조회

2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 평가결과조회 > 학급별조회

1 *학년도 2024 *학년 6 *반 1 *측정회차 2024정시1차-정시-2024.05.15

3 ※ 전종교의 측정결과는 평가자료 보실 수 없습니다.

3 건강체력평가 심폐지구력성일평가 체지방률평가 자세평가 자기산체평가

4 19

5 통계 출력 평가지앞면 평가지뒷면 평가지(양면)

번호	성명	건강체력평가		심폐지구력		유연성		근력·근지구력			순발력		비만											
		점수	등급	왕복오래달리기(회)	오래달리기경기(분,초)	스텝검사(PEI)	점수	등급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cm)	총합 유연성(점)	점수	등급	(무릎대고) 팔굽혀펴기(회)	윗몸말아올리기(회)	약력(Kg)	점수	등급	50달리기(초)	제자리멀리뛰기(cm)	점수	등급	BMI(kg/m ²)	점수	등급
1	김	36	4	40			6	4	12.7		17	1			19.8	9	3	13.1		4	4	33.3	0	고도비만
2	나	36	4	64			10	3	-5		1	5			20.9	10	3	9.38		12	2	26.5	3	경도비만
3	신	59	3	100			16	1	9		16	1			17.7	8	3	10.25		7	4	20.4	12	정상
4	신	59	3	147			20	1	4.8		11	3			15.8	6	4	8.39		18	1	13.5	4	마름
5	엄	56	3	78			12	2	5		12	2			25.5	13	2	9.42		11	3	15.3	8	정상
6	원	82	1	147			20	1	20.6		20	1			21.8	11	3	9.05		13	2	17.9	18	정상
7	이	42	3	65			10	3	1		8	3			27.3	14	2	10.64		7	4	24.7	3	경도비만
8	이	66	2	116			20	1	7.2		14	2			14.5	5	4	9.53		11	3	19.5	16	정상

- ①② [학급별조회] 메뉴에서 '학년도, 학년, 반, 측정회차'를 선택한 후 {조회}버튼을 클릭함.
- ③④ <건강체력평가>탭을 클릭하면 해당 학급의 건강체력평가 측정결과 정보가 나타남.
- ⑤ {통계}, {출력}버튼을 클릭하면 측정자료의 저장 및 출력이 가능함. 평가지 세부 확인이 필요한 대상 학생을 선택하고 {평가지 앞면}, {평가지 뒷면}, {평가지(양면)}버튼을 클릭하면 대상 학생의 측정 결과 평가지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함.

2-2 여학생 체육 활성화

① 여학생 체육활성화 방향

가. 추진 근거 : 학교체육진흥법

제13조의2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 ① 교육부장관은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수립하여 교육감 및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학교의 장은 기본지침에 따라 매년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④ 교육부장관은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체육 교재, 기자재, 용품 등의 확보기준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 ⑤ 제2항에 따른 평가 방법 및 항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6.2.3] [[시행일 2017.2.4]]

나. (법제화)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관련 학교체육진흥법 개정

- 학교의 장은 시·도교육청의 기본지침에 따라 매년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의무화 (학교체육 진흥법 제13조의2(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시행일 '17.2.4.]
- 학교의 장은 재학생 남녀학생 비율에 따라 소속 학교의 학교스포츠클럽을 여학생 비율 이상 운영*하되 해당 학교의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으로 운영 의무화 (학교체육 진흥법 제10조 제5항)
(*예시) 재학생 남녀학생 비율이 6 : 4일 경우 소속학교 학교스포츠클럽 10종목 운영시 4종목 이상은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으로 운영
- 여학생 선호 종목 수업 전개 및 감성(emotion)을 끌어낼 수 있는 스포츠 환경 재구성
- 여학생 선호종목 조사를 통해 희망하는 종목* 중심 수업 운영으로 여학생의 만족도 및 적극적 참여 유도 (* 사격, 스케이트, 수영, 요가, 라켓스포츠, 댄스스포츠, 구기종목 등('14 여학생 체육활동 분석))
- 남녀공학의 경우 여학생의 체육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학교별 '여학생 체육활동의 날' 지정 운영 권장 (※ 매주 특정 요일(예: 수요일)은 체육관, 운동장 등 학교체육시설 여학생 우선 사용)
- 여학생들이 체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캠페인 전개, 여학생 스포츠 행복지수 활용** (여학생 스포츠 행복지수 개발 정책 연구('15): 정책연구시스템(프리즘 탑재완료)

자율적 여학생 체육활성화 운영

- (프로그램)여학생 스포츠대회 개최, 여학생 체육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 융합형 스포츠체험 프로그램, 신체활동 다이어리 제작, 여학생 특화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등
- (사례공유) '여행하까?' (여학생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학교스포츠클럽 카페) (<http://cafe.daum.net/girlstoppe>)
-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여학생 학교스포츠클럽 카페 (사례공유, 자료공유, 여학생들의 소통, 공감의 장)

- (교육과정 연계 여학생 체육 활성화) 남녀합반에서 학생들이 희망하는 경우, 남녀 분리 체육수업 또는 선택형 체육수업 운영으로 여학생들의 적극적 체육수업 참여유도
 - ※ 여학생의 남녀 분리 수업 희망 비율 62.8% ('14.4월 설문조사 결과)
 - ※ 체육교구 및 수업자료 : 남·여 혼성수업 방안, 체육교구와 수행평가 도구 개발 등
- (초등 저학년 체육 활동 활성화) 여학생들은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의 체육활동 경험이 2차 성징 이후 지속적인 체육활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초등학교 1학년부터 대근활동 위주의 체육프로그램 운영
- (학교체육 활성화 학교)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 학교여건에 맞는 여학생 체육활동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여학생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체육수업을 통해 준비할 수 있는 종목으로 반 대항 교내 리그 활성화 및 지역리그 활성화를 통해 여학생의 스포츠활동 참여기회 확대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 여학생 선호 종목(라켓스포츠, 댄스스포츠, 레저스포츠 등) 운영

다. 역량중심 교육과정 운영으로 여학생 신체활동가치 내면화를 중시

- 미래 학습자에게 필요한 역량을 기르기에 적합하도록 개발되거나 설계된 교육 과정으로 학습자가 교과 내용 지식의 습득을 넘어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거나, 구체적인 문제해결 과정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자원을 동원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도록 돕는 교육과정
- 창의지성교육 실현을 통해 여학생들의 비판적(반성적, 성찰적)인 사고 (critical thinking) 능력과 지식을 소화하고 스스로 높은 차원의 지혜와 지성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 신장

건강한 생활을 위한 「자기주도학습능력」

- 자기주도학습능력, 자기관리능력, 협력적 문제발견 해결능력, 문화적소양능력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한 「대인관계능력」
-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민주시민의식, 문화적소양능력

라. '일방향식'의 수업 전개보다는 '소통'할 수 있는 수업장 마련

-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사가 소통 할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해야 한다.
- 배우면서 존중받는다 라는 느낌을 받도록 여학생의 자존감을 높여준다.
- 여학생과 공감할 수 있는 것들에 함께 관심과 흥미를 공유할 수 있다.

「공감」, 「소통」의 교수-학습활동 필요

마. '성취 가능한 과제'를 선정하여 여학생들에게 「자신감」 신장

- 교사중심의 가르치기 편한 과제에서 탈피, 여학생이 성장할 수 있는 과제 선정
- 교사-학생이 '함께 만들어가는 수업', 여학생 스스로 '만들어 가는 수업' 지향

여학생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과제를 부여하여
「자신감」과 「성취감」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큰 교육성과

바. 언제 어디서든 친밀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학교체육 환경 조성

- 단위학교 수준에서의 여학생을 고려한 수업환경 조성
- 학교 생활 속에 체육활동을 부담 없이 즐기고 경험할 수 있는 시공간 확보

여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돕고, 단위학교 수준에서 다양한 '직·간접적 환경' 제공, 교사의 '다각도적인 노력'

사. 현대화된 체육 시설과 용구의 변화

- 여학생을 고려한 다양한 차원의 교육내용, 교수 - 학습방법을 전개, 이에 적합한 수업 기자재 확보와 개선 노력
- 전문화된 체육환경을 제공하여 여학생의 참여 동기를 높이고, 평생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틀을 제공. 여학생들이 현대화된 체육 시설과 용구를 통해 배우고, 익혀, 생활화하는 체육교육으로의 전환
※ 여학생들에게 감추어 졌던 신체활동 용구를 '밖으로 표출'시키는 노력이 필요

아. 여학생을 위한 교과 교육활동의 변화

- 교육과정 분석, 교육과정 재해석(역량중심교육과정 적용) 후 체육수업에 접목 가능한 '핵심역량' 요소를 추출하고, 이에 맞는 수업모형, 수업 활용모듈을 선택하여 「배움중심 체육 수업 설계」
- 교육과정 재해석 → 단위학교 핵심역량 추출·적용 → 교육과정 재구성 → 배움중심 「체육」 수업을 위한 교수-학습과정안 작성·시행

자. 여학생을 위한 교과외 교육활동의 변화

- 시기, 내용, 방법, 형식에 구애 없이, 신체활동, 스포츠를 매개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특색 있는' 내용으로 운영
- 창의적 체험활동 (행사, 동아리, 학교스포츠클럽 등)과 연계

② 여학생 체육활성화 추진과제

가. 과거 체육이 교육이 아닌 훈련이나 체력단련이 체육이 본질이라는 개념적 시각 에서 벗어나 학습자 능동적인 체육학습을 통해 경험을 구성해 나아가는 과정에 관심. 배움중심수업을 통해 학생, 교사 관계 형성에 학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수업의 분위기와 상호관계 형성이 수평적인 관계로 연결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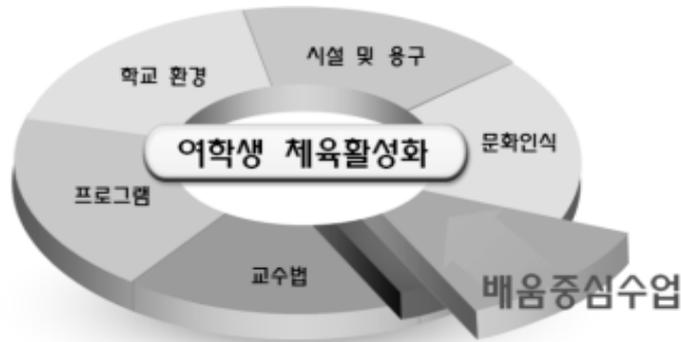
※ 여학생이 신체활동의 '중요성'을 알고, '즐거움'을 느끼며,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수업과정, 분위기와 수업환경을 역량중심교육과정을 통해 제시

나. 여학생의 체육수업 참여에 대한 문제를 남학생과 비교해 상대적인 소외를 당한 결과라거나 왜곡된 성역할 교육 등에서 원인을 찾는 데에서 여학생의 문화적 인식의 전환 필요. 여학생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노력 등에 수업에 참여하는 이들이 함께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여학생이 스스로 극복하고 성취해 나아가도록 방법적 지식의 습득, 창의적 문제 해결능력 신장을 위해 노력

다. 여학생을 고려한 체육 환경(시설, 용구 등) 조성을 통해 전문화(professional)된 환경 안에서 여학생들은 스스로 참여 동기를 높이고, 나아가 미래에 스스로 스포츠에 대한 자신감 형성에 기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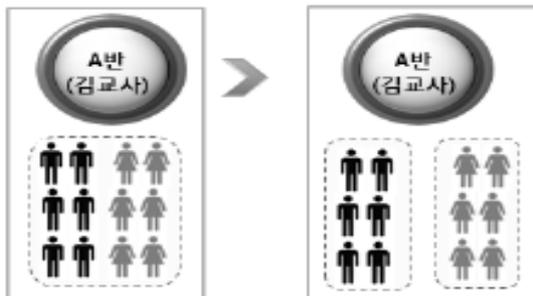
라. 정규교육과정(역량중심) 재구성 및 교과 외 교육활동 운영과정에서 여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시

- 여학생을 고려한 지도법, 여학생 상호작용, 창의적인 교수-학습설계, 여학생을 고려한 수업환경개선모델, 혼성학급에서 여학생을 고려한 수업사례 보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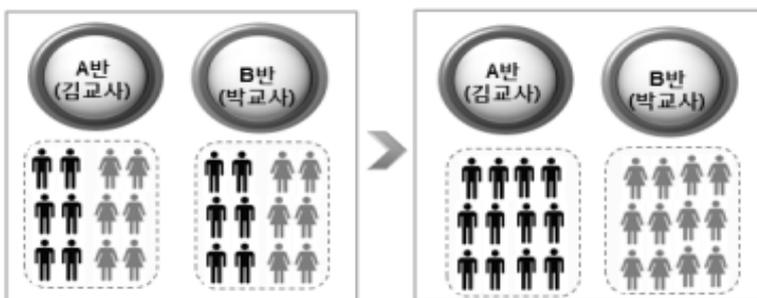
③ 여학생 체육 활성화 모둠편성 방법

남녀 분리수업의 사례 1 동일학급 내에서 남녀를 분리하여 모둠을 편성



- 한 학급 내에서 모둠을 분리 (남학생은 남학생끼리, 여학생은 여학생끼리 구성)
- 한 명의 교사가 남학생 모둠과 여학생 모둠으로 나눠서 가르치는 형태이다.

남녀 분리수업의 사례 2 두 학급 합반 후 남녀 분반하여, 두 교사가 따로 지도



- 두 개의 혼성 학급(A반, B반)을 합반으로 시간표를 편성한다.
- 그리고 남학생반과 여학생반으로 나눈 후, 각각 ‘김’교사와 ‘박’교사가 따로 가르치는 형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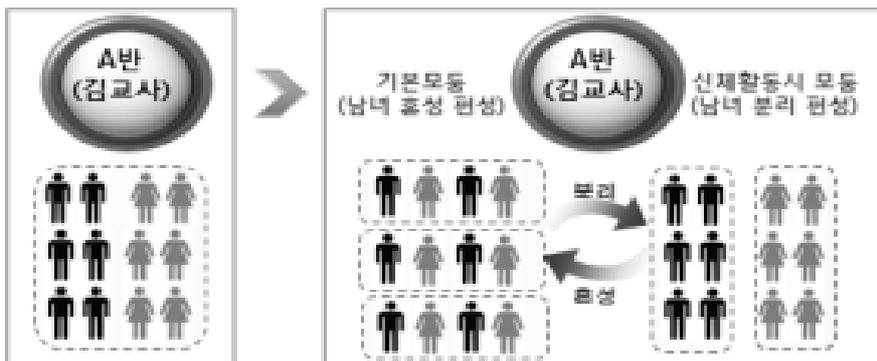
남학생들에 비해 여학생이 차별받는다라는 입장에서 볼 때 남녀학생의 분리 또는 분반 수업은 여학생도 동등한 운동기능과 신체활동을 제공받을 수 있었다는 데 효과가 있었다. 또한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에도 수월하였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바라보아야 할 지점이 있다. 체육교육이 신체활동과 운동기능이 전부인가, 그래서 우리의 학생들을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이분하여 바라보아야 하는가?

- 양성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소통적 체육수업
- 기능중심이나 체력중심의 편향된 수업에서 벗어나 운동소양과 운동향유의 다양한 체험 활동을 경험하도록 하는 융합적 체육수업
- 체육을 통해 남과 여, 숙련자와 미숙련자, 선호자와 비선호자 등에 따른 나오는 다른 상대를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정서적인 내용을 담은 체육수업
- 남학생과 여학생들이 서로 가르쳐주고 배우는 아름다운 관계 맺기를 할 수 있는 체육수업

체육 교육이 추구하는 인간상(全人)으로의 성장을 위해 남학생과 여학생을 ‘어떻게 하면 따로 떨어뜨려 놓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함께 공동의 문제와 목표를 이루는 데 협력적 집단지성의 동반자 관계를 만들 것인가’로 체육수업의 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여학생들과 남학생들은 그들이 그 동안 겪어온 경험의 차이로 인하여 체육에 대한 인식과 받아들이는 방식 그리고 학습 태도에 차이가 있을 때 이를 고려한 모둠 편성의 사례를 하나 제시하고자 한다.

남녀 분리수업의 사례 3 동일학급 내에서 남녀 혼성 모둠, 특정 활동시 남녀 분리



- 한 학급 내에서 기본 모둠은 혼성으로 편성한다.
- 대부분의 활동은 주로 남녀 혼성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 기본 기능이나 간이게임을 혼성으로 진행하면서 서로 가르쳐주고 배우는 존중하는 관계 맺기를 강조할 수 있다. 단, 실전 게임과 같은 신체활동이나 남녀 활동의 차이가 큰 내용의 활동에서는 분리할 수 있다.

3 경기학생스포츠센터 운영 및 중·고등학교 IT활용 체육교실 지원

3-1 경기학생스포츠센터 운영 강화

「경기학생스포츠센터」 = “학교체육 연구·연수·체험의 복합 R&D 센터”



가. 목적

- 스포츠·체육 체험, 연구 및 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미래체육의 선도적 역할 수행

나. 추진 경과 및 현황

- 2018. 3월: (가칭)체육건강교육진흥센터 설립 기본계획(안) 수립
- 2020. 4월~2021.2월: 리모델링 공사 시행 및 준공 완료, 디지털 시스템 구축
- 2021. 3월: 센터 개관, 학생스포츠 체험, 교사 연수 및 주제별 연구 시행

다. 시설 현황

- 위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 138번길 23
- 규모: 대지면적 12,972.3㎡, 연면적 6,495㎡
- 구축시설 : 4개층, 22실

라. 센터 운영(선택형)

주요 내용	이용자 선택형 스포츠센터 운영
대상	경기도 관내 초·중학생, 교사, 학부모 등
운영 내용	학생 스포츠 체험, 교사 역량 강화 연수, 학생 대상 주제별 아카데미 등

마. 참여 유형별 이용 안내

* 체험유형 1 - 놀이형 체험

위치	체험실	체험내용
1층	바이크 레이싱 ZONE	- 바이크 이용 전동 미니카 레이싱
1층	융복합스포츠 콤플렉스	- 개인 수준을 고려한 농구 체험, 소강당 규모 스포츠 체험
2층	세계로/미래로 융합체험실	- 드리블, 킥, 던지기, 슛 등
4층	다목적 실기연수실2 (스타디움)	- 디지털+아날로그 결합형 구기 스포츠 체험

* 체험유형 2 - 학생건강체력 향상 체험

위치	체험실	체험내용
3층	GX룸 1	- 신체 단련 + 종합 체조 활동
3층	GX룸 2	- 디지털+아날로그 결합형, 기초체력 향상 종목 체험
3층	GX룸 3	- IT 장비(로잉, 싸이클 등) 활용 체력 증진 활동
3층	GX룸 4	- 건강과 안전을 위한 학생 연수 및 보조 체조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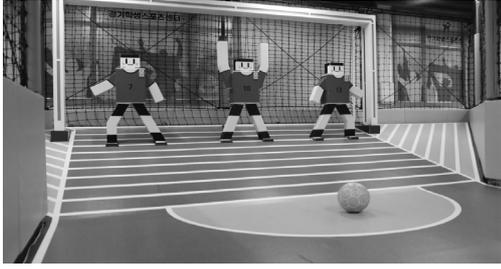
* 체험유형 3 - 스포츠 진로형 체험

위치	체험실	체험내용
1층	융복합스포츠 콤플렉스	- 스포츠 관련 현장 스케치 활동 (촬영, 중계, 행사 진행 등)
2층	스포츠미디어실, 다락방미디어실	- 스포츠미디어 체험, 제작 (아나운서, 해설, PD 등)
3층	스포츠창작실, 스포츠메이커스페이스	- 상상력과 창의력 구상 및 표현, 제작 가능

* 연수(연구)형 - 스포츠(체육) 연수, 연구형 공간

위치	체험실	체험내용
4층	소그룹 나눔실	- IT기반 모둠별 연수, 연구활동
4층	다목적 실기연수실 1, 2	- 스포츠 실기 연수 공간
4층	스포츠 국제회의실	- 국내외 온라인 원형 화상 회의 공간
4층	글로벌 강연장	- 국내외 온라인 TED형 강의 공간

바. 층별 시설 이용 안내

공간	사진	활동내용	가능 인원
1층 (융복합 컴플렉스)		[체험실] 시청각 자료 시청, 농구형태 게임, 레크레이션 (스카프, 두더지굴, 풍당풍당 등)	20~ 30명
2층 (미래로 세계로)		[체험실] (패널티킥) 일정 거리에서 앞에 있는 수비수를 피해 골을 넣는 프로그램	1~4명
		[체험실] (플라잉 디스크) 랜덤으로 들어오는 3가지 원안에 플라잉 디스크를 넣는 프로그램	2~8명
		[체험실] (터널 축구) 꺾여있는 지형을 이용한 축구를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2~8명
2층 (스포츠 미디어실, 다락방 미디어실)	 	[체험실] 해설, 캐스터, 편집 아나운서, 스포츠PD, 직업체험 해보기	20~ 30명

공간	사진	활동내용	가능 인원
2층 (스포츠 아고라)		<p>[회의·강의실] 각종 주제별 발표회, 강의 장소로 활용</p>	40~60명
3층 (GX1-체조장)		<p>[체험실] 다양한 형태의 체험 & 종합 체조(타잔놀이, 구르기, 그물타기, 핸드스프링, 평균대, 에어매트를 이용한 기계체조 체험하기)</p>	30~40명
3층 (GX2)		<p>[체험실] (사이드 스텝) 4가지 발판위에 랜덤으로 들어오는 발판을 빠르게 발로 밟는 프로그램</p>	10~20명
		<p>[체험실] (제자리 멀리뛰기) 발바닥 모양에 서서 시작 소리와 함께 힘차게 뛰고 난 후 오른쪽 TV 화면에 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p>	
		<p>[체험실] (순환식 달리기) IT 장비를 접목시킨 스테이션이며, 장애물을 넘거나 방향을 전환하는 순환 프로그램</p>	
3층 (GX3)		<p>[체험실] 체력단련을 목적으로 한 크로스핏 형태의 운동 헤라핏 (심박계) 착용 (로잉, 바이크, 철봉, 매달리기, 닌텐도 스포츠 활동)</p>	20~30명

공간	사진	활동내용	가능 인원
3층 (스포츠창작실)		[체험실] 힙합, K팝, 댄스배우기, 요가, 필라테스, 발레 등 다양한 활동	20~ 30명
3층(GX4)		[체험실] 시청각 자료 시청 및 보조 체육 공간(탁구, 미니축구, 3D 스포츠 활동)	20~ 30명
4층 (소그룹나눔실)		[회의·강의실] 각종 주제별 발표회, 강의 및 연수 장소로 활용	30~ 40명
4층 (국제회의실)		[회의·강의실] 각종 주제별 발표회, 강의 및 연수 장소로 활용	20~ 30명
4층 (글로벌강연장)		[회의·강의실] 각종 주제별 발표회, 강의 및 연수 장소로 활용	40~ 50명

사. 경기학생스포츠센터 운영 개요

- 운영 내용: <체험·연수·연구> 영역 프로그램 운영, 센터 시설 탐방 및 회의실(체험실) 개방
- 영역별 프로그램 구성 내용(추후 세부계획 수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구분	영역	프로그램 구성 내용(예시)
체험 프로그램	학생건강체력 향상형 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 공간: 센터 내 모든 체험실 • 프로그램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건강체력 향상을 위한 학급별 체험 - 바이크 이용 레이싱 활동, 농구형 게임, 스포츠 기초 체험 등
	지역맞춤형 팀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 공간: 센터 내 모든 체험실 • 프로그램 내용: 학생주도 프로젝트 활동을 실천하는 지역별 특색 교육프로그램
	특별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 공간: 센터 내 모든 체험실 • 프로그램 내용: 스포츠 기반 인성교육 프로그램 등
	탐방 안내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 공간: 센터 내 모든 체험실 • 프로그램 내용: 스포츠 활동 공간 재구성 사례 안내, 실별 장비 구축 상황 공유 등
연수·연구 프로그램	실기중심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등 체육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근거한 실기 중심 내용
	스마트 체육 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 체육교구 활용 체육교수 역량 강화(디지털 콘텐츠+대근육 신체활동)
	교육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계열 진로 교육 및 부상 방지 프로그램 •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 지도자 대상 인권(인성) 및 진로 교육 • 학생선수 부상 방지 및 스포츠 심리 프로그램
	현장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기반 인성교육 프로그램 또는 건강체력증진 프로그램 • 주제별 체육수업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사례나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 기반 인성교육(또는 건강드림정책 프로그램) • 체육교육 사례별 우수사례 나눔 협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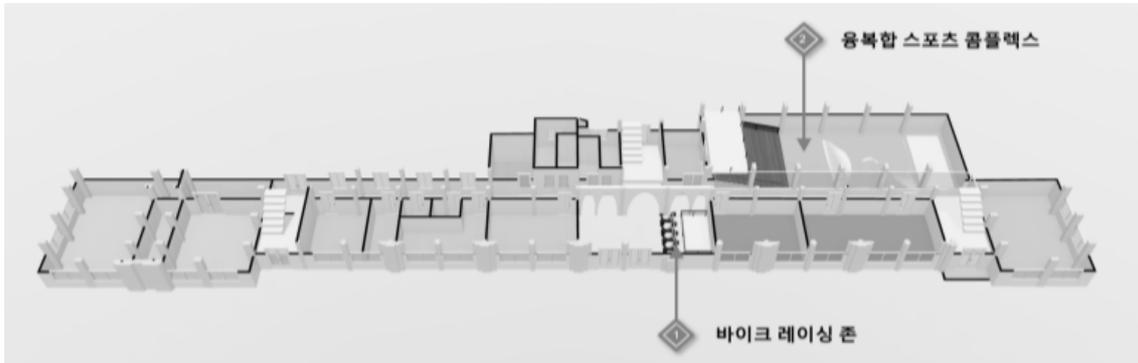
<체험 운영시간(안) 테이블>

	월	화	수	목	금
오전 (9:00~12:00)	오전반	오전반	오전반	오전반	오전반
오후 (13:00~16:00)	오후반	오후반	오후반	오후반	오후반
방과후 (17시~18시)	선택	선택	선택	선택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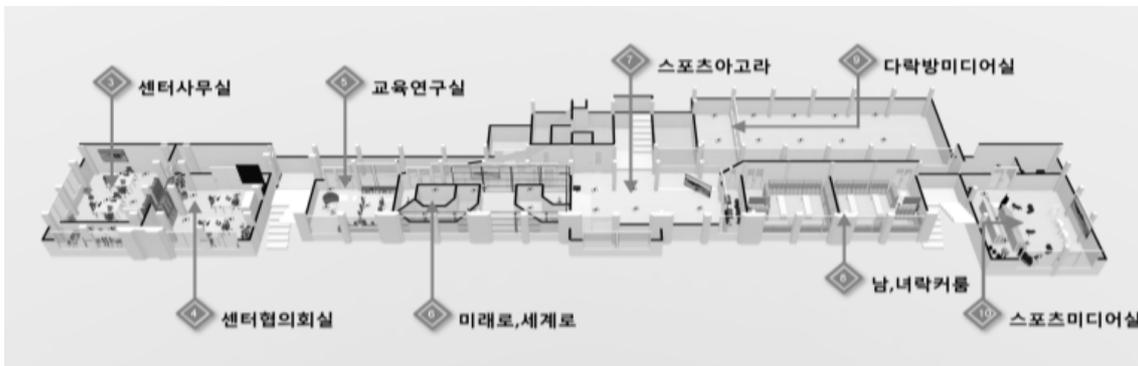
운영 방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초·중학교 학생 ○ 인원 : 오전, 오후 각 최대 2학급 ○ 이용 시간 : 1회 약 2시간~2시간 30분 소요
-----------------	--

아. 경기학생스포츠센터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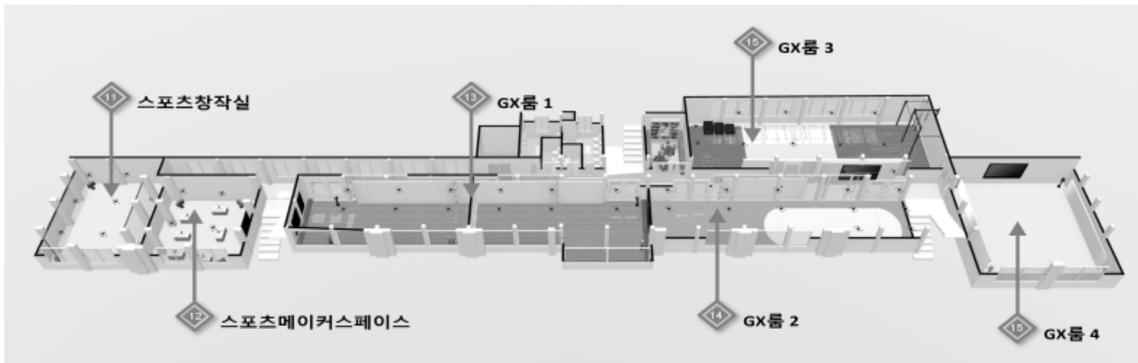
□ 1층



□ 2층



□ 3층



□ 4층



3-2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 지원

✓ 추진 근거

- 경기도교육청 학교스마트체육지원 조례[시행 2021. 7. 14.]
- 학교 미디어 교육 내실화 지원 계획(교육부, 2019.6.)

용어 정의

학교 스마트체육(조례 제2조)

1. “스마트체육”이란 지능정보화 시대의 AI, 자동화로봇, IoT 등 ICT를 신체활동에 적용하여 네트워크 기반에서 학습자 개개인이 스마트기기 및 콘텐츠를 활용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자기주도적 맞춤형 신체활동을 의미한다.
2. “스마트체육교육”이란 제1호의 스마트체육을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과 수단, 결과를 의미한다.

✓ 추진 방향

-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활용 체육교육 환경 조성
- [디지털 콘텐츠+대근육 신체활동] 결합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학생건강체력 증진
- IT 체육 교구를 활용한 학습 콘텐츠 제공으로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 실현

✓ 추진 목적

- 디지털에 익숙한 학습자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 제공으로 체육활동 활성화 및 다양화
- IT 체육 교구의 즉각적 피드백, 데이터를 활용한 학생 건강관리능력 향상
- 다양한 IOT 체육교육 프로그램 발굴·수집을 통한 미래 체육수업 방향 모색

✓ 세부 추진 계획

1. 스마트 체육교육 활성화 지원

- IT 체육 교구 활용 체육 활성화
 - 디지털 체육 콘텐츠를 활용하여 학생의 학습을 촉진하고 성장을 돕는 체육교육 지원
 - 체육 교육과정 신체활동의 영역별 역량과 학습 내용 요소, 학생들에게 기대되는 수행 능력, 성취기준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교수·학습 과정 설계
- 학생건강관리 역량을 기르는 체육교육 지원
 - [디지털+대근육 신체활동] 결합형 콘텐츠 제공으로 학습자 맞춤형 건강체력 향상 프로그램 개발
 -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학생 주도 맞춤형 신체활동 활성화

2. 학교 스마트체육 교육 역량 강화

- 경기도「IT 체육교육」활성화 지원단 구성 · 운영
 - (구성)
 - 도교육청 : 초·중·고 교사 00명
 - (운영) 교원 역량 강화 연수, 디지털 체육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역할)
 - 교사 간 다양한 수업 경험 및 프로그램 자료 공유
 - IT 체육수업 실천 사례 수집 및 보급 → 에듀테크 체육교육 연구 문화 확산

- IT 교구 활용 체육교육 역량강화 연수 운영
 - (디지털 체육 콘텐츠+대근육 신체활동) 결합형 프로그램으로 구성
 - 2022 개정교육과정 연계 교수학습과정안, 수행평가 계획 수립 및 실천 사례 공유 등으로 구성
 - 학교 현장 체육수업에 적용이 가능한 실제적인 연수 프로그램으로 구성

✓ 기대 효과

- 스마트 기기, 디지털 체육 콘텐츠 활용 체육교육을 통해 학생건강체력 향상
- 대근육 신체활동이 동반된 IT 체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학생 자기주도적 건강관리역량 증진
- 에듀테크 맞춤형 체육교육 모델 발굴 및 보급으로 경기미래체육교육의 선도적 역할 수행

4 경기체육교육 현장 지원 및 점검 등

4-1 학교체육진흥에 관한 조치 점검

✓ 추진 배경

-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학교체육 진흥의 적절한 조치 여부를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점검하도록 법령 개정*

* 학교체육 진흥법 제6조 제3항(신설 2020.10.20.)

- 각급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돕고 학교체육 내실화 도모를 위해 학교체육 진흥 조치에 따른 지표를 반영한 계획 수립·시행

✓ 근거 법령

-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교체육 진흥 조치의 적절성 감독(법 제6조제3항) 등을 **매년 1회 이상**(시행령 제2조의2) 의무 실시

【「학교체육 진흥법」 제6조제1, 3항】

제6조(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체육교육과정 운영 충실 및 체육수업의 질 제고
2. 제8조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 및 제9조에 따라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에 대한 대책
3. 제10조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제11조에 따른 학교운동부 운영
4.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5.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6. 유아 및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7. 학교체육행사의 정기적 개최
8. 학교 간 경기대회 등 체육 교류활동 활성화
9. 교원의 체육 관련 직무연수 강화 및 장려
10. 그 밖에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조치가 적절하게 취하여지고 있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조의2(학교체육 진흥 조치에 대한 감독)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학교체육 진흥 조치에 대한 감독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독은 서면점검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권한 위임)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제11조)에 근거, 학교체육 진흥 조치(동법 제6조제3항)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감독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

✓ 추진 개요

- (교육청) 각급학교가 학교체육 진흥 노력을 자체 추진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예산교부 등 행·재정적 지원 방안 모색
 - 학교의 학교체육 진흥 조치 이행 여부 점검: 연 1회
 - (학교) 점검 지표에 따른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체육 진흥을 위해 자율적으로 노력하고, 이행 사항 자체 점검 및 서면 보고
 - 점검 지표별 이행 항목을 숙지하여 학교체육 활성화 사업추진

✓ 점검 내용 및 방법

- (점검 주체 / 대상) 교육(지원)청 / 초·중·고 각급학교(국립학교 포함)
- (점검 방법) 서면점검(필요시 현장점검 가능) 매년 1회 이상
 - 대상기간: 매년 3월 ~ 익년 2월 말
 - 계획 및 안내: 교육청에서 세부 점검계획을 수립, 사전 안내 후 교육지원청 점검 실시
 - 점검 추진단: 각급학교에서 서면 제출한 점검결과에 대한 내실 있는 검토 실시와 체계적인 후속 조치
- (점검표 제출) 매년 11월 말, 조치사항 점검표
- (작성방법) 정량 및 정성 평가 항목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
 - 정량 평가 항목 근거자료(공문 문서번호(정량) 등)와 정성적인 노력 등 약속
- (후속 조치) 학교체육 진흥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홍보 및 확산하고, 개선사항은 서면 및 방문 컨설팅 등을 통해 보완 조치

✓ 점검 지표 및 내용(교육부)

점검 지표	점검 내용
① 체육교육과정 운영 충실 및 체육수업의 질 제고	<input type="checkbox"/> 점검 세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신체활동과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교수-학습 활동)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자 특성을 고려한 수준별 수업 운영 - 자기 주도적 교수-학습 환경 조성 - 전인적 발달을 위한 통합적 교수-학습 등 •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수업 개선 및 질 제고 관련 논의를 위한 체육교과협의회 개최 <input type="checkbox"/> 근거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교육계획서 또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서, 관련 공문 및 협의록 등
②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및 비만 학생 대책	<input type="checkbox"/> 점검 세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건강체력평가 계획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 학생건강체력평가 결과를 토대로 비만 학생에 대한 대책 수립 및 시행 방안 <input type="checkbox"/> 근거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교육계획서 또는 학생건강체력평가(건강체력) 운영 계획서, 관련 공문 및 협의록 등

점검 지표	점검 내용
<p>③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 운영</p>	<p><input type="checkbox"/> 점검 세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 운영 계획수립과 세부적인 운영 현황 등 * 육성학교만 해당 • 교내 학교스포츠클럽리그 운영 및 활성화 노력 등 <p><input type="checkbox"/> 근거 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교육계획서 또는 관련 계획서, 공문 및 협의록 등
<p>④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호</p>	<p><input type="checkbox"/> 점검 세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선수 정규수업 이수 등 학습권 보장을 위한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회 및 훈련 참가 시 발생하는 수업결손에 대한 보충학습 제공 여부 ※ e-school 운영 등 • 학생선수 인권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실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연 2회) - 학교폭력 예방교육(일반학생과 동일, 연 2회) <p><input type="checkbox"/> 근거 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교육계획서 또는 관련 계획서, 공문 및 협의록 등
<p>⑤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p>	<p><input type="checkbox"/> 점검 세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학생 특성을 반영한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양성평등적인 체육활동 환경 조성* 등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계획수립 등 * 여학교는 5종목, 남녀공학은 2종목 이상 학교스포츠클럽 개설·운영, 여학생 체육활동의 날 제정 운영, 탈의실 확충 등 <p><input type="checkbox"/> 근거 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교육계획서 또는 관련 계획서, 공문 및 협의록 등
<p>⑥ 학교체육 행사의 정기적 개최</p>	<p><input type="checkbox"/> 점검 세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내체육대회 개최,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운영, 체육동아리 활동 운영 등 정기적인 학교체육 행사 개최 계획수립 운영 등 <p><input type="checkbox"/> 근거 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교육계획서 또는 관련 계획서, 공문 및 협의록 등
<p>⑦ 학교 간 경기대회 등 체육 교류활동 활성화</p>	<p><input type="checkbox"/> 점검 세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지원청 단위 학교스포츠클럽리그, 종목별 경기대회, 인접학교 친선 체육대회 참가 등 <p><input type="checkbox"/> 근거 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교육계획서 또는 관련 계획서, 공문 및 협의록 등
<p>⑧ 교원의 체육관련 직무연수 강화 및 장려</p>	<p><input type="checkbox"/> 점검 세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교사(일반교원 포함)의 체육관련 직무연수 참여 권장 <p><input type="checkbox"/> 근거 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공문 및 직무연수 이수증 등
<p>⑨ 그 밖에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사항</p>	<p><input type="checkbox"/> 점검 세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체·덕·지를 겸비한 미래인재로 육성 등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별 특색사업 운영 등 <p><input type="checkbox"/> 근거 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교육계획서 또는 관련 계획서, 공문 및 협의록 등

✓ 행정사항

- 학교체육 진흥 점검 지표 및 내용을 토대로 법령에 따른 학교체육활성화 계획 등 수립, 시행 여부 자체 점검: **2025. 11. 28.(금)까지**
 - 자체평가 환류를 통해 미진한 영역 파악, 차년도 계획 수립 시 반영
- 학교별 학교체육 진흥 조치 점검표 작성 제출: **2025. 11. 28.(금)까지** (학교 ⇒ 교육지원청)
- 교육지원청별 학교체육 진흥 조치 결과 제출: **2025. 12. 16.(화)까지**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 학교체육 진흥 조치 점검표

- 학교명: ○○○학교
 - 평가결과 : 우수(25점)
 - 평가기준

	탁월	우수	보통	노력
일반학교	27 이상	26~23	22~19	19미만
학생선수 없음 또는 여학생 없음(남중, 남고)	24 이상	23~20	19~16	16미만
위의 2가지 모두 미포함	21 이상	20~17	16~13	12미만

Ⅰ 체육교육과정 운영 충실 및 체육수업의 질 제고: 4점

구분	점검 내용	자체 평가 (1/0)	관련 근거
정량 (4)	① 체육수업 시수 확보	1	① 학교 교육계획서(000-1231, 2025.3.24.) ② 체육과 교과협의회 개최(000-1232, 2025.3.24.) ③ 체육과 공개수업 계획(000-1233, 2025.3.24.) ④ 건강체력교실 담당자, 학교스포츠클럽전담교사 0명 지정·운영, (초등체육전담교사 00명 지정) ⑤ 학교체육소위원회 운영계획(0-121, 2025.3.24.)
	② 체육교과 협의회 내실 운영	1	
	③ 체육 업무 담당 교사 지정 유무 - 건강체력교실 담당자, 학교스포츠클럽전담교사	1	
	④ 학교체육소위원회 구성·운영	1	
정성	- 학습자 특성을 고려한 수준별 수업, 자기주도적 교수학습환경 조성, 전인적 발달을 위한 통합적 교수-학습 실시와 관련한 내용 약속		

② 학생건강체력평가 (PAPS) 및 비만 학생 대책: 4점

구분	점검 내용	자체 평가 (1/0)	관련 근거
정량 (4)	① 학생건강체력평가 계획 수립, 시행 (필수평가, 3~5월 시행)	1	① 학생건강체력평가 계획서(0-1234, 2025.3.24.) ② 건강체력교실 운영 계획서(0-125, 2025.3.24.)
	② 학생건강체력평가(수시평가) 실시	1	
	③ 건강체력교실 운영계획 수립, 시행	1	
	④ 1학생 1운동 실시 (계획 포함)	1	
정성	- 학생건강체력평가 및 건강체력교실 운영 관련 우수 사례 등 약술		

③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 운영: 4점

구분	점검 내용	자체 평가 (1/0)	관련 근거
정량 (4)	① 학교운동부 및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계획 수립, 시행	1	①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계획서(0-10, 2025.3.24.) ② 학교운동부 운영 계획서(000-121, 2025.3.24.) ③ 학교 교육계획서(000-1231, 2025.3.24.)
	② 학교스포츠클럽 구성·운영	1	
	③ 교내스포츠클럽 운영	1	
	④ 토요스포츠클럽 운영	1	
정성	- 학교스포츠클럽, 학교운동부 운영, 교내스포츠클럽 운영 내실화 노력, 우수사례 등 약술		

4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호: 4점

(※ 학생선수 없는 학교는 미포함)

구분	점검 내용	자체 평가 (1/0)	관련 근거
정량 (4)	①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실시	1	① 학교폭력예방교육(000-1231, 2025.3.24.) ② 최저학력제 준수, 대회출전확인서 등 ③ 학생선수 e-school 가입, 활용 : 상시학습, run-up과정, ④ 기초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계획 (000-1231, 2025.3.24.) ⑤ 인권교육, 도핑교육 실시 내부결재 ⑥ 학생선수 상담일지 내부결재 또는 나이스 기록 ⑦ 학부모교육, 학교장 간담회, 청렴교육 내부결재 등
	② 최저학력제 준수	1	
	③ 정규수업 참여 후 훈련 지침 준수	1	
	④ 대회출전 허용일수 준수 : 나이스 출결관리 포함	1	
	⑤ (학교운동부) P/F 기초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	P	
	⑥ (학교운동부) P/F 인권·도핑·상담일지 작성 여부	P	
	⑦ (학교운동부) P/F 학부모교육, 학교장간담회, 청렴교육	P	
정성	-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인권보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 등 우수사례 약속		

5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4점

구분	점검 내용	자체 평가 (1/0)	관련 근거
정량 (4)	① 여학생 학교스포츠클럽 구성, 운영	1	① 여학생 체육활성화 계획서(학교스포츠클럽 운영 계획서의 여학생 체육 활성화 포함) (0-120, 2024.3.24.) ② 학교 교육계획서(000-1231, 2025.3.24.) ③ 교내스포츠클럽운영계획(0-1231, 2025.3.24.) ④ 기타 특색 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
	② 교내스포츠클럽 여학생 종목 운영(계획 포함 여부) (학기당 1종목 이상)	1	
	③ 여학생 특색 프로그램 운영 (계획 포함 여부) - 방과후, 토요일스포츠 신나는주말 체육학교 등	1	
	④ 여학생 스포츠클럽 교외 활동 참여	1	
정성	- 학습자 특성을 고려한 수준별 수업, 자기주도적 교수학습환경 조성, 전인적 발달을 위한 통합적 교수-학습 실시와 관련한 내용 약속		

6 학교체육 행사의 정기적 개최: 4점

구분	점검 내용	자체 평가 (1/0)	관련 근거
정량 (4)	① 교내 체육대회 계획 수립(시행)	1	① 교내 체육대회 운영 계획서(0-120, 2025.3.24.) ② 체육주간 운영 내부결재 등 자료
	② 체육주간 운영(계획 포함 여부)	1	
	③ 교내 체육행사 학생참여 활성화 (계획 포함 여부) - 학생심판, 체육대회 참여 기획 등	1	
	④ 체육관련 문화행사 등 운영 (계획 포함 여부)	1	
정성	- 학교체육행사의 내실 있는 운영, 창의적 운영 등 우수사례 약속		

7 학교 간 경기대회 등 체육 교류활동 활성화: 3점

구분	점검 내용	자체 평가 (1/0)	관련 근거
정량 (3)	① 학생체육대회 참가(계획 포함 여부)	1	① 대회출전신청서 공문(000-120, 2025.3.24.)
	② 지역단위 학교스포츠클럽 축제 참가 (리그 및 토너먼트 대회)	1	
	③ 각종 체육(스포츠) 대회 참가 (계획 포함 여부) - 외부대회, 생활체육대회 등	1	
정성	-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 평생체육활동 유도를 위한 노력 등 우수사례 약속		

8 교원의 체육관련 직무연수 강화 및 장려: 3점

구분	점검 내용	자체 평가 (1/0)	관련 근거
정량 (3)	① 교육(지원)청 주관 직무연수 참여 (필수, 원격연수 포함)	1	① 연수이수여부 ② 체육교과연구회 참여 여부 ③ 학교안, 학교밖 학습공동체 활동 여부 등
	② 체육지도 전문성 신장 연수 실시 : 교사 자율 연수(15시간 이상)	1	
	③ 체육교과연구회, 학습공동체 활동	1	
정성	- 체육지도 전문성 신장,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 우수사례 등 약술		

9 그 밖에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각 1점

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시설환경 개선, 지역사회·유관기관 연계 노력, - 7560+운동 실천학교, 여학생체육활성화 특색 프로그램 운영교, 마을단위스포츠클럽 운영 중심학교 - 지역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중심교 - 생존수영교육 내실 운영 노력 등 - 학교운동부(지역기반 스포츠클럽 포함) 육성 노력
----	--

4-2 학교체육소위원회

〈설치근거〉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 16조(소위원회))

경기도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9조(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 목적

학생들의 체육활동 활성화 및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 등 학교 체육교육 강화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설치·운영되는 학교체육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체육교육과정 운영 충실 및 체육수업의 질 제고
- 2) 학생건강체력평가에 따라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에 대한 대책
- 3)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 운영
- 4)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 5)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임용 및 지원
- 6)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 7) 유아 및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 8) 학교체육행사의 정기적 개최
- 9) 학교 간 경기대회 등 체육 교류활동 활성화
- 10) 교원의 체육 관련 직무연수 강화 및 장려
- 11) 그 밖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 구성

-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당연직 위원은 교감, 체육 업무담당 부장으로 한다.
- 3) 위촉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을 포함한 학교체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 4)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 5)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6)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소속 교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 7) 기타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II | 학교스포츠클럽

1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업무흐름도

절차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업무흐름도	운영시기
준비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스포츠클럽 선호 종목 설문조사(여학생 체육활성화 종목 포함) ■ 체육과 교육과정 평가 및 선호 종목 설문조사 ■ 학교스포츠클럽 지도교사 확보 및 선호도 조사 ■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예산 확보 (학교기본운영비에서 학교체육 활성화 예산 3% 이상 확보 권장) ■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계획 수립 (전담교사 지정, 교육과정 외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여학생체육활성화, 스포츠클럽 운영, 교내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운영, 교외 대회 참가 등) <p>※ (교육지원청)은 관내 학교 운영계획 및 활동 등을 서면 또는 현장 점검</p>	2024.12.~ 2025.2.
개설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주 학교스포츠클럽 홍보 주간 ■ 3월 학교스포츠클럽 개설 및 등록(교육행정정보시스템 등록) (학생 희망 선택, 지도교사 위촉 등) ■ 2학기 추가 개설을 희망하는 종목은 2학기 초(9월 예정) 추가 개설 및 등록 <p>※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근거하여 사전 계획에 따라 학교에서 실시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만 기재 원칙</p>	2025.3. 2025.9.
운영단계 (학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외 학교스포츠클럽 종목별 운영 및 누가기록 (오아시스 아침운동, 365+체육온화활동, 기지개체조, 키스런 등) ※ 틈새시간 활용 20분 이상 확보 권장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근거하여 평일 최대 2시간, 주말 4시간 입력 가능 ■ 교내 학교스포츠클럽 리그전 운영(학생자치회 주관 권장) ※ 교내 학교스포츠클럽 리그전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실제 참가자) ■ 교외 권역별 학교스포츠클럽 대교경기 참가 ■ 지역 학교스포츠클럽 리그전(축제) 참가(교육지원청 대회) ■ 경기학교스포츠클럽축제(9월), 전국 축전(10~11월), 부총리배 혼합대회(미정) 참가 ※ 명예교사(학부모, 지역전문가) 위촉을 통한 학생 인솔 가능 ※ 명예교사가 인솔하더라도 지도교사가 경기장에 없으면 안전공제회 지원 제외 ※ (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학생만 해당 종목에 참가할 수 있으니 누락 되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게 필히 안내 및 확인 	2025.3.~ 2025.12.
운영단계 (방학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학 중 스포츠클럽 프로그램 운영 ※ 학생 희망 종목, 계절 종목 등 	2025.7. 2026.1.
정리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학교스포츠클럽 실적 마감(2025.11.30.까지) ■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평가 및 정산 보고 	2025.11.~ 2025.12.



2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2-1 교육과정 외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학교스포츠클럽’이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체육활동에 취미를 가진 같은 학교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학교가 운영하는 스포츠동아리를 의미한다.

1 추진법령: 학교체육진흥법 10조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의무화)

- ①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경우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에게는 학교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지도수당을 지급한다.
- ④ 학교의 장은 학교스포츠클럽 활동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상급학교 진학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을 해당 학교의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3.>

- (학교스포츠클럽)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체육활동에 취미를 가진 동일 학교의 학생으로 구성·운영되는 스포츠동아리를 말하며, 학생선수의 경우 스포츠클럽에 등록하여 활동은 가능하나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참가자격은 참가요강에 명시된 종목별 참가자격 요건에 따름
 - 학생선수 :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 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
 - 학교스포츠클럽활동 : 교내 스포츠 동아리(학교스포츠클럽)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고, 행하는 모든 활동(자체연습, 대회출전, 동아리관련 체험 등의 계획 및 승인이 이루어진 모든 활동을 의미, 단 활동일지, 출석부 등 활동 증빙자료가 있어야 활동시간 인정)

2 학교별 학교스포츠클럽 계획 및 운영(2~3월)

-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계획
 - 학교는 학교스포츠클럽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학생자치스포츠클럽, 여학생 체육활성화 등 다양한 스포츠클럽 관련 활동을 의무적으로 운영한다.
 - 학교자체 기본운영비에서 학교체육 활성화 예산 3% 이상 확보 권장
 - 모든 학생들이 1종목 이상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 학교 규모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 여학생 체육활성화를 위해 여학교는 5종목 이상, 남녀 공학은 2종목 이상 선호종목 운영
 - 학교는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 지정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 종목별 동아리 운영, 다양한 리그전 운영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규칙적인 장기간의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해 체력 향상, 관계성 개선이 될 수 있게 계획을 수립한다.
 - ※ 대회 출전을 목적으로 한 특정 기간에만 운영하는 클럽활동 지양
- 체육과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스포츠클럽 리그전 운영(종목 및 시기 등)

《참고》 학교스포츠클럽의 스포츠 유형

- ▶ (오아시스 아침운동) 정규시간 전 아침시간에 학교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운동 프로그램
- ▶ (함께런) 키즈런+기지개체조를 활용한 초등 맞춤형 프로그램
- ▶ (건강스포츠클럽) 신체 건강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서킷트레이닝, 턱걸이, 버피틴, 플랭크 등
 - ※ 예) 365+체육온활동, 건강체력교실 프로그램
- ▶ (경쟁스포츠클럽) 팀 간의 경쟁적 요소를 바탕으로 하는 축구, 농구, 배구, 티볼 등
- ▶ (도전스포츠클럽) 자기 자신 또는 상대방의 신체적 기량에 도전하는 육상, 사격, 체조, 씨름 등
- ▶ (표현스포츠클럽) 신체의 움직임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치어리딩, 창작댄스, 스태핑, 리듬트레이닝, 방송댄스 등

※ 오아시스 아침운동: 등굣길 아침운동 활성화를 위해 학생과 교사가 경기도교육청 공모전에 출품한 캐치프레이즈 (오늘 아침 시작은 스포츠로!)

- NEIS 체육시스템 '학교스포츠클럽 관리'에 클럽명과 활동시간 기록하여 입력(3,9월 등록) (1시간 이상 활동을 하였을 경우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기록)
- 단위학교에서는 학교스포츠클럽 등록 및 활동내역이 누락되지 않도록 매년 11.30.까지 입력
- 틈새 시간 확보를 통한 활동시간 최대한 확보(1회 최소 20분 이상)
 - ※ 틈새 시간을 활용한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권장을 위하여 연속되지 않은 활동 시간도 NIES상 합산되어 반영됨 (예) 초등학교에 경우 어제 정규 수업시간 전 20분, 오늘 점심시간 20분 활동하였을 경우 활동시간은 40분이므로 1시간 인정(※ 초등학교는 40분을 1시간으로 간주함,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

《참고》 학교스포츠클럽 구성 방식

- (동아리 중심) 동아리 구성원 및 학급 학생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연간 활동계획 수립 및 지도자 위촉 (학부모, 선배, 교사, 지역사회 전문가 등)
- (학급 중심) 학생 수요 및 담임교사의 여건 등에 따라 반별 스포츠클럽 개설 및 활동

※ 명예교사 위촉: 학부모, 선배, 지역사회 전문가를 자원봉사 형태의 명예교사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고, 필요시 학교스포츠클럽 계획에 반영하여 강사비를 지급할 수 있음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 운영

- 학교장은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 ※ 전담교사는 지역 학교스포츠클럽대회, 경기학교스포츠클럽축제(대회) 등에 따른 집중 지도기간에는 내부결재를 통해 추가할 수 있고, 지도수당 지급 시 경기도교육청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준수한다.
- 전담교사에게는 학교 예산 범위에서 소정의 지도수당을 지급한다.
 - ※ 강사비는 틈새시간을 합산해서 지급이 불가하고 아침 및 방과후 최소 1차시를 연속해서 운영해야 지급이 가능함.
- 전담교사의 역할은 교내 학교스포츠클럽 계획(리그전) 수립, 스포츠강사 및 일반교과교사 교내 연수, 교육과정 외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총괄(개설, 지도교사 배치, 점검 등)
 - ※ 경기도교육청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본인이 담당하는 사무에 단순 수당지급은 불가
- 전담교사 지도수당은 학년 초 학교교육계획에 반영하고, 명확한 수업 근거가 있어야 지급이 가능함

교내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활성화(학생자치회 중심)

※ 학교 내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계획 수립 시 교내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내용을 반영하여 NEIS 체육시스템에

학급별로 입력(실제 참가자 입력)

- '1학생 1스포츠 활동' 실현을 위하여 틈새시간, 점심시간, 방과후 시간, 토요일 등을 활용하여 종목 대항, 학급 대항 등 교내 리그전 연중 운영 권장
- 여학생 체육활성화를 위해 여학교는 5종목 이상, 남녀 공학은 2종목 이상 선호종목 운영하고 저학년, 저체력 학생도 참여할 수 있도록 대면, 비대면, 챌린지 등 다양하게 운영
 - ※ 수업-교내스포츠클럽 활동-교외 학교스포츠클럽 리그(축제)와 연계할 수 있게 운영
- 교내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운영 시 학생자치회 주간 계획 수립 및 운영 권장(학생심판 적극 활용)
- 경쟁보다는 스포츠맨십을 통한 상호 존중할 수 있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존중 캠페인 추진 (배려, 존중, 정직, 규칙준수 등)
-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과 연계하여 학교스포츠클럽 교내 대회 운영 권장
- 플라스틱 줄이기 에코캠페인 추진 권장
 - 교내, 지역, 경기학교스포츠클럽축제(대회) 운영 및 출전시 플라스틱 줄이기 등 환경보호 운동 권장
 - 일회용 컵 사용 줄이기, 텀블러 사용, 응원 현수막 대신 전자현수막 활용 등

□ 학생중심 학교스포츠행사 운영

- 학교의 스포츠행사 운영에 '교사 주도형'을 지양하고 '학생이 주관'하는 행사를 추진함으로써 존중과 배려에 기반한 학생중심의 학교체육 문화 정착 필요 (예: 학생회 내 체육부 또는 학생체육회 운영)
- 모든 학교 스포츠행사가 그 주체인 학생의 참여 속에서 만들어지고, 학생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학생중심의 교육 역량가치 지향
- 추진 방향
 - 기획과 운영 단계에 학생참여 유도 및 권한 위임, 신뢰의 사제 관계 프로그램 운영
 - 학생자치회 주도의 자율적인 체육행사를 통해 민주시민 역량 함양
 - 교사 중심의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에서 학생 주도 스포츠행사로 운영

학생중심 스포츠 행사 추진 전략

단위학교 학생중심 스포츠 문화 기반 조성 및 실천

- 1학생 1스포츠활동 활성화
- 학급자치회 및 학생주도의 실질적인 운영
- 계획, 운영 등의 의사결정과정 에 학생 참여보장
- 학생에 의해 기획, 운영되는 학교 스포츠 행사(프로젝트, 이벤트, 문화 등)
- 교육활동과의 연계 학생자치 활동 실천

자율과 참여 중심의 학생자치 스포츠 활동 역량 강화

- (단위학교) 학생자치 중심 민주적 스포츠클럽 운영
- 학생중심 스포츠 활동 담당 교사 역량 강화 워크숍 운영
- 학생자치 스포츠 행사 우수운영 사례 발굴 및 보급
- 학생중심 스포츠행사 운영

학생중심의 스포츠 행사를 위한 지원

- 학교 스포츠에 민주적 학생자치 문화 정착 지원
- 학생중심 스포츠 행사 중심교 운영
- 학생 심판교육, 스포츠키지단, 스포츠아카데미 등 역량 강화
- 스포츠 동아리 지역대회 참여 지원
- 비대면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매뉴얼 보급

○ 운영 형태

- (단위학교) 교내체육행사 학생자치활동 연계 운영(학생의결, 집행기구 마련 등), 효율적인 학생중심의 스포츠행사 운영 도입

- (지역교육청) 단위학교 학생자치 스포츠행사 우수사례 발굴 및 지원, 학생중심 스포츠 활동 담당교사 역량강화 워크숍 운영, 학생심판교육 등
- (도교육청) 학생중심 스포츠 정책 개발 및 스포츠클럽 길잡이 자료 제작 보급 등
- 단위학교 학교스포츠클럽 계획과 운영은 법령에 근거한 학교장 책무 사항으로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점검 항목에 포함됨

2-2 지역, 경기학교스포츠클럽축제,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축전 운영

1 추진법령: 학교체육진흥법 10조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의무화

- ①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경우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에게는 **학교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지도수당을 지급**한다.
- ④ 학교의 장은 **학교스포츠클럽 활동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상급학교 진학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을 해당 학교의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3.>

□ 지역 학교스포츠클럽 축제

- (운영 목적) 학생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를 지속 제공하여 인성 및 사회성 함양 증진
- (참가 대상) 관내 초,중,고 학교 중 종목별 희망교(NEIS 체육시스템에 해당 종목을 등록한 학생만 참가 가능)
- (운영 종목) 지정종목과 선택종목을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운영
 - 지정종목(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 운영 18종목)

구분	지정종목																	
종목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종목 (18개)	치어리딩	연식야구	티볼	줄넘기	킨볼	넷볼	축구	플라잉디스크	피구	족구	배구	풋살	농구	배드민턴	탁구	플로어볼	육상	스포츠츠킥

- 선택종목(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운영하는 종목)

구분	선택종목(예시)							
종목번호	1	2	3	4	5	6	7	8
대면, 비대면종목	키즈런	기지개체조	창작댄스	8자줄넘기	개인줄넘기	단체줄넘기	라이스홀	보치아

- (운영 방법)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별도 계획 수립
 - 지역별 특색을 담아내는 고유 브랜드(명칭)를 설정하여 다채로운 스포츠 문화로서 배움과 성장이 있는 학생축제 운영
 - 대면방식 중심으로 운영하되 저학년, 저체력 학생을 위한 비대면 대회 운영 권장

- 여학생 체육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반영하여 지역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추진 계획 수립
- 참가팀이 적은 종목은 권역별 또는 인근 교육지원청과 연합하여 추진
- 교육지원청 주관 운영 또는 전문단체(시군체육회 등) 위탁운영하여 전문성 확보
- 학생스포츠 활동 중 안전관리 대책을 반드시 수립하여 안전사고 예측, 대응, 점검 관리 등 안전망 시스템 구축
※ 명예교사를 위촉하여 학생 대회 인솔은 가능하나 지도교사 불참 시 안전공제회 지원되지 않음 주의

□ 제14회 경기학교스포츠클럽축제

- (목적) 학교스포츠클럽 관련 학생 자율역량 강화로 행복하고 건강한 학교문화 조성
- (기간) 2025. 9. 6. ~ 9. 20.(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참가) 지역 교육지원청 초,중,고 학교 중 종목별 우수교 및 추천교
(NEIS 체육시스템에 해당 종목을 등록한 학생만 참가 가능)
- (운영 방법) 대한(경기도)체육회 산하 종목단체 및 전문단체에 위탁 운영
 - 예선전을 변형 리그전으로 운영하여 참가팀이 최소 2경기 이상 참가
 - 교사를 운영지원단으로 구성하여 교육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신체활동의 가치와 존중, 배려, 정직, 규칙준수 등 페어플레이와 바른 인성적 가치 경험
- (운영 종목)
 - 지정종목(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 운영 18종목)

연번	종목	세부종목	초등부		중학부		고등부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	치어리딩	단체전	○		○		○	
2	연식야구	단체전	○	×	○	×	○	×
3	티볼	단체전	○	○	○	○	×	○
4	줄넘기	단체전	○	○	○	○	○	○
5	킨볼	단체전	○	○	○	○	○	○
6	넷볼	단체전	×	○	×	○	×	○
7	축구	단체전	○	○	○	○	○	○
8	플라잉디스크	얼티미트	○	○	○	○	○	○
9	피구	단체전	○	○	○	○	○	○
10	족구	단체전	○	×	○	×	○	×
11	배구	단체전	○	○	○	○	○	○
12	풋살	단체전	○	○	○	○	○	○
13	농구	단체전	○	○	○	○	○	○
14	배드민턴	단체전	○	○	○	○	○	○
15	탁구	단체전	○	○	○	○	○	○
16	플로어볼	단체전	○	○	○	○	○	○
17	육상	단체전	○	○	○	○	○	○
18	스포츠스태킹	단체전	○	○	○	○	○	○

□ 제18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

- (목적) 다양한 학생 스포츠 활동 참여로 다양한 가치와 소중한 경험을 배우는 기회 제공
- (기간) 2025. 10. ~ 11.
- (운영 방법) 대한체육회 산하 종목단체 및 전문단체에 위탁 운영

- 참가교 지도교사 사전 교육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철저
- 대회 운영 점검/안전 점검 실시 후 개선방안 등 수렴
- 비상연락망 구축을 통한 응급상황 즉시 보고 체계 유지(원클릭 체제 확립)
- (운영 종목)
 - 지정종목(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 운영 18종목)
 - ※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 종목별 참가비가 지원되나 학교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부족한 부분에 반영하여 집행할 것
- 제3회 부총리배 학교스포츠클럽 혼합팀 전국대회 참가
 - (목적) 일반학생과 학생선수가 함께 참여하여 학교스포츠클럽 다양화 및 활성화 도모
 - (기간) 2025. 12.(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운영 종목) 농구, 배구 예정
 - (추진 방침) 생활체육 기반의 질 높은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운영 확대
 - ※ ('23) 1개 종목(농구) ⇒ ('24) 2개 종목 ⇒ ('25) 2개 종목
 - 지도별 참가팀은 지역별 예선을 통한 선정 예정
 - ※ 부총리배 혼합팀 전국대회 종목별 참가비가 지원되나 학교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부족한 부분에 반영하여 집행할 것

[예시] 대회 참가 신청 공문

상호존중, 행복한 등행의 첫 걸음



00초등학교



수신 00교육지원청(교육과)
(경유)

제목 2024학년도 00지역 학교스포츠클럽 축제 (종목) 리그 참가 신청

1. 관련: 00교육지원청 교육과-0000(2024.00.00.)호
2. 2024학년도 00지역 학교스포츠클럽 축제 (종목) 리그 참가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 가. 건 명: 2024 00지역 학교스포츠클럽 축제 (종목) 리그전 참가
 - 나. 일 시: 2024.00.00.(0요일) 10:00~17:00
 - 다. 장 소: 00초등학교 체육관
 - 라. 참가자: 00명

연번	이름	성별	학번	연번	이름	성별	학번
1	홍00	남	10101	11			
2	김00	여	11021	12			
3				13			
4				14			
5				15			
6				16			
7				17			
8				18			
9				19			
10				20			

붙임 2024 00지역 학교스포츠클럽 축제 (종목) 참가 신청서 1부. 끝.

※ 참가신청서는 지역, 종목 특성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 외 자료집계 등 다양하게 제출할 수 있음

[예시] 평일 대회 참가에 따른 출석인정 결석 공문(내부결재)

상호존중, 행복한 동행의 첫 걸음



경기도교육청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4학년도 00지역 학교스포츠클럽 축제 (종목) 리그 참가에 따른 출석인정 조퇴 요청

1. 관련: 00교육지원청 교육과-0000(2024.00.00.)호
2. 2024학년도 00지역 학교스포츠클럽 축제 (종목) 리그 참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출석인정 조퇴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 가. 건 명: 2024 00지역 학교스포츠클럽 축제 (종목) 리그전 참가에 따른 출석인정 조퇴
 - 나. 대회일시: 2024.00.00.(0요일) 10:00~17:00
 - 다. 대회장소: 00중학교 체육관
 - 라. 인정시간: 2024.00.00.(0요일) 5,6,7교시
 - 라. 참가학생: 00명

연번	이름	성별	학번	연번	이름	성별	학번
1	홍00	남	10101	11			
2	김00	여	11021	12			
3				13			
4				14			
5				15			
6				16			
7				17			
8				18			
9				19			
10				20			

붙임 2024 00지역 학교스포츠클럽 축제 (종목) 참가 신청(공문) 1부. 끝.

※ 대회 운영은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대한 주말 운영 원칙을 적용하여 운영함
 ※ 평일 일과 중 대회 진행 시 출석 인정 공문 필요

2-3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진로 및 진학지도 연계

※ (스포츠클럽 전담교사 및 담임교사의 책무성 강화)

- (역할) 학교스포츠클럽 등록, 운영, 교내·외 스포츠클럽 대회 참가, 스포츠강사 관리 및 교내 스포츠클럽 담당교사 연수, 생기부 입력관리 등
- 전담교사 지정 후 지도수당 지급이 필요한 활동일 경우 학교교육계획에 반영하고 방과후학교 운영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방과후학교 강사 수당으로만 지급 가능
- 학교 내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계획 수립 시 교내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내용을 반영하여 NEIS 체육시스템에 학급별로 입력(실제 참가자 입력)

※ (유의사항)

- NEIS 및 학교생활기록부 입력은 활동 증빙자료가 있고 학교장이 이를 승인한 경우만 가능
- 학기 초에 수립한 연간 운영 계획서는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없음
- 1회 20분 이상(초등학교-40분, 중학교-45분, 고등학교-50분을 1시간으로 인정)의 모든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학교생활

2025

학교체육 업무매뉴얼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Ⅲ | 체육 인재 육성 학교운동부 운영

1 학교운동부 업무흐름도

절차	학교운동부 관리업무 흐름도	참고
운동부 창단/해단 (해당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단 및 해단 계획 수립(학교) → 교육지원청 협의 → 학운위 심의 → 학교장 결재 → 경기단체통보/교육(지원)청 보고 → 체육특기학교(학교 운동부 육성교) 지정(교육지원청)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월] 운동부지도자 채용(재계약) 	
운동부 연간운영 계획수립 (학운위심의) -매년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월] 법령 및 관련 법령 외 포함사항 고려하여 계획서 수립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및 관련 법령 외 포함사항 - ‘법령 및 관련 법령 외 포함사항’ 모두가 운영계획서에 필히 포함되어야 함. - 특히 수익자 부담금 발생하는 운동부는 반드시 운영계획서 예산 부분에 수익자 부담에 대한 내용(수익자 부담금액, 사용예정 항목, 방법 등) 포함되어야 함. ■ [3월] 학교운동부 연간운영계획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매년 심의 필수) 	
위원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월] 학교체육소위원회 (겸) 「학생선수보호위원회, 체육특기자관리위원회」구성 *위의 3가지 위원회를 겸할 수는 있으나, 각각의 규정은 마련되어야 함. 또한 위원회 구성 내부결재 시 겸한다는 내용 명시해야 함. *기타 - 학생선수고충처리센터, 단체종목엔트리위원회(야구, 축구, 농구, 배구, 럭비, 하키 등 필수 실시) 	
학업성적관리 위원회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월] 학생선수 출결과 보충학습에 대한 학업성적 관리위원회 심의 	
학기 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기별 1회] 학부모설명회 및 학교장간담회 실시 - 학부모 교육 실시 ■ [3월] 학생선수, 학부모, 운동부지도자 대상 필수교육 계획 수립(도핑, (성)폭력예방, 인권교육 등) ■ [3월] 학생선수 상담 계획 수립(월1회) ■ [3월] e-school 담당교사 승인요청 및 개설, 학생선수 가입 및 수강 관리 	

<p>학기 중</p>	<p>대회 (훈련) 참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가전] 학생선수 출결처리 및 대회참가 계획 내부결재 ■ [참가전] 학생선수학습권, 인권, 안전 관련 내용 내부결재 포함 (수업결손에 대한 보충학습계획 수립) ■ 대회(훈련) 참가 승인 절차 <table border="1" data-bbox="475 443 1327 593"> <tr> <td>1단계</td> <td>2단계</td> <td>3단계</td> <td>4단계</td> <td>5단계</td> </tr> <tr> <td>공문 접수</td> <td>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처리</td> <td>내부결재, 학교장 승인</td> <td>담임교사 (나이스처리)</td> <td>지도교사 (누적관리)</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회 참가 참가 기안 시 필수 포함되어야 할 사항★★★★★ (대회일자, 출석결석인정일수, 참가학생선수, 잔류학생, 잔류학생에 대한 지도계획, 참가학생에 대한 안전교육실시 계획, 이동방법, 인솔자, 지도자 근무 시간, 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지도자 동의서 등) ※ 지도자의 대회 참가 중 근로시간이 계약서와 다른 경우★★★★★ 1. 대회 참가 기안 시 세부적인 지도자의 근로 시간 명시(대체휴무 여부 등) 2. 계약서의 근로시간이 대회 참가에 따라 변경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는 지도자의 동의서 필요 ■ 학생선수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2025) <table border="1" data-bbox="462 1019 1327 1104"> <thead> <tr> <th>학교급</th> <th>초</th> <th>중</th> <th>고</th> </tr> </thead> <tbody> <tr> <td>허용일수</td> <td>20일</td> <td>35일</td> <td>50일</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가전] 학교운동부 차량[차량임대(렌트)] - 연간계획에 의거 학생체험활동에 준하는 버스임대 계약 후 운영 [인솔자(교직원) 동승, 안전교육 실시] ■ [참가중] 학교 회계 처리 절차 준수 (학교법인카드 사용) ■ [참가후] 경비집행내역 학교홈페이지 공개 - 학교홈페이지 게시판(수시 공개) ■ [상시] 학교운동부 지도교사 확인대장 작성, 관리 (모든 학교운동부 육성교 작성 필수, 영구보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공문 접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처리	내부결재, 학교장 승인	담임교사 (나이스처리)	지도교사 (누적관리)	학교급	초	중	고	허용일수	20일	35일	50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공문 접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처리	내부결재, 학교장 승인	담임교사 (나이스처리)	지도교사 (누적관리)																
학교급	초	중	고																	
허용일수	20일	35일	50일																	
<p>공통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 학생선수 출결관리, 수업결손에 대한 e-school 이수★★★ ■ [5월, 9월, 12월, 수시] 청렴서약서 작성 및 청렴서한문 발 ■ (성)폭력 실태조사 - [6월] 전수조사(교육부주관)/ [7월, 12월] 학교 자체조사 및 결과보고 ■ [연2회] 학생선수 인권실태조사 ■ 교육(지원)청 학교운동부 점검 																			
<p>학기 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월, 12월] 최저학력제 실태 현황 보고 - 학생선수 최저학력 도달 여부 확인 및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e-school Run-up 과정 등) 개설 ※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의무 이수 / 이수 시 다음 대회 및 훈련 참가 가능(법령 개정, 지침 변경 사항, 중요)★★★★★ ■ [7월, 12월] e-school 학습확인서 출력 후 학교장 확인(내부결재) ■ [7월, 12월] 동·하계강화훈련 계획 수립 및 품의 ■ [10월] 체육특기자 선발 및 진학 업무 ■ [11월] 학교운동부 지도자 근무성적 평정 및 지도자 정원 조정 																			

학생선수* 출결 및 보충학습 근거 마련을 위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방법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규정에 해당 내용(▶) 삽입

(해마다 학업성적 관리위원회에서 해당 내용 심의 단, 규정이 변경될 시는 규정 변경 필요함)

▶ 규정 또는 심의 시 내용

* 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함(「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

가. 학교장은 학생선수 안전 확보,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 학습권 보장 등을 고려하여 허용일수 내에서 '출석인정 결석' 처리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허용일수는 의무적으로 허가해 주어야 하는 일수는 아님

나. 학생선수 출결처리 방법

(출결처리)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 범위 내에서 학교장 허가

(지각·조퇴·결과 처리) 대회 및 훈련 참가로 인한 지각·조퇴·결과 횟수 누적하여

실제 사용 수업 시수 단위로 합산하여 관리하고 누적 6시수를 출석인정일수 1일로 처리

(기타) 국가를 대표한 대회·훈련 참가, 전국(동계, 소년)체육대회(지역예선 포함) 참가 시 허용일수에 포함되지 않음(초과사용 가능)

다. 학생선수가 대한체육회에서 인정하는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국제대회 참가 및 이를 준비하는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또는 전국(동계·소년)체육대회(지역 예선 포함)는 허용일수를 초과하여 사용 가능★★★
20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참고

* 대한체육회에서 인정하는 관련 공문(기간, 장소, 명단 명시 등)에 근거한 국가대표 및 '꿈나무, 청소년대표, 국가대표후보' 학생선수의 훈련도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 초과 사용 가능

라. 국제대회 참가 등을 위해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장기간 국내에서 훈련(진천선수촌 등)에 참가할 경우에는 훈련장소 인근 학교에 위탁(교환)교육을 통해 학생선수가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행정 처리 및 학습 여건 조성 지원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출결상황 - 위탁학생 출결처리 방법 - 국내교환학습]

마.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 학교장은 학생선수가 시험 및 대회 참가 등으로 수업 결손 발생 시 e-school(초등학교는 e학습터 가능) 온라인 학습 등을 활용하여 보충학습 제공 후 의무 이수 (1일 2시간 이하 결손은 1시간 수강, 3시간 이상 결손은 2시간 수강하며, 1일 최대 2시간 의무 수강)

※ e-School 수강 시 적용 사항이며, 학교 여건에 따라 대면수업 등 자체 계획수립·운영 가능

바. 최저학력제 적용 및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Run-up) 이수(e-school 등 활용)

- 적용대상: 초(4~6학년)·중·고 학생선수

- 적용과목: 초·중학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5과목), 고등학교: 국어, 영어, 사회(3과목)

- 적용기준: 해당 학년 해당 교과별 평균 성적 (초) 50%, (중) 40%, (고) 30%

- 성적적용: 매 학기말 고사(이론시험+수행평가)

- 기초학력보장: 학교장은 학기별 기말고사(지필고사+수행평가) 성적이 산출되면 학생선수의 최저학력 도달 여부를 파악 및 적절한 조치(미도달 학생선수에게는 과목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운영 후 이수를 의무화하고 관련 사항은 내부 결재 처리) / 확인 후 참가 가능

2 학교운동부 운영

1 학교운동부 운영 방향

- 가. [학습권 보장] 학생선수들이 운동과 학업을 병행하고 다양한 운동 경험을 통해 삶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
- 나. [인권보장]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안전한 환경시스템 구축을 통한 자신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활동을 통해 자신의 소질이나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
- 다. [진로·진학] 학생들이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핵심역량'을 키워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개척할 수 있도록 성장단계별 맞춤형 진로·진학지원
- 라. [학교운동부 문화개선] 학생선수가 중심되어 운영되고, 참 성장이 일어나는 「학생선수 중심 학교운동부」 문화, 「인권친화적 학교운동부」 문화, 「청렴한 학교운동부」 문화를 조성

2 용어

- 가. 학교운동부(학교체육진흥법 제2조 3항)
 -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말한다.
- 나. 학생선수(학교체육진흥법 제2조 4항)
 -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 다. 학교운동부 지도자(학교체육진흥법 제2조 6항)
 - 학교에 소속되어 학교운동부를 지도·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 라. 체육특기자
 - 체육특기자 심사에 따라 상급학교에 배정된 입학생 및 재학 중 학교체육소위원회에서 체육특기자로 인정되어 학생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으로, 당해 연도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에 선수등록을 마치고 선수 활동을 하는 학생

※ 중학교 특기자는 해당교육지원청에서 특기자 승인 및 배정(관리)지원

※ 고등학교 특기자 (관리)지원(평준화지역): 경기도교육청 / 비평준화지역(학교장)

③ 관련 법령

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1) 제69조(체육특기자 등의 입학 방법)

제69조(체육특기자 등의 입학방법) ① 교육장은 제6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육특기자에 대하여 당해 교육장 관할지역의 당해 학년 입학정원 중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입학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육특기학교와 종목별 정원은 교육장이 지정하여 배정한다.

2) 제73조(중학교의 전학 - 체육특기자 포함)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 ① 중학교의 전학 또는 편입학은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안의 중학교에 한하며, 이 경우 학교군에 있어서는 전·편입학의 신청서류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교육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교육장이 추천·배정하고, 중학구에 있어서는 그 중학구안의 중학교의 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학교군에 있어서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안의 중학교에 결원이 없는 경우로서 전학 또는 편입학하고자 하는 자가 원하는 때에는 당해 교육장 관할에 속하는 다른 학교군안의 중학교에 배정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에 소재하는 중학교로 전학 또는 편입학하려는 학생의 학교를 배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학생이 전학 또는 편입학한다는 사실을 전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의 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신설 2016. 10. 18.>

③ 교육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육특기자의 경우로서 그 특기에 해당하는 체육특기학교에 체육특기자의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추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학 또는 편입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18.>

3) 제87조(체육특기자 등에 대한 배정)

제87조(체육특기자 등에 대한 배정) ① 교육감은 입학전형에 응시한 자중 체육특기자에 대하여는 입학전형결과에 불구하고 그 관할지역의 당해 학년 입학정원 중 그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입학을 허가하되,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후기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제8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군에 제한 없이 체육종목별로 체육특기학교와 종목별 정원을 정하고 이에 따라 체육특기자를 배정한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1. 3. 18.>

② 교육감은 입학전형에 응시하여 선발된 지체부자유자중 통학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8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를 지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특기자의 범위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부자유자의 인정방법은 교육감이 정한다.

4) 제89조(고등학교의 전학 등 - 체육특기자 포함)

제89조(고등학교의 전학 등) ①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고등학교(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간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9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특수목적 고등학교로의 전학 및 편입학**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 6. 29., 2011. 12. 30.>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고등학교 주간부에서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일반고등학교 주간부로의 전학의 경우에는 전학하려는 사람의 거주지가 학교군 또는 시·도가 다른 지역에서 이전된 경우에 한정하며, 교육감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한다. 이 경우 거주지가 이전된 **사람 중** 당해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없고 인근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있는 경우로서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거주지의 인근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로의 전학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1. 3. 18., 2011. 12. 30., 2015. 1. 6.>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은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및 체육특기자에 대하여는 시·도가 같은 지역안에서의 전학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07. 4. 12.>

나.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최저학력보장 노력,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운영, 경기대회 참가 제한, 상시 합숙훈련 근절, 기숙사 운영, 후원금 학교회계 편입, 학교운동부 운영 경비 지원

다. 학교체육진흥법 제12조(학교운동부지도자)

학교운동부지도자 연수, 학교운동부지도자 급여 경비 지원, 자격, 계약 해지,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 설치, 평가

라. 경기도 학생선수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계획 수립, 학습권 보장, 인권보호, 합숙훈련 제한, 학교운동부 지도자 교육 및 연수, 학업 및 상담프로그램 제공, 도평방지교육, 유관기관 협력 등, 표창

④ 운동부 운영 준수 사항

가. (창단) 선수 확보, 전문체육시설, 운동부지도자 운영 및 관리, 예산 운영계획 등

나. (운영) 학교운동부 연간운영계획서[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운영], 학교체육 소위원회 (학생선수보호위원회, 체육특기자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다. (관리) 체육특기자관리, 정규수업 이수, 학생선수 학습권 및 인권보호, 진로·진학 교육 등

라. (진학) 상급학교 체육특기자 진학 및 진로 지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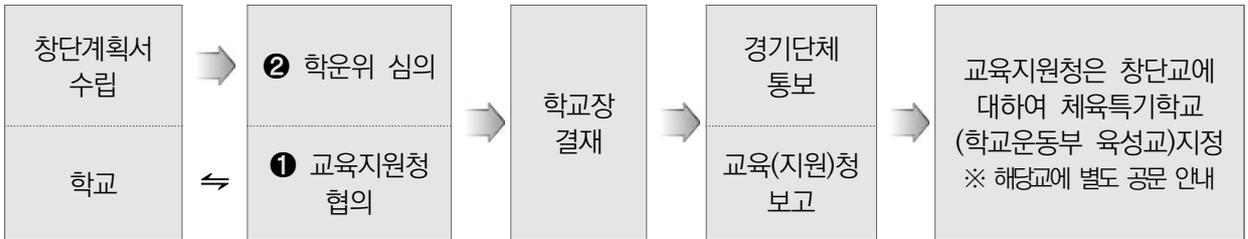
※ (교육지원청) 학교운동부 운영에 관한 학교장 준수사항 지도·감독,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리 등 관련 내용 확인, 학교별 관련 법령에 명시사항이 포함된 학교운동부 운영 계획 수립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여부, 학교운동부지도자 연수 등

※ (단위학교) 관련 법령에 명시된 학교운동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반드시 심의 후 운영

3 학교운동부 창단·운영·해단

1 학교운동부 창단

- 가. 학생의 특기와 적성을 조기에 발굴·육성하는 방과후(특기)활동의 일환으로 학교, 지역사회(체육회 등), 동창회 등 학교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여야 한다.
- 나. 창단계획서 : 창단목적, 운동부 지도자 확보, 운동부 예산 확보 방안, 선수 수급계획, 지역사회 협력방안, 학교운동부 전문 체육시설 및 훈련 여건, 정규수업 이수 등의 계획을 수립
- 다.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지자체, 체육회 등), 학교 등에서 학교운동부 창단 요청이 있을 경우 창단계획(안)을 수립하여 교육(지원)청과 협의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라. 스포츠클럽 창단 : 지역사회와 연계한 스포츠클럽 창단 추진[지역기반 스포츠클럽 등]
- 마. 추진 절차



※ 교육지원청과 선수 수급, 지도자 배치, 운영비 확보 등 충분한 협의 후 진행

2 학교운동부 운영

- 가. 공부하는 학생선수상 정립 여부 및 예산 집행, 대회참가계획 등의 학교운동부 연간 운영계획서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매년 수립 및 매년 학년 초 심의 필수)
- 나. 연간운영계획서 포함 사항(창단 및 기존 운동부도 매년 수립 및 학년 초 심의 필수)
 - 1) (관련 법령 명시사항) 최저학력보장 노력,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운영, 출석인정결석 처리, 상시 합숙훈련 근절, 기숙사 운영, 학부모부담경비 학교회계 편입, 학교운동부 운영 경비 지원, 학생선수 인권실태조사, 진로·진학교육, 학생선수 (성)폭력 및 안전 예방 교육, 도핑방지교육
 - 2) (관련 법령 외 반영사항) 훈련 계획(전지훈련 포함), 대회참가 계획, 기타훈련 계획, 학교장 간담회, 운동부 예산 운영 계획 등 전반적인 내용 포함
- 다. 추진 절차



③ 학교운동부 해단

가.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지자체, 체육회 등), 학교 등에서 학교운동부 해단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단계획서(안)를 수립하여 교육지원청과 협의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나. 해단계획서 : 해단사유, 운동부 지도자 처리, 학생선수 진로·진학, 학부모, 지역사회 의견 등을 고려하여 해단계획서(안)를 수립

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단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교육지원청과 충분한 협의

라. 추진 절차★

※ 해단사유발생 → 교육공동체(관리자, 학부모, 담당교사, 학생선수, 지도자 등) 협의 시 반드시 포함하여 협의



○ 학교운동부 해단 시 해단 현황 제출 [양식]

지역	설립	학교급	학교명	종목	해단시 현황		해단사유 (구체적으로)	관련근거 (관련문서번호 및 결재 일자)	잔여학생 선수 에 대한 대책	지도자 처리	협의 참여 대상	비고
					연도	선수 (수)						
								체육소위원회 ()				
								학교운영위원회 ()				

※ 유의 사항: 해단계획서 작성 시 해단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도자 처리 및 학생선수 진로·진학을 고려하여 충분한 협의와 상담을 통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바람

※ [학부모 동의서, 지도자 동의서] - 첨부 서류는 학교 보관

※ 해단교 ⇒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보고 철저

4 체육특기자 관리

1 관련규정

- 가. 체육특기자 선수등록 : 「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규정 제5조-제19조」
- 나. 체육특기자의 상급학교 입학 및 전출에 관한 사항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중), 제73조(중) 및 제87조(고), 제89조(고)
- 다. 체육특기자 입학 : 경기도고등학교 체육특기자선발에 관한 규칙, 경기도교육규칙 제905호) 및 추천특기자 선발기준(동 규칙 제5조)
- 라. 타·시도 전입학 학생 : 경기도고등학교 신입생 전형요강 [참조]
 - ※ 초, 중학교의 경우 재학생이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고자 할 경우 학생, 학부모 동의를 득한 후 학생선수의 기량을 충분히 고려하여 학교체육소위원회 또는 체육특기자심사위원회를 열어 학교장 허가를 득한 후 실시(교육지원청 문의)
 - ※ 고등학교의 경우 재학생이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고자 할 경우 신인발굴 등 추천특기자로 하여 체육특기자 관련 서류 제출(승인 후 활동)
 - 비평준화지역(학교장 허가) ■ 평준화지역(도교육청 서류제출)
 - ※ 학교운동부 소속이 되어 운동하고자 할 경우 학교운동부 교육적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절차 준수(상담⇒테스트 및 추천⇒학교체육소위원회 협의⇒내부결재⇒ 보고)

2 중·고입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 가. 고입체육특기자 선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7조)시 내신 성적 반영 의무화
 - 학교장 확인서 제출(기초학력프로그램 이수 여부 확인서 제출) 필수
 - ※ 기초학력미도달 학생선수는 기초학력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3 체육특기자 업무 절차



④ 체육특기자 선발 범위

가. 평준화지역 : 평준화 지역모집 정원의 3% 범위 안에서 선발

나. 비평준화지역 : 단위학교 모집 정원의 5% 범위 안에서 선발

다. 학교운동부 단체종목의 승인 인원

종 목	인원	비 고	종 목	인원	비 고
축 구	15명		배 구	7명	
야 구	15명		력 비	15명	
농 구	6명				

※ 단체종목의 경우라도 평준화 및 비평준화 승인 인원내 한함

예시) 비평준화 경우(○○고-야구) 총 모집인원 240명 경우 승인 인원 12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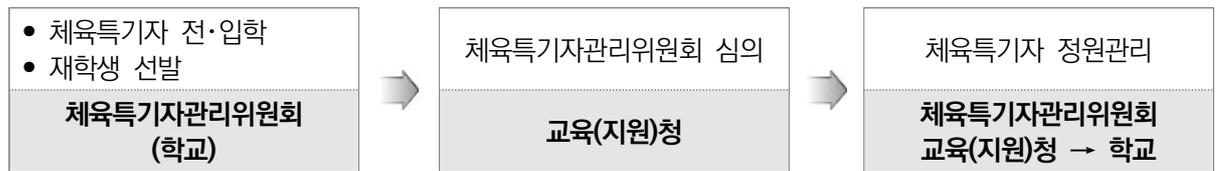
⑤ 체육특기자의 관리

가. 체육특기자선발 : 체육특기자관리위원회(학교체육소위원회)

1) 대상 : 중·고등학교[입학, 신인 발굴(재학생선발)]

2) 기능 : 체육특기자 전·입학 심사, 현·정원관리, 신인 발굴, 체육특기자 포기 등

3) 운영 절차



※ 재학생 추천의 경우 서류 : 학교장 동의서, 학생 · 학부모 동의서, 추천서(협회), 재학증명서, 최저학력제 도달 여부 확인, 체력테스트 증빙자료

나. 체육특기자의 정원·현원 관리

1) 평준화(비평준화) 해당학교 체육특기자의 정원·현원관리 철저

2) 신인발굴(재학생) 선발인 경우(학교체육소위원회)

3) 체육특기자의 유급생 관리 철저 : 학교장의 책무성 강조

⑥ 체육특기자 활동 관리

가. 체육특기자로 입학한 자는 선수활동을 포기할 수 없으나 불가피한(부상, 기량부족, 근태 등) 경우는 학생선수, 학부모, 지도자 및 지도교사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의 책임하에 포기 승인 후 일반 학생으로 전환

※ 경력전환 학생선수를 위한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원

※ 경력전환(학생선수 활동 중단)도 본인이 희망하면 e-school 시스템 활용 가능하도록 안내

나. 운영 절차



- 1) 체육특기자 활동 포기 내부결재 시 체육특기자 배정 또는 승인 학생임을 반드시 확인
- 2) 체육특기자 활동포기 승인 후 체육특기자 관리대장에 누가 기록하고, 즉시 해당 교육청에 보고(첨부 서류는 학교에 보관)

다. 우수 신인선수 발굴·지원

- 1) 재학생 및 인근학교의 소질 있는 선수 발굴은 체격, 체력, 운동 종목별 전문기능 등 학교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체육특기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
 - 체육특기자 특별 관리로 중도 탈락 예방 : 무분별한 선수 선발 및 육성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체육특기자 배정으로 벤치 선수 및 중도 탈락생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정기적인 고충상담 및 진로·진학 지도 상담 강화
 - ※ 신인선수 발굴 경우 사전 승인(인원) 확인 후 처리절차에 따라 추진 바람
 - ※ 신인발굴시 최저학력제 관련하여 충분한 검토 후 안내
 - ※ 신인선수 발굴하여 특기자 전환시, 최저학력제 적용하여 선발(학생선수로 등록된 경우)
- 2) 학교에서 개인별 스포츠 활동 참여 학생선수 지원 및 발굴
- 3) 학교 스포츠 활동에서 재능과 흥미가 뛰어난 학생을 지역기반 스포츠클럽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안내 및 진로 지도

7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 대책 방안

구 분	내 용
체육특기자 관리위원회 운영 (학교체육소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하급 학교 간의 협조체제 유지를 위한 행정지원 ○ 학생선수 학습권, 인권, 진로 진학지도 지원 ○ 체육특기자 선발 및 중도 포기, 전학, 진학 협의 ○ 우수 학생선수 발굴·육성 ○ 기타 체육특기자 관리사항 협의
학교운동부 지도자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장의 관리 기능 강화 ○ 운동부 지도교사의 주도적 관리 및 운동부 운영 적극 참여 ○ 진학 관련 학부모와의 금전거래 사전 차단 노력 ○ 학기 초 진학 관련 학부모설명회 개최
학교운동부 학부모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 대상 학교운동부 운영 설명회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학·진로 교육 및 상담 정례화 - 상급학교 진학 관련 학부모 교육실시 - 학교장과의 간담회 운영(연 2회)
고입 체육특기자 선발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입체육특기자 선발 전형 시 자격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 참조 ※ 학교장 확인서 제출(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여부 확인) ○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철저 ○ 학교운동부 육성(특기)학교 관리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 조치 결과에 따라 대회 참가 및 선발 제한

5 체육특기자 전출·입

1 체육특기자 유형별

가. 체육특기자

- 체육특기자 심사에 따라 상급학교에 배정된 입학학생 및 재학 중 학생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으로, 당해년도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에 선수등록을 마치고 선수활동을 하는 학생

2 체육특기자 전·출입 방법

가. 체육특기자 전출·입 절차는 기본적으로 일반학생과 동일

나. 체육특기자의 상급학교 입학 배정 및 전학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9조, 73조(중학교) 및 제87조, 89조(고등학교)에 의함

다. 정상적인 체육특기자 전·출입 시 학교장 동의서 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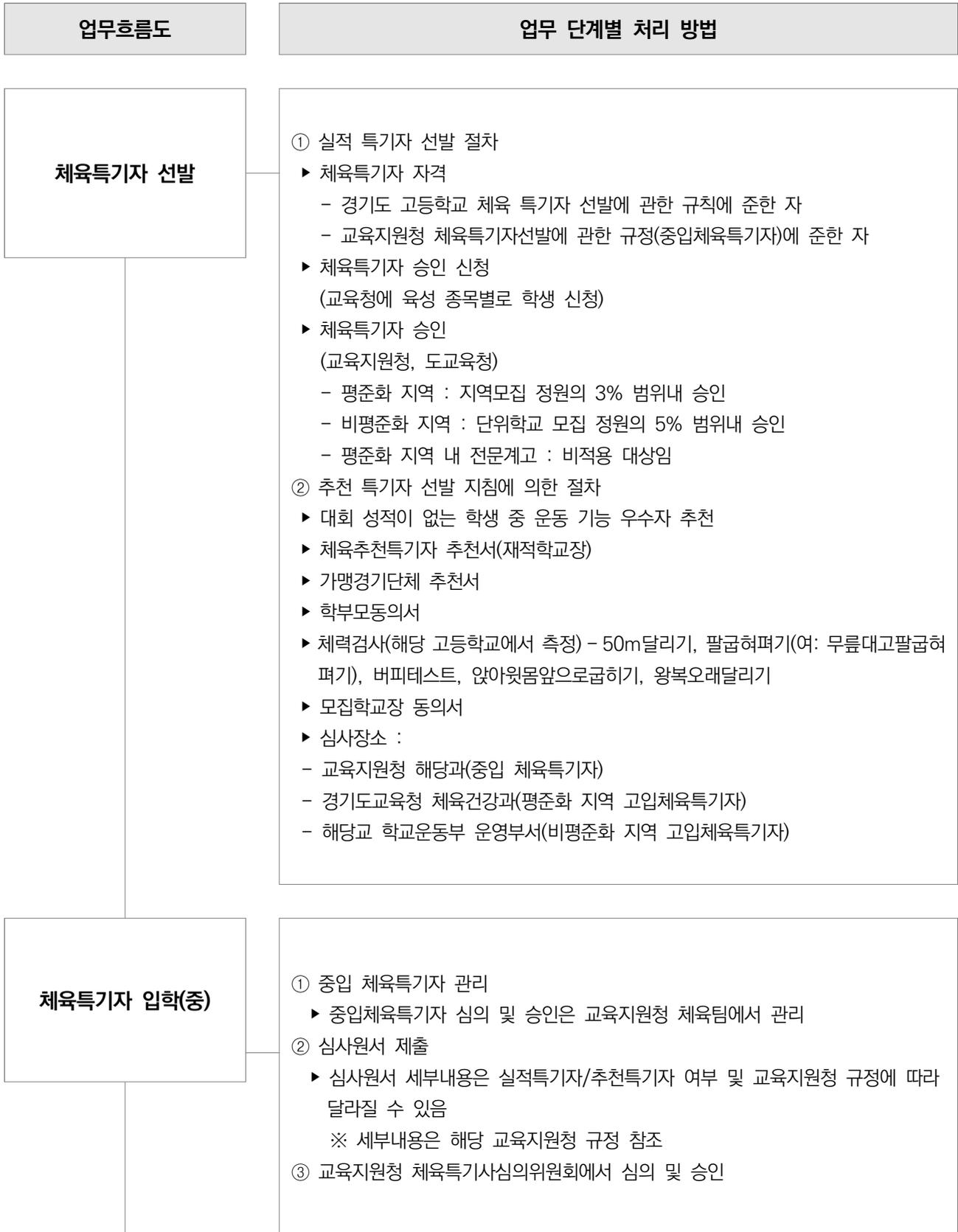
- 1) 학교장은 학생주소 이전 등 정상적인 전학 사유 발생 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을 경우 반드시 동의서 발급
- 2) 개인의 행복추구권 존중 및 학생선수의 진로에 대한 교육적 측면 고려

라. 체육특기자 전·출입 시 학교장은 실제 거주 여부를 파악하여 현행법(주민등록법)을 준수하도록 확인·감독 필요

TIP 체육특기자 선발 및 입학 시 유의점

- 체육특기자 전·출입 시 학교장은 수시 또는 불시에 실제 거주 여부를 파악하여 현행법을 준수하도록 확인·감독 필요
- 위장 전입인 경우 실제 거주지(원적교)로 환원 조치해야 함.
예) 주소 이전이 학교의 휴게실이나, 학교 내 주소지에 이전되어 있으면 위장 전입에 해당함.

③ 체육특기자 선발 및 관리 업무흐름도



업무흐름도	업무 단계별 처리 방법
<p style="text-align: center;">체육특기자 입학(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대상자: 시·도 규모 대회 이상 입상자 또는 추천자 ② 체육특기자 심사원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적체육특기자(심사원서, 모집학교장 동의서, 상장 및 경기실적증명서, 최저학력 도달 여부 학교장 확인서) ▶추천체육특기자(심사원서, 모집학교장 동의서, 재적학교장추천서, 가맹경기단체추천서, 학부모동의서, 체력검사표, 최저학력 도달 여부 학교장 확인서) ③ 원서 접수절차: 해당중학교 관련서류 준비→지원예정고교(평준화지역 일반고)로 제출→해당고교 심사 →해당고교에서 교육지원청에 인정요청 서류 제출→교육지원청에서 도교육청으로 인정요청 서류 제출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해당고교 심사 절차(공정한 테스트 및 심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계획 수립 ↓ 체육특기자 모집절차 공개 ☞ 모집 승인인원 및 기간, 심사절차, 심사방법 등을 홈페이지 공개 ↓ 중학교로부터 서류 접수 ↓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학교체육소위원회) 운영: 공정한 테스트 및 심사 ↓ 학교장 결재 ↓ 학생에게 결과 통보 ↓ 모집인원 승인 범위 내 교육지원청 원서 접수 </div> ④ 도교육청 심의 및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준화 지역 고입체육특기자(경기도교육청 체육건강과) ▶ 비평준화 지역 고입체육특기자(학교장 전형) ⑤ 고입선발고사 응시 ⑥ 체육특기자로 진학
<p style="text-align: center;">체육특기자 해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해지 사유 발생 : 질병, 부상, 거주지 이전 등 ② 해지 서류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지역 : 학교체육소위원회(특기자심사위원회) ▶ 비적용지역 : 학교체육소위원회(특기자심사위원회) ▶ 진단서, 부적응 상담일지 1부, 학교장 확인서 1부, 지도교사 의견서 1부, 보호자 동의서 1부, 특기자 포기원 1부 ③ 학교장 내부결재 (학교체육소위원회-협의를 작성) ④ 체육특기자 해지 보고(단위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⑤ 교육(지원)청 보고

6 학교운동부 위원회 구성 및 운영(학교체육소위원회 검임)

1 근거

-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69조(체육특기자 등의 입학 방법)
-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7조(체육특기자 등에 대한 배정)
- 다. 경기도고등학교 입학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 경기도교육규칙 841호) 및 추천특기자 선발기준 (동 규칙 제5조)

〈설치근거〉

-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 16조(소위원회)
- 경기도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9조(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2 목적

- 가. 효율적인 체육특기자 관리 및 투명한 상급학교 진학·진로 지도
- 나. 우수 학생선수 발굴·육성을 위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기준 마련 및 운영
- 다. 체육특기자 전·입학 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과정을 통한 신뢰성 확보

3 기능

- 가. 상급학교 체육특기자 입학 시 자격, 대회 참가, 경기실적 등 검토
- 나. 학생선수 학습권, 인권, 진로 진학 관리 운영
- 다. 우수 학생선수 선발 및 전·입학 시 객관적 심사 운영

4 구성 (학교체육소위원회 겸)

5 운영

- 가.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 나. 위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고입 체육특기자 관련 구비 서류

순	구비서류	입학		신인 발굴	전학 선 배정	유급자 자격인증
		실적	추천			
1	전·입학배정원서			○	○	
2	학+교재적 현황(결원관리현황)			○	○	
3	전입학 학년 선수 등록부(축구, 야구)			○	○	
4	주민등록등본(세대주 구성)	○	○	○	○	
5	재학증명서					○
6	전·입학학교장 동의서	○	○	○	○	
7	전출학교장 동의서(추천)		○	○	○	○
8	학부모 동의서		○	○	○	○
9	입상실적증명서 또는 상장사본	○		○	○	
10	관련경기단체 추천서		○	(택1)		○
11	지도교사 의견서					○
12	체력검사표		○	○		
13	운동포기원					
14	선수등록확인서				○	
15	기타 증빙자료(진단서, 상담일지)					○
16	휴학처리 공문 사본					○
17	복학처리 공문 사본					○
18	휴학원 사본					○
19	복학원 사본					○
20	생활기록부 사본					○
21	체육특기자 심사원서	○	○			
22	사실거주확인서(야구, 축구)					
23	협회 이적동의서(축구)				○	
24	최저학력제 미도달 학생에 대한 기초학력프로그램 이수 여부 확인 (학교장 확인서)★	○	○	○	○	

※ 중입 체육특기자 관련 사항은 해당 교육지원청 문의

7 학사관리

7-1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운영★

1 관련근거

- 가.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 나. 경기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

2 학생선수 학사관리 강화

가. 학생선수 대회 및 훈련 참가에 따른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

- 학생선수의 충실한 학업수행 지원을 위해 **대회·훈련** 참가에 따른 **출결관리 강화**
- ※ 대회·훈련 참가는 '학생선수 출석인정일수' 내에서 활용하고, 지각·조퇴·결과 등 강화된 기준 적용

2025학년도

■ 학생선수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

학교급	초	중	고
허용일수	20일	35일	50일

■ 학생선수 출결처리 방법

- (출결처리)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 범위 내에서 학교장 허가
- (지각·조퇴·결과 처리기준 개선)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위한 지각, 조퇴, 결과의 출석인정 처리를 실제 사용 수업시수를 누적*하여 관리
 - * 실제 사용 수업 시수 단위로 합산하여 관리하고 누적 6시수를 출석인정일수 1일로 처리
- 학생선수가 대한체육회에서 인정하는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국제대회 참가 및 이를 준비하는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또는 전국(동계·소년)체육대회(지역 예선 포함)는 허용일수를 초과하여 사용 가능★★
- ★ 20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참고
- * 대한체육회에서 인정하는 관련 공문(기간, 장소, 명단 명시 등)에 근거한 국가대표 및 '꿈나무, 청소년대표, 국가대표후보' 학생선수의 훈련도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 초과 사용 가능

※ 학교장은 학생선수 안전 확보,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 학습권 보장 등을 고려하여 허용일수 내에서 '출석인정 결석' 처리를 허가할 수 있음. 다만, 허용일수는 의무적으로 허가해 주어야 하는 일수는 아님 (초 20일, 중 35일, 고 50일)

나. 학생선수 출결현황 관리 강화를 위한 나이스 기능 개선(신규, 나이스 사용 의무)

- 담임교사와 경기종목 지도교사가 학생선수의 대회 및 훈련 참가 일수를 확인 및 관리할 수 있도록 나이스 기능 개선 완료
 - ※ 현행 학급 담임교사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출결상황을 학교운동부 학생선수 관리 메뉴와 연동되도록 나이스 기능 개선

다. '출석인정결석' 적용 예외

- 학생선수가 대한체육회에서 인정하는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국제대회 참가 및 이를 준비하는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또는 전국(동계·소년)체육대회(지역 예선 포함)는 허용일수를 초과하여 사용 가능★★★
20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참고
 - * 대한체육회에서 인정하는 관련 공문(기간, 장소, 명단 명시 등)에 근거한 국가대표 및 '꿈나무, 청소년대표, 국가대표후보' 학생선수의 훈련도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 초과 사용 가능

라.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책무성 강조

- (단위학교) 학교장은 학기초 학생선수를 파악하여 학생선수의 최저학력 도달여부와 허용일수, 안전 확보 등을 고려하여 대회 및 훈련 참가 승인
- (경기단체) 각종대회를 개최하는 종목별 주관 경기단체에서는 학생선수가 학교장 확인서를 미제출 하였을 경우, 대회참가를 불허
- (교육(지원)청) 최저학력 미도달 현황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
- (출석인정제 출결관리 매뉴얼 개발) 제도 적용 및 관리기준, 사례 Q&A, 수업결손 보충기준 등을 마련하여 제도의 안정적 현장 적용 및 안착 지원(학교체육 포털 탑재, '23.공문 안내)

③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최저학력제 적용(변경, 법령 개정)

☞ (관련근거)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제1항 일부개정('24.12.30. 공포·시행)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이하 "최저학력"이라 한다)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생선수가 제2항에 따른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참가를 허용하여야 한다.

가. 최저학력제 개요

- (적용목적)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에 미도달 한 경우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운영(의무)하고, 경기대회 참가를 제한 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적용대상) 초(4~6학년)·중·고 학생선수*
 - * 학교운동부 소속이거나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학교체육진흥법 제2조)
- (적용과목) 초·중학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5과목) 고등학교: 국어, 영어, 사회(3과목)

- **(적용기준*)** (초) 50%, (중) 40%, (고) 30%
 - * 학생선수 소속 학교의 해당학년 해당교과별 평균성과 비교
 - (예) 00과목 0학년 평균성적 70점일 경우 50%(35점), 40%(28점), 30%(21점)
- **(성적적용) 매 학기말 고사(이론시험+수행평가)**
 - 2024학년도 2학기 말 해당 과목 성적이 최저학력에 미도달하였을 경우에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대회 참가 가능
 - 학교장은 최저학력 기준에 미도달한 학생선수 대상으로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Run-up) (e-School 등 활용)을 제공하고 대상 학생선수는 참여(이수) 의무화
-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학교장은 학기별 기말고사(지필고사+수행평가) 성적이 산출되면 학생선수의 **최저학력 도달 여부를 파악**
 - 미도달 학생선수에게는 과목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운영 후 이수를 의무화하고 관련 사항은 내부 결재 처리 등을 적절히 조치

핵심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적용 주요 사항**

- **(사전안내)** 학년 초에 최저학력제 적용과목을 선정하고 이를 학생선수에게 안내
- **(초등학교)** 지필고사 미실시하는 경우, 담임교사가 진단 및 단원 평가 결과 등의 자료를 **학업성적 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활용하여 심의 후 **최저학력 도달 여부 결정**
- **(중학교)** 자유학기(학년)제 운영 다음 학기에는 **최저학력제 미적용**
 ※ (예시) A중학교에서 1학년 2학기를 자유학기로 운영한 경우, 2학년 1학기에는 학생선수 대상 최저학력제 미적용
- **(고등학교)** 학교장은 학교체육소위원회 심의 후 **영어, 사회** ⇨ **수학, 과학**으로 대체 가능, **특성화 고등학교도 영어는 수학교로, 사회는 과학 또는 전문교과로 대체 가능**
- **(교과대체)** 교육과정 개편으로 해당교과가 개설되지 않을 경우, 학교장이 **학교체육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타교과로 대체 가능
- ▶ **최저학력 미달 학생선수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미이수하면 학교장 확인서 발급 불가**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선수 최저학력 기준은 학교의 장이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적용 가능
 ※ 특수교육대상자에 관한 내용은 특수교육과로 문의
 * 기준 성적의 하향, 개별화교육계획 평가 결과 반영, 학생 개별 맞춤형 대체 과제 제시 등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264(2025.1.15.)]

☞ **(관련근거)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24. 10. 18)**

제6조 제 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 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선수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 24조에 따른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이하 (이 조에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최저학력의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개별화교육 지원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적용 및 처리 절차

- [학교에서 해야 할 일] 내부결재 처리 : 학기말 지필고사+수행평가 성적이 산출되면 학생선수의 최저학력제 도달여부를 파악하고 미도달 학생선수에게는 과목별 기초학력 보장프로그램을 운영 후 이와 관련된 사항을 내부결재 처리 ※ 고등학교 체육특기자 진학 시 반영사항임
- 학생선수가 상급학교로 진학한 후에 졸업 학교로 직전 학년의 '최저학력 도달 여부 확인*'을 요청할 시 적극 협조 필요
 - *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중학교 3학년 2학기의 과목별 최저학력 도달 여부 확인
- 최저학력에 미도달 할 경우, 초·중학교(5교과)는 교과별 12시간, 고등학교(3교과)는 교과별 20시간 운영 및 이수 의무화(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Run-up) (e-School 등 활용)
- 예시) 해당 과목(초·중 5교과, 고 3교과) 전체가 미도달 되면 총 60시간 이수

예시		최저학력 및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 관리				
학년-반	이름	종목	최저학력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	
			도달여부	미도달 과목수	이수여부	이수 시간
4-1	○○○	00	도달	미작성	미작성	미작성
5-3(초) 2-1(중, 고)	△△△	00	미도달	3	이수	36(초, 중) 60(고)

다. 최저학력제 적용 책무성 강조 (※학교체육진흥법 제6조1항제4호, 제11조제1항)

- 학기초: 학생선수(개인선수 포함)와 학부모에게 최저학력제 적용과목, 대회참가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사전 안내하고,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학기말: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적용하여 도달 여부를 판단 후 미도달 학생에게는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e-school 활용 등)을 제공하고 의무 이수토록 관리 감독
- e-school 활용 내실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공부하는 학생선수 여건 조성을 위해 구축된 시스템을 효과적이고 내실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철저
 - * 학부모 대리수강 방지를 위한 학교별 자체 방안 강구하여 운영
 - 학교에서는 학기초 학생선수 파악하여 학생선수(학부모)에게 사전 안내하고 별도 계획 수립 후 추진
 - 단체 수강(학교운동부는 훈련 전·후 및 여유 시간을 활용하여 수강 권장), 개별 학습노트 작성, 수강 진도 수시 확인 및 관리 감독

7-2 정규수업 이수 의무화 및 학력증진 방안

☞ (관련근거) 학교체육진흥법 제6조(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

-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4.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가. (기본원칙)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고,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통해 전인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모든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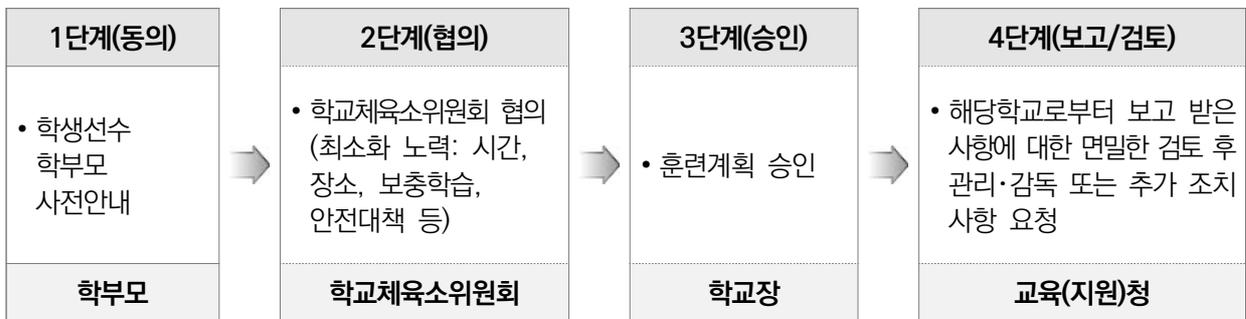
- 단, 교내에 훈련장소가 없고 학생선수 안전관리 상 야간에 훈련이 어려운 종목으로 상시적 정규수업 이수가 불가능할 경우, 보충학습 제공·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교육지원청에 보고 의무화
 ※ 다만, 이 경우에도 훈련 참가는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 내에서 실시 가능

나. (보충학습) 학생선수가 수업결손이 발생할 경우, 학습권 보장을 위해 e-school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보충학습 제공 후 의무 이수**

※ 수업결손 최소화 노력 : 훈련장소, 훈련시간, 훈련방법 과학화 등을 통한 개선 필요

- (이수 기준) 1일 2시간 이하 수업결손은 1시간 수강, 3시간 이상 결손은 2시간 수강하며, 1일 최대 2시간 의무 수강
 ※ e-school 수강 시 적용 사항이며, 학교 여건에 따라 대면수업 등 자체 계획수립·운영 가능
- (초등학교 e-school 운영) 학생선수 학습지원을 초등학교까지 확대하고, 관련 교과 콘텐츠 및 특화 콘텐츠** 지원
 * 스키포유 초등학교(4~6학년) 콘텐츠 활용 : 국어, 수학, 영어, 음악, 미술 등 12종
 ** 초등 학생선수 대상 맞춤형 지원을 위한 진로 탐색, 진로 개발 로드맵 개발, 인성·정서·기초역량 개발 지원
-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충학습) 학생의 장애정도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화교육지원팀의 의견을 들어 e-school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보충학습 방법을 달리 정하여 학생선수 수업결손 예방할 수 있음

다. 훈련참가 허가 절차 : 학교 내 시설이 없는 경우



7-3 학습지원(e-school) 운영 및 기초학력보장(Run-up) 프로그램

가. e-school 시스템 운영 개요

- **(개념)** 학생선수들이 대회참가 및 훈련참가로 인한 수업결손을 보충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시스템
- **(대상)** 초·중·고등학교 학생선수*
 - * 국가대표 학생선수와 학생선수 활동을 중단하고 일반학생으로 전환한 학생(경력전환 학생)들도 본인 희망에 따라 수강 가능
- **(운영 강좌)** 초등학교(교과 14강좌, 특화 4강좌), 중학교(교과 24강좌, 특화 12강좌), 고등학교 (교과 69강좌, 특화 13강좌)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선수 결·보강시 경기 e학습터(<https://cls.edunet.net/>)활용 또는 해당 학교별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단위학교별로 계획하여 운영 가능

나. e-school 시스템 활용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누리집 주소	es.e-school.or.kr	ms.e-school.or.kr	hs.e-school.or.kr

- 학생선수 수업 결손에 따른 **보충학습 제공,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운영**, 학습결손 보완을 위한 기초학력 콘텐츠* 제공, **진로교육 콘텐츠** 등 활용
 - * 고등학교 학생선수의 기초 학력 보완을 위해 중학교 교과 콘텐츠 수강 가능
- **학생선수 활동 중단** 학생의 경우에도, 본인이 희망하면 e-school활용하여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당학교에서 가입·수강 지원
-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활동하는 학생선수들은 국가대표 선수촌 입촌 및 위탁교육 시에도 적극 활용하여 학습에 참여
 - * 진천선수촌 내 학습지원센터 설립(문체부)

다. e-school 학습 내실화를 위한 학습 시간 조정

- (목적) 학생선수의 자발적인 학습 참여를 유도하고, **대리수강을 방지**하여 e-school이 학력증진에 실제적 도움이 되도록 운영
- (내용) **정규 수업시간 및 심야 시간대를 학습시간에서 제외**
- e-school을 활용한 학습 가능 시간

구분		학습 시간	Run-up 여름, 겨울
평일	아침시간	06:00 ~ 09:00	06:00 ~ 익일 02:00
	점심시간	11:30 ~ 13:30	
	오후 및 저녁시간	15:00 ~ 02:00	
주말 및 공휴일		06:00 ~ 익일 02:00	

라.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Run-up) 운영 및 의무 참여

- 1) 학교장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최저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준미달 학생선수는 프로그램 「의무 참여」
- 2) 최저학력 기준 미달 학생선수는 미도달 교과별로 초·중학교는 12시간씩, 고등학교는 20시간씩 운영하고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함.
- 3) 최저학력제 적용 대상 : 초등학교 4~6학년, 중·고등학교 전학년 학생선수
- 4) 이수기준 처리 : 1일 2시간 이하 수업결손은 1시간 수강, 3시간 이상 결손은 2시간 수강하며, 1일 최대 2시간 의무 수강
 - ※ e-school 수강 시 적용 사항이며, 학교 여건에 따라 대면수업 등 자체 계획수립·운영 가능
- 5) 학습결과처리 : 학생선수 e-school 사이트에서(교무실→학습관리→학습현황관리→학생학습현황) 학습 확인서 출력 후 학교장 확인(매 학기 말)
 - ※ 학교장 확인서 및 참가신청서[서식]활용
 - ※ 참고/진로강좌 안내
 - 초등학교 학생선수 e-school 진로 강좌(<http://es.e-school.or.kr/special.do>)
 - 중학교 학생선수 e-school 진로 강좌(<http://ms.e-school.or.kr/special.do>)
 - 고등학교 학생선수 e-school 진로 강좌(<http://hs.e-school.or.kr/special.do>)

7-4 나이스 활용한 (개인)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 관리 의무화(신규)

가. (학생선수 나이스 등록) 나이스의 '체육-학생선수관리' 탭에 (개인)학생선수*를 등록하여 출결 및 훈련일지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

* 학교운동부 소속 학생선수뿐만 아니라 개인 활동 학생선수도 학기 초 파악 등록·관리

※ (개인 학생선수 등록 방법) [체육]-[학생선수관리]-[등록]-[학생찾기]-[학생명 조회]-[개인운동선수] 체크-[종목]-[세부종목]-[운동시작일자] 입력 후 [저장]

나. (출결상황 관리) 나이스 상의 학생선수 관리를 통해 [학적]과 연계한 정확한 '출석인정결석 허용일 수'의 시간 단위 누적·관리 가능

다. (최저학력제 관리) 학교급별 최저학력 과목을 등록하면 [성적]과 연계되어 자동으로 최저학력 달성 여부를 확인 및 관리 가능

라. (보충학습 이수 관리) 참가 및 훈련에 따른 수업결손 발생 시 의무 이수해야 하는 e-school 학습의 이수 현황 파악 가능('25.6월 이후~)

8 학생선수 인권보호 및 진로역량 강화

8-1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

☞ (관련근거) 학교체육진흥법 제12조의3(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인권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등 각종 교육의무화

가. 학생선수 (성)폭력 사안에 조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

★ 학생선수 관련하여 사안이 있는 경우 교육(지원)청 보고 의무화

나.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가해자인 경우 학교체육 진흥법 제12조 4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다. 학생선수, 학교운동부지도자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 학교는 학교체육소위원회를 중심으로 학생선수 보호를 위한 상담활동 지원, 재교육을 통한 후속 조치 철저

○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학기당 1회, 회당 1시간 이상**의 스포츠분야 **인권교육 의무화**(「학교체육진흥법 개정, '21.4)

- 학생선수에게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학교폭력 예방교육**(연 2회) 실시하고, 추가적으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연 2회)을 **의무적으로 실시**

- 인권교육은 **스포츠분야 폭력 예방,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인권침해 발생 시 대응 및 신고 방법** 등에 대한 내용 포함, 학생선수에게 의무연수 실시('22.상~)

※ (학생용) e-school 플랫폼 탑재 (지도자용) 학교체육회진흥회, 대한체육회 플랫폼 탑재

○ **운동부지도자의 인권교육 내실화 및 인권존중 문화 확산**

-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에 **폭력 예방 교육**을 포함하고, 자격 보유 체육지도자의 **2년 주기 재교육 의무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20.11)

○ **담임·지도·상담·보건교사** 등이 학생선수 **건강상태 확인**과 **고민·애로사항**에 대해 **주기적인 상담활동**(월 1회)으로 실시*

*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학생선수 당 월 1회 상담실시 및 일지 작성·관리

2 학생선수 폭력 발생 조기발견 및 신고문화 확산

가. 학생선수 폭력 실태조사 정례화를 통한 신고문화 정착

○ 학생선수의 폭력피해 실태 파악을 위해 전수조사를 매년 실시, 피해자 조기발견 하여 **보호 강화** 및 **신고문화 정착** 도모

③ 학생선수 (성)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

가. 학교폭력 근절 대책과 연계하여 학교 교육계획 수립 시 학생선수 인권교육 내용 반영

나. 학교장 책임 하에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 지도자 대상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거나 일반 학생 대상 학교(성)폭력 예방교육과 연계 실시

다. 교육대상 및 내용

연번	교육내용	대상	교육횟수	주관기관	비고
1	인권교육 및 성(희통)폭력 근절 예방 교육	지도자	연1회 (2시간)	교육지원청	
2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생선수의 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	학생선수, 지도자(학부모)	연2회	학교	학교운동부 점검 사항
3	학교운동부 운영 관련 교육 의무화 (학습권, 인권보호, 진로, 입학비리, 학교회계 등)	지도자, 학부모, 지도교사	연2회	학교 교육지원청	집합, 사이버 연수 등
4	도핑방지교육 (도핑개념, 금지약물정보, 도핑관련정보 등)	학생선수, 지도자	연1회	학교, 교육지원청	한국도핑방지위원 회 교육 신청 02-2045-9800
5	학생선수 면(상담) 의무화 (건강관리, 심리지원, 진로 진학 등)	학생선수	월1회	학교	상담일지기록 전문상담교사
6	학생선수 인권실태 조사 ※ 폭력피해 실태조사 정례화	학생선수	연2회	학교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담당 교사 협조
7	학생선수 휴식권 보장	학생선수, 지도자	연중	학교	학교운동부 운영 계획 포함
8	학생선수 고충처리센터 설치·운영	학생선수	연중	학교 교육지원청	연2회 보고
9	학생선수 안전드림(앱) 설치	학생선수, 지도자	연중	학교	학기초 안내
10	학교장 간담회 실시 (학교운동부 운영 소통의 장 마련)	학생선수, 지도자 학부모	연2회	학교	등록부/협의를
11	학업정보 및 상담프로그램 제공	학생선수	연중	학교	진로상담교사 협조
12	학교폭력 신고 방법 홍보	학생선수	연중	학교 교육지원청	학교홈페이지
13	폭력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학교체육시설 내 취약지점 CCTV 설치	학생선수	연중	학교	학교체육시설 내

※ 프로그램 및 (운영 기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학생선수 및 지도자, 학부모 대상 의무연수 시 참고사항

- 대한체육회스포츠인권센터 유튜브 채널
: <https://www.youtube.com/@user-do9rd1sb1z/videos>
- 국가인권위원회 유튜브 채널[스포츠인권 RESPECT ep.1~6]
: https://www.youtube.com/watch?v=52Jgi2l34nc&list=PLYKtfwhujkllu8ZKuECT942U2vU9y6_y&index=6
-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온라인 도핑방지교육센터 : <https://edu.kada-ad.or.kr/>
- 외부 기관에서 주관하는 인권교육 적극 활용 : 국가인권위원회 및 대한(경기도)체육회 등
- 스포츠윤리센터: 스포츠윤리(체육인·스포츠지도자 의무교육, 인권침해, 비리방지 예방교육)

라. 학생선수 폭력피해 예방 및 보호 등 후속조치 강화

- 피해자 조기발견을 위한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 정례화

'25년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 결과 개요

- (조사 대상) 초·중·고 전체 학생선수
- (조사 기간) '25. 5월 실시 예정
- ※ 학생선수 폭력 피해 전수조사 계획 별도 안내 예정

- (전수조사) 학생선수 폭력에 대한 신속한 대응, 적극적인 신고문화 정착을 위해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
- (심층조사) 사안이 중대하거나 은폐 의혹 등이 있는 경우 관할 경찰, 교육청 등이 2차 합동 조사 후 고발·징계 등 조치
- (법적 근거)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 정례화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 조기발견 지원***(「학교체육진흥법」 개정)
 - ※ 「학교체육 진흥법」제12의3제1항 일부개정법률안('22.상반기)

마. 학교체육시설 내 CCTV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

- 학교운동장 사각지대, 체육관, 지도자실 및 기숙사 등 설치 현황조사*를 통해 체육시설 CCTV 설치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
 - ※ 학교 내 관련 업무부서 간 협업을 통해 취약지점을 선정한 후 CCTV를 설치하고 학교 예산 범위를 고려, 신규 설치하거나 기존 설치 장비의 이동 설치도 가능
 - * 교내 관련 부서 간 협조를 통해 학교 내 기존 설치 장소의 폭력 예방 효과성을 고려하여 추진하되, 기존 장비의 이동 설치가 학교 폭력 사안의 발생 원인이 되지 않도록 유의
- 학교체육소위원회 운영 내실화
 - 학생선수의 학습권 및 인권보호를 위해 학교체육소위원회의 기능을 내실화하고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하도록 개선하여 학교 내 학생선수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 유도
 - ※ 학교체육소위원회 구성·운영 변경 사항

바. 가해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사후 조치 강화

○ 학교폭력 가해 학생선수에 대하여 폭력 사안조치 결과에 따라 일정기간 대회 참가 및 선수등록 제한

「학교폭력예방법」 처분에 따른 학생선수 선수등록·대회 참가 제한			
학교폭력 가해자 사안 조치 결과		제한 기간	
1호(서면사과), 2호(접촉·보복금지), 3호(교내봉사)		3개월	대회 참가 제한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6개월	
8호(전학)		12개월	
9호(퇴학)	성추행, 성희롱 폭력 등	5년	대회 참가 및 선수등록 제한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	10년	

○ 운동부지도자의 의무 위반 및 비위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

- 학생선수 훈련 중에 반드시 입장 지도하도록 하고, 위험종목 장비(활, 총, 투척용구 등) 사용 관리·감독 등 주의 의무 위반시 징계 강화
 - ※ 대한체육회에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규정」제25조제1항1호의 '직무태만' 내용에 '임장지도 의무 위반' 적시 요청
- 운동부지도자의 폭력 사안이 일관되고 엄정하게 처리되도록 '학교운동부지도자 징계양정기준'(교육부 표준 권고안) 적용

운동부지도자 징계양정기준(안)					
비위유형	비위의정도	경과실	비위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등	비위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등	비위정도가 심하고 고의
폭력		견책-감봉	정직-해고	해고	
폭력행위방조/묵인		견책	감봉	정직	해고
성희롱		정직	정직-해고	해고	
성폭행		해고			
성폭력방조/묵인		견책~감봉	정직	해고	

④ [학부모] 학교운동부 운영 관련 교육 의무화

- 가. (교육내용)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학교운동부 운영 투명성 제고 입학비리 근절, 학부모 부담금 학교회계 편입 등에 대한 교육(집합교육, 찾아가는 현장교육 등)
- 나. (주관기관)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운동부 운영학교
- 다. (교육횟수) 학기별 1회(연2회) 이상 실시(집합, 사이버 연수 등)

8-2 학생선수 상담 및 고충 해결 지원

① 학생선수 상담 의무화

※ 학생선수·학교장, 학교운동부지도자·학교장 간담회(연 1회 이상, 단위학교)

가. 학교 : 월 1회(누적관리, 개인 면(상)담일지 보관), 필수

나. 운영 : 담임교사, 체육교사(학교운동부 지도교사), 상담교사 및 보건교사를 통하여 학생선수의 건강상태 및 선수 활동 고민사항을 점검·해소

다. 전문상담교사를 활용한 체계적인 상담 및 진로교육 의무화

※ 학교운동부 연간계획에 반영(사전협의)를 통한 계획 수립 후 운영

라. 선수의 건강관리, 상담 및 폭력에 의한 경기력 저하 요인 파악 등으로 선수 개인별 정보 누가 관리 체계 유지

② 학생선수 고충처리센터 운영

가. 학생선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 선수보호 모니터링을 위한 학생선수고충처리센터 설치·운영

나. 학생선수고충처리센터

위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담당자	비고
주소	경기도 000 000 000 519-9			
학교홈페이지	http://000.ms.kr			
000학교 1층 학생생활인권부	070-5031-0000	000@000.net	000	학생생활 인권부장
000학교 1층 보건실	070-5031-0000	000@000.net	000	위원

(설치: 학교, 교육지원청)

③ 학교체육소위원회 (겸「학생선수보호규정」) 운영

가. 학생선수 인권보호 및 올바른 학생선수 육성 체계 모색을 위한 총괄적인 실천기구로 운영

나.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학교체육소위원회’ 를 설치하여 학생체육활동 장려 및 지원

다. 구성은 7명 내외(학운위 위원 + 체육관련 전문가 등)로 기존의 학생선수보호위원회의 기능을 학교체육 소위원회에 포함

라. 대한체육회의 「선수보호위원회규정」 개정('09.12월)에 따른 (성)폭력을 행한 선수·지도자에 대한 징계 규정 등 개정

1) (성)폭력을 행한 지도자 학교체육소위원회의 조사심의를 거쳐 징계 요구 후 절차에 따라 징계

2) (성)폭력을 행한 학생선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마. 기능

1) 선수 폭력행위 지도자 또는 가해선수에 대한 조사 및 처벌에 관한 사항

2) 선수 인권 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에 관한 사항

- 3) 선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4) 선수 인권 보호 및 신장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교류 증진 및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 5) 기타 선수 인권 보호 및 학교운동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

8-3 학생선수 성장 지원을 위한 진로·진학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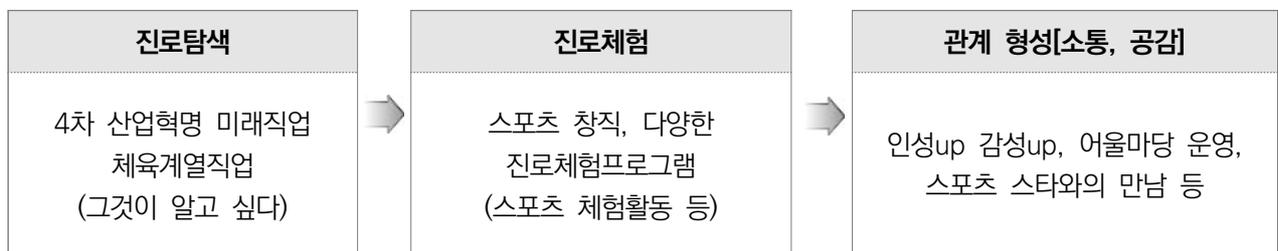
① 추진 목적

- ◇ 학생중심 성장단계에 맞는 진로·진학 교육 내실화
- ◇ 학생선수 진로·진학 생태계 구축을 통한 사교육 의존도 완화

② 운영 방침

- 학교운동부 연간계획 수립시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진로·진학 교육 반영하여 성장단계 맞게 운영
- 학생선수 맞춤형 진로·진학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운영
- 성장단계별 학생선수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위한 관계부서 협의 및 논의

③ 교육프로그램 내용



- 온·오프라인 찾아가는 진로멘토상담제 운영(추가)
 - (진로분야 다양화): 학생선수에게 스포츠분야의 다양한 진로와 경로 안내를 통하여, 학생선수 및 경력전환 학생에게 실질적 진로·진학지도
 - ※ (학과) 체육학과, 사회체육과, 운동처방학과, 스포츠재활학과, 스포츠매니지먼트 전공 등
 - ※ (직업) 프로선수, 심판, 코치, 체육행정가, 경기전략 분석가, 스포츠프로듀서, 스포츠마케터, 재활치료사, 스포츠타레이너, 스포츠마케터, 스포츠심리상담사 등
- 진로 상담강화
 - 스포츠 분야 진로상담전문가 멘토풀을 매년 축적하고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진로멘토상담제' 연중 상시 운영
 - * 학교체육 포털(<http://www.cspep.or.kr>) ⇒ '체육인재육성' ⇒ '진로진학상담'

④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

연번	내용	기간	주관	비고
1	학교운동부 진로 상담 운영 ※ 학교운동부 계획수립 시 포함	연중	학교	월 1회 상담의무화
2	찾아가는 운동선수 진로교육 (진로설계, 진로상담, 스포츠자격 등)	3월~11월	학교/교육(지원)청	중/고 희망 학교운동부
3	경기도 진학·정보센터 활용 상담 ※ 체육 입시 전문지원단 상담	연중	학교/교육(지원)청	(진로진학과)
4	체육분야 진로·진학 자료 제공	10월~11월	학교/교육지원청	(진로진학과)
5	중·고 사이버(e-school)등 진로교육 콘텐츠 운영	연중	학교	한국교육개발원
6	2025학년도 체육특기자 대입 설명회	8월	교육(지원)청	한국대학스포츠 협의회
7	학생선수 진로·진학 상담 (화상상담 및 게시판 상담)	7월~9월	학교	교육부
8	스포츠 미래 진로 교육 (스포츠 직종 및 스포츠 스타 명사 특강)	3월~10월	학교/교육(지원)청	경기도체육회

※ 프로그램 및 (운영 기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학생선수 및 지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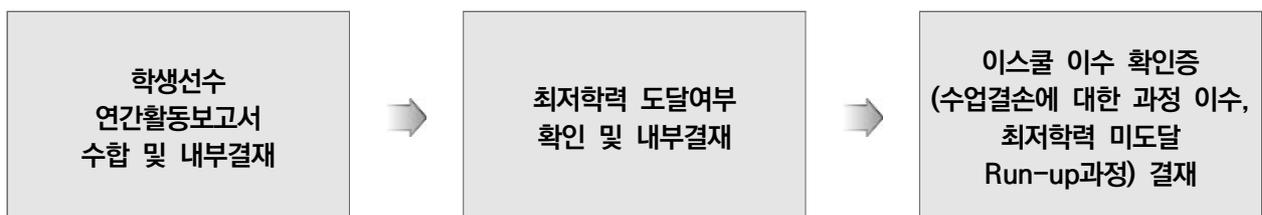
• 학부모 대상 진로·진학 연수시 참고사항

- 영상제목: [KUSF X 짤툰] '체육특기자' 유튜브 채널 활용
- 영상내용: 체육특기자 대입제도 개선 사항 및 체육특기자대입포털 안내
- 영상활용: KUSF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watch?v=-q1jAbNC8L4&t=20s>)

※ 체육특기자 수시 지원 및 평가, 온라인 상담 등 활용 가능

★ (상시) 학생선수들의 진로 및 직업 경로 탐색 지원을 위해 학생선수 e-school에 다양한 분야의 진로 소양 콘텐츠(8종) 탑재하고 온라인 학습지원

⑤ 학기 말 업무



9 훈련 및 대회참가

9-1 대회(훈련) 참가 나이스 처리 방법 안내

1 대회(훈련) 참가 승인 절차



※ 대회(훈련) 참가 승인은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반영하여 운영

가. 1단계: 대회공문(훈련계획), 국가대표 대회(훈련) 참가 협조공문 접수

나. 2단계: 학생선수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 ★

학교 급	초	중	고
허용일수	20일	35일	50일

1) 대회(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연간운영계획서, 수업일수 확인 등

2) 학생선수의 최저학력 도달 여부 확인, 최저학력기준 미도달 경우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Run-up) 이수 여부, 대회(훈련) 참가 승인 결정

3) 보충학습, 안전계획 등 수립 여부

다. 3단계 : 학교장 승인

라. 4단계 : 담임교사(나이스 처리)

마. 5단계 : 운동부 지도교사(누적 관리)

2 국가대표(꿈나무, 청소년대표, 국가대표 후보 포함) 대회(훈련) 참가 절차

가. 학생선수의 국가대표 대회(훈련)참가 공문 접수 : 문화체육관광부장관(대한체육회) 승인여부 확인

승인 절차

종목별 경기단체 ⇨ 대한체육회(승인) ⇨ 학생선수 국가대표 소속학교

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 장기간 국가대표 대회(훈련)에 참가에 따른 심의 및 학교장 허가

※ 위탁교육 가능 여부, 보충학습 계획, 성적 및 출결처리 등에 관한 사항 심의

다. 보고 : 학생선수의 국가대표 대회(훈련)참가 관련 사항

라. 관리·감독 : 학교로부터 보고 받은 사항을 검토 및 확인 후 추가 조치사항 요청

마. 운영절차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대한체육회)이 인정하는 국가대표로서 주요 국제대회 및 국가대표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 가능

※ 20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참고

③ 학생선수 나이스 시스템 상의 출결상황 관리

가. 학생선수의 성적처리 및 관리도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단위학교 학업성적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성적처리
 ※ 특이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성적관리가 되도록 처리

나. 담임교사는 학생선수의 출결 상황을 NEIS 학교생활기록부(일일출결관리)에 처리

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 1) 1단계) 교육정보시스템 접속
- 2) 2단계) [학적]-[출결관리]-[일일출결관리(담임용)] 화면 출력
- 3) 3단계) 출석인정 클릭하고, 사유에 대회명과 기간 등을 기입

④ 학교장 확인 절차 강화

가. 대회출전 및 훈련으로 인한 수업결손 시 보충학습 기회 제공

※ 학기 중 대회출전으로 수업결손이 예상되는 경우 대회출전계획 내부결재 시 보충학습계획 반드시 반영하여 학교장 결재 후 실시

나. (학교장 확인 절차 강화) 학교장이 수업일수 준수 및 최저학력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 후 대회 출전 허용

※ (출결관리 강화) 학교장은 학교교육계획서에 전국대회 참가계획을 반영하여, 대회 및 훈련 참가 시 '출석인정결석' 처리 절차 준수

9-2 혹서(한)기 훈련 안전대책 수립 및 훈련시간 최소화

가. 폭염 특보 발령 시 야외 체육활동 자제(주의보*) 및 금지(경보**)

* 주의보 : 일 최고기온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 예상

** 경보 : 일 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 예상

나. 한파 특보 발령 시 야외 체육활동 자제(주의보*) 및 금지(경보**)

* 주의보 : 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 예상

** 경보 : 아침 최저기온이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 예상

다. 학생선수 보호 안전 대책

- 기온을 고려하여 가급적 실내 활용하되, 여건에 따라 선택적 운영
- 학생선수가 혹서(한)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훈련시간 조절
- 체육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안전조치 후 사용
- 위험요소 사전제거, 충분한 영양 및 수분 섭취 조치
- 학생선수 개인별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휴식 제공
- 훈련 및 대회참가 전후 학생선수 건강상태 확인을 통해 참가여부 결정
- 과도하고 무리한 훈련 진행 금지 및 입장지도와 관리감독 철저

※ 학교운동부 연간계획에 종목별 특성에 맞게 학생선수 휴식권 보장 확보

9-3 방학 중 훈련 및 전지훈련

가. 방학 중 훈련은 학교운동부 운영계획에 따라 실시(내부결재)

나. 방학 중 훈련 및 전지훈련 시 안전계획 수립하여 교육 실시

다. 전지훈련은 방학 중에 실시하며, 자체계획수립 후 실시

라. 장기 국내 전지훈련은 가급적 자제, 학교 및 인근체육시설 이용 훈련

마. 훈련 장소에 학교운동부 지도자 입장 지도를 원칙으로 책무성 강화

바. 학생선수의 식중독, 교통상해, 운동 상해, (성)폭력 예방 등 선수인권 및 안전관리 철저

사. 전지훈련 계획은 학교운동부 연간운영계획에 반영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학교장 승인 후 시행

아. 학부모 동의서를 첨부한 훈련계획서를 학교장 결재 후 실시(잔류학생 지도계획 수립)

자. 입학(진학)예정자는 입학이 확정된 이후, 상급학교의 요청이 있고, 학부모 부담이 없는 경우, 소속교 학교장 동의 시 공문 교류를 통해 훈련 실시(학부모 동의 필수)

- 훈련비 및 안전 관련 계획을 수립 후 훈련 합류
- 상급학교 소속으로 대회출전은 금지(교육부, 2016)

※ 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준용

9-4 해외 전지훈련

- 가. 국가대표 훈련, 국제 교류전 등 정부(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훈련에 학부모 부담이 없는 경우 허용하며, 그 외 해외 전지훈련은 가급적 지양
- 나. 학생선수 안전 및 학부모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해외 전지훈련 지양
- 다. 입학(진학)예정자는 원칙적으로 진학 예정교 소속 학생이 아니므로, 입학 전 해외 전지훈련에 참여할 수 없음
- 라. 스포츠클럽 소속 학생선수도 개별 또는 팀별로 동일한 절차 준수
- 마. 해외 전지훈련은 방학기간 중 실시가 원칙이며, 교육지원청에 사전·사후 보고 및 공개를 철저히 이행
- 바. 학교장은 기관 및 학부모회 요구가 있을 경우 학생선수 안전, 학습권 보장, 학부모 부담경비 최소화, 학교폭력 예방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해당교육청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며 관리·감독을 충실히 이행
 - * 초·중등교육법 제32조(기능) 제1항 제12호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 사. 학교관계자가 숙소 및 훈련장 등에 사전 답사 의무적으로 실시
 - 학생안전이 확보되고,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된 시설물 이용
 - ※ 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준용

아. 운영절차(해외전지훈련)★



- 1) 해외전지훈련계획서 수립[학부모 동의서 포함(학부모 전원 의견 수렴)]
- 2)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실시여부 결정
- 3) 학교관계자 숙소 및 훈련장 등 사전답사 의무적으로 실시
- 4) 사전보고 : 전지훈련 1개월 전 해당교육(지원)청에 전지훈련계획서 제출(인원, 일정 및 경비 등 포함) ⇒ 학교 홈페이지 탑재
- 5) 사후보고 : 전지훈련 종료 후 15일 이내에 관할 교육(지원)청에 결과보고서 및 경비 정산서 제출 ⇒ 학교 홈페이지 탑재

자. 해외 전지훈련 계획 시 필수 검토 사항

구분	내용	비고
예산집행 절차의 투명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소요경비 2천만원 초과~5천만 이하일 경우 G2B를 이용하여 2개 업체 이상 전자견적을 받아 개찰 후 전자계약 체결 • 전자견적 시 우량 및 허가업체가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입찰 공고(제한조건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업체와 부적절한 리베이트 관리 철저 • 여행자 및 상해보험 면밀히 검토 • 훈련장소 사전답사
사전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관계자는 숙소 및 훈련장소 등 사전답사 의무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사전답사) • 교육지원청(확인)
훈련경비 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선수 1인당 소요경비 산출의 적정성 지도자 운영 경비 포함하여 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비 경감을 위하여 장기간 전지훈련 지양
집행내역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행내역을 홈페이지 및 전체 학부모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홈페이지 • 전체 학부모 공개
학생선수 (성)폭력 예방 교육 및 안전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국 전 및 훈련기간 중 학생 생활·안전 및 (성)폭력 교육에 대한 계획 	출국 전 사전교육 철저
위급상황 대처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신변 안전 및 응급(부상)상황 발생 시 대처 	
문화 이해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국가에 대한 문화 이해 교육 	
임장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선수의 안전을 위해 담당교사 및 지도자의 임장지도를 원칙으로 함 • 학교 여건에 따라 담당교사는 학생선수 전지훈련 시 부분 임장 가능(단, 안전책임관 지정) 	
정산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	

※ 해외 전지훈련 시 해당 교육지원청의 검토 의견(출발 60일전)을 반영하여 계획 수립

9-5 학교운동부 훈련 및 대회출전 시 학생선수 관리 방안

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른 학교운동부 훈련 및 대회 출전시 학생선수 관리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
 [관련 공문 시행 참고] 학생건강과-10626(2022. 9. 19.)

※ 학교운동부 담당 지도교사가 훈련 및 대회 출전 시 동행하여 입장지도 하는 것이 원칙이나, 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활용 가능

① 방안 1 - 학교 연합 공동지도 및 관리

- 훈련 및 대회 출전 전 학교 간 사전협의를 통한 안전책임자 지정(명단, 일시 등)
- 기간 내 정해진 안전책임자 명단을 관련 학교에 통보
- 학교별 안전책임자 임명에 대한 학교장 내부결재
- 내부결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날짜별 안전책임자 명단, 역할 등
- 안전책임자(교직원)의 복무 및 수당 등은 소속교 처리

② 방안 2 - 종목단체 및 체육회 주관 학생선수 지도 및 관리

- 종목단체·체육회 직원(외부인력) 봉사자 및 채용을 통한 학생 지도 및 관리
- 사전에 안전책임자 명단을 통보받아 학교별 내부결재를 통한 계획 수립 후 운영
- 안전책임자 자격 기준을 충족한 자만 채용 가능
- 안전책임자의 복무 및 수당 관리는 종목단체 및 체육회 처리
- 안전책임자가 학생선수 소속교 교직원일 경우 복무 및 수당 등은 소속교 처리

③ 방안 3 - 학부모(외부인력) 안전책임자 임명 및 운영

- 학부모(외부인력) 안전책임자에 관한 학교장 내부결재를 득한 후 역할 수행 가능
 - 안전책임자(학부모, 외부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
 - 학교기본운영비 및 수익자부담경비 등
 - 외부인력 채용시 안전책임자 자격 기준에 따름(학부모 봉사자는 해당 없음)
 - 학부모(외부인력)봉사자로 지원받아 운영(무임금)
 -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여 자원봉사자 구성
- ※ 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준용

④ 학생선수 관리 방안(준수사항)

- 안전책임자에 대한 보험 가입 여부 확인
- 성범죄 등 범죄 경력 확인 필수
- 안전책임자는 학생선수(지도자)와 동성으로 임명(권장)
- 사고발생시 안전책임자 임명에 대한 학교장 내부결재 근거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가능

5 안전책임자 운영 절차 및 방법

○ 기존 교직원 인솔 외 다른 방법으로 운영시 절차 및 방법

사전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수립: 학교장 내부결재) 학교운동부 운영계획 수립 시 학생 선수 관리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반영 (안전, 예산, 안전책임자 지정, 역할, 수당 지급 등)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운영 전 안전책임자에 대한 교육 필수 (임장지도, 응급처치, 안전지도, 대피요령, 비상연락망, 역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책임자 범죄 경력 확인 철저 * 안전책임자 역할 부여 철저
↓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에 의한 학생선수 관리 및 지도 (숙소관리 및 대회/훈련 장소 내 학생선수 관리) ■ 안전책임자 임장지도 철저(안전사고 예방) ※ 사고 발생시 즉시 조치 및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안전공제회 (여행자보험, 상해 보험 등) 연계 보상 처리
↓		
평가회 및 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평가회를 통한 추후 운영 방식 결정 ■ 수당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임금 적용

○ 안전 확보 방안

- 안전책임자 범죄경력조회(성범죄 포함) 필수
- 보험가입
 - ▶ 학생선수, 지도자 여행자 보험 가입: 사고발생시 보상 범위 확대를 위한 조치
 - ▶ 안전책임자(학부모, 교직원, 외부인력 등): 개인 상해 보험 가입 및 보험 범위 확대 가입 필요
- 안전교육
 - ▶ 안전책임자 대상 안전사고 대비 응급처치(심폐소생술 등)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 안전책임자 학생선수 활동(취침, 식사, 이동 등)간 임장지도(필수)
 - ▶ 근무 중 금지 행위: 흡연·음주행위, 사적인 행위 등 교육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

9-6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 지도자 휴식권 보장

★ 운동과 휴식의 균형을 통한 학생선수 성장지원[교육부지침,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학교운동부 연간운영계획 수립 시 반영 (성장단계 및 종목 특성 고려하여 학생선수 휴식권 보장)

가. (학생선수) 혹서·혹한기 대회 개최 및 훈련 최소화, 발달 단계에 따른 적정 훈련시간 등 주중 상시 훈련과 주말(공휴일) 대회 및 훈련 참가로 충분한 휴식이 부족하여 부상 발생 빈도가 높고, 정상적인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충분한 휴식 제공 및 영양보충 등을 통해 학생선수 보호 조치

○ 혹서(한)기 훈련 안전대책 수립 및 훈련시간 최소화

구분	주의보(자제)	경보(금지)
폭염	• 일 최고 체감온도33℃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 예상	• 일 최고 체감온도35℃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 예상
한파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10℃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 낮을 것으로 예상 ② -12℃이하가 2일 이상 지속예상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15℃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 낮을 것으로 예상 ② -15℃이하가 2일 이상 지속 예상

나. (훈련시간) 학기 중 일일 3시간을 기준으로 훈련시간을 설정하되, 운동여건 및 종목별 특성, 운동 강도 등을 고려 학교별 훈련시간 조정

※ 학교운동부 학교급간 적정 운동시간(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2016) - 권장

구분	주당 훈련횟수	일일 훈련시간
초	주 4회 이하	3시간 미만
중	주 5회 이하	3시간 이하
고	주 5~6회	3시간 이하

(휴식) 종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학기 중 훈련과 휴식*의 균형을 유지하고, 대회 출전 후에는 최소 1일의 훈련없는 휴식 시간 부여

※ 휴식시간 부여는 '훈련없는 날'의 의미로 정규수업은 반드시 이수

다. (학교운동부지도자) 주 52시간 시행(19.7.1)에 따라, 주말 등에 과도한 학생선수 지도 지양하고, 학교운동부지도자 휴식을 보장

※ [교육부] 학생선수 보호 가이드라인 개발('21') → 단위학교, 교육(지원)청 보급 적용('22')

10 학생선수 기숙사 설치 및 운영

10-1 학생선수 기숙사 설치·운영

1 학생선수 기숙사 설치·운영

가. 근거

- 1) 경기도교육청 학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2023.12.12.제정)
- 2)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기관 기숙사 운영 지침(2007.11.1.시행)
- 3) 경기도교육청 학생선수 기숙사 설치·운영 지침[(체육건강교육과-7745 (2014.6.24.))]

나. 학생선수 기숙사 안전 및 중점 점검 사항★

- 1) 학교운동부 기숙사 운영 계획(소방 훈련 등 포함)
- 2) 원거리 거주 학생선수 기숙사 입사 여부(근거리 학생 입사 금지)
- 3) 실당 수용인원 과다 여부
- 4) 기숙사비 등 수익자 부담경비 학교회계 편입
- 5) 건축물대장 상 용도
- 6) 기숙사 침실 등 시설물 안전관리
- 7) 입사생 안전교육(화재 시 대피 등)
- 8) 학교 (성)폭력 및 인권교육 실시 여부
- 9) 각종 안전시설(화재감지기, 대피로, 소화기, 스프링클러, 비상구 등) 설치 현황 등

다. 기숙사 운영 규정 : 고등학교 원거리(통학시간 1시간 이상) 학생선수 대상 기숙사 운영 가능

- 1) 초·중·고 합숙소 운영 폐지 : 초·중·고등학교 학기 중 상시 합숙 금지
- 2) 실제 거주 확인 철저히 기숙사 운영에 대한 파행 운영 차단
- 3) 청렴도 제고 및 학교운동부 정상화 측면에서 시행
 - ※ 매년 국정감사 시 기숙사 운영에 대한 지적

라. 학생선수 기숙사 운영 기준 및 유의 사항

- 1) 설치장소 : 학교 내 단, 학교소유시설물이 교외에 있거나 관공서(또는 학교의 MOU 체결 공공기관 포함)
- 2) 설치구조물 : 철근(조립식 부적합, 교육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 3) 1인당 적정 생활기준 면적 확보
- 4) 제반시설 : 학습시설(책상, 의자, PC), 침구(침대), 휴게실, 식당, 주방, 세면실, 화장실, 세탁실 등(권장)
- 5) 소방시설 : 소화기구, 스프링클러(수동, 자동), 방염 벽지, 비상구, 소방대피도 등(소방시설 점검결과 : 소방, 전기, 가스 안전 점검 결과 사본)
- 6) 건물용도 : 건축물대장 상 '기숙사'가 아닌 부분에 대하여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상 '기숙사'로의 용도변경 승인절차를 이행하여 적합 사용
- 7) 기숙사 관리자 지정 및 별도 근무실 설치
 - ※ 여학생 기숙사를 운영할 경우, 여학생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여성 교직원을 반드시 둘 것

8) 각종 안전사고 및 성폭력 예방 : 사용자 및 관리자 안전사고 교육, 화재 및 비상시 대피교육, 학생선수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 등

마. 학생선수 기숙사 점검

- 1) 1단계 : 제반시설 설치 및 시설 적합여부[제반시설(사진첨부), 안전점검 결과(소방, 전기, 가스 안전점검 등)]
- 2) 2단계 : 학생선수 기숙사 운영[기숙사 사감(관리자)명단, 기숙사 운영계획, 연간훈련계획 등]

② 학생선수 기숙사 사용 제한

- 가. 시설 부적합 학생선수 기숙사 : 시설 개선 조치 후 사용
 나. 기숙사 부적정 운영학교 : 부적합 사항 개선 후 운영

③ 기숙사 폐지에 따른 후속대책★

- 가. 학생선수 입학 및 전·출입 시 실제 거주 여부를 파악하여 현행법(주민등록법)을 준수하도록 확인·감독
 나. 생활지도 강화
- 1) 자취 등
 - 2) 방과 후 생활지도 학교 자체계획 수립

④ 기숙사 운영위원회 운영

- 가. 학생선수기숙사 운영위원회 운영
- 1) (조직) 교감, 행정실장, 체육부장, 지역사회대표, 학교운영위원회위원, 학생선수 학부모대표, 학교체육 소위원회위원, 운동부 감독 등 9인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2) (기능)
 - 기숙사 운영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심의
 - 기숙사 전담교직원 임명에 관한 사항 심의
 - 사생 징계 및 기숙사 유지 관리 사항 심의
 - 소방·전기·가스·화재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
 - 기타 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 3) (운영)
 - 정기회는 학기별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의 요청 시 임시회를 개최한다.
 - 안건은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채택한다.

10-2 상시 합숙훈련 근절

① 학교장 책무성 강조

- 가.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위하여 학기 중 상시 합숙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
- 나. (취지) 학교장은 상시합숙 훈련의 근절을 위한 학사관리 책무성 준수

② 고등학교는 원거리에서 통학(대중교통으로 통학거리 1시간 초과)하는 학생선수를 위하여 기숙사 운영은 가능하며, 학습여건, 안전대책 등을 잘 갖추어 운영

- 가. 학습시설(책상·의자·컴퓨터), 휴게실, 욕실, 침실, 화장실, 세탁실, 식당, 주방 등을 갖추어야 함
- 나. 학교장은 학생선수의 기숙사 생활에 따른 안전사고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의무화

③ 고등학교는 학생선수의 통학거리(원거리)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 숙식 제공과 주거생활만 하는 합숙소 형태의 기숙사 운영 불가

11 학교운동부 차량 안전 운행

① 근거

-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58조제1항과 제96조
- 나.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 관리 규칙[2021.11.4., 타법개정]

② 운동부 차량 운영 형태

구 분	운영 형태
정수배정	교육지원청에서 정수배정을 받아 운행하는 차량
차량임차(옹역)	운전원을 포함한 임차 계약하여 운행하는 차량
렌트차량	운전원을 미포함하여 임차하여 운행하는 차량
개인차량	지도자, 지도교사 소유의 차량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

③ 차량 안전 운영 방침

- 가. 학교운동부 소유 차량은 차량정수를 배정받아 운행하고, 학교물품으로 관리
- 나. 학교운동부 원거리 이동 시 차량운전원이 포함된 차량을 임차하여 운행하도록 권장
- 다. 학교운동부 학생선수 이동 시 사전 계획 및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운동부 관계자(지도교사, 지도자 등)의 개인 차량 운행 가능

④ 차량 운영 방법

가. 정수배정 차량 이용 (사전승인 필수)

- 학교운동부 소유 차량은 사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 운영
- 차량을 정수 배정받고자 하는 경우나 기증받아 운행 중인 차량은 교육지원청에 신청서를 제출·승인 후 운영

*** (기관별) 정수 배정 위임사항**
 - 공립 유, 초, 중, 고등학교 → 교육지원청
 -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0조에 따른 동일 차종고 차형 교체 → 학교장

나. 차량임차(렌트 포함)

- 대회출전이나 전지훈련 시 연간계획에 의거, 학생체험활동에 준하는 임차 계약 후 학생 수송차량을 임차(렌트 포함)하여 운영
- 차량을 임차하여 운행하는 경우 운전자, 소요예산, 안전관리 등에 관한 임차(렌트 포함) 차량 운행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다. 개인차량 이용★★★

- 대회출전이나 전지훈련 시 개인차량(지도자, 지도교사) 이용하는 경우
- 개인차량 이용 절차 및 방법

사전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수립) 학교운동부 운영계획 수립 시 차량 운영에 관한 사항 반영 (안전, 예산, 안전책임자 지정, 실비 지급 등) ■ (사전동의) 차량운영 관련 지도자, 학생, 학부모 동의서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정 범위 내 계획 수립 * 수익자부담경비 최소화 노력
↓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장 목적에 맞게 차량 운영 및 영수증(통행료, 주유 등) 관리 ■ 이동간 안전에 유의하여 운영(교통법규 준수 등) ※ 사고 발생시 즉시 조치 및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장지 증빙 가능 영수증 발행
↓		
정산 및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산보고) 영수증 첨부하여 정산 보고 ※ 교통비는 유가, 이동거리, 통행료 등을 고려하여 실비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비(연료비)정산 신청서 참조 *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 교통비
 - 차량 운영 종료 후 영수증 첨부하여 정산(차량 사적 운행에 따른 교통비 청구 금지)
 - 출장여비 지급은 신청 승인 후 지급 가능, 여비는 공무원 여비 지급 규정 및 학교 내 여비 지급 규정에 따름

다. 대중교통 이용

- 대회출전 등 이동 시 대중교통 이용
- 이동 전 사전 안전교육 및 이동 시 인솔자(교직원)가 동승하여 관리

5 안전 확보 방안

가. 여행자 보험 가입 및 차량 안전 점검 철저

- 학생선수, 지도자 스포츠 안전공제회 보험 가입(사고발생시 보상 범위 확대를 위한 조치) 및 보장범위 확인 철저
- 학교운동부 운영 차량 안전 점검 철저(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정기적 차량 안전 점검 비용 지원 가능)

나. 안전운행을 위한 운전원 운행 수칙

- (안전책임자) 학생선수 이동 시 인솔자(교직원)가 동승해야 하며, 출발 전 안전교육 실시(안전벨트 착용, 사고 발생시 대피 요령 등)
- 운전원이 교직원(지도교사, 지도자)인 경우 당일 학생선수 지도에 대한 부담 경감책 마련
- 장거리 이동시 안전 운행을 위해 차량 운전원에게 충분한 휴식시간 보장
- 근무 전·중 음주행위, 운전 중 흡연, 식음 및 휴대폰 사용 금지
-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금지

다. 운행 중 고장 시 조치사항

- 우선 안전조치를 한 후 학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체계 유지
- 보고시 고장일시 및 장소, 안전조치 내용 및 필요한 사항 보고

라. 운행 중 사고발생 시 조치사항

- 우선 긴급 사고 조치를 한 후 학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체계 유지
- 긴급 조치 사항
 -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
 -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사고내용 신고(경찰서 및 보험회사)
 - 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 여부 등)

6 안전 교육

가. 운전원 교육

- 학교장은 차량 운전원에게 안전운행, 예방정비, 일상점검, 준법정신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나. 학생 교육

- 학생선수 이동 시 반드시 인솔자(교직원)가 동승해야 하며, 출발 전 안전교육 실시(예, 안전벨트 착용, 사고 발생 시 대피 요령 등)

〈참고자료 : 여비 정산 신청서(양식)〉

여비(연료비) 정산 신청서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출장 일정	일시	2020. . . . ~ 2020. . . .									
	출장지				경유지						
숙박비	상한액 또는 지급받은 금액				실제 소요액			초과지출 사유			
식비	지원받은 금액				실제 소요액			초과지출 사유			
운임	일자	교통편	출발지	도착지	통행료 (A)	여행 거리 (왕복, km) (a)	기준 유가 (b)	연비 (c)	연료비 (B=a*b/c)	합계 (A+B)	
	2020-07-20 (예시)	자가용	00학교	00종합 운동장	10,000	200km	1,323	13.30	119,300	129,300	
소계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여비의 정산을 신청합니다.

1. 첨부 : 영수증(주유, 통행료) 사본 1부.

202 년 월 일

신청인 : (인)

12 학교운동부 지도자(코치) 관리

12-1 학교운동부 지도자(코치) 채용 절차

1 용어정리

가. 담당교사 : 학교운동부 학습권 보장, 인권 보호, 대회(훈련)참가, 운영경비 집행 등 행정 지원을 담당하는 교원

나. 운동부지도자 : 학교장과 근로계약을 맺은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의미

- 전임코치 : 교육특별회계에 따라 예산 지원이 되는 지도자
- 일반코치 : 수익자부담경비를 통해 학교에 채용된 지도자

2 학교운동부지도자 채용 안내 ★

가. 학교운동부지도자 선발·채용·재계약시 기본 자격

- 학교운동부지도자는 반드시 '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에 한하여 채용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6호(체육지도자 정의)

- ① (1/2급 전문·생활)스포츠지도사, ② 건강운동관리사, ③ (1/2급)장애인스포츠지도사
- ④ 유소년스포츠지도사, ⑤ 노인스포츠지도사

나.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자격증 자동 변경('15.1.1~)

개정 전	개정 후
1급 경기지도자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경기지도자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1급 생활체육지도자	건강운동관리사
2급 생활체육지도자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3급 생활체육지도자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다.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 후 자격증 발급 신청 방법

- 체육지도자연수원 홈페이지 접속 : <https://sqms.kspo.or.kr/index.kspo>
- 자격증재발급 신청 : 문의처 : 1670-1859

라. 학교운동부지도자 채용 시 관련 서류 제출

- 경기실적증명서, 지도실적증명서 중 택1
 - 자격증 사본(원본 대조 필) 및 자격증 진위 여부 확인서(매년, 필수)
 - 학교체육진흥법 제12조에 따른 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보수)교육 이수증(해당자)
 -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사실 유무 확인서(매년, 필수)

학교운동부지도자 채용 관련 절차

- ❖ 학교운동부지도자 채용 지원자는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제출 ⇨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실시 ⇨ 채용제한 사유에 해당여부 확인 후 계약
- ❖ **(관련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동법 시행령 제26조의5 참고

마. 채용 절차 ★

1) 채용절차(신규)

단계	채용 절차	담당자
1. 계획	공개 채용계획 수립(자격요건, 계약기간, 근로조건 등)	담당 부서
	공개 채용계획 심의(자격요건 등)	학교체육소위원회
2. 심의	학교운영위원회 운동부 지도자 (인력 운영 계획, 근로계약 체결조건 등) 심의	학교운영위원회
3. 결재	공개 채용계획 (자격요건, 계약기간, 근로조건 등)	학교장
4. 공고	채용 공고 (채용 예정인원, 업무내용, 자격기준 등) (홈페이지 7일 이상 공고-공고일 제외, 휴일포함)	학교장
5. 접수	접수 (공고에 구비된 서류 접수·확인, 체육지도자격 기준 등)	업무담당자
6. 심사	채용공고 절차에 의한 심사 (자격 기준 등)	학교체육소위원회 (또는 별도 위원회)
7. 통보	채용심사 결과 통보	학교장
8. 계약	[근로계약 체결(매년 실시)] (계약 서류: 학교운동부 지도자 관리 지침 참고) ○ 소지 자격증 진위 여부(취소, 정지) 검토(매년) ○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회보(매년) ○ 지도자징계사실 확인(스포츠포털센터)(매년) ○ 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기본)교육 의무(3년) 이수 안내 ○ 체육 지도자 재교육(2년) 의무 이수 안내	학교장 ※ 최종 계약 전 관련 서류 및 자격, 결격사유 철저히 확인
9. 보고	학교운영위원회 운동부 지도자 (근로계약 체결조건 등) 채용 결과 보고	학교운영위원회
10. 운영	학교운동부 운영	학교장

※ 채용 절차는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 규정 및 각 학교 취업규칙에 맞게 운영하여야 함
 ※ 자격기준(체육지도자) 및 여학생(훈성, 초등부) 운동부는 동성 지도자 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람

2) 채용 절차(재계약)

단계	채용 절차	업무담당자
1. 운영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리 운영	학교장
2. 평가	학교운동부 지도자 평가 (직무수행 실적, 복무태도, 학교운동부 운영 성과 등)	평정자 : 교감 승인자 : 교장
3. 심의	경기도교육청학교운동부지도자 관리위원회 (평가 결과 : 재계약, 해임 등) [학교 → 교육지원청]	교육청
4. 안내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 심의 결과[인력 관리 계획] [교육(지원)청 → 학교]	학교
5. 임용	임용검토(근무성적평가, 직무연수, 범죄경력 조회 등 확인) ○ 적격자 ⇨ 학교장에게 추천 ○ 부적격자 ⇨ 신규 채용(반드시 교육지원청과 사전 협의)	학교체육소위원회
6. 계약	[근로계약 체결(매년 실시)] (계약 서류: 학교운동부 지도자 관리 지침 참고) ○ 계약, 임금, 복무 등 계약 내용 검토 철저 ○ 소지 자격증 진위 여부(취소, 정지) 검토(매년) ○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회보(매년) ○ 지도자 징계사실 확인(스포츠윤리센터)(매년) ○ 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보수)교육 의무(3년) 이수 여부 ○ 체육 지도자 재교육 의무(2년) 이수 안내	학교장 ※ 최종 계약 전 관련 서류 및 자격, 결격사유 철저 확인
7. 보고	학교운영위원회 운동부 지도자 (근로계약 체결조건 등) 보고	학교운영위원회
8. 운영	학교운동부 운영	학교장

12-2 학교운동부 지도자 직무교육 의무화

① 학교운동부지도자 책무성 강화

가.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훈련 방법 강구

- 1) 학생선수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도방법 적용
- 2) 학생선수의 신체 발달에 따른 학생선수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지도방법 도입

나. 학생선수 인성·진로지도 및 생활지도 강화

- 1) 자율적·친화적 학교운동부 환경 조성을 통한 학생선수의 긍정적 성격 형성
- 2) 다양한 인성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학생선수의 욕구불만 해소 및 일탈 예방
- 3) 지속적인 관심 및 진학·진로상담 강화를 통한 운동부 활동의 보람과 긍지 고취
- 4) (성)폭력, 정규수업 이수 의무화, 최저학력제 등 적극적 지도 방안 강구

다. 학생선수 개인상담 및 훈련 점검표 비치

- 1) 신상 기록카드 제작 활용 및 훈련 상황 발전 추이도 활용(성격, 훈련적응 등)
- 2) 수준별 개인 지도 및 개인별 특성을 살린 과학적인 지도 자료로 활용

라. 청렴

마. 학생선수 인권보호

② 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교육 의무화

☞ (관련근거) 학교체육진흥법 제12조(학교운동부지도자)

② 국가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연수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수교육을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가. (의무화) 초·중·고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교육적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도역량 배양을 위한 필수 교육으로 교육청(학교)의 의무 참가

- 학교운동부 방문 점검 시 기본교육, 보수교육 이수 여부 확인

나. (주관) 국민체육진흥공단

다. 교육대상

- (기본교육) 신규 및 기본교육 미 이수자
- (보수교육) 기본 교육 이수자
 - ※ 학교운동부지도자는 기본교육 이수 후 3년 주기로 보수교육 이수
 - ※ 접수기간 및 교육일정은 추후 별도 공지 예정

③ 학교운동부지도자 갑질행위 근절

가. 현황 및 문제점

- 학생선수의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경기 실적 및 대회 출전에 학교운동부지도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갑질)로 민원 발생 증가
 - * 학교운동부지도자의 폭력, 금품 및 향응 제공 강요, 노골적인 학부모 간 비교, 학부모에 대한 학교방문 요구, 기숙사·훈련장 청소 및 정비(노동력 착취) 요구 등
- 학생 및 학부모는 갑질행위 발생 시 대회 출전 제한과 상급학교 진학 등에 불이익을 우려하여 문제 제기나 신고 기피

나. 개선 방안

- 각종 부당한 요구 근절을 위해 학교운동부지도자와 학부모 간 사적 접촉 금지 및 학부모의 학교 내 훈련장 및 학생선수 기숙사 출입 지양
 - ※ 학교별 학부모의 공식적인 학교방문 행사를 정례화하여 학교운동부지도자와 학부모 간 비공식적인 접촉 차단
 - ※ 학교운동부지도자 및 학부모 대상 연수 시 교육내용에 주요 갑질 사례를 포함하고 각종 부당한 요구 발생 시 교육청에 신고하도록 안내하는 한편, 해당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 학교운동부지도자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므로 학교 회계를 통하지 않은 금품·향응·편의 등 제공 금지
- 학교운동부지도자 채용 시 교육청이 정한 채용절차에 따라 계약하고 반드시 징계이력 등을 확인 후 채용여부를 결정
 - ※ 다면평가 등을 통해 유능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학교운동부지도자 선발
- 학교운동부지도자에 의한 갑질 등 비위사안 발생 시 엄중처리하고 시도교육청에 사안보고 의무화
 - ※ 학교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징계 감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견서 등 반영을 금지하고 사임(의원면직)하더라도 반드시 징계처분 후 교육지원청으로 사안보고
- 학교장은 학교운동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종합 지표를 통해 객관적으로 지도자 평가
 - * 복무태도, 직무수행 실적 및 운영성과 외 학생선수 학습권보장을 위한 노력, 각종 교육 및 연수 이수, 훈련 프로그램의 질, 폭력 등 인권침해 및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전력 등

④ 학교운동부 객관적 평가시스템 도입(학교운동부 지도자 평가)

가. 기간 : 2025.3월 ~ 2026.2월

나. 재계약 자료로 사용함

다. (내용) 직무수행 실적, 복무태도, 운동부 운영 성과 등 실적뿐만 아니라 인권침해·비위행위로 인한 징계전력, 학습권 및 인권, 연수 이수, 훈련 프로그램의 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입상실적 평가 지양) 전국대회 입상을 위해 학생선수에게 비교육적인 방법과 과도한 훈련으로 인권침해 사례 등이 유발

라. (방법) 체육부장, 학교운동부 담당교사,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으로 평정

※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3조(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 등) 제4항

12-3 학교운동부 지도자(전임, 일반코치) 인건비 관련

가. 공통사항

- 학교운동부지도자 인건비 편성 항목 일원화

- 지도자 인건비 구성 항목: 기본급 + 연차수당 + 퇴직금 + (각종수당)
 - 각종수당: 급식비,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포인트, 가족수당, 근속수당, 정가상여금
 - 각종수당은 공립(노사협력과), 사립(사립학교지원과) 지원함(이중 편성 및 지급 금지)

※ 급여 항목 통합 등으로 급여체계를 정리해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급여 총액의 저하가 되지 않도록 하되, 불가피하게 수익자 부담금 감소 등으로 총액이 저하되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근로계약 변경 조치

- 경기도교육감 지정 인건비 편성 항목 이외 편성 금지

※ 단, 지자체(체육회), 각종 단체에서 지원되는 공적인 지원금은 제외

- 대화성적 등을 기반으로 학부모부담금으로 지급하는 승리수당, 성과금 명절 휴가비 등 일체 편성 금지

※ 학부모의 요구에 의해 진행하는 것도 일체 불허

- 학교운동부지도자 인건비 편성시 학부모부담금이 최소화 되도록 책정하여 운영
-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은 경비는 어떠한 수당도 학교운동부지도자에게 지급할 수 없음
- 근로계약시 제공된 표준근로계약서 활용

나. 전임코치 인건비 편성 운영

- 학교운동부지도자(전임) 인건비 재원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으로 지급
- 학부모부담금(수익자)으로 인건비 추가 지원 불가
- 인건비 지급 수준은 교육공무직원(유형 I)에 준함
-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 기준(급여 지침) 준용★★★
 - 「2025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급여 업무 매뉴얼」참고★★★

다. 일반코치 인건비 편성 운영

- 일반코치 인건비 재원은 수익자부담금, 지자체(체육회) 보조금으로 지급
 - ※ 학교 기본운영비(교육비특별회계)를 일반코치 인건비로 집행하지 않도록 유의
- 학부모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수익자부담이 원칙이며, 학부모 동의(학부모 간담회, 체육소위원회 등)를 얻어 학교운동부 연간계획 수립 시 반영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학교회계에 편입하여 운영
- 경기도교육감 지정 인건비 편성 항목 이외 편성 금지
- 특히 각종 수당 관련 항목의 중복 편성 및 지급 금지★★★
- 급여의 구성, 각종 수당 등에 대해 제공된 표준근로계약서에 상세히 명시
- 일반코치 인건비 수준은 가급적 전임코치 인건비 수준을 권장하며, 부득이한 경우 경력단계별 기준안을 준수할 수 있도록 권장
-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 기준(급여 지침) 준용★★★
 - 「2024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급여 업무 매뉴얼」참고★★★

[참고1] 일반코치 인건비 경력단계별 기준안(권고)

경 령	적 용 기 준	비 고
5년 미만	전임코치 연봉 책정액의 110% 이내	
5년 ~ 10년 미만	전임코치 연봉 책정액의 120% 이내	
10년 ~ 15년 미만	전임코치 연봉 책정액의 140% 이내	
15년 ~ 20년 미만	전임코치 연봉 책정액의 160% 이내	
20년 ~ 25년 미만	전임코치 연봉 책정액의 180% 이내	
25년 ~ 30년 미만	전임코치 연봉 책정액의 200% 이내	
30년 이상	전임코치 연봉 책정액의 210% 이내	

※ 위 기준안은 학부모 부담금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이며, 기존 급여에 이를 기준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주의 요망

12-4 학교운동부 지도자 비위행위 처리

가. 학교운동부지도자 비위행위 처리 절차

- 사안보고 및 통보 : 부록의 <서식>을 활용하여 사안 발생 보고, 처리 결과 보고



※ 학교에서는 교육지원청, 도교육청에 동시 보고(사안 발생 보고, 처리 결과 보고)

- 사안처리 결과 회신



※ 대한체육회는 사안접수 후 90일내 처리결과를 요청기관(교육청)과 교육부에 동시 회신

나. 기관별 역할

- 단위학교: 사안 발생 시 부록의 [서식]을 활용하여 1차 사전 발생 보고 후,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 및 컨설팅 실시하고, 2차 징계 처리 후 [서식]을 활용하여 학교 자체 처리결과 포함하여 교육지원청, 도교육청에 동시 보고
- 도교육청 : 단위학교로부터 접수된 사안 검토 후 대한체육회에 통보하여 처리결과 회신 요청
- 대한체육회 : 시도교육청의 사안통보 사항을 해당기관(시·도체육회 및 경기단체)에 징계처분 요구하고, 그 결과를 시·도교육청과 교육부에 회신

다. 비위행위지도자 징계 처리 방법 및 절차 (단위 학교)

절차	내 용	유의점
사안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자체 인지) 운동부지도자 비위행위 발생시 축소, 은폐 없이 사안에 대해 객관적으로 조사 ■ (감사결과) 감사기관에서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 조치 요구시 ■ (사안 발생 보고서 작성, 부록의 서식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안보고서는 6하 원칙에 따라 철저히 작성 ■ 관할 교육지원청 및 경기도교육청(체육건강과) 보고 및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부서류: 사안보고서 	* 축소, 은폐되지 않도록 엄중 처리
사실 확인 및 징계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체육소위원회에서 협의과정을 통해 학교장에게 징계 처리 요구 (학교 별도 내부 규정이 있는 경우 학교체육소위원회 생략 가능) ■ 학교장은 교육공무직원인사위원회에 징계 요구 	*비위행위 발생 시 반드시 징계 요구 (사직서 제출 시에도 반드시 징계처리 후 처리)
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 개최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위행위에 대한 교육공무직원인사위원회 징계 심의 ■ 교육공무직원인사위원회 징계 심의 결과 학교장 보고 및 결재 ■ 징계결과 통보(징계대상자) 	*징계대상자에게 재심 절차 안내 필수 *교육공무직원인사위원회 처리 절차 준수
징계 처리 결과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자체 처리결과 포함하여 사안 처리 결과보고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안보고서는 6하 원칙에 따라 철저히 작성 ■ 관할 교육지원청 및 경기도교육청(체육건강과)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부서류: 사안보고서, 징계의결서(또는 징계처리결과서) ■ 운동부지도자 비위행위 처리결과가 미보고 되지 않도록 유의 (주의, 경고 조치 사항도 보고) 	*모든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

※ 학교운동부지도자 신규채용시 이전 근무 학교 징계 현황 확인 철저

※ 학교 교육공무직원인사위원회 징계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시 경기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에서 재심의 의결

라. 비위행위지도자 징계 양정 기준 (단위 학교)

- 경기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징계는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징계양정 기준을 준용하여 처리하며, 다만, 학생선수 대상 (성)폭력 건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준을 적용하여 처리함

※ 적용 시점 : 2022. 3. 1. 부터 (인사위원회 개최일 기준)

- 교육부 징계양정기준 적용 안내에 따른 기준

〈징계양정기준〉

비위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위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1. 학생선수 대상 폭력					
1) 폭력*		견책~감봉	정직-해고	해고	
2) 폭력 행위 방조/묵인		견책	감봉	정직	해고
2. 학생선수 대상 성폭력					
1) 성희롱**		정직	정직-해고	해고	
2) 성폭행		해고			
3) 성폭력 방조/묵인		견책~감봉	정직	해고	

* 신체, 언어, 사이버 폭력 등 일체

**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

※ 사이버 성폭행: 온라인상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원치 않는 성적 대화나 메시지, 야한 사진, 동영상 등을 전달하거나 유포함으로써 불쾌감, 위협감 등을 느끼게 하는 행위

13 학교운동부 운영경비 투명성 확보

1 학교운동부 학부모 부담금 학교회계 편입

- 가. (법적근거)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제5항(학교회계 편입) 학교운동부 운영경비 등은 학교회계에 편입하고 경비지출 시 법인카드 사용
- 나. (학교회계 편입) 학부모 부담 학교운동부 운영 경비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회계에 편입하고, 내부결재 후 법인카드로 집행
 - 학부모 부담금을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학부모회에서 직접 학교운동부지도자 인건비 등을 집행할 경우, 청탁금지법(약칭)*에 저촉되어 관련자(학부모와 학교운동부지도자) 처벌
 -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다. 각종 대회 참가비용 및 전지훈련 비용 공개 의무화
- 라.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홈페이지 게시를 통한 집행 투명성 확보

2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한 학부모 부담금 최소화

- 가. 학부모 부담금 최소화를 위해 학부모, 학교관계자 등과 협의를 통해 최소 범위에서 허용하고, 학교운동부지도자 종목별 인원 적정화
 - ※ 학교장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 인건비를 책정하고 학부모 부담금이 최소화 되도록 계약체결
 - ※ 한 종목(단체종목 등)에 많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운영할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이 학부모에게 전가되므로 학교별·종목별 학교운동부지도자 인원을 적정화하여 운영

3 학교운동부 운영 학부모 부담금 세액공제

- 가. 학교운동부 운영 관련하여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수익자 부담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입해야 하며, 교육비 세액공제 처리 가능*
 - * (세액 공제한도) 초·중·고등학생인 경우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 ① 법 제5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말한다.
- 5. 다음 각 목의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학교 등에서 구입한 도서의 구입비와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를 포함한다)

14 선진형 학교운동부 체제 구축

추진목표

- 학생선수 중심의 학교운동부 문화 개선
- 인권친화적인 학교운동부 인식 개선
- 청렴하고 투명한 학교운동부 운영 시스템 구축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 체제 구축을 위한 역할

교육(지원)청	유관기관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청렴도 결과 분석 • 청렴도 향상 방안 T/F운영 • 청렴도 향상 계획 수립 • 운동부 관계자 교육 및 연수 • 운동부 관리·감독 강화 • 우수운영교 모범사례발굴 및 인센티브 부여 • 학교운동부 지도자 평가 계획수립 • 학교운동부 운영 평가 지표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학교운동부 혁신방안 마련 및 지원체제 구축 • 청렴도 향상 계획 수립 및 시행 • 운동부 관계자 교육 및 연수 • 지역별 우수사례발굴 및 보급 • 운동부 운영 관리·감독 강화 • 학교운동부 지도자 평가 시행 관리 • 운동부 운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위학교별 투명한 운동부 운영 방안 수립 및 시행 • 투명한 운동부 운영을 위한 자체 점검 강화 • 학교장 책임하의 운동부 관리·감독 강화 • 학교운동부지도자 평가 시행 • 신규임용 지도자 공개채용

- 1) 학교체육소위원회에서 학생선수보호규정에 따라 학생선수 및 지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인권 침해 예방, 지도자의 인식 개선 등 피해자 보호와 지원 체계 구축
- 2) 학교운동부의 인권 친화적 문화 조성(학생선수의견이 반영된 훈련계획 수립, 동료의식, 훈련방식 등)
- 3) 학생선수의 신체적 자율성을 침해 받지 않을 보편적 권리 보장(학생선수 중심의 훈련장, 훈련분위기 조성 등)
- 4) 민주적인 훈련방식 도입(훈련을 빙자한 체벌, 폭언 금지 등)

① 단체종목 엔트리선정위원회 구성 의무화

가. 목적 : 대회참가 시 공정하고 투명한 출전선수 선발

나. 대상종목 : 축구, 야구, 농구, 배구, 핸드볼, 럭비 등

다. 구성원 : 교감, 담당교사, 지도자, 학부모 등 7명 이내

라. 선정기준 : 운동기능, 학습발달정도(최저학력 등), 생활태도 포함

※ 해당 운동부 선수 수가, 해당 종목 출전을 위한 엔트리 수와 동일하여도 실시해야함.

단체종목 엔트리위원회 규정(예시)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초/중/고등학교 ○○부 운영에 있어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고 경기 출전의 공정성 강화 및 경기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엔트리선정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① ○○초/중/고등학교 ○○선수별 특기사항, 생활태도, 학습발달정도(최저학력 등)
- ② 20○○년 전국 규모 대회 출전 시 엔트리 구성

제3조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교감, 부위원장은 ○○부장, 위원은 ○○부 전임코치, ○○부 일반코치, 학부모 2인으로 하며, 위원 중에서 간사 1인을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③ 학부모 위원은 ○○부 학부모 중에서 운동부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학교장이 위촉한다.
-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⑤ 기타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회의)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간사는 회의안건을 시합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 존중·배려의 학교운동부 문화 조성(Respect Campaign)

가. (배경) Respect Campaign을 통해 선수, 상대팀, 지도자, 심판, 관중, 학교관계자 등 운동과 관련된 모든 관계자와 경기, 경기규칙, 시설, 장비 등 운동경기에 수반되는 모든 분야의 존중을 실행하기 위해 캠페인 활동 전개

나. (방법)

- 1) 운동경기 시 각종 현수막 등에 “필승” 등 경쟁유발 단어를 배제하고 존중에 관한 문구로 전환
- 2) 지도교사 및 지도자 연수 시 Respect Campaign 관련 내용 포함
- 3) 학생선수 격려 시 존중에 의한 교육적 방법 지도(“필승”구호 자제 등)

15 건강하고 청렴한 학교운동부 실현

1 건강하고 청렴한 학교운동부 실현 반부패 청렴 추진 계획

가. 학교운동부 운영비 집행 내역 학교홈페이지 상시 공개 의무화(연중)

- 1) 공개시기: 상시
- 2) 공개대상: 운영비, 출전비, 용품구입비 등 운동부 관련 모든 예산 집행내역(지도자인건비제외)
 - 학교운동부 운영비 예산 학교홈페이지 상시 의무 공개
 - 학부모 대상 집행 내역 정기적 공개 : 월별(미참석자 e-mail·우편 발송 안내)
- 3) 공개방법: 학교 홈페이지에 운영비 집행결과 탑재(※ 별도 배너 운영, 추진상황 점검, 로그인 없이 접근 가능하도록 공개)
 - 도교육청 학교운동부 반부패청렴지원단 수시 점검 및 미공개교 특별지도 점검 예정

예산운용 공개 강화

- **학교운동부 예산집행 투명성 제고**
 - 학교운동부 운영 경비 편입·운영 등 집행기준 철저히 준수
 - 부적합한 집행사항 점검 등으로 변칙 운용 방지
- **각종 대회 참가비용 및 전지훈련 비용 학교홈페이지 공개**
 - 참가비용 및 전지훈련 경비는 반드시 학교카드 사용 결재
 - 공개시 교육청(학교 등) 지원금 및 수익자부담금으로 구분하여 집행내역 공개
 - 집행일자, 금액, 세부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

나. 교육적 협력 기반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 학교운동부 운영 강화

- 1) 일 시: 2025. 3. 1. ~ 2026. 2. 28.
- 2) 내 용:
 - 구성원 의견 수렴 및 참여 확대(단체종목 엔트리선정위원회 및 학교체육소위원회활성화)
 - 학교장 주관 소통·공감의 날 의무 운영(연 2회): 비대면 소통·공감 프로그램 권장
 - 학교장-지도자-학부모 청렴 실천의지 공유(연 2회)(청렴서한문, SMS청렴문자 활용)
 - 학교운동부 교육공동체 청렴의지 실천 의지 공유를 통한 반부패 청렴인식 정착
 - 학교장 청렴서한문(5월, 9월), 청렴 SMS 발송(7월, 12월)
 - 학교운동부 청렴 담당관 지정(교감) 청렴 교육 실천 의지 내실화

② 공정하고 투명한 학교운동부 현장 밀착형 청렴 정책 참여 활성화

가. 운동부 육성교 ICT 감사시스템 운영 강화

- 1) (도교육청) 공직비리핫라인, (지역교육청·학교) 학생선수고충처리센터
- 2) 운동부 운영에 필요한 직접적 경비 이외 부적절한 불법찬조금 조성 신고 센터 운영

나. 학교운동부 반부패·청렴 문화 자율성 강화

- 1) 적발형 감사 중심에서 예방적 학교자율 감사 활동 전개
- 2) 지도자 반부패·청렴 인식 개선
 - 학교운동부 지도자 금품수수, (성)폭력, 승부조작, 인권 침해 근절 대책 강구

③ 불법찬조금 근절 대책 및 청렴도 향상

가. 투명한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기능 강화

- 1) 학교운동부 학교회계(발전기금포함) 조성 및 운영 계획 심의
- 2) 학교운동부 운영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직접적 경비 이외 부적절한 경비 사전 차단

나. 학교운동부 부패·청렴 위반 불법찬조금 사례 공유

- 1) 학교운동부 부패·청렴 위반·불법찬조금 사례 공유
- 2)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시(제공 자, 받는 자 조치 사항 안내등)
- 3) 학부모 학교운동부 교육적 운영 적극 참여를 통한 부패 ZERO운동 정착

다. 학부모 관행적 불법찬조금 모금 행위 적극 차단 및 예방·지도

- 1) 학부모 불법 찬조금 위법 행위 사례 교육
- 2)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시 조치 사항 안내

3)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행위시 조치 사항 안내

구분	위반행위 [1회 100만원 초과인 경우]	제재수준
지도자	•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감독(코치)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몰수·추징 대상)
배우자	•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등	
학부모 등	• 금품 등을 감독(코치) 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 표시를 한 자	

구분	위반행위 [1회 100만원 이하인 경우]	제재수준
감독(코치)	•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감독(코치)	수수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배우자	•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등	
학부모 등	• 금품 등을 감독(코치) 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 표시를 한 자	

④ 학교운동부 부패 ZERO 청렴의지 조성

가. 건강하고 청렴한 학교운동부 청렴 릴레이 운영

- 1) 스포츠 스타와 함께하는 학교운동부 부패 ZERO 청렴 릴레이 실천
- 2) 학교운동부 청렴성 강화를 위한 청렴 릴레이 적극 참가

나. 학교운동부 투명성 강화를 위한 청렴사회협약 의무 체결(교육지원청)

- 1) 투명성과 공공성에 기반한 학교운동부 청렴사회 실무협의회 운영
- 2) 교육장, 시군체육회장, 학교운동부 육성교 학교장, 감독교사, 학부모, 지도자, 학생선수 대표로 구성

다. 학교운동부 관리·감독 강화

1) 학교운동부 특별 집중 지도·감독 실시

- 목적: 공정한 학교운동부 운영, 효과적 연수실시, 소통과 협력하는 분위기, 청렴한 회계처리 등
- 방침: 학교운동부 관련자간의 협력적 관계 등 학교운동부 내실화
- 기간: 4월 ~ 7월
- 방법: 자체계획수립
- 대상자: 민원발생, 감사, 수익자부담경비가 많은 발생하는 종목 등
- 중점사항
 - 청렴: 청탁금지법 안내, 청렴 서약서작성, 청렴 문자 발송 등 여부 확인
 - 소통: 학교장 간담회 내실화, 학교운동부 정책 설명, 수익자경비 공개 여부
 - 협력: 학교장, 학부모, 학생, 지도자 협력적 관계 조성

- 2) 단체종목 엔트리선정위원회 운영(의무화, 내실화)
 - 목적: 대회참가 시 공정하고 투명한 출전선수 선발
 - 대상종목: 축구, 야구, 농구, 배구, 핸드볼, 럭비
 - 구성원: 교감, 담당교사, 지도자, 학부모 등 7명 이내
 - 선정기준: 운동기능, 학습발달정도(최저학력 등), 생활태도, 컨디션 등
 - 시기: 대회 참가 시(단위학교별)
 - 유의사항: 학부모에게 엔트리 선정 기준 및 명단 공개

라. 청탁금지법 홍보

- 1) 적용대상자: 학교운동부 지도자, 학부모 등
- 2) 시기: 수시 및 정기
- 3) 내용: 「청탁금지법 안착 및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학교장의 강력한 의지를 지도자(감독, 코치) 학부모에게 전달
- 4) 방법
 - 지도교사, 지도자(감독, 코치), 학부모 연수 강화
 - 지도자(감독, 코치), 학부모 문자메세지(SMS) 홍보 강화
 - 정기홍보: 분기별 1회(3월, 6월, 9월, 12월)
 - 수시홍보: 시합전후, 명절전후, 연말연시, 스승의 날 전후 등

마. 중점내용

- 청탁금지법 적용 안내
- 주는자와 받는자 모두 처벌됨

1) 부정청탁금지

위반행위		제재수준
• 감독(코치)에게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	학부모	2천만원 이하 과태료
	감독(코치)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감독(코치)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2) 금품 등 수수금지

가) 1회 100만원 초과인 경우

구분	위반행위	제재수준
감독(코치)	•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감독(코치)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몰수·추징 대상)
배우자	•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등	
학부모 등	• 금품 등을 감독(코치) 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 표시를 한 자	

나) 1회 100만원 이하인 경우

구분	위반행위	제재수준
감독(코치)	•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감독(코치)	수수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배우자	• 배우자가 공직자들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등	
학부모 등	• 금품 등을 감독(코치) 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 표시를 한 자	

바. 사례(경기도교육청)

Q11

학부모 10명과 감독(코치) 1명이 대회 마지막 날 함께 식사를 한 후 총 110만원의 식사비용이 발생(1인당 10만원)하였는데, 학부모 10명이 각각 11만원씩 비용을 결제하였다면 금품수수 금지 위반에 해당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지?

- ☞ 2인 이상이 가담하여 위반행위의 실현에 기여를 한 경우 가담자 각자가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제1항) 학부모 각자는 감독(코치)에게 제공한 금액인 10만원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감독(코치)도 동일하게 제재
- ☞ 과태료 부과는 학부모 1인이 감독(코치)에게 제공한 식사비 1만원이 아닌, 10만원이 기준이 됨.(예시 : 20만원~1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Q12

OO중학교에서 2017년 3월~5월까지 3개월간 운동부 학부모들이 금전을 각출하여 학교 회계 편입과정 없이 급여보전 명목으로 감독 및 코치들에게 지급

- ☞ 운동부 지도자들 OO경찰서에 수사의뢰
- ☞ 운동부 지도자들 협회에 통보
- ☞ 학교 관리자(교장, 교감, 행정실장) 신분상 조치(경고)
- ☞ 학부모 과태료 부과 예정(법원에 고발조치함)

Q13

- OO중학교에서 2016.10. ~2017.6. 기간에 운동부 학부모들이 매월 최소 65,000원에 최대 115,000원의 금액을 각출하여 감독 및 코치에게 금품 등 제공(입단비 등의 명목으로 각출함)
- 운동부 송년회에 교직원(교장, 교감, 부장교사, 야구부 감독 및 코치)이 참석하여 1인당 약 4만원 내외의 식사를 제공받음

- ☞ 관련자(감독, 코치, 학부모) OO경찰서에 수사의뢰
- ☞ 학교 관리자(교장, 교감, 부장교사) 징계처분(감봉 1월)
- ☞ 학부모 과태료 부과 예정

2025

학교체육 업무매뉴얼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A decorative border surrounds the central text, featuring various icons of sports and leisure activities. At the top, there is a soccer ball, a soccer cleat, a person jumping rope, a person doing a handstand, a person bowling, a person playing badminton, and a person sitting on a ball. On the left side, there is a person playing basketball, a tree, and a basketball hoop. At the bottom, there is a person sitting on a bench, a person running, a person playing with a ball, and a person sitting on a stack of blocks. On the right side, there is a tree and a person sitting on a stack of blocks.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IV | 체육 인재 육성 개인학생선수 운영

1 개인학생선수 업무흐름도

절차	개인 학생선수 관리업무 흐름도																		
개인학생선수 현황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월] 개인(클럽) 학생선수 현황 파악 및 연간활동계획서 작성 관련 가정통신문 발송 																		
연간활동계획서 수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월] 개인학생선수 선수등록증 및 연간활동계획서 수합 후 담당교사 검토 																		
학업성적관리 위원회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월] 개인(클럽)학생 선수에 대한 대회(훈련) 참가 시 출결처리 및 수업결손 대책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협의록에 해당 내용 포함해서 작성 																		
학교장 허가 (내부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시] 개인 학생선수 연간활동계획 승인 ※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개인학생선수 등록 및 출전 허가 요청(학교장 확인서 발급, 최저학력 확인서 발급 등)은 내부결재를 통해 우선 발급하고 추후 절차에 따라 개인학생선수 등록 및 승인 가능(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학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월] 학생선수 대상 필수교육 계획 수립((성)폭력예방교육, 인권교육 등) ■ [3월] 학생선수 상담 계획 수립 ■ [3월] e-school 담당교사 승인요청 및 개설, 학생선수 가입 및 수강 관리 																		
학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가전] 대회(훈련) 참가 승인 절차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d>1단계</td> <td>2단계</td> <td>3단계</td> <td>4단계</td> <td>5단계</td> </tr> <tr> <td>공문접수</td> <td>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td> <td>내부결재, 학교장승인</td> <td>담임교사 (나이스처리 의무)</td> <td>지도교사 (누적관리)</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대회공문(훈련계획), 국가대표 대회(훈련) 참가 협조공문 접수 • 2단계) 학생선수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2025)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학교 급</th> <th>초</th> <th>중</th> <th>고</th> </tr> </thead> <tbody> <tr> <td>허용일수</td> <td>20일</td> <td>35일</td> <td>50일</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회(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연간운영계획서, 수업일수 확인 등 - 학생선수의 최저학력 도달 여부, 최저학력기준 미도달 경우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Run-up) 이수(e-school 등 활용), 보충학습, 안전계획 수립 여부 등을 확인 후 대회(훈련) 참가 승인 결정 • 3단계) 학교장 승인(학교장 확인서 발급) • 4단계) 담임교사(나이스 처리 의무) • 5단계) 학생선수 지도교사(누적 관리)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공문접수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	내부결재, 학교장승인	담임교사 (나이스처리 의무)	지도교사 (누적관리)	학교 급	초	중	고	허용일수	20일	35일	50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공문접수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	내부결재, 학교장승인	담임교사 (나이스처리 의무)	지도교사 (누적관리)															
학교 급	초	중	고																
허용일수	20일	35일	50일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 학생선수 출결관리, e-school 수업결손 관리 ■ (성)폭력 조사 - [5월~6월] 전수조사(교육부주관)/ [7월, 12월] 학교 자체조사 ■ [연2회] 학생선수 인권실태조사 ■ [월1회] 학생선수 상담일지 작성 																		
학기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월, 12월] 최저학력제 실태 현황 보고 - 학생선수 최저학력 도달 여부 확인 및 Run-up과정 개설 ※ 미도달 학생선수 기초학력프로그램 의무 이수(미이수시 학교장 확인서 발급 불가) ■ [7월, 12월] e-school 학습확인서 및 기초학력프로그램 이수 여부(해당학생) 출력 후 학교장 확인(내부결재, 학관위 심의) 																		

2 학기 초 업무

2-1 개인학생선수 현황 파악

- 학생선수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

가정통신문 (예시)
<p>안녕하십니까?</p> <p>본교에서는 학교 운동부로 활동하는 학생 선수들 이외에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 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파악하여 학생 선수들의 학습권 보장 및 교육적 육성을 하고자 합니다.</p> <p>개인적으로 대한체육회 또는 해당 종목협회에 등록하여 학생 선수로 활동하는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께서는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3월 00일(월)까지 0000로 회신하여 본교 학생 선수 파악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선수에 해당되나 미제출하여 본교 학생 선수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대회 참가 및 학사 일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p> <p>(학생선수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p> <p>※ 추후 대한체육회에 등록 예정인 경우에도 회신 부탁드립니다.</p> <p>1. 조사 기간 : 20 .0.00.(월)~20 .0.00.(금) 2. 조사 대상 : 전교생 3. 설문 참여 방법 가. 00고등학교 진로진학 사이트 (https://0000.00school.kr/) 나. 가정통신문 - 20 학년도 학생선수 파악 다. 본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설문 응답</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00 고 등 학 교 장 (직인생략)</p>

2-2 연간활동계획서 수합 및 학교장 허가 내부결재

학교장 허가 내부결재(예시)				
1. 관련: 0000(2000.0.0.)				
2. 2000학년도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학생 선수 등록 신청 및 연간활동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보고 합니다.				
학번	이름	종목	2000학년도 학생선수 등록신청 여부	연간활동계획서 제출 여부
10100	홍길동	00	○	○
20100	홍길순	00	○	○
<p>붙임 1. 선수등록증 및 연간활동계획서(홍길동) 1부.</p> <p>2. 선수등록증 및 연간활동계획서(홍길순) 1부. 끝.</p>				

2-3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 학생선수에 대한 대회(훈련) 참가 시 출결 및 수업결손 대책, e-school 운영 방법 등 심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협의록 (고등학교 예시, 학교 급별로 적용 기준 차이가 있음)																	
일시	0000년 0월 0일 0요일 00:00 ~ 00:00																
장소	000교무실																
참석자	000, 000, 000, 000, 000, 000																
협의안건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적용에 따른 e-school 운영방법, 출결 및 수업결손 대책 심의																
협 의 내 용	<p>I. 관련근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 2. 경기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 <p>II. 운영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과목 : 국, 영, 사 2. 대회참가, 훈련참가 로 인한 수업결손 보충 방법으로 e-school 시스템을 활용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학생선수 수업 결손 보충: 1일 2시간 이하 수업결손은 1시간 수강, 3시간 이상 결손은 2시간 수강 나. 기초학력 보장프로그램(Run-up): 최저학력제 미도달 학생 의무 참가 다. 기초학력 증진프로그램 : 학생선수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학교자체 운영 <p>III. 교육과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회참가(훈련)으로 발생한 수업결손 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수업결손에 대한 보강은 대회참가 전·후로 e-school 수강을 원칙으로 한다. 나. 대회일정으로 인하여 수강이 어려울 경우에는 1학기를 단위로 결손에 대한 보강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2. Run-up(e-school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학력에 미달된 교과가 있을 경우에는 Run-up(e-school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고등학교 20시간을 적극 활용하여 최저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미이수시 대회, 훈련 참석 불가 <p>IV. 최저학력 적용 교과</p> <table border="1"> <thead> <tr> <th>학년</th> <th>국어</th> <th>영어</th> <th>사회</th> </tr> </thead> <tbody> <tr> <td>1학년</td> <td>국어/국어</td> <td>영어/영어</td> <td>통합사회/통합사회</td> </tr> <tr> <td>2학년</td> <td>문학/독서</td> <td>영어1/영어2</td> <td>탐구선택교과 [택3] 중</td> </tr> <tr> <td>3학년</td> <td>화법과 작문/언어와 매체</td> <td>영어독해와 작문/영어회화</td> <td>탐구선택교과 [택3] 중</td> </tr> </tbody> </table> <p>V. 출결 관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정의): 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 소속이거나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2. 학생선수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는 (고등학교)50일로 하고, 학생선수 출결처리 방법(지각·조퇴·결과 처리)은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위한 실제 수업 결손 시수만큼 환산하여 적용한다. 3. 다만, 전국(소년)체육대회(지역예선 포함)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학생선수의 출석허용일수의 초과를 허용 가능 4. 대회(훈련)으로 학생선수 수업 결손 보충은 e-school 수강을 원칙으로 한다. 5. 학생선수 성적 처리 및 기타 안건은 학업성적관리 심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끝. 	학년	국어	영어	사회	1학년	국어/국어	영어/영어	통합사회/통합사회	2학년	문학/독서	영어1/영어2	탐구선택교과 [택3] 중	3학년	화법과 작문/언어와 매체	영어독해와 작문/영어회화	탐구선택교과 [택3] 중
	학년	국어	영어	사회													
	1학년	국어/국어	영어/영어	통합사회/통합사회													
	2학년	문학/독서	영어1/영어2	탐구선택교과 [택3] 중													
	3학년	화법과 작문/언어와 매체	영어독해와 작문/영어회화	탐구선택교과 [택3] 중													

3 학사관리

3-1 개인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운영

1 관련근거

가.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나. 경기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

2 학생선수 학사관리 강화

가. 학생선수 대회 및 훈련 참가에 따른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

- 학생선수의 충실한 학업수행 지원을 위해 **대회·훈련** 참가에 따른 **출결관리 강화**
 ※ 대회·훈련 참가는 '학생선수 출석인정일수' 내에서 활용하고, 지각·조퇴·결과 등 강화된 기준 적용

2025학년도

■ 학생선수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

학교급	초	중	고
허용일수	20일	35일	50일

■ 학생선수 출결처리 방법

- (출결처리)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 범위 내에서 학교장 허가
- (지각·조퇴·결과 처리기준 개선)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위한 지각, 조퇴, 결과의 출석인정 처리를 실제 사용 수업시수를 누적*하여 관리
 - * 실제 사용 수업 시수 단위로 합산하여 관리하고 누적 6시수를 출석인정일수 1일로 처리
- 학생선수가 대한체육회에서 인정하는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국제대회 참가 및 이를 준비하는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또는 전국(동계·소년)체육대회(지역 예선 포함)는 허용일수를 초과하여 사용 가능★★
- ★ 20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참고
- * 대한체육회에서 인정하는 관련 공문(기간, 장소, 명단 명시 등)에 근거한 국가대표 및 '꿈나무, 청소년대표, 국가대표후보' 학생선수의 훈련도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 초과 사용 가능

※ 학교장은 학생선수 안전 확보,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 학습권 보장 등을 고려하여 허용일수 내에서 '출석인정 결석' 처리를 허가할 수 있음. 다만, 허용일수는 의무적으로 허가해 주어야 하는 일수는 아님 (초 20일, 중 35일, 고 50일)

나. 학생선수 출결현황 관리 강화를 위한 나이스 기능 개선(신규, 나이스 사용 의무)

- 담임교사와 경기종목 지도교사가 학생선수의 대회 및 훈련 참가 일수를 확인 및 관리할 수 있도록 나이스 기능 개선 완료
 - ※ 현행 학급 담임교사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출결상황을 학교운동부 학생선수 관리 메뉴와 연동되도록 나이스 기능 개선

다. '출석인정결석' 적용 예외

- 학생선수가 대한체육회에서 인정하는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국제대회 참가 및 이를 준비하는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또는 전국(동계·소년)체육대회(지역 예선 포함)는 허용일수를 초과하여 사용 가능★★★
20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참고

* 대한체육회에서 인정하는 관련 공문(기간, 장소, 명단 명시 등)에 근거한 국가대표 및 '꿈나무, 청소년대표, 국가대표후보' 학생선수의 훈련도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 초과 사용 가능

라.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책무성 강조

- (단위학교) 학교장은 학기초 학생선수를 파악하여 학생선수의 최저학력 도달여부와 허용일수, 안전 확보 등을 고려하여 대회 및 훈련 참가 승인
- (경기단체) 각종대회를 개최하는 종목별 주관 경기단체에서는 학생선수가 학교장 확인서를 미제출 하였을 경우, 대회참가를 불허
- (교육(지원)청) 최저학력 미도달 현황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
- (출석인정제 출결관리 매뉴얼 개발) 제도 적용 및 관리기준, 사례 Q&A, 수업결손 보충기준 등을 마련하여 제도의 안정적 현장 적용 및 안착 지원(학교체육 포털 탑재, '23.공문 안내)

③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최저학력제 적용(변경, 법령 개정)

☞ (관련근거)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제1항 일부개정(’24.12.30. 공포·시행)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이하 “최저학력”이라 한다)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생선수가 제2항에 따른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참가를 허용하여야 한다.

가. 최저학력제 개요

- (적용목적)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에 미도달 한 경우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운영(의무)하고, 경기대회 참가를 제한 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적용대상) 초(4~6학년)·중·고 학생선수*
 - * 학교운동부 소속이거나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학교체육진흥법 제2조)
- (적용과목) 초·중학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5과목) 고등학교: 국어, 영어, 사회(3과목)
- (적용기준*) (초) 50%, (중) 40%, (고) 30%
 - * 학생선수 소속 학교의 해당학년 해당교과별 평균성과 비교
(예) 00과목 0학년 평균성적 70점일 경우 50%(35점), 40%(28점), 30%(21점)
- (성적적용) 매 학기말 고사(이론시험+수행평가)
 - 2024학년도 2학기 말 해당 과목 성적이 최저학력에 미도달하였을 경우에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대회 참가 가능
 - 학교장은 최저학력 기준에 미도달한 학생선수 대상으로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Run-up) (e-School 등 활용)을 제공하고 대상 학생선수는 참여(이수) 의무화
-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학교장은 학기별 기말고사(지필고사+수행평가) 성적이 산출되면 학생선수의 최저학력 도달 여부를 파악
 - 미도달 학생선수에게는 과목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운영 후 이수를 의무화하고 관련 사항은 내부 결재 처리 등을 적절히 조치

핵심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적용 주요 사항

- (사전안내) 학년 초에 최저학력제 적용과목을 선정하고 이를 학생선수에게 안내
- (초등학교) 지필고사 미 실시하는 경우, 담임교사가 진단 및 단원 평가 결과 등의 자료를 학업성적 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활용하여 심의 후 최저학력 도달 여부 결정
- (중학교) 자유학기(학년)제 운영 다음 학기에는 최저학력제 미적용
 - ※ (예시) A중학교에서 1학년 2학기를 자유학기로 운영한 경우, 2학년 1학기에는 학생선수 대상 최저학력제 미적용
- (고등학교) 학교장은 학교체육소위원회 심의 후 영어, 사회 ⇨ 수학, 과학으로 대체 가능, 특성화 고등학교도 영어는 수학교로, 사회는 과학 또는 전문교과로 대체 가능
- (교과대체) 교육과정 개편으로 해당교과가 개설되지 않을 경우, 학교장이 학교체육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타교과로 대체 가능
- ▶ 최저학력 미달 학생선수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미이수하면 학교장 확인서 발급 불가

나.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적용 및 처리 절차

- [학교에서 해야 할 일] 내부결재 처리 : 학기말 지필고사+수행평가 성적이 산출되면 학생선수의 최저학력제 도달여부를 파악하고 미도달 학생선수에게는 과목별 기초학력 보장프로그램을 운영 후 이와 관련된 사항을 내부결재 처리 ※ 고등학교 체육특기자 진학 시 반영사항임
- 학생선수가 상급학교로 진학한 후에 졸업 학교로 직전 학년의 '최저학력 도달 여부 확인*'을 요청할 시 적극 협조 필요
 - *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중학교 3학년 2학기의 과목별 최저학력 도달 여부 확인
- 최저학력에 미도달 할 경우, 초·중학교(5교과)는 교과별 12시간, 고등학교(3교과)는 교과별 20시간 운영 및 이수 의무화(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Run-up) (e-School 등 활용)
- 예시) 해당 과목(초·중 5교과, 고 3교과) 전체가 미도달 되면 총 60시간 이수

예시 최저학력 및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 관리						
학년-반	이름	종목	최저학력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	
			도달여부	미도달 과목수	이수여부	이수 시간
4-1	○○○	00	도달	미작성	미작성	미작성
5-3(초) 2-1(중, 고)	△△△	00	미도달	3	이수	36(초, 중) 60(고)

다. 최저학력제 적용 책무성 강조 (※ 학교체육진흥법 제6조1항제4호, 제11조제1항)

- 학기초: 학생선수(개인선수 포함)와 학부모에게 최저학력제 적용과목, 대회참가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사전 안내하고,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학기말: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적용하여 도달 여부를 판단 후 미도달 학생에게는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e-school 활용 등)을 제공하고 의무 이수토록 관리 감독
- e-school 활용 내실화* :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공부하는 학생선수 여건 조성을 위해 구축된 시스템을 효과적이고 내실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철저
 - * 학부모 대리수강 방지를 위한 학교별 자체 방안 강구하여 운영
 - 학교에서는 학기초 학생선수 파악하여 학생선수(학부모)에게 사전 안내하고 별도 계획 수립 후 추진
 - 단체 수강(학교운동부는 훈련 전·후 및 여유 시간을 활용하여 수강 권장), 개별 학습노트 작성, 수강 진도 수시 확인 및 관리 감독

3-2 학습지원(e-school) 운영 및 기초학력보장(run-up) 프로그램★

가. e-school 시스템 운영 개요

- (개념) 학생선수들이 대회참가 및 훈련참가로 인한 수업결손을 보충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시스템
- (대상) 초·중·고등학교 학생선수*
 - * 국가대표 학생선수와 학생선수 활동을 중단하고 일반학생으로 전환한 학생(경력전환 학생)들도 본인 희망에 따라 수강 가능
- (운영 강좌) 초등학교(교과 14강좌, 특화 4강좌), 중학교(교과 24강좌, 특화 12강좌), 고등학교(교과 69강좌, 특화 13강좌)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선수 결 보강시 경기 e학습터(<https://cls.edunet.net/>)활용 또는 해당 학교별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단위학교별로 계획하여 운영 가능

나. e-school 시스템 활용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누리집 주소	es.e-school.or.kr	ms.e-school.or.kr	hs.e-school.or.kr

- 학생선수 수업 결손에 따른 **보충학습 제공,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운영**, 학습결손 보완을 위한 기초학력 콘텐츠* 제공, **진로교육 콘텐츠** 등 활용
 - * 고등학교 학생선수의 기초 학력 보완을 위해 중학교 교과 콘텐츠 수강 가능

다. e-school 학습 내실화를 위한 학습 시간 조정

- (목적) 학생선수의 자발적인 학습 참여를 유도하고, **대리수강을 방지**하여 e-school이 학력증진에 실제적 도움이 되도록 운영
- (내용) **정규 수업시간 및 심야 시간대를 학습시간에서 제외**
- e-school을 활용한 학습 가능 시간

구분		학습 시간	Run-up 여름, 겨울
평일	아침시간	06:00 ~ 09:00	06:00 ~ 익일 02:00
	점심시간	11:30 ~ 13:30	
	오후 및 저녁시간	15:00 ~ 02:00	
주말 및 공휴일		06:00 ~ 익일 02:00	

라.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run-up) 운영 및 의무 참여

- 1) 학교장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최저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준미달 학생선수는 프로그램 「의무 참여」
- 2) 최저학력 기준 미달 학생선수는 미도달 교과별로 초·중학교는 12시간씩, 고등학교는 20시간씩 운영하고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함.
- 3) 최저학력제 적용 대상 : 초등학교 4~6학년, 중·고등학교 전학년 학생선수
- 4) 이수기준 처리 : 1일 2시간 이하 수업결손은 1시간 수강, 3시간 이상 결손은 2시간 수강하며, 1일 최대 2시간 의무 수강
 ※ e-school 수강 시 적용 사항이며, 학교 여건에 따라 대면수업 등 자체 계획수립·운영 가능
- 5) 학습결과처리 : 학생선수 e-school 사이트에서(교무실→학습관리→학습현황관리→학생학습현황) 학습 확인서 출력 후 매학기 말 학교장 확인(내부결재)

3-3 정규수업 이수 의무화 및 학력증진 방안

☞ (관련근거) 학교체육진흥법 제6조(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

-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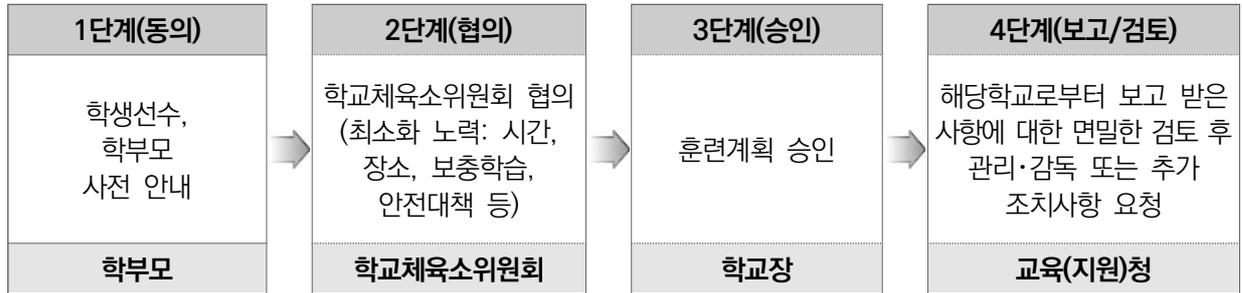
가. (기본원칙)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고,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통해 전인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모든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

- 단, 교내에 훈련장소가 없고 학생선수 안전관리 상 야간에 훈련이 어려운 종목으로 상시적 정규수업 이수가 불가능할 경우, 보충학습 제공·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교육지원청에 보고 의무화
 ※ 다만, 이 경우에도 훈련 참가는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 내에서 실시 가능

나. (보충학습) 학생선수가 수업결손이 발생할 경우, 학습권 보장을 위해 e-school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보충학습 제공 후 의무 이수

- ※ 수업결손 최소화 노력 : 훈련장소, 훈련시간, 훈련방법 과학화 등을 통한 개선 필요
- (이수 기준) 1일 2시간 이하 수업결손은 1시간 수강, 3시간 이상 결손은 2시간 수강하며, 1일 최대 2시간 의무 수강
 ※ e-school 수강 시 적용 사항이며, 학교 여건에 따라 대면수업 등 자체 계획수립·운영 가능
- (초등학교 e-school 운영) 학생선수 학습지원을 초등학교까지 확대하고, 관련 교과 콘텐츠 연계* 및 특화 콘텐츠** 지원
 * 스쿨포유 초등학교(4~6학년) 콘텐츠 활용 : 국어, 수학, 영어, 음악, 미술 등 12종
 ** 초등 학생선수 대상 맞춤형 지원을 위한 진로 탐색, 진로 개발 로드맵 개발, 인성·정서·기초역량 개발 지원

다. 훈련참가 허가 절차 : 학교 내 시설이 없는 경우



3-4 나이스 활용한 (개인)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 관리 의무화(신규)

가. (학생선수 나이스 등록) 나이스의 '체육-학생선수관리' 탭에 (개인)학생선수*를 등록하여 출결 및 훈련일지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

* 학교운동부 소속 학생선수뿐만 아니라 개인 활동 학생선수도 학기 초 파악 등록·관리

※ (개인 학생선수 등록 방법) [체육]-[학생선수관리]-[등록]-[학생찾기]-[학생명 조회]-[개인운동선수] 체크-[종목]-[세부종목]-[운동시작일자] 입력 후 [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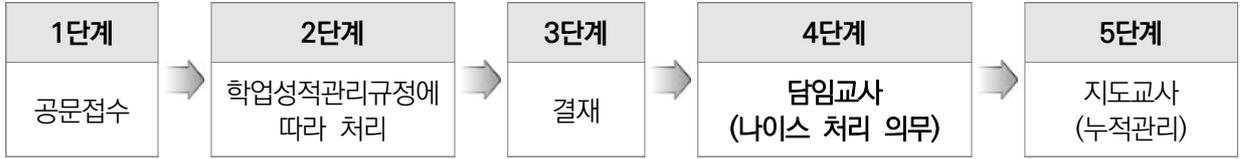
나. (출결상황 관리) 나이스 상의 학생선수 관리를 통해 [학적]과 연계한 정확한 '출석인정결석 허용일 수'의 시간 단위 누적·관리 가능

다. (최저학력제 관리) 학교급별 최저학력 과목을 등록하면 [성적]과 연계되어 자동으로 최저학력 달성 여부를 확인 및 관리 가능

라. (보충학습 이수 관리) 참가 및 훈련에 따른 수업결손 발생 시 의무 이수해야 하는 e-school 학습의 이수 현황 파악 가능('25.6월 이후~)

3-5 대회(훈련) 참가 나이스 처리 방법 안내

① 대회(훈련) 참가 승인 절차



※ 대회(훈련) 참가 승인은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반영하여 운영

가. 1단계: 대회공문(훈련계획), 국가대표 대회(훈련) 참가 협조공문 접수

나. 2단계: 학생선수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 ★

학교 급	초	중	고
허용일수	20일	35일	50일

- 1) 대회(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연간운영계획서, 수업일수 확인 등
- 2) 학생선수의 최저학력 도달 여부 확인, 최저학력기준 미도달 경우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Run-up) 이수 여부, 대회(훈련) 참가 승인 결정
- 3) 보충학습, 안전계획 등 수립 여부

다. 3단계 : 학교장 승인

라. 4단계 : 담임교사(나이스 처리)

마. 5단계 : 운동부 지도교사(누적 관리)

② 국가대표(꿈나무, 청소년대표, 국가대표 후보 포함) 대회(훈련) 참가 절차

가. 학생선수의 국가대표 대회(훈련)참가 공문 접수 : 문화체육관광부장관(대한체육회) 승인여부 확인

승인 절차
종목별 경기단체 ⇨ 대한체육회(승인) ⇨ 학생선수 국가대표 소속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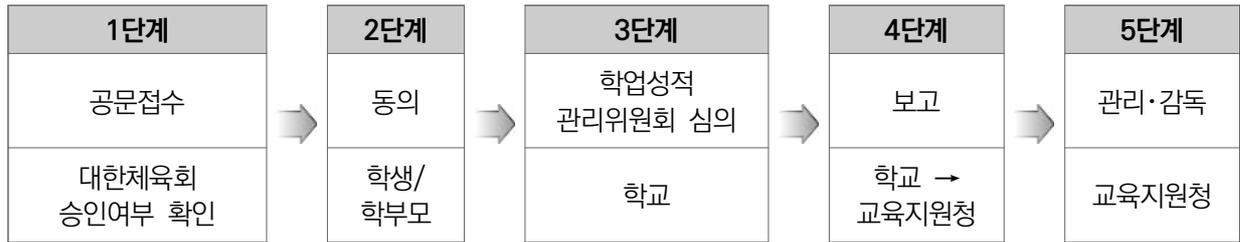
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 장기간 국가대표 대회(훈련)에 참가에 따른 심의 및 학교장 허가

※ 위탁교육 가능 여부, 보충학습 계획, 성적 및 출결처리 등에 관한 사항 심의

다. 보고 : 학생선수의 국가대표 대회(훈련)참가 관련 사항

라. 관리·감독 : 학교로부터 보고 받은 사항을 검토 및 확인 후 추가 조치사항 요청

마. 운영절차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대한체육회)이 인정하는 국가대표로서 주요 국제대회 및 국가대표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 가능

※ 20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참고

③ 학생선수 나이스 시스템 상의 출결상황 관리

가. 학생선수의 성적처리 및 관리도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단위학교 학업성적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성적처리

※ 특이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성적관리가 되도록 처리

나. 담임교사는 학생선수의 출결 상황을 NEIS 학교생활기록부(일일출결관리)에 처리

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 1) 1단계) 교육정보시스템 접속
- 2) 2단계) [학적]-[출결관리]-[일일출결관리(담임용)] 화면 출력
- 3) 3단계) 출석인정 클릭하고, 사유에 대회명과 기간 등을 기입

④ 학교장 확인 절차 강화

가. 대회출전 및 훈련으로 인한 수업결손 시 보충학습 기회 제공

※ 학기 중 대회출전으로 수업결손이 예상되는 경우 대회출전계획 내부결재 시 보충학습계획 반드시 반영하여 학교장 결재 후 실시

나. (학교장 확인 절차 강화) 학교장이 수업일수 준수 및 최저학력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 후 대회 출전 허용

※ (출결관리 강화) 학교장은 학교교육계획서에 전국대회 참가계획을 반영하여, 대회 및 훈련 참가 시 '출석인정결석' 처리 절차 준수

4 개인학생선수 인권 및 학교 폭력 예방교육

4-1 개인학생선수 인권교육

☞ (관련근거) 학교체육진흥법 제12조의3(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인권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등 각종 교육

가. 학생선수 (성)폭력 사안에 조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

★ 학생선수 관련하여 사안이 있는 경우 교육(지원)청 보고 의무

나. 학생선수, 학교운동부지도자 (성)폭력 예방교육

-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학기당 1회, 회당 1시간 이상의 스포츠분야 **인권교육**(「학교체육진흥법 개정」, '21.4)
 - 학생선수에게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학교폭력 예방교육**(연 2회) 실시하고, 추가적으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연 2회)을 실시
 - 인권교육은 스포츠분야 폭력 예방,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인권침해 발생 시 대응 및 신고 방법 등에 대한 내용 포함, 학생선수에게 연수 실시('22.상~)
 - ※ (학생용) e-school 플랫폼 탑재 (지도자용) 학교체육회진흥회, 대한체육회 플랫폼 탑재
- 담임·지도·상담·보건교사 등이 학생선수 건강상태 확인과 고민·애로사항에 대해 주기적인 상담활동으로 실시 및 일지 작성·관리

2 학생선수 폭력 발생 조기 발견 및 신고문화 확산

- 학생선수 폭력 실태조사 정례화를 통한 신고문화 정착
 - 학생선수의 폭력피해 실태 파악을 위해 전수조사를 매년 실시, 피해자 조기발견 하여 보호 강화 및 신고문화 정착 도모

③ 개인학생선수 (성)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

가. 학교폭력 근절 대책과 연계하여 학교 교육계획 수립 시 학생선수 인권교육 내용 반영

나. 학교장 책임 하에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 지도자 대상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거나 일반 학생 대상 학교(성)폭력 예방교육과 연계 실시

다. 교육대상 및 내용

연번	교육내용	대상	교육횟수	주관기관	비고
1	인권교육 및 성(희롱)폭력 근절 예방 교육	지도자	연1회 (2시간)	교육지원청	
2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생선수의 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	학생선수, 지도자(학부모)	연2회	학교	학교운동부 점검 사항
3	학교운동부 운영 관련 교육 의무화 (학습권, 인권보호, 진로, 입학비리, 학교회계 등)	지도자, 학부모, 지도교사	연2회	학교 교육지원청	집합, 사이버 연수 등
4	도핑방지교육 (도핑개념, 금지약물정보, 도핑관련정보 등)	학생선수, 지도자	연1회	학교, 교육지원청	한국도핑방지위원회 교육 신청 02-2045-9800
5	학생선수 면(상담) 의무화 (건강관리, 심리지원, 진로 진학 등)	학생선수	월1회	학교	상담일지기록 전문상담교사
6	학생선수 인권실태 조사 ※ 폭력피해 실태조사 정례화	학생선수	연2회	학교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담당 교사 협조
7	학생선수 휴식권 보장	학생선수, 지도자	연중	학교	학교운동부 운영 계획 포함
8	학생선수 고충처리센터 설치·운영	학생선수	연중	학교 교육지원청	연2회 보고
9	학생선수 안전드림(앱) 설치	학생선수, 지도자	연중	학교	학기초 안내
10	학교장 간담회 실시 (학교운동부 운영 소통의 장 마련)	학생선수, 지도자 학부모	연2회	학교	등록부/협의를록
11	학업정보 및 상담프로그램 제공	학생선수	연중	학교	진로상담교사 협조
12	학교폭력 신고 방법 홍보	학생선수	연중	학교 교육지원청	학교홈페이지
13	폭력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학교체육시설 내 취약지점 CCTV 설치	학생선수	연중	학교	학교체육시설 내

※ 프로그램 및 (운영 기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학생선수 및 지도자, 학부모 대상 연수 시 참고사항

- 대한체육회스포츠인권센터 유튜브 채널
: <https://www.youtube.com/@user-do9rd1sb1z/videos>
- 국가인권위원회 유튜브 채널[스포츠인권 RESPECT ep.1~6]
: https://www.youtube.com/watch?v=52Jgi2l34nc&list=PLYKtfwhujklIu8ZKuECT942U2vU9y6_y&index=6
-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온라인 도핑방지교육센터 : <https://edu.kada-ad.or.kr/>
- 외부 기관에서 주관하는 인권교육 적극 활용 : 국가인권위원회 및 대한(경기도)체육회 등
- 스포츠윤리센터: 스포츠윤리론(체육인·스포츠지도자 의무교육, 인권침해, 비리방지 예방교육)

라. 개인학생선수 폭력피해 예방 및 보호 등 후속조치 강화

- 피해자 조기발견을 위한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 정례화

'25년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 결과 개요

- (조사 대상) 초·중·고 전체 학생선수
- (조사 기간) '25. 5월 실시 예정
- ※ 학생선수 폭력 피해 전수조사 계획 별도 안내 예정

- (전수조사) 학생선수 폭력에 대한 신속한 대응, 적극적인 신고문화 정착을 위해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
- (심층조사) 사안이 중대하거나 은폐 의혹 등이 있는 경우 관할 경찰, 교육청 등이 2차 합동 조사 후 고발·징계 등 조치
- (법적 근거)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 정례화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 조기발견 지원*(「학교체육진흥법」 개정)
※ 「학교체육 진흥법」 제12의3제1항 일부개정법률안('22.상반기)

- 학교체육소위원회 운영 내실화

- 학생선수의 학습권 및 인권보호를 위해 학교체육소위원회의 기능을 내실화하고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하도록 개선하여 학교 내 학생선수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 유도
※ 학교체육소위원회 구성·운영 변경 사항

- (기능) 학생선수 학습권 및 인권보호 외 학교운동부지도자에 의한 폭력사안 확인(면담 등) 기능 포함
※ 폭력 사안은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조사하고 지도자의 경우 징계 절차에 따라 징계의결하되, 소위원회에서는 폭력사안의 확인, 학생선수 보호를 위한 조치사항 등을 협의·협력
- (구성) 단위학교의 학교체육소위원회 운영 시 상담교사, 보건교사, 학교폭력 담당 교사 등의 참여 확대를 통해 개방적 환경 조성
- (운영) 학교운동부 폭력 관련 사안 발생 시 학교운동부 관련자 참여 배제
※ 단위학교의 학생선수보호위원회를 학교체육소위원회와 통합 운영 권장

바. 가해 학생선수 및 지도자에 대한 사후 조치 강화

- 학교폭력 가해 학생선수에 대하여 폭력 사안조치 결과에 따라 일정기간 대회 참가 및 선수등록 제한

「학교폭력예방법」 처분에 따른 학생선수 선수등록·대회 참가 제한			
학교폭력 가해자 사안 조치 결과		제한 기간	
1호(서면사과), 2호(접촉·보복금지), 3호(교내봉사)		3개월	대회 참가 제한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6개월	
8호(전학)		12개월	
9호(퇴학)	성추행, 성희롱 폭력 등	5년	대회 참가 및 선수등록 제한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	10년	

④ 학부모 관련 교육

- 가. (교육내용)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학교운동부 운영 투명성 제고 입학비리 근절, 학부모 부담금 학교회계 편입 등에 대한 교육(집합교육, 찾아가는 현장교육 등)
- 나. (주관기관)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운동부 운영학교
- 다. (교육횟수) 학기별 1회(연2회) 이상 실시(집합, 사이버 연수 등)

⑤ 개인학생선수 상담

- 가. 학교 : 필요시 수시 실시(누적관리, 개인 (상)담일지 보관)
- 나. 운영 : 담임교사, 체육교사(학교운동부 지도교사), 상담교사 및 보건교사를 통하여학생선수의 건강상태 및 선수 활동 고민사항을 점검·해소
- 다. 전문상담교사를 활용한 체계적인 상담 및 진로교육
- 라. 선수의 건강관리, 상담 및 폭력에 의한 경기력 저하 요인 파악 등으로 선수 개인별 정보 누가 관리 체계 유지

4-2 개인학생선수 인권보호 활동 강화

① 개인학생선수 고충처리센터 운영

- 가. 학생선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 선수보호 모니터링을 위한 학생선수고충처리센터 설치·운영
- 나. 학생선수고충처리센터

위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담당자	비고
주소	경기도 000 000 000 519-9			
학교홈페이지	http://000.ms.kr			
000학교 1층 학생생활인권부	070-5031-0000	000@000.net	000	학생생활 인권부장
000학교 1층 보건실	070-5031-0000	000@000.net	000	위원

(설치: 학교, 교육지원청)

4-3 개인학생선수 성장 지원을 위한 진로·진학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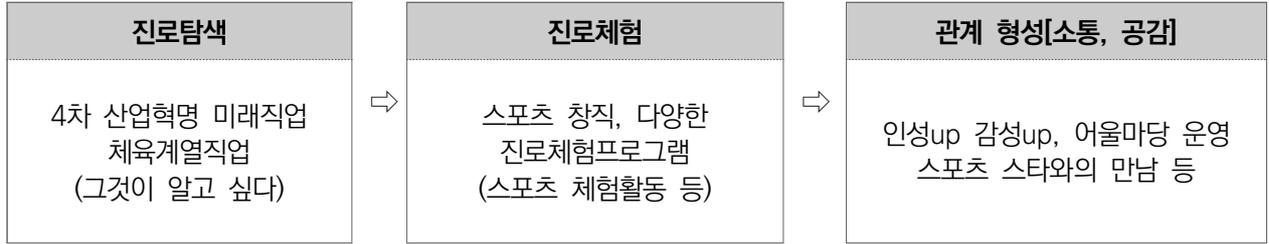
① 추진 목적

- ◇ 학생중심 성장단계에 맞는 진로·진학 교육 내실화
- ◇ 학생선수 진로·진학 생태계 구축을 통한 사교육 의존도 완화

② 운영 방침

- 학교운동부 연간계획 수립시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진로·진학 교육 반영하여 성장단계 맞게 운영
- 학생선수 맞춤형 진로·진학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운영
- 성장단계별 학생선수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위한 관계부서 협의 및 논의
- 학교 및 교육(지원)청은 마을단위 맞춤형 진로·진학 운영에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

③ 교육프로그램 내용



□ 온·오프라인 찾아가는 진로멘토상담제 운영(추가)

- (진로분야 다양화): 학생선수에게 스포츠분야의 다양한 진로와 경로 안내를 통하여, 학생선수 및 경력전환 학생에게 실질적 진로·진학지도

※ (학과) 체육학과, 사회체육과, 운동처방학과, 스포츠재활학과, 스포츠매니지먼트 전공 등

※ (직업) 프로선수, 심판, 코치, 체육행정가, 경기전략 분석가, 스포츠프로듀서, 스포츠마케터, 재활치료사, 스포츠타레이너, 스포츠마케터, 스포츠심리상담사 등

④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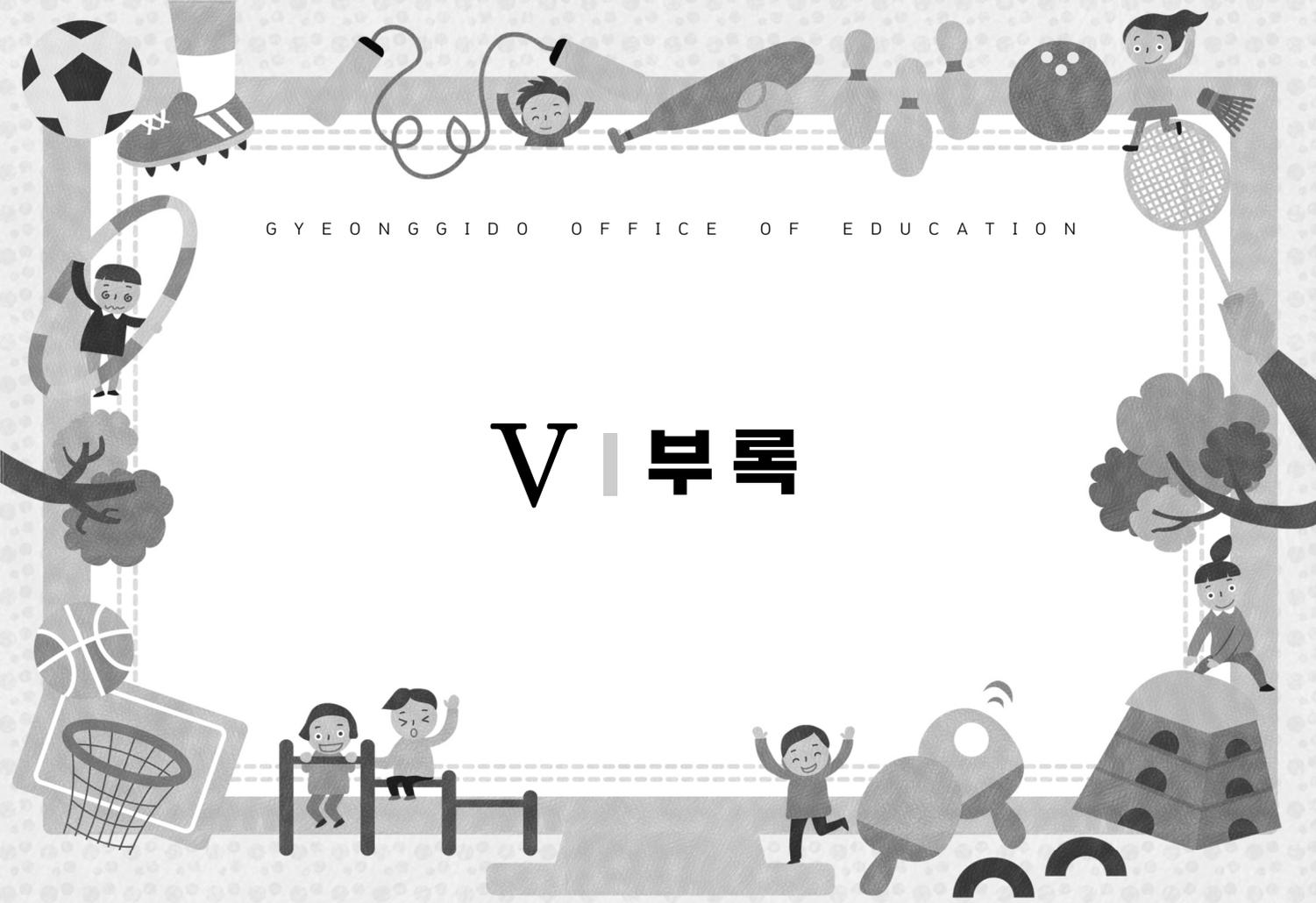
연번	내용	기간	주관	비고
1	학교운동부 진로 상담 운영 ※ 학교운동부 계획수립 시 포함	연중	학교	월 1회 상담의무화
2	찾아가는 운동선수 진로교육 (진로설계, 진로상담, 스포츠자격 등)	3월~11월	학교/교육(지원)청	중/고 희망 학교운동부
3	경기도 진학·정보센터 활용 상담 ※ 체육 입시 전문지원단 상담	연중	학교/교육(지원)청	(진로진학과)
4	체육분야 진로·진학 자료 제공	10월~11월	학교/교육지원청	(진로진학과)
5	중·고 사이버(e-school)등 진로교육 콘텐츠 운영	연중	학교	한국교육개발원
6	2025학년도 체육특기자 대입 설명회	8월	교육(지원)청	한국대학스포츠 협의회
7	학생선수 진로·진학 상담 (화상상담 및 게시판 상담)	7월~9월	학교	교육부
8	스포츠 미래 진로 교육 (스포츠 직종 및 스포츠 스타 명사 특강)	3월~10월	학교/교육(지원)청	경기도체육회

※ 프로그램 및 (운영 기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2025

학교체육 업무매뉴얼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V | 부록

[서식 1] 학교장 확인서 [경기대회 참가 신청용, 2024. 12. 20. 적용]

학교장 확인서

학교명	지역명 학교명 예) 경기 00초			종목명	000		
				출석인정결석 허용 일수	(초) 20일, (중) 35일, (고) 50일		
학교 담당자	성 명				종별	남(여)초, 남(여)중, 남(여)고	
	연락처	(000) 000-0000			적용 학년도 (기간)	2025학년도 ('25.3.1. ~ '25 2.28.)	
순	이름	① 누적 일수 / 허용 일수	② 최저학력제 적용 여부(V)	순	이름	① 누적 일수 / 허용 일수	② 최저학력제 적용 여부(V)
1		/		11		/	
2		/		12		/	
3		/		13		/	
4		/		14		/	
5		/		15		/	
6		/		16		/	
7		/		17		/	
8		/		18		/	
9		/		19		/	
10		/		20		/	

[작성방법]

- ① (누적 일수 / 허용 일수) 본 대회 포함하여 총 사용 누적 출석인정결석 허용 일수를 기입
예시) 현재까지 사용한 대회·훈련 참가 출석인정결석 허용 일수 총합이 10일인 경우 ⇨ 표기: (고) 10/50
 - ② (최저학력제 적용 여부)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도달하였는지 여부 확인은 학교장의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확인 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제공 등 적절한 조치실시, ※ 확인 표시는 “V”
- (대상/기준) 초4 ~ 고3 / 해당학년 과목평균(초 50%, 중 40%, 고 30%) 적용
- (성적적용) 1학기(전년도 2학기말 성적), 2학기(당해연도 1학기말 성적)
- (관련법령)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6조의2
※ 학교장은 학생선수가 최저학력 미달 시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의무 제공하고, 이를 이수한 경우에는 경기대회 참가를 의무 허용
※ 지필고사 미 실시하는 초등학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후 최저학력 도달 여부 결정하고, 중학교 자유학기(년)제 학기(년)는(은) 최저학력제 미적용
- ▣ 최저학력 미달 학생선수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미이수하면 학교장 확인서 발급 불가

위와 같이 학생선수의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 사용 현황 및 최저학력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000학교장

(직인)

[서식 2] 개인별 최저학력 확인서 [경기대회 참가 신청용 2024. 12. 20. 적용]

개인별 최저학력 확인서

학교명	남양주시 00초등학교		종목명	농구
학교 담당자	성 명		종별	남(여)초, 남(여)중, 남(여)고
	연락처	(지역번호) 000-0000	적용시기	

과목별 현황

순	이름	①최저학력 도달 여부		②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 이수		비고
		도달 여부	미도달 여부	이수 여부	이수 시간	
1	철수					
2	미영					
3	나영					
4	대박					
5	준수					

※ 작성방법

- ① (대상/기준) 초4 ~고3 / 해당 학년 과목평균(초 50%, 중 40%, 고 30%) 적용
 ② (최저학력 미도달) 학교장은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 운영하여 미도달 학생선수가 이수해야 함
 - (관련 법령)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위와 같이 대회 및 훈련 참가 일수와 최저학력 관련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000학교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진학 시 진학교로 공문발송
 ※ 개인운동 학생선수 요청 시 발급

[서식 3]

개인(클럽) 학생선수 연간활동계획서

성명		학년/반/번호	제 학년 반 번	
보호자명		관계	연락처	
제출서류	1. 선수등록확인서 1부 2. 전(前)학기 e-school 이수증(해당자만 제출)			
연간활동계획	◎ 연간 훈련계획 및 대회참가계획 (인솔 및 안전대책 필히 포함) ※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첨부)			
개인(클럽) 학생선수로서의 상기 모든 활동이 학생과 학부모의 충분한 검토와 협의에 의해 계획되었고, 모든 활동은 보호자 본인이 책임지고 안전하게 지도할 것을 전제로 본 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 20 년 월 일 보호자 : (인) </div>				
000학교장 귀하 ※ 학교장 확인 사항(아래는 학교에서 기록함)				
종목				
전(前)학년				
수업일수	결석일수(질병,무단)	출석인정결석	출석인정조퇴	출석인정결과
()일	()일	()일	()시간	()시간
전(前)학기 최저학력기준 미달 과목		국() / 영() / 수() / 사() / 과()		
제출자료		1. 전(前)학기 e-school 이수증() 2. 선수등록확인서 ()		

※ 개인(클럽)학생선수는 상기 연간활동계획서를 근거로 출결 등 제반 사항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사전 심의
 ※ 학생선수 재학 시 학교의 업무분장에 포함하여 학생선수 관리

[서식 5]

학교운동부 지도자 비위행위 사안 보고서

※ 사안 발생 보고, 사안 처리 결과 보고에 활용

소속기관	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종목
	경기(예시)	수원	00고	000
일시/장소	0000. 00. 00.(수) 17:00 / 00고 체력단련실			
사안 확인	0000. 00. 00.(화) 피해 학생선수가 경찰에 신고하여 학교에서 인지 ※ (예) 0000. 00. 00.(화) 지도교사가 상담과정에서 폭력 발생 확인			
가해자	000(남, 30세) 학교운동부지도자			
피해자	000(남, 2학년), 000(남, 3학년)..... ※ 피해자 있을 경우 작성			
언론보도	연합뉴스('0000.00.00.), 뉴시스('0000.00.00.) 등			
사안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안 개요 00고 야구부 학교운동부지도자 000(남, 30세)가 '0000. 00. 00.(수) 00시경 본교 체력 단련실에 000(남, 3학년)외 5명 야구부 학생선수 집합시켜 폭언과 야구배트로 엉덩이 부위 3대씩 가격하는 폭력을 행사하여 학생선수가 0000. 00. 00.(목) 경찰에 신고 ■ 피해 학생선수 현황 000(남, 3학년)외 5명 병원에서 전치 2주 진단으로 입원 중 ■ 가해자 진술 : 폭력 행사 사실 인정하고 징계 처분 수용 ■ 피해자 진술 : 형사처벌은 원치 않으나, 지도자 교체 요구 			
조치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장이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경찰에 신고('22.00.00.) ■ 학운위 개최('0000.00.00.)하여 해임(안) 심의 후 최종 해임 통보('0000.00.00.) ■ 의원면직('0000.00.00.) ※ 의원면직 시에도 사안보고 처리 실시 			
징계 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임('0000.00.00. 학교장), 감봉 3개월('0000.00.00.~ 00 00. 학교장) ※ 징계처분(일자, 징계권자) ■ 첨부서류 : 징계의결서 또는 징계처리 결과서(내부결재 사본 등) 1부 			
교육청	접수/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고 야구부 학교운동부지도자 폭행 사안 공문 접수('22.00.00.) ■ 대한체육회 통보 여부 : 통보('0000.00.00.) / 미통보 		
	조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 개최하여 징계의결('0000.00.00.) ■ 학교운동부 특별점검 실시 예정('0000. 00월) ※ 학생선수 대상 폭력 사안 발생 여부 전수조사 실시 등... 		

2025. 00. 00.

작성자 : 00학교 교사(감) ○○○

[서식 6]

학교장 청렴 서한문(예시)

◆교훈◆	청렴서한문	주소: 학교 전화: 행정실 전화:
------	--------------	--------------------------

학부모님께

덕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평소 본교 발전과 학교운동부 운영에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경기도교육청과 ○○○에서는 각급 학교, 특히 학교운동부 청렴에 관하여 많은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바 본교도 지난 ○월 학교운동부 지도자와 학부모님께 반부패 근절과 청렴 시책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학부모님들로부터 청렴서약서를 징구하였습니다. 불법찬조금은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조장하여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켜 학내 갈등의 원인이 되는 등 교육목적 달성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운동부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반드시 학교 회계에 편입하여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운동부 운영비 집행 결과 및 훈련계획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하여 그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분기별 공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은 학교발전기금에 편입하여 공개적으로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동참하여 주시고 부적절한 불법찬조금이 조성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찬조금 신고처 -

홈페이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www.goe.go.kr) → 전자민원 → 부조리신고 및 상담 → 불법찬조금 신고
전화신고	감사관 (☎ 031-000-000-0000)
익명 신고 (이메일, 유선)	hotline@goe.go.kr (☎ 031-2490-999)
학교	교장실 (☎), 예체능부 (☎)

20 년 월 일

○ ○ 고 등 학 교 장

[서식 7]

학교운동부 선수 상담일지

○○○학교

상담 일자	20 . . . ()	상담 시간	○○:○○~○○:○○
이 름		학년 / 반	○-○
상담 방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본인 내방 <input type="checkbox"/> 이동 <input type="checkbox"/> 전화 <input type="checkbox"/> 팩스 <input type="checkbox"/> E-mail		
영 역	<input type="checkbox"/> 학업 및 진로 <input type="checkbox"/> 대인관계 <input type="checkbox"/> 가족관계 <input type="checkbox"/> 성격 <input type="checkbox"/> 학교폭력 <input type="checkbox"/> 자해·자살 <input type="checkbox"/> 일탈 및 비행 <input type="checkbox"/>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심리·정서관련 <input type="checkbox"/> 부적응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학교생활 및 운동부 생활 등)		
상담내용 및 상담자 의견			

상담 일자	20 . . . ()	상담 시간	○○:○○~○○:○○
이 름		학년 / 반	○-○
상담 방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본인 내방 <input type="checkbox"/> 이동 <input type="checkbox"/> 전화 <input type="checkbox"/> 팩스 <input type="checkbox"/> E-mail		
영 역	<input type="checkbox"/> 학업 및 진로 <input type="checkbox"/> 대인관계 <input type="checkbox"/> 가족관계 <input type="checkbox"/> 성격 <input type="checkbox"/> 학교폭력 <input type="checkbox"/> 자해·자살 <input type="checkbox"/> 일탈 및 비행 <input type="checkbox"/>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심리·정서관련 <input type="checkbox"/> 부적응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학교생활 및 운동부 생활 등)		
상담내용 및 상담자 의견			

[서식 8]

학교운동부 지도자 근로계약서 (예시)

[근로계약서]

00학교장(이하 “사용자”이라 함)과 학교운동부지도자 000(이하 “근로자”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 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자의 인적사항

성명	성별	연령	생년월일	현주소	
000	0	만00세	0000.00.00.	경기도 00시 00구 00로 000	
전화번호(핸드폰)		연락처	최초계약일	직종	계약형태
000-0000-0000		000-0000	0000.00.00.	체육전문코치	기간제

2. 계약기간

◎ 계약기간 : 20 . 03. 01 . ~ 20 . 02. 28.까지로 한다.

3. 근무 장소 및 근무 내용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사용자가 정하는 내용으로 근로를 제공한다.

◎ 근무 장소 : ○○학교, 기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협의·지정한 장소(실제 훈련 장소)

◎ 근무 내용 :

- 가. 학생선수에 대한 훈련계획서 작성·지도 및 관리
- 나. 각종 대회참가 인솔 및 지원
- 다. 학생선수의 경기력 분석 및 훈련일지 작성·관리
- 라. 훈련장비 및 훈련장 안전관리
- 마. 적정 학생선수 수 확보
- 바. 기타 사용자가 명하는 학교운동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근무일과 근로시간

- ◎ 근로형태: 상시근무자
- ◎ 근무일 및 근로시간 : 일 8시간(주 40시간 근무)
 - 0요일 ~ 0요일 : 00:00 ~ 00:00
 - 근무일 및 근로시간은 학교운동부의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음
 - 1주의 근로시간은 40시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 할 수 없음
- ◎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부여한다.

5. 복무사항

- ◎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근무일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날에 근무한다.

6. 임금

- ◎ 구성항목: 기본급 〇〇〇원, 각종수당(수당은 지급대상 근로자에 한함)
- ◎ 계산방법: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임금지급기준」 및 사업부서(학교) 계획에 따름
- ◎ 지급방법: 매월 임금지급일(17일)에 “근로자”의 예금 계좌에 입금한다.
(계좌번호: 〇〇은행 000-000-000-0000)
단,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7. 휴일 및 휴가 등

- ◎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로 하고, 근로자의 날(5월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 ◎ 그 외 휴일 및 휴가 등은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을 준용한다.

8. 계약해지

- 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사용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학교운동부지도자 학생선수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박탈하거나, 폭력, 금품·향응수수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 소속팀 해체 및 사업의 종료, 예산 감축 등의 사유로 계약 해지가 불가피 한 경우
 -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 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교육(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재육성팀) 및 교육청 주관 학교운동부 직무 연수를 미 이수한 경우
 - 학교운동부지도자 근무성적 평가 결과 60점 이하
 - 학교장의 허가 없이 타 직무를 겸임하는 경우
 - 선수 발굴 및 지도 소홀로 적정 선수(단체 종목은 경기참가 인원수, 개인종목은 최소 6명)를 확보하지 못하여 팀 운영에 어려움을 야기한 경우

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계약기간 중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예고해야하며,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9. 연차보상 및 퇴직급여

◎ 연차보상 및 퇴직급여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기준법」에 의한다.

10. 계약의 변경

◎ “사용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1. 기 타

- ◎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 경기도교육청 학교운동부 지도자관리지침,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규정 및 취업규칙』에 따른다.
- ◎ 상기 계약사항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사용자 : 00학교장 000 (인)

근로자 : 성 명: (인)

생 년 월 일:

주 소:

※ 위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사용하시고, 계약서 작성 전에 반드시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을 숙지한 후 계약체결 시 동 규정을 준수하는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서식 9]

학교운동부 지도자 서약서

본인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 ○○○부 학교운동부지도자로 근무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함을 서약한다.

1. 소속 학교장의 명을 받아 헌신적으로 선수들을 지도한다.
2. 소속팀의 경기력 향상 및 해당 종목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3. 지도자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꾸준한 자기연찬을 계속한다.
4. 학부모, 선수, 학교와의 어떠한 경우에도 사회적 물의를 야기치 않는다.
5. 금품수수, 향응 제공 등 직무관계자와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6. 폭력 없는 학교운동부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한다.
7. 복무 사항을 근거에 의하여 준수한다.

위 내용을 성실히 준수함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학교 ○○운동부

지도자 성명

(인)

경기도교육감 귀하

[서식 10]

학교운동부 지도자 관리카드

				관리번호			
학교		종목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최소임용일			
				지도자격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종목단체 징계확인			
직무 연수	연수과정명	연수기관	연수기간	연수시간	연수 이수번호		
일반 연수	연수과정명	연수기관	연수기간	연수시간	비고		
포상 현황	포상일	종별	상훈 문서번호	상세포상명	시행정		
징계 현황	징계 종류	비위 유형	징계처분일	징계처분종료일	시행정		

[서식 11]

학교운동부 지도자 근무성적 평정표

□ 학 교 명 : _____ (_____)학교장 [직인]
 □ 종 목 : _____ □ 성 명 : _____
 □ 평가기간 : 20 ____ . ____ . ____ ~ 20 ____ . ____ . ____ □ 임용일자 : ____ 년 ____ 월 ____ 일

구분	평 가 내 용	배점	평점
복무 태도 (25점)	1. 근로계약서 상의 복무규정(출·퇴근시간)을 준수하였는가?	5	
	2. 지도자로서의 금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는가?	5	
	3. 학교장 및 감독교사의 정당한 업무 지시를 이행하였는가?	5	
	4. 지도자로서의 품의를 유지하고 솔선수범하였는가?	5	
	5.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기연찬을 꾸준히 하였는가?	5	
직무 수행 (35점)	6. 훈련계획(연간, 월간, 주간)을 수립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였는가?	5	
	7. 체계적이고 과학적 지도방법으로 학생선수를 지도하였는가?	5	
	8. 정기적 상담(월1회)을 통해 학생선수들의 애로사항을 관찰하였는가?	5	
	9. 학생선수들의 훈련장비 및 훈련장 안전을 확보하였는가?	5	
	10. 대회(훈련) 참가 시 책임감을 가지고 학생선수 안전을 위하여 입장 인솔하였는가?	5	
	11. 적정한 인원의 학생선수를 확보하여 운동부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였는가?	5	
	12. 학부모(업체)등으로부터 금품수수 및 향응을 제공받지 않고 운동부를 투명하게 운영하였는가?	5	
운영 성과 (25점)	13. 학생선수(팀)가 1년 동안 교육적으로 성장하였는가?	5	
	14. 전국(소년, 동계)체전 또는 전국학생체육대회에 성과가 있는가?	5	
	15. 종목별 전국 규모 대회나 시도 규모 대회에서 성과가 있는가?	10	
	16.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였는가? (운영비, 대회참가, 전지훈련, 해외전지훈련 등)	5	
학습권 및 인권침해 여부 (15점)	17. 학생선수 폭력 예방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는가?	5	
	18. 교육자로서의 언행으로 학생선수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였는가?	5	
	19. 학생선수의 학습권보장을 위한 규정을 준수하였는가?	5	
합계		100	

[서식 12]

학교운동부 지도교사 확인대장

학년도	학교명	지도교사	기간	종목 (세부종목)	참가선수명	상장번호	입상실적 (대회명)	기록자 (교감)	확인자 (학교장)
2019	00중	홍길동	2019.03.01.- 2020.02.29.	수영 (평영 100M)	곽00		제48회 전국소년체전 참가		
2020	00중	이순신	2020.03.01.- 2021.02.28.	수영			미참가		
2021	00중	안중근	2021.03.01.- 2022.02.28.	빙상 (쇼트트랙 500M)	정00	000	제101회 전국동계체전 3위		
2022	00중	안중근	2022.03.01.- 2023.02.28.	수영			미참가		
2023	00중	이울곡	2023.03.01.- 2024.02.29.	수영 (배영 50M)	김00		제52회 전국소년체전 도대표 참가		
2024	00중	홍길동	2024.03.01.- 2025.02.28.	수영 (접영 100M)	이00	000	제53회 전국소년체전 1위		
			예	시	자	료			

※ 학교운동부는 전국체전(소체, 전체, 동체) 참가 및 입상 여부에 관계 없이 필수 작성 및 영구 보관

※ 입상실적은 소년체전, 전국체전, 동계체전만 기록

※ 지도 기간 중 휴직 기간은 제외, 휴가 기간은 포함

※ 기록자, 확인자는 자필서명

2025

학교체육 업무매뉴얼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VI | 참고자료

[참고 1]

학생스포츠 활동 안전관리 대책 (학교운동부, 학생스포츠 활동 포함)

□ 추진배경

- 학생선수 대회 및 훈련 참가에 따른 다양한 안전사고 사례 분석을 통한 안전사고 피해 최소화
- 스포츠 활동별 특성을 고려하여 현장에서 쉽게 적용 및 활용할 수 있는 안전 매뉴얼 요구
- 학생선수 안전 중요성 인식을 통한 자기주도적 역량 강화

□ 목적

- 스포츠 활동 안전 시스템 구축을 통한 학생 안전 확보
- 신속 적절한 조치로 학생선수 안전 및 피해 최소화
- 안전사고 즉각적 보고체계 운영으로 추가 사고 예방을 위한 학생 안전 확보
- 스포츠 활동에 미치는 위험요인 제거를 통한 안전망 시스템 구축

□ 방침

- 스포츠 활동 전, 중, 후 모든 프로세스와 연관되어 안전교육 실시
- 기관별 역할을 인지하고 사안 발생 시 즉각적인 보고체계 운영
- 종목별 특징을 고려하여 유관기관 연계 인적, 물적 지원을 활용하여 예측, 대응, 점검 관리 등 안전망 시스템 구축

□ 주요 대책 방안

- 학생주도의 활동별 안전사고 대처 매뉴얼 제작 활동 강화
 - 학생 중심 토론을 통한 상황 선정과 사고 시 행동 매뉴얼 제작하기
 - ※ 운동 전·후·활동 중 사고 발생 시, 수상 활동, 종목별 활동 등 학생주도 사안별 매뉴얼 만들기
- 스포츠 활동 시 체크리스트 활용 안전 점검 활동 강화
 - 스포츠 활동 장소별 안전 수칙 부착 및 사전 교육활동 실시
 - 체크리스트 활용 안전 점검 실시(참여자용, 지도자용 활용)
 - 안전 홍보 플래카드 제작 부착 활용 등
- 스포츠 활동 안전에 대해 인식하고 실천하는 예방 교육 활동 강화
 - 교육과정 내 안전 단원 활용 안전교육 (스포츠 안전 동영상 활용 등)
 - 스포츠 활동 안전 예방 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내면화
 - 스포츠 활동 안전 지식 습득
 - 스포츠 활동 안전 행동 생활화
- 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 마련
 - 유사시 비상연락망 구축 및 연락체계 마련
 - 스포츠 활동 전 유사시 대응 방법에 대한 학생 교육 실시

☞ “사고대응 일יש삼”

‘일일구’ ‘이구조’ ‘삼보고’의 줄임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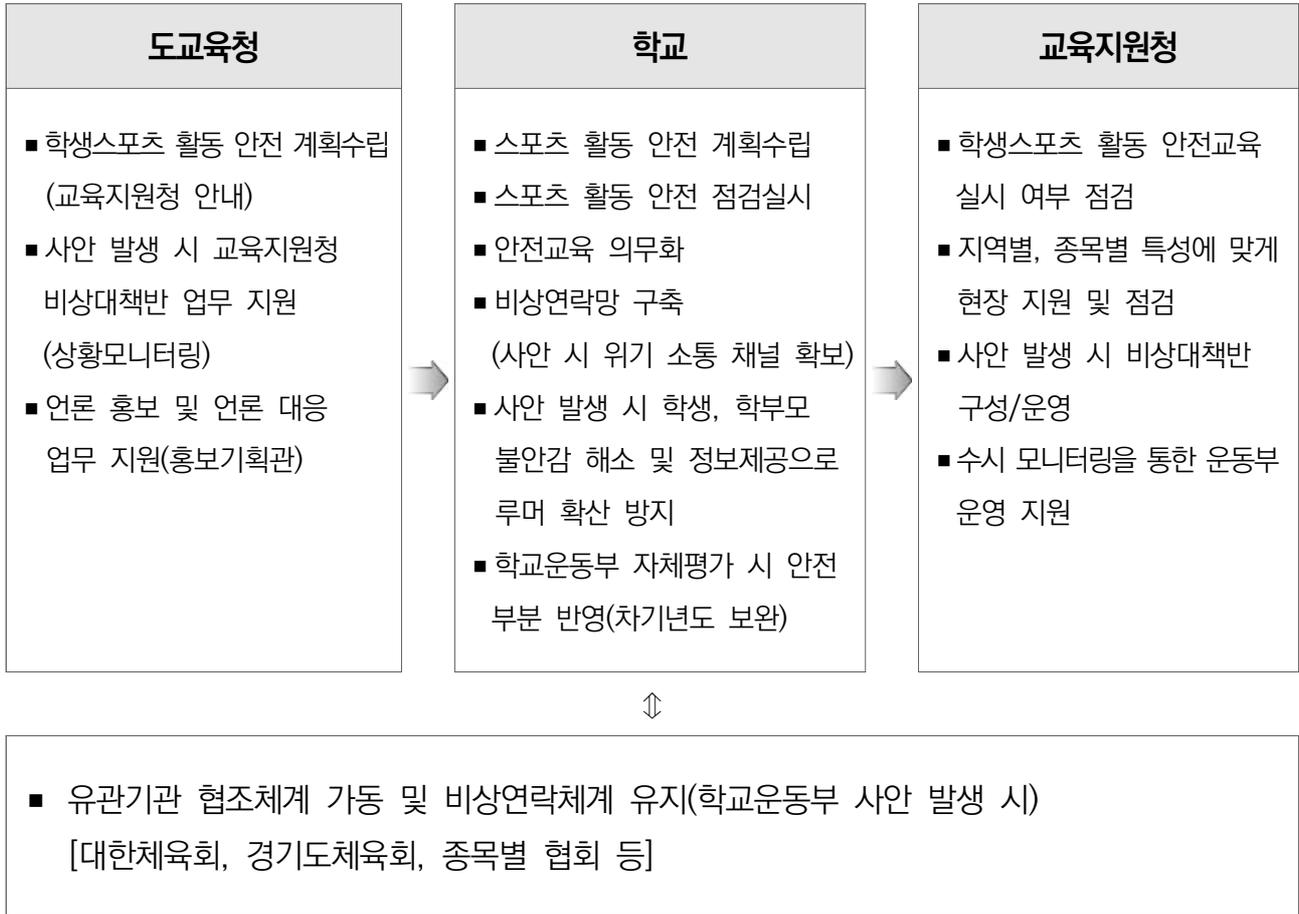
※ 사고 발생 시 학생, 교직원 등은 가장 먼저 [119에 신고 ⇒ 사고자 구조 ⇒ 선생님 혹은 관리자 보고] 를 함으로써 생명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경기도교육청 안전 슬로건

□ 학생 스포츠 활동 중 사안 발생 보고

안전사고 등 학생 사안 발생 시 즉각적인 보고체계 운영으로 피해 현황 파악 및 지원, 추가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통한 학생 안전 확보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p>학교안전사고 사안보고</p>	<p>관련근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 • 학교안전관리 종합계획 • 학생안전 종합계획
<p>☞ “사고대응 일일삼”이란 : 일일구 이구조 삼보고의 줄임말</p> <p>※ 사고 발생 시 학생, 교직원 등은 가장 먼저 [119에 신고⇒사고자 구조⇒선생님 혹은 관리자 보고]를 함으로써 생명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경기도교육청 안전 슬로건</p>	<p>① 학교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9 신고(필요 시 112 신고) ▶ 긴급 구조·구호 실시 ▶ 관할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사안담당부서) 동시 보고 <p>② 보고대상 〈교육부(moe119@moe.go.kr) 동시 보고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활동 중 사고: 병원진료를 요하는 중상 이상의 사고 ▶ 교육활동 외 사고: 사망 1명 또는 부상 5명 이상의 사고 ▶ 학교관련 시설에 대한 화재, 붕괴, 폭발 사고 등 ▶ 훈련 중 폭발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시설피해가 심대한 경우 ▶ 기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 발생 시
<p>【참고자료】</p> <p>- 학생안전종합계획 사안보고 서식[참고]</p> <p>【보고 시 주의사항】</p> <p>- 재난·안전사고 보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 보고하는 것이 원칙</p> <p>단, ‘교직원인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방지를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보고</p> <p>〈“교직원인 피해자가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경우” 처리 요령〉</p> <p>- 최초 1회 사안 보고서 제출(의무)</p> <p>* 피해자 이름, 성별, 담당업무 등 개인신상이 노출될 수 있는 정보 기재 생략</p> <p>- 본인이 추가 보고를 반대하는 경우 추가 보고 생략</p> <p>- 최초 보고 시 ‘피해자가 개인정보 유출 등을 우려하고 있음’을 명시</p>	<p>주요내용</p> <p>〈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 보고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동시 보고 대상 이외의 각종 안전사고, 교통사고, 질병 사망 등 ▶ 외부인 침입에 의한 범죄 ▶ 학생사망, 다수 피해발생(3명 이상), 언론 보도 등 중요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p>③ 보고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 발생(인지) 즉시 교육지원청, 도교육청(사안담당부서)에 유선 보고(학교) ※ 상기 보고 대상 중 교육부 동시 보고 대상의 경우는 교육부(moe119@moe.go.kr)로 동시 제출 ▶ 사고경위, 피해현황, 관련자 현황, 조치사항 등 사고관련 사항을 사안보고서식에 작성하여 사고발생 24시간 이내 교육지원청, 도교육청(사안담당부서)에 공문보고(긴급한 경우 FAX 또는 메신저 우선 보고 후 공문발송) ▶ 학교 사안보고 후 지원 사항 및 후속조치 사안담당부서에 보고(교육지원청) ▶ 최초 보고 이후 관련 상황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추가 보고 실시

□ 각 주체별 역할



[참고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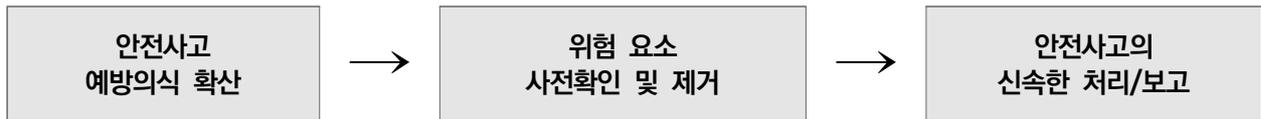
학생스포츠 활동 안전교육 자료4)

스포츠안전이란?

스포츠 활동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안전 관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대처하는 행동!!

□ 안전하고 행복한 스포츠 활동을 위한 구조

- 스포츠 활동 안전 계획수립
- 스포츠 활동 안전 예방 교육
- 안전 규칙 준수 생활화
- 스포츠 활동 안전 위해 요소 제거
- 스포츠 안전사고 즉각 대처 및 사후 관리



□ 스포츠 활동 안전교육의 필요성



4) 자료출처 : 스포츠안전재단(www.sportsafety.or.kr)

□ 안전하고 행복한 스포츠 활동을 위한 약속

- 스포츠 기술 습득
- 스포츠 안전 지식 습득
- 참여자 수준에 맞는 스포츠 활동
- 준비운동과 정리운동
- 스포츠 시설 및 기구 안전 확보
- 적합한 복장

□ 스포츠 활동 안전 자가진단

내 용	시행여부
1. 나는 스포츠 활동 전 충분한 준비운동을 한다.	
2. 나는 운동 전에 주변 시설물의 결함 및 안전 여부를 확인한다.	
3. 나는 내 운동 수준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운동을 한다.	
4. 나는 수분 섭취를 위해 충분한 양의 물을 준비한다.	
5. 나는 정해진 휴식 시간에 수분 섭취를 한다.	
6. 나는 해당 스포츠에 맞는 복장과 안전 기구(헬멧, 마우스가드, 보호대 등)를 착용한다.	
7. 나는 통증 및 부상에 대해 지도자에게 알린다.	
8. 나는 운동 전 날씨, 재난 징후 등 환경요인을 살핀다.	
9. 나는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 처치법을 알고 있다.	
10. 나는 스포츠 활동 후 충분한 정리운동을 한다.	

〈진단결과〉 현재 나의 상태는?

- * 5개 미만 : 스포츠 활동 중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전 기본교육부터 차근차근 준비합니다.
- * 6~8개 : 안전하게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위험 상황을 경계하세요.
- * 9개 이상 : 축하합니다. 스포츠 안전에 힘쓰고 있습니다.

□ 스포츠 활동 시 주요 체크 사항

- 훈련 및 경기 전 본인이 건강과 컨디션이 정상인지 확인
- 자신의 운동능력 이상의 무리한 훈련과 경기 진행은 금물 : 절제심 유지
- 활동 중 힘들거나 이상이 감지되면 즉시 알리고 휴식
- 장비 착용이 올바르게 되었는지, 신체 사이즈에 맞는 장비인지 확인 필수

□ 스포츠 활동 안전 체크리스트

○ 스포츠 활동 참여자용 (※ 상황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 가능)

점검사항		○/×
안전사항 기본이해	1. 나는 안전사고와 부상의 유형에 대해서 사전에 교육을 받았다.	
	2. 나는 운동 상해가 발생했을 때 그 대처법을 교육받았다.	
신체상태	1. 나는 충분한 물을 마셨다.	
	2. 나의 몸 컨디션은 운동을 하기에 적절한 상태이다.	
	3. 나는 과거 심혈계 질환이나 특이한 병을 앓은 경력이 없다.	
장비점검	1. 운동 종목에 맞는 장비(운동복, 운동화, 보호대 등)를 착용하였다.	
	2. 상대방을 다치게 할 수 있는 물체를 소지하고 있지 않다.	
	3. 응급상황에 대비한 의약품은 구비되어 있다.	
외부환경	1. 주변에 운동에 방해가 될 만한 장애물이 없는 상태이다.	
	2. 운동장(체육관) 표면 상태는 이상이 없는 상태이다.	
	3. 운동 시설물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4. 운동장(체육관)에 부상 위험 물질이 없는 깨끗한 상태이다.	
	5. 기상 상태가 스포츠 활동에 적합한 상태이다.	
행동수칙	1. 나는 운동 전 준비운동을 하여 몸을 충분히 풀어주었다.	
	2. 나는 운동 중 적절히 휴식을 취하였다.	
	3. 나는 동료 중에서 이상 징후를 보이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4. 나는 몸에서 이상이 느껴지면 운동을 중단하고 지도자에게 보고하였다.	
	5. 나는 운동 후 정리운동을 하였다.	
유사시 대처요령	1. 나는 유사시 즉각 부를 수 있도록 지도자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	
	2. 나는 운동 상해별 초기 대처요령을 알고 있다.	
	3. 나는 사고 발생 시 신고요령을 알고 있다.	

○ 스포츠 활동 지도자용 (※ 상황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 가능)

점검사항		○/×
안전사항 기본이해	1. 나는 학생들에게 부상 및 안전사고의 유형에 대해 사전에 안전 교육을 실시하였다.	
	2. 나는 참여자들에게 운동 상해가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었다.	
신체상태	1. 나는 운동에 앞서 학생들의 영양 상태를 확인하였다.	
	2. 나는 학생들의 몸 컨디션이 운동을 하기에 적절한지 확인하였다.	
	3. 나는 학생들에게 과거 특이한 병력이 있었는지 확인하였다.	
장비점검	1. 학생들은 운동 종목에 맞는 장비(운동복, 운동화, 보호대 등)를 착용하였는가?	
	2. 학생들이 상대방을 다치게 할 수 있는 물체를 소지 유무를 확인하였는가?	
	3. 응급상황에 대비한 의약품은 구비되었는가?	
외부환경	1. 주변에 운동에 방해가 될 만한 장애물이 없는 상태인가?	
	2. 운동장(체육관) 표면 상태는 이상이 없는 상태인가?	
	3. 운동 시설물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4. 운동장(체육관)에 부상 위험 물질이 없는 깨끗한 상태인가?	
	5. 기상 상태가 스포츠 활동에 적합한 상태인가?	
행동수칙	1. 운동 전 학생들에게 충분한 준비운동을 실시하였는가?	
	2. 운동 중 적절히 휴식을 지도하였는가?	
	3. 학생 중에서 이상 징후를 보이는 사람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였는가?	
	4. 운동을 마무리하면서 정리운동을 지도하였는가?	
유사시 대처요령	1. 스포츠 활동 시 임장 지도를 하고 있는가?	
	2. 유사시 행동 요령에 대해 학생들에게 지도하였는가?	
	3. 운동 상해별 초기 대처요령을 알고 있는가?	
	4. 유사시 신고요령 및 보고체계를 알고 있는가?	

□ 스포츠 종목 유형별 위험성

○ 실외스포츠

구기	축구, 럭비, 족구, 풋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도한 경쟁의식 및 승부욕 • 신체 접촉이 많은 스포츠 → 경기규칙에 어긋나거나 무리한 행동 금물
장비	야구, 골프, 스키, 테니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비에 의한 사고가 자주 발생 → 장비사용 방법 필히 숙지
야외 레크리에이션	등산, 걷기, 승마, 자전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날씨와 재난에 의한 사고가 많이 발생 → 교통사고, 추락, 낙뢰, 급류, 폭풍우, 한파, 폭설 등에 주의

○ 실내스포츠

구기스포츠	농구, 배구, 탁구, 핸드볼, 배드민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 접촉이 많은 스포츠 → 경기규칙에 어긋나거나 무리한 행동 금물 → 경쟁 및 승부 욕구 자제
투기스포츠	태권도, 합기도, 유도, 검도, 씨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방의 신체를 공격하기 때문에 어떤 운동보다 큰 부상의 위험성 → 비신사적인 행동 금물
맨몸스포츠	요가, 무용, 댄스, 에어로빅, 보디빌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의 운동능력과 건강 상태에 따라 운동 → 무리한 동작이나 움직임을 할 때에는 지도자의 지시와 본인의 운동능력 고려
빙상스포츠	스케이트, 아이스하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 다수 발생 → 스케이트 날은 심각한 상해 가능성

○ 수상스포츠

수상스포츠	수상스키, 요트, 웨이크보드, 수영, 윈드서핑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면 위를 질주하는 기구 이용 •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편 → 안전 장비 착용 → 안전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노력
--------------	-----------------------------------	--

□ 자주 발생하는 부상 응급처치

○ 골절 및 염좌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포츠 활동 참여자의 근력을 넘어서는 힘이 신체에 가해질 때 																			
증상	염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염좌 부위가 붓고 빨개지며 통증 염좌 부위를 누르면 아프고(압통), 피부 안쪽 출혈(멍) 경직되어 운동성 감소 																		
	단순 골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순 골절로 부러진 곳은 기형이 되고, 골절 부위 아래쪽 신체 사용 불가 뼈가 완전히 부러지지 않았을 때는 제한적으로 움직임 																		
	복합 골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러진 뼈의 끝이 피부를 뚫고 나와 창상이 겹치고 심한 출혈 동반 가능성 골절 부위에 상처가 있으면 복합 골절로 판단 																		
대처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골절 및 염좌 시 다친 곳을 건드리거나(2차 손상) 환자 이동 금물 골절 환자는 부러진 뼈가 신경, 혈관, 근육을 손상하거나 복합골절이 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망 운반 전 환자의 뼈가 부러진 부위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 [골절/염좌 응급처치 'PRICES' 원칙]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 width: 15%;">P Protection</td> <td style="background-color: #e0e0e0; width: 15%;">보호</td> <td>환자의식 확인 후 안전한 환경인지 주위를 살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R Rest</td> <td style="background-color: #e0e0e0;">안정</td> <td>상처 부위는 되도록 움직이지 않음(필요 시 고정)</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I Ice</td> <td style="background-color: #e0e0e0;">얼음 찜질</td> <td>다친 후 약 48시간까지는 상처부위 냉찜질 → 부종 및 통증 방지</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C Compression</td> <td style="background-color: #e0e0e0;">압박</td> <td>상처 부위를 압박하여 붓는 것을 방지(단, 너무 강하게 혹은 오랫동안 압박하면 상처 부위가 손상되고 혈액순환을 방해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E Elevation</td> <td style="background-color: #e0e0e0;">환부 높임</td> <td>상처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 과잉 출혈 및 부기 감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S Splint</td> <td style="background-color: #e0e0e0;">부목</td> <td>상처 부위가 움직이지 않도록 부목으로 고정</td> </tr> </table>		P Protection	보호	환자의식 확인 후 안전한 환경인지 주위를 살핌	R Rest	안정	상처 부위는 되도록 움직이지 않음(필요 시 고정)	I Ice	얼음 찜질	다친 후 약 48시간까지는 상처부위 냉찜질 → 부종 및 통증 방지	C Compression	압박	상처 부위를 압박하여 붓는 것을 방지(단, 너무 강하게 혹은 오랫동안 압박하면 상처 부위가 손상되고 혈액순환을 방해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	E Elevation	환부 높임	상처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 과잉 출혈 및 부기 감소	S Splint	부목	상처 부위가 움직이지 않도록 부목으로 고정
P Protection	보호	환자의식 확인 후 안전한 환경인지 주위를 살핌																		
R Rest	안정	상처 부위는 되도록 움직이지 않음(필요 시 고정)																		
I Ice	얼음 찜질	다친 후 약 48시간까지는 상처부위 냉찜질 → 부종 및 통증 방지																		
C Compression	압박	상처 부위를 압박하여 붓는 것을 방지(단, 너무 강하게 혹은 오랫동안 압박하면 상처 부위가 손상되고 혈액순환을 방해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																		
E Elevation	환부 높임	상처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 과잉 출혈 및 부기 감소																		
S Splint	부목	상처 부위가 움직이지 않도록 부목으로 고정																		

○ 뇌진탕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가 스포츠 활동을 하면서 미끄러지거나 상대방에 의해서 넘어지면서 머리에 충격
증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불편함 • 어지러움, 구토, 현기증 두통 • 일시적인 기억상실과 혼동
대처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의 의식 여부 확인 • 의식이 없다면 기도를 열고 상태 주시 • 부딪힌 부분이 부었을 경우, 냉찜질 해주고 상체만 일으켜 세움 • 안정을 취한 뒤에도 기력저하, 기억상실 등의 증세를 보이면 병원 정밀검사

○ 회전근개 파열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깨 관절을 이루는 뼈 사이를 통과하는 4개의 근육이 급격한 힘에 의해 파열
증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팔을 들어 올리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 때 통증 • 누운 자세와 야간에 통증 심화
대처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깨 움직임을 최소화시켜 무리가 가지 않게 행동 • 초기에는 냉찜질을 통해 환부에 염증 전이 방지가 중요 • 해당 전문의와 상의하여 수술 조치 등 결정

○ 허리·목 디스크 탈출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리와 목에 지속적인 충격이나 무리한 힘 • 척추 또는 경추 사이의 추간판이 신경 압박
대처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리한 자세 연습을 피하고, 훈련과 휴식을 반복 • 허리와 각 관절의 긴장을 충분히 풀어주는 것이 중요 • 저림 증상이 모두 디스크는 아니므로, 스포츠활동 후 저림 증상이나 통증 시 전문의 진단 요망

○ 근육 경련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수, 저칼륨, 저나트륨, 불충분한 탄수화물 섭취 등
증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육 경련은 갑작스러운 통증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이며, 주로 햄스트링 근육 부위에 발생함
대처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육 경련이 발생한 근육은 스트레칭 또는 마사지로 제거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운동 전에 충분한 준비운동과 본인의 체력을 고려하여 운동

○ 관절 손상(탈구)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리한 동작이나 관절에 과도한 외부의 힘이 가해져 발생
증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한 급성 통증, 부종 발생, 손상부위 비정상적인 흔들림, 운동기능 상실 및 근육 경련 등
대처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목을 사용하여 부상부위 고정, 부드러운 천으로 부상부위 보호 후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임의로 부상자를 옮길 경우 2차 손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

□ 온도 변화와 신체 손상

○ 저체온증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체온이 35℃ 이하로 떨어진 경우
증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온이 35℃ 이하로 내려가면 온몸 경련(증상이 진행됨에 따라 떨림은 없어질 수도 있음) • 불규칙하고 느린 맥박, 온몸이 저림, 멍한 눈으로 허공 응시, 무감각, 의식 혼미 • 심한 경우 : 무의식, 무호흡, 느린 맥박(부정맥), 신체 경직
대처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속하게 환자의 상태 파악(호흡정지, 심정지 등) 119 신고 • 젖은 의복을 벗기고 몸을 건조하게 유지 • 따뜻한 장소로 이동하여 뜨거운 찜질로 보온 • 뜨거운 찜질 시 화상 주의(환자와 찜질용 열원 사이에 담요, 수건, 의복 삽입) • 의식이 있다면 알코올, 카페인 없는 따뜻한 음료 섭취 • 더운 물에 들어가는 등 체온을 갑자기 높이면 부정맥 발생 주의 • 기도, 호흡, 맥박을 잘 관찰하고 필요하면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구조대원 기다림

○ 열사병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온에 의해 체온 조절 중추 기능이 마비되어 발생 • 자체적 체온조절이 거의 불가능 → 체온 급상승
증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뇌, 심장, 신장 등 주요 생명 유지 장기의 기능 파괴 • 심한 경우 체온이 40℃까지 상승, 건조하고 붉은색 피부 • 점차 의식이 나빠지고 맥박이 약해져 얇고 빠르게 호흡
대처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를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 시원한 물 섭취 → 체온조절 기능 회복 • 의복은 느슨하게 해주고 땀으로 젖은 옷은 탈의 • 큰 수건이나 침대 시트를 시원한 물에 적셔서 덮어 준 후, 선풍기 등을 이용하여 땀을 증발시켜 체온 감소 촉진 • 의식이 있는 환자는 시원 물을 천천히 섭취. 물은 다른 음료에 비해 구토 발생이 적고 위장 내 흡수도 빠르기 때문에 메스꺼움이 있는 환자들에게 권장 • 물을 너무 급히 마시는 것은 금물(약 15분마다 반잔 정도 섭취) • 환자가 편안한 자세로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상태 변화 관찰 • 고온 손상 환자는 회복 후에도 스포츠 활동 중단

□ 스포츠 안전교육 동영상 (학교 교육 시 참고)

	스포츠 안전교육 동영상	내용	위치
1	실외스포츠를 위한 안전교육영상	 <p>구기 스포츠 축구, 럭비, 축구, 게이트볼</p> <p>장비 스포츠 야구, 테니스, 골프, 스키, 플라잉디스크</p> <p>야외 레크레이션 산악, 승마, 자전거, 육상, 걷기</p>	
2	실내스포츠를 위한 안전교육영상		
3	항공스포츠를 위한 안전교육영상		
4	수중스포츠를 위한 안전교육영상		
5	수상스포츠를 위한 안전교육영상	 <p>구기 스포츠 농구, 배구, 탁구, 핸드볼, 볼링, 스피시, 인라인하키, 배드민턴</p> <p>투기 스포츠 태권도, 합기도, 검도, 택견, 씨름, 이종격투기</p> <p>매물 스포츠 요가, 에어로빅체조, 무용,댄스스포츠, 보디빌딩, 국악기공, 빌러댄스, 씨름</p>	
6	축구 종목을 위한 안전교육영상	 <p>스케이팅 스포츠 빙상스포츠(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피겨스케이팅), 아이스하키</p>	
7	야구 종목을 위한 안전교육영상		
8	배드민턴 종목을 위한 안전교육영상	 <p>수상스포츠</p> <p>수상스키, 웨이크보드, 요트, 윈드서핑</p>	
9	격투기 종목을 위한 안전교육영상		
10	기본 안전지침 교육을 위한 안전교육영상		
11	필수 안전지침 교육을 위한 안전교육영상		
12	응급대처를 위한 안전교육영상	 <p>스포츠안전사고 응급대처요령</p>	
13	지적장애인을 위한 교육		

대한체육회
홈페이지 /
체육포털 /
스포츠안전 /
스포츠
안전교육
영상

[참고 4]

학교운동부 인권교육 활용자료

항목	활용자료
학습권	<p>1. 학교체육 업무매뉴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선수 대회 및 훈련 참가 허용 일수 안내 - 최저학력제 - e-school 운영 안내 <p>2. 영상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동선수에게 공부는 은퇴 준비가 아닙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rxnxAHudt70) - 공부하는 학생선수, 진로 전환 학생선수 사례 (https://www.youtube.com/watch?v=HQbKBvma-IA)
운동부 진로	<p>1. 대한체육회 진로지원센터 (☎. 02-2144-8165, 02-419-1114)</p> <p>2. 영상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선수 진로교육 (대학진학) (https://www.youtube.com/watch?v=l66kdVwXBcg) - 대한체육회_진로지원센터 (https://www.youtube.com/channel/UC38SAjv70H8jE0zKHEYZ9gg/videos) - 대한체육회 선수진로교육 : 나의 미래, 지금부터 준비하기 (중학생편) (https://www.youtube.com/watch?v=RxHdfKrWk2U) - 대한체육회 선수진로교육 : 목표 설정의 중요성 (고등학생 1편) (https://www.youtube.com/watch?v=v4T7YD6SUEE) - 대한체육회 선수진로교육 : 학부모 진로인식 개선, 선수의 미래를 바꾸다 (https://www.youtube.com/watch?v=u-Llm1D_Cow)
도핑방지교육	<p>1. 한국도핑방지위원회 교육신청 (☎. 02-2045-9800)</p> <p>2. 온라인 도핑방지교육센터 (https://edu.kada-ad.or.k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교육에 들어가 교육별 과정 선택 후 시청 - 초등부 선수 대상 도핑방지교육, - 중등부 선수 대상 도핑방지교육 - 고등부 선수 대상 도핑방지교육, - 지도자 대상 도핑방지교육 - 선수 부모 대상 도핑방지교육
인권교육 및 성(희롱), (성)폭력 근절 예방 교육	<p>1. 학교체육진흥회 홈페이지(cspep.or.kr)- 학교체육소식- 자료실 25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선수 스포츠인권 교육영상(초,중,고) - 학생선수 스포츠인권 교육자료&원고 - 학생선수 스포츠 인권 활동지 <p>2. 영상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 인권, 여기서 시작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52Jgi2l34nc) - 끝나지 않는 스포츠 폭력의 굴레, 영화 4등 (https://www.youtube.com/watch?v=navcJAiezlc) - (초등) 스포츠 인권 1편 (https://www.youtube.com/watch?v=1VQBdXaensM) - (초등) 스포츠 인권 2편 (https://www.youtube.com/watch?v=OiwB24QYjDQ) - 대한체육회스포츠인권센터 (https://www.youtube.com/channel/UCvQnuwpeuuCOYaUBLuHmQWQ/videos)

[참고 5]

관련 법규

학교체육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관련 법령

- 학교체육 진흥법 제12조(학교운동부지도자), 제16조(학교체육진흥위원회 등)
- 초·중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58조(국·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제60조의2(소위원회)

기관	위원회	역할	관련 법규
교육부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학교체육진흥법 제16조
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학교체육 진흥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심의	학교체육진흥법 제16조, 시도 조례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리위원회	학교운동부지도자 배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심의	학교체육진흥법 제12조
교육지원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학교체육 진흥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심의	학교체육진흥법 제16조, 시도 조례
단위학교	학교체육소위원회	학교체육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심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의2, 시도 조례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운동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초·중등교육법 제32조

□ 각종 위원회 통폐합: 가능한 법적 위원회를 중심으로 여러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조직·운영

학교체육 관련 법률 및 조례, 지침 등

□ 학교체육 업무매뉴얼 내 법률 및 조례 자료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1) 학교체육 진흥법, (2)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3)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4) 경기도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포상에 관한 조례,
 (6) 경기도교육청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7) 경기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8)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9)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
 (10) 경기도교육청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 관리 규칙, (11) 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12) 경기도교육청 학생스포츠타활동 지원 조례, (13) 경기도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지원 조례,
 (14) 경기도교육청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 2024. 12. 20.] [법률 제20569호, 2024. 12. 20., 일부개정]

교육부(인성체육예술교육과) 044-203-6990

문화체육관광부(체육진흥과) 044-203-3134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생의 체육활동 강화 및 학교운동부 육성 등 학교체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체육”이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교운동부”란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말한다.
4. “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5. “학교스포츠클럽”이란 체육활동에 취미를 가진 같은 학교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학교가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6. “학교운동부지도자”란 학교에 소속되어 학교운동부를 지도·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스포츠클럽지도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에서 정규 체육수업 보조 및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체육전문강사를 말한다.
8. “학교체육진흥원”이란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연구, 정책개발, 연수 등을 실시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학교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 시책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개정 2013. 3. 23.>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1항의 기본 시책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협조)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3. 23.>

제6조(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체육교육과정 운영 충실 및 체육수업의 질 제고
2. 제8조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 및 제9조에 따라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에 대한 대책
3. 제10조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제11조에 따른 학교운동부 운영
4.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5.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6. 유아 및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7. 학교체육행사의 정기적 개최

8. 학교 간 경기대회 등 체육 교류활동 활성화

9. 교원의 체육 관련 직무연수 강화 및 장려

10. 그 밖에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학교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조치가 적절하게 취하여지고 있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20.>

제7조(학교 체육시설 설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운동장, 체육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체육활동 진흥에 필요한 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학교 체육시설 관련 주요 지점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20., 2023. 3. 14.>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신설 2020. 10. 20., 2023. 3. 14.>

⑤ 제1항에 따른 체육활동 기반시설 확충과 제2항에 따른 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의 확보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0. 10. 20.>

제8조(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계획의 수립 및 실시) ① 국가는 학생의 건강체력 상태를 측정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의 장은 실시계획에 따라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② 제1항에 따라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실시한 학교의 장은 평가결과를 교육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해당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나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학교보건법」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 중 신체능력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의 시기, 방법, 평가항목, 평가결과 등록 및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위탁받을 수 있는 대학이나 전문기관·단체 등의 자격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9조(건강체력교실 등 운영) ① 학교의 장은 제8조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에서 저체력 또는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체력증진을 위하여 정규 또는 비정규 프로그램(이하 “건강체력교실”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건강체력교실 등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10조(학교스포츠클럽 운영) ①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경우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에게는 학교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지도수당을 지급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스포츠클럽 활동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상급학교 진학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을 해당 학교의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3.>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이하 “최저학력”이라 한다)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생선수가 제2항에 따른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참가를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2024. 12. 20.>

② 학교의 장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에게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1. 3. 23.>

③ 최저학력의 기준 및 실시 시기에 필요한 사항과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1. 3. 23.>

④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위하여 학기 중의 상시 합숙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대회 참가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합숙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학생선수의 안전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⑤ 학교의 장은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선수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1. 3. 23.>

⑥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을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치된 학교회계에 편입시켜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운동부 운영과 관련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제12조(학교운동부지도자) ①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훈련과 지도를 위하여 학교운동부에 지도자(이하 “학교운동부지도자”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국가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연수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수교육을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급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임용에 필요한 경비를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치된 학교회계에 반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박탈하거나 폭력, 금품·향응 수수(授受)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⑤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지도 등을 위하여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⑥ 교육감은 제4항의 사유 이외에 학교의 장이 부당하게 학교운동부지도자를 계약 해지하였을 경우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 계약 해지를 철회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 임용, 급여, 신분,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도핑 방지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핑(「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0호의 도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도핑 방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핑 방지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4. 18.]

제12조의3(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때에는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0. 20.]

제13조(스포츠강사의 배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육수업 흥미 제고 및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2(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① 교육부장관은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수립하여 교육감 및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학교의 장은 기본지침에 따라 매년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체육 교재, 기자재, 용품 등의 확보기준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평가 방법 및 항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2. 3.]

제14조(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법」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에 따라 일반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유치원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단체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의 체육계열학과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경비의 지원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학교체육진흥위원회 등) ①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를, 시·도 및 시·도교육청과 시·군·구 및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3. 3. 23.>

②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및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및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 <신설 2016. 2. 3.>

④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6. 2. 3.>

제17조(학교체육진흥원) ①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1.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
2.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학생 체력통계의 체계적 수집 및 분석
4. 제8조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의 종목·평가기준 및 시스템 개발·운영
5.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6. 그 밖에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체육진흥원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지역사회와 협력) 학교의 장은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의 관계 기관 또는 관계 단체의 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부칙 <제20569호, 2024. 12. 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3. 9. 15.] [대통령령 제33723호, 2023. 9. 12., 타법개정]

교육부(인성체육예술교육과) 044-203-6990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체육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체육 진흥 기본 시책) ① 「학교체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4. 20.>

1.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학교체육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소요 재원에 관한 사항
4. 학교체육 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4의2. 학생선수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 시책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제2조의2(학교체육 진흥 조치에 대한 감독)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학교체육 진흥 조치에 대한 감독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독은 서면점검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4. 20.]

제2조의3(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지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9. 12.>

1. 실내외 훈련장(학교운동부지도자실 및 회의실 등을 포함한다)
2. 학생선수기숙사 및 훈련시설의 출입문·복도·주차장 및 주요 교차로
3. 학생선수기숙사 및 훈련시설의 식당 및 강당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본조신설 2021. 4. 20.]

[제목개정 2023. 9. 12.]

제3조(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 등) ① 학교의 장은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8.>

②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급여는 학교의 장이 지도경력과 실적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학교운동부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 4. 20.>

1. 학생선수에 대한 훈련계획 작성, 지도 및 관리
2. 학생선수의 각종 대회 참가 지원 및 인솔
- 2의2. 훈련 및 각종 대회 참가 시 학생선수의 안전관리

3. 경기력 분석 및 훈련일지 작성

4. 훈련장의 안전관리

④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재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재임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1. 4. 20.>

1. 제3항 각 호의 직무수행 실적

2. 복무 태도

3. 학교운동부 운영 성과

4. 학생선수의 학습권 및 인권 침해 여부

제3조의2(도핑 방지 교육)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도핑 방지 교육(이하 “도핑방지교육”이라 한다)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실시한다.

② 도핑방지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도핑방지교육은 도핑의 개념, 금지 약물 관련 정보 및 도핑 관련 규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도핑방지교육은 견학·체험 활동 또는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0. 17.]

제3조의3(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등)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의 유형

2.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 예방에 관한 사항

3.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 발생 시 대응 및 신고 방법

4.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와 관련된 주요 제도 및 사례

5.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은 학기별 1회, 1회당 1시간 이상 실시한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를 할 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본조신설 2021. 4. 20.]

제4조(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 등) ① 초등학교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에서 스포츠강사를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8.>

② 초등학교의 장은 스포츠강사를 1년 단위로 계약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③ 초등학교의 장은 스포츠강사를 재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강사로서의 자질

2. 복무 태도

3. 학생의 만족도

제5조(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운영 수탁단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유치원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운영을 학교체육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단체 중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법 제16조에 따른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또는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기관 또는 단체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체육계열학과를 운영하는 대학

제6조(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6조에 따른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동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3. 3. 23.>

③ 부위원장은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학교체육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 3. 23.>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 3. 23.>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교육 및 체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의 학교체육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4. 그 밖에 학교체육에 관한 학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장과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중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학교체육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 3. 23.>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중앙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인 부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인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 3. 23.>

제10조(중앙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중앙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④ 중앙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권한의 위임) 교육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학교체육 진흥 조치에 대한 감독
2.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3.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

[본조신설 2021. 4. 20.]

부칙 〈제33723호, 2023. 9. 1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의 제목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⑩ 생략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0. 18.] [교육부령 제340호, 2024. 10. 18., 일부개정]

교육부(인성체육예술교육과) 044-203-699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체육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 체육시설의 종류) ① 「학교체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 7. 6.>

② 법 제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학생의 체육활동 진흥에 필요한 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 7. 6.>

제3조(학생건강체력평가의 시기 등) 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이하 “체력평가”라 한다)의 시기, 방법, 평가항목 및 평가결과 등록 등에 관하여는 「학교건강검사규칙」 제7조, 제8조 및 제9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신체능력검사”는 “체력평가”로 본다.

제4조(체력평가의 위탁) 법 제8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학교의 장은 체력평가를 다음 각 호의 학교,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중 체육계열학과를 운영하는 학교
2. 법 제16조에 따른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또는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기관 또는 단체

제5조(건강체력교실의 설치 및 운영) 학교의 장은 법 제9조에 따라 건강체력교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강체력교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건강체력교실의 운영 시기 및 담당자
2. 건강체력교실에서 제공할 프로그램 내용
3. 건강체력교실에 참여하는 학생의 지도 및 관리 방안

제6조(최저학력의 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최저학력(이하 “최저학력”이라 한다)은 매 학기 말을 기준으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5개 교과(고등학교 학생선수의 경우에는 3개 교과)의 교과별 성적이 기준성적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22. 7. 6.>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성적은 학생선수가 속한 학교의 해당 학년 학생 전체의 제1항에 따른 교과별 평균 성적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성적으로 한다.

1. 초등학교: 100분의 50
2. 중학교: 100분의 40
3. 고등학교: 100분의 30

③ 학교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선수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최저학력의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4. 10. 18.>

④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은 학기당 60시간 이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6., 2024. 10. 18.>

⑤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24. 10. 18.>

제6조의2(참가 제한 경기대회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란 학생선수가 학생선수의 자격으로 참가하는 모든 형태의 경기대회를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학교의 장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1. 제1학기에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해당 연도 9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
2. 제2학기에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본조신설 2022. 7. 6.]

제7조(학생선수를 위한 기숙사의 운영) ① 학교의 장이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선수를 위하여 운영하는 기숙사(이하 “학생선수기숙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 7. 6.>

1. 학습시설(책상·의자·컴퓨터), 휴게실, 욕실, 침실, 화장실, 세탁실, 식당, 주방 등을 갖춘 것
2. 학생선수기숙사 관리를 전담하는 교직원을 둘 것
3. 여학생인 학생선수가 학생선수기숙사에 입사(入舍)하는 경우에는 여학생의 생활지도를 전담하는 여성 교직원을 둘 것

②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기숙사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선수기숙사 생활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 7. 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학생선수기숙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8조(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학교별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기본지침 준수 여부 및 기본지침과 계획 내용의 연관성
2. 학교 체육활동의 계획 준수 여부
3. 계획 시행에 따른 여학생 체육활동 진흥 현황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7. 2. 3.]

부칙 <제340호, 2024. 10.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저학력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학생선수가 경기대회에 참가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경기도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1. 4.] [경기도조례 제6852호, 2021. 1. 4., 타법개정]

경기도교육청(체육건강교육과), 031-249-027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체육진흥법」 제16조에 따른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소속하에 설립·운영되는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학생·청소년의 체력 증진을 위한 각종 제도·규정 개선에 관한 사항
3. 학교체육시설 확충 및 선진화에 관한 사항
4. 학교스포츠클럽 추진에 관한 사항
5. 학교운동부 육성 및 전국(소년)체육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학교체육 육성 관련 관계기관 등과의 연계 협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체육건강과장과 체육교육담당장학관으로 한다. <개정 2015.2.27 조4853>

③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학교체육·생활체육·전문체육·장애인체육 등 체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경기도 체육관계 공무원<개정 2021.01.04.>

④ 위원장은 민간인전문가 위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의 체육건강과장과 경기도체육회 운영부장으로 한다.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임기에도 불구하고, 도의원인 위원은 의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신설 2021.01.04.>

⑦ 위원회 간사는 경기도교육청 체육교육 담당 장학사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경기도교육청 체육건강과장, 경기도체육회 운영부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2. 교육감의 요청이 있는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간사는 회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안건 심의·의결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위원 본인 또는 친족이 관련된 안건
2. 위원이 속한 기관·법인·단체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안건
3. 위원이 용역수행 및 그 밖의 방법으로 관련된 안건

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인은 위원을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교육지원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① 교육지원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교육장 소속으로 이 조례를 준용하여 설치·운영한다.

② 지역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2015.2.27. 조4853]

제9조(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경기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은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산하 대회지원회를,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산하 학교체육소위원회를 각각 구성·운영한다. <개정 2015.2.27 조4853>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공청회 및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교육감은 위원회의 위촉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6852호,2021.0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포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10. 11.] [경기도조례 제7805호, 2023. 10. 11., 일부개정]

경기도교육청(체육건강교육과), 031-249-027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체육 진흥법」 제3조·제15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경기도 학교체육을 진흥하고, 경기도교육감 및 교육장이 시행하는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3.1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5.10. 조4364〉

1. “우수선수”란 국내외 체육대회에서 입상하거나, 신기록을 수립하여 경기도 학생체육의 위상과 국위를 선양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5.10. 조4364〉
2. “우수지도자”란 교직원·감독 및 코치로서 우수선수를 지도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5.10. 조4364〉
3. “체육대회”란 별표에서 지정한 대회를 말한다. 〈개정 2012.5.10. 조4364〉
4. “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신설 2018.5.4.〉
5. “공공스포츠클럽”이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비영리법인에서 운영하는 스포츠 클럽을 말한다.〈신설 2018.5.4.〉

제3조(학교체육 진흥)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학교운동부 지도자에게 학교 운동부 관련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학교체육관리 및 선수 관리체계의 과학화를 도모한다.〈신설 2017.3.13.〉

제3조의2(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학생선수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생선수의 학업성취, 학교운동부 운영 상태 등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고, 실태조사 후 그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8.5.4.〉

제4조(지원) 교육감은 제3조에 따른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5.10. 조4364, 2017.3.13.〉〈개정 2018.5.4.〉

1. 학생선수 및 학생운동부지도자 지원〈신설 2018.5.4.〉
2. 학교 밖 체육시설 사용료 등 학교운동부 훈련비 지원〈신설 2018.5.4.〉
3.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운영비 지원〈신설 2018.5.4.〉
4. 그 밖에 학교운동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신설 2018.5.4.〉

제5조(포상의 적용범위) 체육대회 포상 수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2.5.10. 조4364, 2017.3.13.〉

제6조(포상의 대상 및 종류) ②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상장·공로패 및 감사장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신설 2017.3.13.〉

- ③ 포상권자는 체육대회의 종류에 따라 교육감 및 교육장으로 한다.〈개정 2017.3.13.〉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① 표창장은 우수지도자 및 우수선수가 소속된 학교에 수여할 수 있다.

② 상장은 경기도 학생체육대회에서 입상 또는 신기록을 수립한 선수에게 수여할 수 있다. 다만, 경기종목의 성격에 따라 수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③ 공로패는 전국 학생체육대회 및 국제경기대회에서 입상하여 경기도 학생체육의 위상과 국위를 선양한 선수의 학교·해당 가맹단체 및 지도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④ 감사장은 학교 체육발전 등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5.10. 조4364]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포상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도자 및 학생에게 부상(포상금·연구비·우승기·우승컵·상패·훈련지원금·장학금·기념품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9조(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 등) ② 교육감 및 교육장은 비인기 종목 및 기초 종목의 활성화를 위하여 육성학교 및 우수선수에게 육성지원금 및 훈련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감 및 교육장은 비인기 종목 및 기초 종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종목의 학교운동부지도자에게 육성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10.11>

④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팀)에게 대회 전·후 및 기간 중에 예산의 범위에서 훈련지원금 및 격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5.10. 조4364><개정 2023.10.11>

⑤ 교육감 및 교육장은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과 참가선수 소속 기관장 등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대회 전·후 및 기간 중에 예산의 범위에서 격려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5.10. 조4364><개정 2023.10.11>

제10조(이중포상의 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포상권자가 다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포상 대상자의 추천) ① 교육감 포상은 고등학교·특수학교 및 이들에 준하는 학교의 장이 추천한다. 다만,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 및 이들에 준하는 학교는 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감이 추천한다.

② 교육장 포상은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 및 이들에 준하는 학교의 장이 추천한다.

③ 포상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자·학교·민간인·단체는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추천하며, 선수는 별지 서식에 따라 추천한다. <개정 2012.5.10. 조4364>

제12조(공적심사) ① 포상은 공적조서 및 표창 추천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제2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지역교육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교육감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체육전문가 5명, 경기도교육청 국·과장 4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2.27 조4853><개정 2019.4.29.><개정 2023.04.07>

③ 공적심사의 생략 등에 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포상 수여 및 대리자의 수령) ① 포상은 포상권자인 교육감 및 교육장이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교육감 포상은 교육장·소속기관장이, 교육장 포상은 학교장이 수여할 수 있다.

②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을 대신하여 이를 수령할 수 있다.

제14조(포상대장 등) ① 표창장·상장 및 감사장은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의 표창 규격 및 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12.5.10. 조4364>

② 포상권자는 포상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포상대장의 서식 및 관리에 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5.10. 조4364〉

부칙 〈제7805호,2023.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교육청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07. 10. 31.] [경기도교육규칙 제548호, 2007. 10. 31., 제정]

경기도교육청(체육건강교육과), 031-249-027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교육청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 대상 결격사유) 이 규칙에 의한 포상 대상 결격사유는 「경기도교육감 표창조례 시행규칙」제2조를 준용한다.

제3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경기도교육청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제1부교육감 관할하에 제1경기도교육청공적심사위원회(이하 “제1위원회”라 한다)와 제2부교육감 관할하에 제2경기도교육청공적심사위원회(이하 “제2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각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명의 각 부교육감 소속 지명위원과 5명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제1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며 지명위원은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체육보건급식과장, 총무과장으로 하며, 제2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며 지명위원은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총무과장으로 하며, 각 위원회의 체육전문가 5명 위촉위원은 각각 교육감이 따로 임명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결의를 하게 할 수 있다.

⑧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당해 포상 주관 부서의 담당장학관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⑨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공적심사) ① 상장을 수여할 때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하고 교육감 및 교육장이 직접 선정할 수 있다.

② 표창장·공로패 및 감사장 수여에 있어 선발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포상 결격사항 심사만으로 공적심사를 대체할 수 있다.

제5조(포상사실 확인)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상장·공로패 및 감사장 등을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포상수여 사실 확인서를 교부한다.

- 제6조(포상대장 관리)** ① 포상은 반드시 포상대장에 등재한 후 수여하여야 한다.
② 포상대장의 서식은 「경기도교육감 표창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을 준용한다.

부칙 〈제548호,2007.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시행 2021. 3. 16.] [경기도조례 제6918호, 2021. 3. 16., 일부개정]

경기도교육청(체육건강교육과), 031-249-027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학생선수의 학습부진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학습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경기도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선수”란 학교에 재학 중인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3. “학교운동부지도자”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이나 교육장,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채용이나 학생선수의 경기지도, 훈련 등 위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감독하는 사람을 관계 법령에 따라 성범죄 경력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에 필요한 관련 교육 및 연수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생선수 대상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의 연구·개선에 관한 사항
 2. 학생선수에 대한 진로상담 및 직업교육에 관한 사항
 3. 학생선수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5. 폭력·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학생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사항<신설 2021.03.16.>
 6. 그 밖에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1.03.16.>
- ② 시행계획은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학습권 보장)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소한의 정규수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출결상황과 훈련 및 대회 참가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인권보호 등) ① 도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교육감은 폭력·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학생선수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고·상담, 법률 지원, 심리치료 등의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1.03.16.>

⑤ 교육감은 학생선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 선수보호 모니터링을 위하여 학교 및 교육지원청에 학생선수고충처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신설 2021.03.16.>

제7조(합숙훈련 제한) ①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위하여 학기 중의 상시 합숙훈련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선수가 참가하는 국제대회나 전국대회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경기, 원거리 훈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학생선수 학부모의 동의나 승낙을 미리 받아야 한다.

제8조(학교운동부지도자)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 과정에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학교운동부지도자는 학생선수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운동과 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9조(학업정보 및 상담프로그램 제공) 교육감은 학업정보 및 상담프로그램 등이 학생선수에게 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도핑방지 교육) 교육감은 도핑(「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0호의 도핑을 말한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도핑방지 교육을 실시한다.

제10조의2(폭력 예방 교육) 교육감은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21.03.16.>

제11조(유관기관 협력 등) ①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경기도 및 시·군,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체육시설업의 인허가 권한을 가진 경기도지사, 시장·군수 등에게 지도·감독 등의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표창)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게 「경기도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6918호,2021.0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시행 2023. 12. 22.] [경기도조례 제7843호, 2023. 12. 22., 일부개정]

경기도교육청(체육건강교육과), 031-249-027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서 학생 생존수영교육을 하도록 함으로써 수중 위기 시 학생이 스스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킴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중 위기 상황 시 자신의 생명 보호 조치 및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생 생존수영교육 표준교육과정”이란 수영법 습득과 같은 기능 중심의 교육이 아닌 생명을 지키기 위한 호흡법, 안전한 곳으로의 진행방법, 체온유지법 등 수중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생존수영교육 교수-학습지도안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모든 학생이 생존수영교육의 기회를 제공받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2〉

제4조(지원대상) 학생 생존수영교육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기도 소재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
 2. 경기도 소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기도 소재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본조신설 2023.12.22]

제5조(계획수립 등) ① 교육감은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 생존수영교육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학생 생존수영교육 활성화 방안
3. 학생 생존수영교육 표준교육과정 및 안전가이드라인
4. 학생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교원 연수 및 수영장평가에 대한 사항
5.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자원 및 자원조달 방법
6.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 생존수영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3.12.22〉

제6조(안전가이드라인이 포함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침 등) ① 교육감은 학생 생존수영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안전가이드라인이 포함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침을 배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 생존수영교육 표준교육과정
2. 학생 생존수영교육 안전가이드라인
3. 학생 생존수영교육의 교육 지도안
4. 그 밖에 학생 생존수영교육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3.12.22>

제7조(학생 생존수영교육 지도 교원에 대한 연수) ① 교육감은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도 교원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각급 학교의 장은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도 교원을 선정하여, 제1항에 따른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2>

제8조(수영장평가제) ① 교육감은 학생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수영장을 평가하여, 각급 학교의 장에게 제공한다.<개정 2023.12.22>

② 수영장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23.12.22>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수질검사 횟수 및 결과
2. 수상안전요원의 배치 여부

제9조(학생 생존수영교육 자문위원회)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학생 생존수영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
2. 안전가이드라인이 포함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침에 대한 사항
3. 생존수영교육 지도 교원 연수에 대한 사항
4. 학생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할 수영장 평가에 대한 사항
5.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
6. 그 밖에 학생 생존수영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른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자문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를 대신한다.<개정 2023.12.22>

제10조(위탁) ① 교육감은 학교 학생 생존수영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이 제1항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12.22>

제11조(재정지원 등) ① 교육감은 학생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예산확보 및 수영장 시설 확보 등을 위해 경기도지사 및 시장·군수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2>

제12조(표창) 교육감은 학생 생존수영교육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을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3.12.22>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3.12.22>

부칙 <제7843호,2023.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11. 4.] [경기도교육규칙 제903호, 2021. 11. 4., 타법개정]

경기도교육청(체육건강교육과), 031-249-027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고등학교 입학에 관한 체육특기자의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발의 종목) 체육특기자 선발종목은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에 등록된 종목(무용 포함)으로 한다.

제2조의2(지원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특기자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최저학력 기준에 도달한 사람<개정 2021.11.04.>
2. 제1호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 중에서 미 도달 과목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② 체육특기자로 지원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의거 학교장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19.7.1.]

제3조(대회의 범위) 체육특기자로 선발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회에서 입상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 및 시·도교육감이 주최·주관하는 대회로서 시·도 및 전국 규모의 대회
2. 대한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가 주최·주관하는 대회로서 시·도 및 전국 규모의 대회
3. 시·도체육회 또는 이와 공동주최한 그 밖에 단체의 시·도 및 전국 규모의 대회<개정 2021.11.04.>
4. 교육장 또는 시·군 단위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장이 주최·주관하는 시·군 대회
5.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종목의 주말리그대회
6. 무용특기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회
 - 가. 시·도 교육감이 주최한 시·도 단위 이상 대회
 - 나. 무용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교)에서 주최·주관한 시·도 단위 이상 대회
 - 다. 공공기관 또는 그 밖에 권위 있는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
 - 라. 교육장이 주최하는 시·군 대회

제4조(입상범위) ① 제3조에 따른 입상실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개인경기는 3위 이내 입상한 사람
2. 단체경기는 3위 이내 입상한 팀의 선수와 입상하지 못한 팀 중 개인상을 수상한 사람
3. 제3조제5호의 주말리그대회에 5경기 이상 참가한 사람

② 무용의 경우에는 2인무 입상을 제외한 군무입상은 인정하지 않는다.<개정 2021.11.04.>

제5조(추천 등에 의한 체육특기자) 교육감은 제3조와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 등에 따라 체육특기자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21.11.04.>

1. 학교장과 해당 경기단체장이 신체조건, 소질 및 그 밖의 사유로 운동선수로서 잠재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 중 제6조의 체육특기자 선발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된 사람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대회에 대비하여 우수한 체육선수를 육성할 목적으로 유망 신인선수로 인정하여 통보한 사람

제6조(체육특기자 선발위원회) ① 체육특기자를 심의 선발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감 소속으로 체육특기자 선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 부서 소관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체육담당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개정 2025.2.20.>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 장학사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심사대상자가 본인의 자녀이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2. 심사대상자와 이해관계 등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체육특기자의 선발절차와 방법 등을 포함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준용) ① 입학전형권자가 학교장인 고등학교는 이 규칙을 준용하되, 교육감으로부터 선발종목과 인원을 사전에 승인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해당학교는 학교장 소속으로 체육특기자 선발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부칙 <제903호,2021.11.04>(경기도교육청 교육규칙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규칙)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 관리 규칙

[시행 2024. 4. 19.] [경기도교육규칙 제950호, 2024. 4. 19., 일부개정]

경기도교육청(운영지원과), 031-249-035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58조제1항과 제96조에 따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에 대한 정수의 책정·배정 및 최단운행기준연한 등 공용차량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6.1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란 경기도교육청과 그 소속 기관 및 공립학교에서 관리·운영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며,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말한다.〈신설 2020.06.30.〉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신설 2020.06.30.〉〈개정 2021.11.04.〉
3.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0.06.30.〉
4.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20.06.30.〉
5.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20.06.30.〉
6. “업무용 차량”이란 특정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해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20.06.30.〉
7.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물품의 운반 및 그 밖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20.06.30.〉
8.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20.06.30.〉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경기도교육청과 그 소속 기관 및 공립학교(이하 "각급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리·운영하는 공용차량에 적용한다.〈개정 2020.06.30.〉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 배정대상, 기준정수 및 차량 관리·운영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2장 차량의 정수관리

- 제5조(차량의 정수배정)** ① 각급 교육기관의 차량정수는 해당 기관의 기능, 업무량, 조직규모, 관할 행정구역, 업무처리의 기동성 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기준정수 범위에서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배정한다.
- ② 각급 교육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인하여 해당 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기관 또는 다른 보조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 ③ 공립학교에서 학부모회·동창회 등으로부터 기증받아 운행 중인 차량은 차량정수를 배정받아 운행하고, 학교물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각급 교육기관은 에너지절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배정된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조정하여 운행할 수 있다.

제6조(정수의 배정절차) ①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차량을 정수 배정받고자 할 경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차량 정수를 이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차량 정수배정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할 경우에는 차량구입 유지비 등 필요한 예산과 운전원 확보 방안 및 필요성을 해당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0.06.30.〉

③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결과 필요한 예산과 운전원 확보방안이 마련된 후 정수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0.06.30.〉

제7조(임시차량의 정수배정) ① 각급 교육기관이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을 정하여 임시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을 위한 업무용 승용차의 차형은 별표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0.06.30.〉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차량을 정수 배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임시차량 정수배정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차종 변경승인) ①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 상호 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그 차종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0.06.30.〉

② 각급 교육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차종 변경승인 신청서에 차종 변경 설명서를 붙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06.30.〉

제9조(차형 변경승인) ①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같은 차종 안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그 차형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0.06.30.〉

② 각급 교육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차형 변경승인 신청서에 차형 변경 설명서를 붙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06.30.〉

제10조(차량 교체승인) ① 각급 교육기관의 장이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려면 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6.17.〉〈개정 2020.06.30.〉

1. 별표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신설 2015.6.17.〉
2.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신설 2015.6.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차량을 교체할 수 있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해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06.30.〉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해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6.17.〉〈개정 2020.06.30.〉

3. 정부시책으로 교육감이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각급 교육기관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차량 교체승인 신청서에 차량 교체 설명서와 증명서류를 붙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06.30.〉

제11조(차량교환승인) ①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기관 상호 간에 차량을 교환할 수 있다.〈개정 2020.06.30.〉

② 각급 교육기관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차량 교환승인 신청서에 차량 교환 사유서를 붙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06.30.〉

제12조(차량의 사전취득 금지) 각급 교육기관은 교육감으로부터 차량의 정수배정·임시차량의 정수배정을 받거나 차종 변경, 차형 변경, 차량 교체 또는 차량 교환의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차량을 취득 또는 변경할 수 없다.

제13조(차량정수의 감축)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각급 교육기관의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0.06.30.〉

1. 기관의 축소·변경 그 밖의 사유로 차량정수가 과다할 경우
2. 각급 교육기관의 장이 차량 운행의 필요성이 없어 정수 감축을 요구한 경우
3. 그 밖의 차량정수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이 경우 교육감은 차량정수의 감축 내용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0.06.30.〉

제14조(공용차량의 임차) 공립학교를 제외한 각급 교육기관의 장이 운영상 필요한 경우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임차차량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06.30.]

제15조(에너지 절감차량 구매)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경형 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06.30.〉

제3장 차량의 등록관리

제16조(차량의 등록절차) ① 교육감은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 변경, 차형 변경, 차량 교체 또는 차량 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그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각급 교육기관의 장이 차량을 「자동차관리법」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정수 배정, 차종 변경, 차형 변경, 차량 교체 또는 차량 교환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말소를 등록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차량등록 또는 말소등록 보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등록의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차량 말소등록의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 사본을 각각 붙여야 한다.〈개정 2020.06.30.〉

제4장 차량의 운행관리

제17조(차량의 집중관리) ① 해당 기관의 장은 차량관리 주관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2대 이상의 업무차량 보유기관에서는 차량을 집중 관리하여야 한다.

③ 차량 소속기관의 장은 주차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업무시간 외에는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하고 주차시설에 주차시켜야 한다.〈개정 2020.06.30.〉〈개정 2021.11.04.〉

제18조(차량의 사용) ① 모든 차량은 별지 제6호서식의 차량 배차 신청서에 따라 배차받아 사용한다. 다만,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술로 배차 신청하고 사후 배차 신청서를 받아 갖춰 놓아야 한다. 다만, 비상상황 등 긴급히 필요한 경우 또는 전용, 학생통학용 등 일상적인 운행의 경우에는 차량운행일지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0.06.30.〉

② 차량담당부서는 신청 순서에 따라 차량을 배차하되, 운행가능차량, 운행거리, 사용기간, 사용 인원 등을 검토하여 배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20.06.30.〉

③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나 업무수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업무용 차량은 해당 기관의 여러 업무에 널리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공용차량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해당 차량의 사용자가 출퇴근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5.6.17.〉〈개정2020.06.30.〉〈개정 2024.04.19〉

1. 전용차량〈신설 2024.04.19〉
2. 각종 사고 및 재해 발생 등으로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일정기간 수행하는 사람에게 배차된 차량 〈신설 2024.04.19〉

④ 각급 교육기관이 부득이 교육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화물 및 승합차량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해당 공용차량 보유기관에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배차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보유기관은 차량 운행상황, 안전운행 및 안전사고 대책 등을 검토한 후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배차 승인 여부를 신청 기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요경비는 사용기관이 실비로 부담한다. 다만,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배차 신청이나 배차 승인을 할 수 있다.〈개정 2015.6.17.〉〈개정2020.06.30.〉〈개정 2021.11.04.〉

제19조(차량의 기록·유지) ①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놓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별도의 서류를 갖춰 놓거나 관련 서식 중 일부를 자체 실정에 맞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0.06.30.〉

1. 차량 배차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개정 2020.06.30.〉
2. 공용차량 관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개정 2020.06.30.〉
3. 유류 수불대장(별지 제8호 서식)〈개정 2020.06.30.〉
4. 차량 정비대장(별지 제9호 서식)〈개정 2020.06.30.〉
5. 차량 운행일지(별지 제10호 서식)〈신설 2020.06.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차량의 기록·유지를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20.06.30.〉

제5장 운전원 관리

제20조(운전원의 의무) 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06.30.〉

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21조(금지사항) 운전원은 안전운행을 위하여 근무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개정 2020.06.30.〉

1. 근무 중 음주행위
2. 운전 중 흡연·식음 및 휴대 전화를 사용하는 행위〈개정 2020.06.30.〉
3. 배차받은 차량을 대리 운전하게 하는 행위

4.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개정 2020.06.30.>
5.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개정 2015.6.17.>
6.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지역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행위
7. 그 밖의 차량운행 시 「도로교통법」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하는 행위

제22조(운행 중 조치사항) ① 운전원은 차량운행 중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우선 안전조치를 한 후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0.06.30.>

1. 고장일시 및 장소
2. 안전조치 내용 및 견인차 출동 여부
3. 고장부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운전원은 차량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차량담당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내용 신고(경찰서 및 보험회사)
3. 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 여부)
4.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
5.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

제23조(운전원 과실에 대한 책임) 운전원이 차량 운행 중에 불법 주·정차 위반 또는 제한속도 위반, 전용차선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또는 벌금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개정 2020.06.30.>

제24조(안전교육) 차량 소속기관의 장은 운전원에게 안전운행, 예방정비, 일상점검, 준법정신 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06.30.>

제6장 공용차량 직접운전

제25조(차량의 직접운전) 각급 교육기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은 업무능률의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용차량을 직접 배차받아 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운행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의무와 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5.6.17.>
<개정 2020.06.30.>

제26조(차량의 점검) ① 차량의 직접운행자는 배차받은 차량의 상태 및 공구류 등을 운행 전에 반드시 점검하고 운행 후에는 원래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20.06.30.>

② 제1항에 따라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차량담당공무원에게 즉시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차량반납 등) ① 직접운행자는 차량을 운행한 후에 지체 없이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이 정상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에게 알려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직접운행 차량반납은 배차받은 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예정시간 등을 관리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06.30.>

제7장 보칙

제28조(위임사무)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제5조부터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차량의 정수배정·승인 및 관리를 위한 사항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 공립 유, 초, 중, 고, 특수학교<개정 2021.06.11.>
2.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개정 2015.2.27. 규741><개정 2020.06.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에 따른 차량 교체승인은 같은 차종과 차형에 한해 차량 소속 기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2.27. 규741><개정 2020.06.30.>

제29조(지도·점검 및 시정명령) ① 교육감은 각급 교육기관의 차량관리 운영 전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20.06.30.>

1. 차량정수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0.06.30.>
2. 연 1회 차량관리 실태조사<개정 2020.06.30.>
3. 그 밖에 차량의 관리·운영 상황<신설 2020.06.30.>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부칙 <제950호,2024.4.19>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1. 17.] [경기도조례 제8266호, 2025. 1. 17., 일부개정]

경기도교육청(체육건강교육과), 031-249-027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학교 운동장을 조성하고 관리함으로써 학생들의 체육 활동을 증진하여 학생 건강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01.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급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친환경 운동장”이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적은 환경친화적인 안전한 학교 운동장을 말한다.
3. “운동장 소재”란 학교 운동장을 조성하는 원재료로서 인조잔디, 천연잔디, 마사토, 흙, 모래, 기타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사용되는 소재 등을 말한다.〈신설 2017.4.11.〉〈개정 2025.01.17〉
4. “학교 운동장 비산먼지”란 학교 운동장에서 대기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신설 2025.01.17〉

제3조(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각급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안심하고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친환경 운동장을 조성하고 최상의 상태로 관리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4.11.〉〈개정 2025.01.17〉

② 교육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의 소재가 결정되면 유해성 및 내구성 등을 검사하여 학교 운동장을 최적의 운동장으로 조성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신설 2017.4.11.〉〈개정 2025.01.17〉

제4조(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 계획) 교육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개정 2025.01.17〉

1.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대한 기본 방침
2. 학교 운동장 유해성 조사, 비산먼지 발생 정도 등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개정 2025.01.17〉
3.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원 방안〈개정 2025.01.17〉
4.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모델 개발 방안
5. 학교 운동장 비산먼지 저감 대책
6. 학교운동부 운영 학교에 대한 운동장 등 체육시설 지원계획 및 관리방안
- 7 그 밖에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개정 2025.01.17〉

제4조의2(운동장 소재 선정) ① 학교장은 친환경 운동장을 조성할 때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운동장 소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운동장 소재를 선정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동문회, 지역주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동장소재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선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하며, 학교운영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운동장 소재를 선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신설 2017.4.11.〉

제5조(실태 조사) ①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운동장의 유해성 조사와 학교 운동장 비산먼지 발생 정도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7.4.11.〉〈개정 2025.01.17〉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17.4.11.〉

제6조(개선 대책 수립과 지원)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실태 조사 결과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검출되거나 비산먼지 발생 정도가 큰 학교 운동장에 대하여 매년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4.11.〉〈개정 2025.01.17〉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학교 운동장을 친환경 운동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모델을 개발하고 우선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4.11.〉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교육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필요한 자원 분담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경기도 및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포상) 교육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학교, 단체,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제8266호,2025.0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교육청 학생스포츠활동 지원 조례

[시행 2025. 1. 17.] [경기도조례 제8267호, 2025. 1. 17., 전부개정]

경기도교육청(체육건강교육과), 031-249-027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학생들의 안전한 스포츠 활동을 위한 지원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 증진, 사회·문화적 감수성 함양, 진로·직업 탐구를 통한 미래 지향적인 학교체육의 육성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스포츠활동”이란 「학교체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체육을 비롯하여 공공스포츠클럽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 체육활동을 말한다.
2. “공공스포츠클럽”이란 공공성을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학생스포츠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학교운동부”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운동부를 말한다.
4. “학생선수”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5. “학교운동부지도자”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스포츠활동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과 다양한 진로·직업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의 효율적인 운영,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학생스포츠활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생스포츠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생스포츠활동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선수와 공공스포츠클럽 소속 학생의 수업·진로상담 등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2. 학부모의 교육 참여에 관한 사항
3. 학교운동부 지원을 위한 중장기 목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학교운동부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학교운동부 지원정책 평가 및 분석, 개선에 관한 사항
6. 학교운동부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7.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종목의 학교운동부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8.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인권 보호,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9. 공공스포츠클럽 지도자의 처우개선, 인권 보호, 지위 향상에 관한 협의
10. 학교운동부 및 공공스포츠클럽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1. 학교운동부 및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점검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학생스포츠타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학생선수, 학교운동부지도자 등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실태조사)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3(학생스포츠타활동 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스포츠타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생스포츠타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2.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의 복리증진과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3.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
4.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종목의 학교운동부 지원
5. 공공스포츠클럽 지원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운영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시설물 개방) 교육감과 교육장, 학교장은 안전한 학생스포츠타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관 시설물의 개방 및 활동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위원회) ① 학생스포츠타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자문하기 위하여 각 교육지원청에 학생스포츠타활동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해당 시·군의회 의원
3. 교육지원청 소관 국장 또는 과장
4. 시·군 체육회 또는 시·군 장애인체육회가 추천하는 사람
5. 교육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외부전문가
6. 학교운동부 운영 초·중등학교 교장
7. 학교운동부 및 공공스포츠타클럽 소속의 학생과 운동부지도자
8. 학교운동부 및 공공스포츠타클럽 소속의 학생의 학부모
9. 그 밖에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소관 국장 또는 과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장학사로 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2. 제5조의2에 따른 학생스포츠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6조의 시설물 개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생스포츠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⑦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고, 경기도의회 의원, 해당 시·군의회 의원인 위원 및 직위에 따라 임명된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스포츠활동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시·군, 시·군 체육회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8267호, 2025.0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기도교육청 학교운동부 운영 및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경기도교육청 학교운동부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행한 사업·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지원 조례

[시행 2021. 7. 14.] [경기도조례 제7055호, 2021. 7. 14., 제정]

경기도교육청(체육건강교육과), 031-249-027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사회의 도래와 감염병 출현과 같은 재난의 일상화 속에서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온·오프라인 플랫폼으로 새로운 형태의 체육교육환경을 구축하여 경기도 내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체육수업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체육”이란 지능정보화 시대의 AI, 자동화로봇, IoT 등 ICT를 신체활동에 적용하여 네트워크 기반에서 학습자 개개인이 스마트기기 및 콘텐츠를 활용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자기주도적 맞춤형 신체활동을 의미한다.
2. “스마트체육교육”이란 제1호의 스마트체육을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과 수단, 결과를 의미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스마트체육 지원을 위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스마트체육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단,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학교체육 활성화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스마트체육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
2. 스마트체육교육의 사업계획 및 추진 방안
3. 스마트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 발굴
4. 스마트체육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
5. 스마트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 현장 인프라 구축
6. 그 밖에 스마트체육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 설치·운영 등) ① 교육감은 스마트체육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경기도 교육청 스마트체육교육 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스마트체육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스마트체육교육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스마트체육교육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스마트체육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의 업무를 「경기도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 학교체육진흥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②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 ④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학교 체육교사 중 스마트체육에 관한 연구 및 현장 경험이 있는 사람
 3. 스마트체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그 밖의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사가 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임기에도 불구하고, 도의원인 위원은 의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운영한다.

- ② 위원장 부재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재정 지원) 교육감은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체육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
2.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한 교원 연수비용
3.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한 교원 네트워크
4. 스마트체육교육 자료 개발
5. 스마트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 현장 인프라 구축
6. 그 밖에 스마트체육 및 스마트체육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스마트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도와 시·군, 대학, 연구소 등 유관 기관 또는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7055호, 2021.0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교육청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시행 2021. 7. 14.] [경기도조례 제7062호, 2021. 7. 14., 제정]

경기도교육청(체육건강교육과), 031-249-027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문화인 전통무예를 경기도내 학교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자발적인 전통무예 활동 장려하여 학생들의 건강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예를 말한다.
2. “전통무예활동”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전통무예진흥 활동을 말한다.
3.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전통무예육성종목으로 공인 지정된 단체 또는 가맹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전통무예활동을 장려·보호 및 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전통무예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교특성에 맞는 전통무예활동 등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전통무예 진흥 사업) ① 교육감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유학기제 및 방과후 학교 연계 전통무예활동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2. 전통무예활동과 관련한 학습·체험 프로그램 지원
3. 학생 전통무예활동 동아리 및 교사 전통무예 연구회 활동 지원
4. 그 밖에 학생 전통무예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무예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위탁) ① 교육감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인 지정된 전통무예단체에 전통무예 교육지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전통무예 진흥과 관련하여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경비가 지원된 경우에는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한다.

② 전통무예단체는 교육감이 자료를 요청하면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위탁 부서의 담당자의 요구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전통무예 진흥과 관련 지원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전통무예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경기도, 전통무예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포상)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전통무예 진흥 사업 결과를 근거로 사업의 성과가 뛰어나거나 전통문화 진흥에 큰 공헌을 한 학교, 단체, 개인, 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7062호,2021.0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교육청 고등학교이하 체육교구·설비 기준

[경기도교육청고시 제2022-508호]

1997. 4. 14. 제정

2011. 12. 5. 개정

2022. 3. 2. 개정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 제31,176호, 2020. 11. 24.) 제 8조에 의하여 고등학교이하에 필요한 체육교구·설비에 대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구·설비의 구분) 교구·설비는 필수 교구·설비와 권장 교구·설비로 나눈다.

- ① 필수 교구·설비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상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교구·설비를 말한다.
- ② 권장 교구·설비는 필수 교구·설비를 제외하고 학교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시 갖추어야 할 교구·설비이다.

제3조 (설비의 종류) 설비는 초·중·고 체육장 설비로 나눈다.

제4조 (교구의 종류) 교구는 영역별로 나눈다.

제5조 (체육장 설비의 기준) 고등학교이하 체육장에 갖추어야 할 설비의 기준은 초등학교【별표 1】, 중학교【별표 2】, 고등학교【별표 3】과 같다.

제6조 (체육 교구의 기준) 고등학교이하 체육과의 교구기준은 초등학교【별표 1-1】, 중학교【별표 2-1】, 고등학교【별표 3-1】, 체육고등학교【별표 4】와 같다.

제7조 (교구·설비 기준의 적용) ① 고등학교이하 체육과의 교구 기준은 초·중·고등학교【별표 5】, 체육고등학교【별표 4】와 같다.

- ② 학교장은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8조 (기준 활용 및 교구·설비관리)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구·설비기준의 활용방법은 다음 각 항과 같이 관리한다.

- ① 연차적 확보계획을 세워서 구입하고 관리한다.
- ② 학교는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의 특성에 따라 이에 제시한 교구·설비 기준 외의 교구·설비도 구입, 관리한다.

제9조 (노후 교구·설비의 대체) 제5조, 제6조의 교구·설비는 가급적 그 사용 연한이 경과되기 전에 대체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이 고시 기준에 미달되는 학교는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2025

학교체육 업무매뉴얼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발행일 2025년 3월

발행인 임태희

발행처 경기도교육청 (<http://www.goe.go.kr>)

제작처 세창 (1544-1466)

2025

학교체육 업무매뉴얼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자율 균형 미래 경기도교육청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지역교육국 체육건강교육과